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 1**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3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2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25
1) 공공자금관리기금 ····· 125
2) 국유재산관리기금 ····· 135
3) 대외경제협력기금 ····· 158
4) 복권기금 ····· 184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96
6) 외국환평형기금 ····· 209
7) 기후대응기금 ····· 219

○ **국세청 소관 ····· 247**
○ **관세청 소관 ····· 297**
○ **조달청 소관 ····· 333**
○ **통계청 소관 ····· 381**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 문 위 원 이정은

목 차

기획재정부 소관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 3

가. 개요 ····· 3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5

나.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7

(1)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국세수입, 세제실) ····· 7

(2)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거시경제변수의 보정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19

(3) 세목 별 추계모형에 활용된 변수 및 개선사항의 적절성 검토 (국세수입, 세제실) ····· 22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 제출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31

(5) 신규 조세지출 건의 시 세수보완 방안 마련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35

(6) 할당관세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의 국회 제출 예결산 서류 반영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40

다.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 45

(1) 중장기 경제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원칙 마련 필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미래전략국) ····· 45

(2)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48

(3) 효과적인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마련 필요 (혁신조달지원, 국고국) ····· 53

(4)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를 위한 노력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57

(5) 적정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국제 재정협력 강화, 예산실) ····· 61

(6)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 예산 소관 부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예산실) ····· 64
(7)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목 조정 필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68
(8)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도입을 위한 면밀한 준비 필요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재정정책국) ····· 72
(9) 성과지표 측정방식 개선 필요(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 재정정책국) ··· 77
(10)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예비비, 예산실) ··· 82
(11) 국제투자협력단의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국제금융국) ····· 85
(12) 범정부 차원의 APEC 개최 위해 사업관리 철저 필요 (대외경제협력강화, 대외경제국) ····· 90
(13) 우리나라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OECD 조직 신설의 효과성 제고 위한 노력 필요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기여금(ODA)(신규), 대외경제국) ··· 96
(14)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필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ODA), 대외경제국) ····· 100
(15)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시 현물·현금출자 비중 고려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대외경제국) ····· 104
(16) 국제금융기구와의 MOU 약정액 대비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안 검토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개발금융국) ····· 107
(17) HW 및 시스템 SW 예산에 대한 감리비 조정 필요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경제공급망기획관) ··· 112
(18)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근매식비 예산의 조정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 114
(19) 중복 계상된 국내여비를 조정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조정실) ····· 117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22
가. 개요 ····· 122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25

1) 공공자금관리기금 ····· 125
가. 개요 ····· 125
나. 검토의견 ····· 128
(1) 융자금에 대한 편성금리의 적정성 검토 및 수입액 조정 필요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국고국) ····· 128
(2)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일반수용비 반영 필요
(기타경비(총괄계정), 국고국) ····· 131

2) 국유재산관리기금 ····· 135
가. 개요 ····· 135
나. 검토의견 ····· 138
(1) 공용재산취득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총괄, 국고국) ····· 138
(2)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계획안 조정 필요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 국고국) ····· 142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 비목 변경 필요
(인건비, 국고국) ····· 146
(4) 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계획 재수립 및 계획액 재검토 필요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국고국) ····· 149
(5)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관사 안정성 평가 추진체계 개편 검토 필요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국고국) ····· 154

3) 대외경제협력기금 ····· 158
가. 개요 ····· 158
나. 검토의견 ····· 161
(1) 대외경제협력기금 비공개 규정의 「정보공개법」상 절차준수 필요
(총괄, 개발금융국) ····· 161
(2) 「2025년 ODA 종합시행계획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 철저 관리 필요
(대개도국차관(단위사업), 개발금융국) ····· 166
(3) 사업계획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 내역사업 계획안 적절성 검토 필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개발금융국) ····· 172
(4)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집행관리 필요 및 12개월 사업수행 전제로 편성된 사업관리컨설턴트 내역사업(신규) 계획 조정 필요
(사업진행컨설팅(ODA), 개발금융국) ····· 176
(5)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별도사업으로 분리 편성 필요
(사업심사평가연구(ODA), 개발금융국) ····· 181

4) 복권기금 ····· 184
가. 개요 ····· 184
나. 검토의견 ····· 186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적 예산 배분 필요
(총괄, 복권위원회) ····· 186
(2)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의 효과성 제고 필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복권위원회) ····· 192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196
가. 개요 ····· 196
나. 검토의견 ····· 198
(1)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의 실시 근거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특별인프라펀드, 재정관리국) ····· 198

6) 외국환평형기금 ····· 209
가. 개요 ····· 209
나. 검토의견 ····· 211
(1) 2024년 발행되는 원화표시 외평채 추이 감안하여 국공채상환 사업 계획액 조정 필요(국공채수입/국공채상환, 국제금융국) ····· 211
(2) 중복계상된 통화금융기관예치 지출액 조정 필요
(통화금융기관예치, 국제금융국) ····· 215

7) 기후대응기금 ····· 219
가. 개요 ····· 219
나. 검토의견 ····· 221
(1)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의 추계 적정성 제고 필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미래전략국) ····· 221
(2) 사업 진행 상황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환경부) ····· 226
(3)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230
(4)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종료 시기를 고려한 면밀한 집행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간 연계 필요
(탄소중립그린도시, 환경부) ····· 236
(5)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유지관리비 조정 필요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산림청) ····· 243

국세청 소관

가. 개요 ····· 249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49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4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250

나. 검토의견 ····· 251
(1)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기준 공개 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과세국) ····· 251
(2) 디지털세 운영지원 관련 국가간 회의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디지털세 운영지원, 국제조세관리관실) ····· 257
(3) 근로자조합교부금 제도 변경을 반영한 예산 집행 필요
(납세조합법정교부금, 개인납세국) ····· 261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 등을 반영한 위탁대상 선정 필요
(징수위탁수수료, 징세법무국) ····· 265
(5) 내역사업에 부합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예산안 편성 필요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개인납세국) ····· 270
(6) 세금포인트 제도 관련 인지도 조사 등 실시 및 모범납세자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273
(7)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성실제출·실태분석 대상 근로자 축소방안 마련 필요(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 ··· 278
(8) IOTA 회의 참석 관련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관실) ····· 284
(9)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 288
(10) 구로세무서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임시청사 이전비용, 운영지원과) ····· 293

관세청 소관

가. 개요 ····· 299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99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99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300

나. 검토의견 ····· 302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감액 필요(면허료 및 수수료, 심사국) ····· 302
(2)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강화 필요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 306
(3) 기본경비와 중복된 위험관리 우수활동 포상금 감액 및 밀수 신고 포상금 현실화 필요(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조사국) ····· 310
(4) 적정수준의 기관운영출연금 규모 검토 필요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정보데이터정책관) ····· 313
(5)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보고서상 검토결과 고려 필요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R&D), 정보데이터정책관) ····· 317
(6)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 감액 필요(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정보데이터정책관) ····· 321
(7)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처우개선 필요(납세자권익보호, 기획조정관) ····· 325
(8) 전년도 타 사업의 직접 수행을 이유로 증액 편성된 기본경비의 예년도 수준의 감액 필요(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 329

조달청 소관

가. 개요 ····· 335
(1) 조달특별회계 일반 ····· 335
(2)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336
(3)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337
(4)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338

나. 검토의견 ····· 339
(1) 혁신조달 관련 성과지표 보완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확립 필요(총괄, 신성장조달기획관) ····· 339
(2) 법률에 맞는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 운영 필요
(조달정보화(정보화), 공정조달국) ····· 349
(3)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민간분야 활용 방안 등 마련 필요(조달정보화(정보화), 공정조달국) ····· 359
(4)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으로의 편성 필요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기획조정관) ····· 365
(5) 전통문화상품 홍보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업무협의 강화 필요
(조달 물자 및 계약 관리, 구매사업국) ····· 372
(6) 재건축예정인 경남비축기지의 지역 이용업체 수요에 맞는 비축 추진 필요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공공물자국) ····· 376

통계청 소관

가. 개요 ····· 383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383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38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 385

나. 검토의견 ····· 386
(1) 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품질진단 사후관리 강화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386
(2) 신설 다목적교육관의 교육 기능 강화 필요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통계교육원) ····· 390
(3)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이용률 제고 필요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통계서비스정책관) ····· 394
(4)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통계데이터허브국) ····· 398
(5)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철저한 준비 필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국) ····· 402

기획재정부 소관

1.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7조 7,838억원으로 전년대비 6.1%(26조 9,736억원) 증가하였음.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371조 8,0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95조 9,788억원으로 편성됨.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1. 국세수입	**3,561,182**	**3,718,050**	**156,868**	**4.4**
내국세계	3,216,136	3,381,292	165,156	5.1
소 득 세	1,257,605	1,280,066	22,461	1.8
법 인 세	776,649	885,013	108,364	14.0
상속증여세	146,566	127,879	△18,687	△12.7
부가가치세	814,068	880,201	66,133	8.1
개별소비세	101,945	96,663	△5,282	△5.2
증권거래세	53,829	38,454	△15,375	△28.6
인 지 세	8,505	9,085	580	6.8
과년도수입	56,969	63,931	6,962	12.2
교통·에너지·환경세	153,258	151,048	△2,210	△1.4
관세	89,065	84,093	△4,972	△5.6
교육세	61,625	60,402	△1,223	△2.0
종합부동산세	41,098	41,215	117	0.3
2. 세외수입	**846,920**	**959,788**	**112,868**	**13.3**
재산수입*	26,146	52,473	26,327	100.7
경상이전수입	127	127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	0	-	-
관유물매각대**	534	37,441	36,908	6,917.5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820,114	869,747	49,633	6.1
총 계	**4,408,102**	**4,677,838**	**269,736**	**6.1**

*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국세물납주식 매각 이자수입,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 국세물납주식매각수입('19년까지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로 편성했으나 '20년부터 관유물매각대로 편성)
*** 특별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자료: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조 7,375억원으로 전년대비 10.4%(5,382억원)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5조 6,031억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전년대비 14.3%(6,000억원) 증가한 4조 8,000억원이 편성됨. 출자·출연사업은 국제금융기구 출연,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등으로 전년보다 18.3% 감소한 3,73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 사업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4,298억원이 편성됨.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B)	증감 (B-A)	(B-A)/A
[총지출]	51,993	57,375	5,382	10.4
- 인건비	1,042	1,078	36	3.5
- 기본경비	255	266	11	4.2
- 주요사업비	50,696	56,031	5,335	10.5
▪ 출자·출연사업	4,568	3,733	△835	△18.3
▪ 경상사업	4,128	4,298	170	4.1
▪ 예비비	42,000	48,000	6,000	14.3
[내부거래]	268,324	381,200	112,876	42.1
- 법정성격사업*	182,672	294,924	112,252	61.5
- 기타전출**	85,652	86,276	624	0.7
총 계	320,317	438,575	118,258	36.9

* 법정성격사업: 공자기금예수 이자상환, 대러차관보증 채무이행 손실보전, 공자기금융자계정 이차보전
** 기타 전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기후대응기금 전출
자료: 기획재정부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가) 신규사업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총 7개 사업, 금액은 총 1,052억 9,800만원 규모임.

[2025년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예산 (7개 사업) >		
【일반회계(7개)】	105,298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86	▪ 국제금융투자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지원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799	▪ 우리 진출기업 간접 지원 및 OECD내 한국 영향력 확대를 위해 동남아 경제발전 기여금 납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	100,000	▪ 대규모 해외수주,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및 미래성장 동력 지원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1,874	▪ 공급망 위험정보 조기입수·공유시스템 구축 및 공급망안정화 정책연구 수행
미래융복합경제교육	2,143	▪ 태안 교육시설(24.9월 완공)을 활용하여 국민(민간) 경제교육과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등 공무원 직무 교육 추진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경제공급망기획관)	21	▪ 경제공급망기획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경제공급망기획관)	375	▪ 경제공급망기획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나) 주요 증액사업

2024년 예산 대비 20억 이상 또는 20%이상 증가(단, 내부거래는 제외)한 주요 증액 사업은 총 12개 세부사업임.

재정사업타당성조사, 대외경제협력강화, 통상연계형경협사업,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등 총 12개 사업이 2024년 본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		증감 (B-A)	
		요구	조정(B)		(B-A)/A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3,304	4,115	4,115	811	24.5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2,732	3,732	3,732	1,000	36.6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618	750	750	132	21.4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8,571	12,937	12,937	4,366	50.9
대외경제협력강화	1,080	5,040	5,040	3,960	366.7
통상연계형경협사업	499	699	699	200	40.1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45,500	48,300	48,300	2,800	6.2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8,200	11,340	11,340	3,140	38.3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2,823	5,589	5,589	2,766	98.0
경제교육지원	6,368	8,240	8,240	1,872	29.4
인건비	104,175	111,467	107,790	3,615	3.5
예비비	4,200,000	4,900,000	4,800,000	600,000	14.3

나.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1)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국세수입, 세제실)

2025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382조 4,296억원으로서 이 중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1조 8,050억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주세) 3조 2,093억원이고,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농어촌특별세)으로 7조 2,126억원이 편성되었음.[1] 이는 2024년 예산 367조 3,140억원 대비 15조 1,156억원이 증가(4.1%)한 것이고, 금년 9월 정부의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전망[2] 337조 7,039억원에 비하여는 44조 7,257억원 증가(13.2%)한 규모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71조 8,050억원으로 2024년 예산 356조 1,182억원 대비 15조 6,868억원 증가(15.7%)한 규모이며,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치 327조 2,308억원에 비하여는 44조 5,742억원이 증가(13.6%)한 규모임.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 6,246억원으로 2024년 예산 11조 1,958억원 대비 5,712억원 감소(△5.1%)한 규모이며,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치 10조 4,731억원에 비하여는 1,515억원이 증가(1.4%)한 규모임.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4개 세목 중 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등 6개 세목은 2024년 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주세, 농특세 등 8개 세목이 감액편성되었음.

---

1) 2025년 국세 세입예산안 382.4조원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71.8조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주세) 3.2조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농어촌특별세) 7.4조원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임.

2) 기획재정부는 2024년 9월 세수실적 및 진도율 등을 반영하여 2024년 국세수입을 재추계하였음.

[2025년도 국세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대비	
	예산	재추계	실적	예산	재추계		증감액	증감율
총 국 세	4,004,570	3,413,896	3,440,711	3,673,140	3,377,039	3,824,296	151,156	4.1
[일반회계]	3,902,539	3,311,102	3,339,396	3,561,182	3,272,308	3,718,050	156,868	4.4
◇ 내 국 세	3,579,676	3,031,216	3,060,595	3,216,136	2,995,142	3,381,292	165,156	5.1
○ 소 득 세	1,318,632	1,142,039	1,158,330	1,257,605	1,174,033	1,280,066	22,461	1.8
신 고 분	544,452	386,323	389,928	454,717	356,021	431,952	△22,765	△5.0
원 천 분	774,180	755,715	768,402	802,888	818,012	848,114	45,226	5.6
○ 법 인 세	1,049,969	796,171	804,195	776,649	631,987	885,013	108,364	14.0
신 고 분	870,700	598,768	603,768	568,333	400,096	665,252	96,919	17.1
원 천 분	179,269	197,403	200,427	208,316	231,891	219,761	11,445	5.5
○ 상 증 세	171,274	137,944	146,341	146,566	141,202	127,879	△18,687	△12.7
상 속 세	89,546	77,788	85,444	85,947	88,064	76,377	△9,570	△11.1
증 여 세	81,728	60,156	60,896	60,619	53,138	51,502	△9,117	△15.0
○ 부 가 가 치 세	832,035	739,029	737,749	814,068	836,955	880,201	66,133	8.1
○ 개 별 소 비 세	101,943	89,693	88,209	101,945	90,088	96,663	△5,282	△5.2
○ 증 권 거 래 세	49,739	64,602	60,803	53,829	49,711	38,454	△15,375	△28.6
○ 인 지 세	8,158	7,743	7,969	8,505	8,527	9,085	580	6.8
○ 과 년 도 수 입	47,926	53,995	56,999	56,969	62,639	63,931	6,962	12.2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	108,377	108,436	153,258	111,900	151,048	△2,210	△1.4
◇ 관 세	107,237	72,598	72,883	89,065	69,656	84,093	△4,972	△5.6
◇ 교 육 세	47,022	52,254	51,516	61,625	54,160	60,402	△1,223	△2.0
◇ 종합부동산세	57,133	46,657	45,965	41,098	41,450	41,215	117.	0.3
[특별회계]	102,031	102,793	101,314	111,958	104,731	106,246	△5,712	△5.1
◇ 주 세	32,151	34,904	35,686	35,759	32,605	32,093	△3,666	△10.3
◇ 농어촌특별세	69,880	67,889	65,628	76,199	72,126	74,153	△2,046	△2.7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및 사유는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128조 66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2조 2,461억원 증가(1.8%)한 규모임. 이는 고용·임금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자산시장 안정화 영향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임.

① 종합소득세 세수는 22조 5,941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4,611억원 감소(△2.0%)한 규모임. 이는 2024년 예산 대비로는 감소하나, 정부의 재추계 대비로는 증가하는 수준으로서 24년 경상성장률 증가, 가계소득 개선 등을 반영한 것임.

② 양도소득세 세수는 20조 6,011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1조 8,154억원 감소(△8.1%)한 규모임. 이는 2024년 예산 대비로는 감소하나, 정부의 재추계 대비로는 증가하는 수준으로 주택·토지 시장여건의 완만한 개선 등을 반영한 것임.

③ 이자소득세 세수는 5조 9,762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1조 634억원 증가(21.6%)한 규모임. 이는 2024년 예산 대비로는 증가하나, 정부의 재추계 대비로는 감소하는 수준으로 금리 인하 추세에 따른 이자소득 감소로, 이자소득세도 202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④ 배당소득세 세수는 4조 6,757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7,719억원 증가(19.8%)한 규모임. 이는 2024년 상장사 기업실적 개선 추이 등을 반영한 것임.

⑤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7,310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2조 6,983억원 증가(4.3%)한 규모임. 이는 2025년 근로자 수 및 임금 증가율의 증가 전망[3] 등을 반영한 것임.

⑥ 사업소득세 세수는 5조 1,060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3,582억원 증가(7.5%)한 규모임. ⑦ 연금소득세 세수는 6,914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본예산 대비 910억원 증가(15.2%)한 규모임. ⑧ 기타소득세 세수는 2조 4,626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2,438억원 감소(△9.0%)한 규모임. ⑨ 퇴직소득세 세수는 1조 1,685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2,164억원 감소(△15.6%)한 규모임. 이는 2024년 7월 세수누계실적 및 최근 증가율 추세 등을 반영한 것임.

---

3) '25년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율 전망: 2.7%
'25년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수 증가율 전망: 1.7%
'25년 전체근로자 임금 증가율 전망: 2.9%
'25년 전체근로자수 증가율 전망: 0.6%

[2025년 세목별 예산안: 소득세]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158,330	1,257,605	1,280,066	121,736	10.5	22,461	1.8
신 고 분	389,928	454,717	431,952	42,024	10.8	△22,765	△5.0
종합소득	214,368	230,552	225,941	11,573	5.4	△4,611	△2.0
양도소득	175,560	224,165	206,011	30,451	17.3	△18,154	△8.1
원 천 분	768,402	802,888	848,114	79,712	10.4	45,226	5.6
이자소득	52,068	49,128	59,762	7,694	14.8	10,634	21.6
배당소득	40,623	39,038	46,757	6,134	15.1	7,719	19.8
근로소득	591,442	620,327	647,310	55,868	9.4	26,983	4.3
사업소득	43,665	47,478	51,060	7,395	16.9	3,582	7.5
연금소득	4,562	6,004	6,914	2,352	51.6	910	15.2
기타소득	24,028	27,064	24,626	598	2.5	△2,438	△9.0
퇴직소득	12,014	13,849	11,685	△329	△2.7	△2,164	△15.6

자료: 기획재정부

법인세는 88조 5,01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77조 6,649억원 대비 10조 8,364억원 증가(14.0%)한 규모임.

① 법인세 신고분 66조 5,252억원은 2024년 예산 56조 8,333억원 대비 9조 6,919억원 증가(17.1%)한 규모인데, 이는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 등 2024년 기업실적이 상당폭 개선[4]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임.

② 법인세 원천분 21조 9,761억원은 2024년 예산 20조 8,316억원 대비 1조 1,445억원 증가(5.5%)한 규모인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로는 증가하나, 정부의 재추계 대비로는 감소하는 수준으로 예금 금리 하락 등을 반영한 것임

4) 상반기 영업이익(코스피,개별,조원): ('23) 14.6 → ('24) 59.2

[2025년 세목별 예산안: 법인세]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804,195	776,649	885,013	80,818	10.0	108,364	14.0
신 고 분	603,768	568,333	665,252	61,484	10.2	96,919	17.1
원 천 분	200,427	208,316	219,761	19,334	9.6	11,445	5.5

자료: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는 88조 20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81조 4,068억원 대비 6조 6,133억원 증가(8.1%)한 규모임.

[2025년 세목별 예산안: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880,201	142,452	19.3	66,133	8.1

자료: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는 12조 7,87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14조 6,566억원 대비 1조 8,687억원 감소(△12.7%)한 규모임.

① 상속세 세수는 7조 6,377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8조 5,947억원 대비 9,570억원 감소(△11.1%)한 규모임. ② 증여세 세수는 5조 1,502억원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대비 9,117억원 감소(△15.0%)한 규모임.

이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효과를 반영한 것임

[2025년 세목별 예산안: 상속세 및 증여세]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상 증 세	146,341	146,566	127,879	△18,462	△12.6	△18,687	△12.7
상 속 세	85,444	85,947	76,377	△9,067	△10.6	△9,570	△11.1
증 여 세	60,896	60,619	51,502	△9,394	△15.4	△9,117	△15.0

자료: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는 9조 6,66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10조 1,945억원 대비 5,282억원 감소(△5.2%)한 규모임.

증권거래세는 3조 8,45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5조 3,829억원 대비 1조 5,375억원 감소(△28.6%)한 규모로서 증권거래세율 인하[5]를 반영한 것임.

인지세는 9,08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8,505억원 대비 580억원 증가(6.8%)한 규모임.

과년도수입은 6조 3,93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5조 6,969억원 대비 6,962억원 증가(12.2%)한 규모임.

[2025년 세목별 예산안: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개별소비세	88,209	101,945	96,663	8,454	9.6	△5,282	△5.2
증권거래세	60,803	53,829	38,454	△22,349	△36.8	△15,375	△28.6
인 지 세	7,969	8,505	9,085	1,116	14.0	580	6.8
과년도수입	56,999	56,969	63,931	6,932	12.2	6,962	12.2

자료: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 1,04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15조

5)'24년 증권거래세율 조정 내용: 코스피 0.03% → 0.00%, 코스닥 0.18% → 0.15%

3,258억원 대비 2,210억원 감소(△1.4%)한 규모로서 2025년 유류 수요전망[6] 등을 반영한 결과임.

관세는 8조 4,09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8조 9,065억원 대비 4,972억원 감소(△5.6%)한 규모로서 수입[7] 및 환율 전망[8], 실효세율 추이 등을 반영한 것임.

교육세는 6조 40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6조 1,625억원 대비 1,223억원 감소(△2.0%)한 규모로서 본세의 부가세(surtax)인 교육세의 특성상 본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전망을 반영한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4조 1,21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4조 1,098억원 대비 117억원 증가(0.3%)한 규모로서 2024년 주택시장의 완만한 가격조정 예상 등을 반영한 것임.

[2025년 세목별 예산안: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53,258	151,048	42,612	39.3	△2,210	△1.4
관 세	72,883	89,065	84,093	11,210	15.4	△4,972	△5.6
교 육 세	51,516	61,625	60,402	8,886	17.2	△1,223	△2.0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41,215	△4,750	△10.3	117	0.3

자료: 기획재정부

주세는 3조 2,09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3조 5,759억원 대비 3,666억원 감소(△10.3%)한 규모로서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등을 반영한 것임.

농어촌특별세는 7조 4,15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산 7조 6,199억원 대비 2,046억원 감소(△2.7%)한 규모로서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세수 전망을 반영한 것임.

---

6) 휘발유: 14,520천k ℓ, 경유: 24,674천k ℓ
7) 수입액 전망 6,849억불
8) 예산안 기준환율 1,380원/달러

[2025년 세목별 예산안: 주세, 농어촌특별세]

(단위: 억원, %)

세 목	23년 실적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23년 실적대비		24년 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주 세	35,686	35,759	32,093	△3,593	△10.1	△3,666	△10.3
농어촌특별세	65,628	76,199	74,153	8,525	13.0	△2,046	△2.7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각 세목별 세수추계식에 경상GDP 등의 경제변수를 대입하여 산출된 세목별 세입추계치,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및 旣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치를 합하여 산출하였음.

구체적으로, 2025년 국세 세입예산안 382조 4,296억원은 ① (세법개정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2025년 세목별 세입추계치 합계액 382조 1,655억원, ② 2024년 세법개정안 및 旣 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치 합계액 2,641억원을 합한 금액임.

[2025년 국세 세입예산안 세목별·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억원)

세 목	세목별 세입추계치	세법개정 세수효과	합 계
총 국 세	3,821,655	2,641	3,824,296
[일반회계]	3,714,992	3,058	3,718,050
◇ 내 국 세	3,384,674	△3,382	3,381,292
○ 소 득 세	1,277,882	2,184	1,280,066
종합소득세	223,422	2,519	225,941
양도소득세	206,009	2	206,011
이자소득세	60,063	△301	59,762
배당소득세	45,023	1,734	46,757
사업소득세	51,060		51,060
근로소득세	649,080	△1,770	647,310
연금소득세	6,914		6,914
기타소득세	24,626		24,626
퇴직소득세	11,685		11,685
○ 법 인 세	866,968	18,045	885,013
○ 상 증 세	152,315	△24,436	127,879
상 속 세	88,830	△12,453	76,377
증 여 세	63,485	△11,983	51,502
○ 부가가치세	879,765	436	880,201
○ 개별소비세	96,234	429	96,663
○ 증권거래세	38,454		38,454
○ 인 지 세	9,125	△40	9,085
○ 과년도수입	63,931		63,931
◇ 교통·에너지·환경세	151,048		151,048
◇ 관 세	77,585	6,508	84,093
◇ 교 육 세	60,471	△69	60,402
◇ 종합부동산세	41,214	1	41,215
[특별회계]	106,663	△417	106,246
◇ 주 세	32,941	△848	32,093
◇ 농어촌특별세	73,722	431	74,153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2025년도 세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치 합계액 2,641억원 중 ① 금년 정기회에서 논의될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에 따른 2025년 세수효과는 △6,227억원이고, ② 금년 旣세법개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9] 등의 2025년도 세수효과는 총 5,280억원이며, ③

9)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1,635억원(25년)

202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938억원이고, ④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4,088억원이며, ⑤ 2021년 이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438억원임.

[연도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세법개정 세수효과 전망치]

(단위: 억원)

세 목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旣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	2022년 세법개정	2021년 이전 세법개정	합 계
총 국 세	△6,227	5,280	△1,938	4,088	1,438	2,641
[일반회계]	△6,219	5,280	△1,458	3,979	1,476	3,058
◇ 내 국 세	△6,499	△1,635	△1,250	3,980	2,022	△3,382
○ 소 득 세	408		1,062	931	△217	2,184
종합소득세	△322		1,910	931		2,519
양도소득세			2			2
이자소득세	△301					△301
배당소득세	1,950		△216			1,734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919		△634		△217	△1,770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 법 인 세	14,236		△1,438	3,057	2,190	18,045
○ 상 증 세	△24,199		△235	△2		△24,436
상 속 세	△12,452			△1		△12,453
증 여 세	△11,747		△235	△1		△11,983
○ 부가가치세	2,597	△1,635	△569	△6	49	436
○ 개별소비세	459		△30			429
○ 증권거래세						
○ 인 지 세			△40			△40
○ 과년도수입						
◇ 교통에너지환경세						
◇ 관 세	139	6,915			△546	6,508
◇ 교 육 세	141		△210			△69
◇ 종합부동산세			2	△1		1
[특별회계]	△8		△480	109	△38	△417
◇ 주 세	△8		△840			△848
◇ 농어촌특별세			360	109	△38	431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2025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세법개정 세수효과(△6,227억원)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세수 감소요인으로는,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 △8,624억원, '결혼세액공제 신설'(근로소득세) △1,285억원 등이 있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내용별 2025년 세수효과 추계액]

세 목	개 정 내 용	세수효과
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934
	결혼세액공제 신설	△1,285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29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329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교부금 축소	10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600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00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950
	소계	**408**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5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경정청구 합리화	185
	공시대상기업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14,000
	소계	**14,236**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8,624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3,828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11,747
	소계	**△24,199**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23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2,166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100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81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	△8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확대	△17
	수소제조용 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1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하향	46
	소계	**2,597**
개별소비세	수소제조용 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15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하향	474
	소계	**459**
관세	내국세(역외거래) 수준으로 관세 가산세율 상향	159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확대	△21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조정	1
	소계	**139**

세 목	개 정 내 용	세수효과
교육세	수소제조용 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2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하향	143
	소계	**141**
주세	소규모 전통주제조자에 대한 주세율 경감기준 조정	△8
	소계	**△8**
합 계		**△6,227**

자료: 기획재정부

(2)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거시경제변수의 보정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연례적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고, 이러한 세수 전망 오차 발생의 상당 부분이 세수전망의 전제인 경제전망의 오차 및 거시경제변수 추정의 부정확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입예산안 편성 시 거시경제변수를 일정 수준 보수적으로 보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세수추계의 오차가 재정건전성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한국은행, KDI, 국토연구원 등의 전망치를 참고하여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고 이를 각 세목의 세수 추계에 활용하였음.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활용된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구분	추계시 전망치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세목	전망치
경상성장률	종합소득세 (이외는 간접적으로 활용)	('24)5.5% ('25)4.5%
실질성장률		('24)2.6% ('25)2.2%
GDP 디플레이터		('24)2.9% ('25)2.3%
민간소비 증가율	법인세 부가가치세	('24)1.8% ('25)2.3%
소비자물가 상승률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24)2.6% ('25)2.1%
취업자증감	근로소득세	('24)23만명 ('25)17만명
명목임금상승률	근로소득세	('24) 3.1% ('25) 2.9%
환율	법인세 관세	('24) 1,3505₩/$ ('25) 1,380₩/$ ('25년: 예산안 기준 환율)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예상 전망치는 연례적으로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경상성장률[10]은 국세 수입 규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소득세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시경제변수로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4.5%(실질성장률 2.2% + GDP def 2.3%) 수준으로 전망함.

이 중 정부의 실질성장률 전망 2.2%는 한국은행(2.1%), KDI(2.1%)와 같은 주요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하나금융경영연구소(2.1%)[11] 등 민간기관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임. 또한 정부의 이러한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주요 기관들에 비해 높게 전망되는 경향성이 확인되고 있음.

[주요기관의 연도별 실질성장률 전망치]

(단위: %)

정부	한국은행	OECD	ADB	KDI	IMF	국회예산정책처	현대경제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2 (2024. 9.)	2.1 (2024. 8.)	2.2 (2024. 9.)	2.3 (2024. 9.)	2.1 (2024. 8.)	2.2 (2024.10.)	2.2 (2024.10.)	2.2 (2024.9.)	2.1 (2024.10.)
2.4 (2023. 7.)	2.2 (2023. 8.)	2.1 (2023. 9.)	2.2 (2023. 9.)	2.3 (2023. 8.)	2.2 (2023.10.)	2.0 (2023.10.)	2.2 (2023.9.)	2.1 (2023.10.)
2.5 (2022 8.)	1.7 (2022. 11.)	1.8 (2022. 11.)	1.5 (2022. 12.)	1.8 (2022.8)	2.0 (2022.10.)	2.1 (2022.10)	2.2 (2022.9)	1.8 (2022.10)

주: 괄호 안은 전망 시점

이러한 정부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전망 경향은 예산을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하게 되는 경제전망이 정부의 정책목표 또는 정책방향과 크게 어긋날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가 약화 될 가능성을 염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경제전망 성향은 세수의 과다추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작년 및 재작년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수결손을 확대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제지표 전망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나, 이러한 경제전망의 관대화 경향을 시정한다고 해도

10) 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표시되는 성장률로서 GDP 디플레이터와 실질성장률의 합계
1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5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2024.10.16.

경제전망의 정확성 제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경제전망은 전망 당시의 사용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의 경제상태를 예측하는 것으로서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사건에 대한 정보의 완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정한 전망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이처럼 세수추계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경제전망에는 '불가피한 전망오차'라는 경제전망 자체의 내재적 한계와 '정책목표의 개입'이라는 정부전망 특유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가 세수추계 오차의 확대로 이어져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전망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 중 하나는 정부 이외의 제3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경제전망치를 사용하여 정부전망 특유의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제전망 자체에 내재된 '불가피한 전망오차'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경제전망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그대로 사용하되 세입예산안 작성을 위한 세수추계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정부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보정한 '보수화 전망치'를 사용하여 세수의 과다추계 위험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방안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세입예산안의 보수적 추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2022년과 2023년과 같이 세수가 부진한 경우에는 세수결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2020년과 2021년과 같이 예상외로 세수실적이 좋을 때에는 재정잉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러한 보수적 추계로 발생한 연례적인 세입잉여는 세계잉여금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다소의 시차는 있지만 연례적인 세출재원으로 활용됨으로써 상계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확정재원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세수추계의 불확실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세목 별 추계모형에 활용된 변수 및 개선사항의 적절성 검토 (국세수입, 세제실)

정부가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활용한 변수들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변경한 세수추계모형의 현실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산 시 세수추계모형의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국세 수입 전망을 위한 세목별 전망 산출 근거로 각 세목별 활용된 변수 등을 공개하였음.[12] 또한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시 ① 세수추계 모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세수추계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AI를 기반으로 하는 추계모델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② IMF의 제언을 바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여 총 부담세액을 전망하도록 법인세의 추계모형을 고도화하였음.[13]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각 세목별 전망 산출 근거 및 추계모형의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세수오차가 큰 비목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대비 29.6조원의 세수오차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자산시장의 침체, 2023년의 경기 둔화 및 민생안정 정책 시행으로부터 기인한 것임. 특히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3년 경기 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감소가 예상되며, 법인세는 2023년 기업실적 하락으로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하였음. 그 결과 2024년 예산에 비해 소득세는 8조 3,572억원, 법인세는 14조 4,462억원의 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므로, 세수 오차분의 29%, 50%가량의 원인이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의 추계모형에 활용된 변수 및 개선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우선 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경상성장률 증가와 가계소득 회복세에 따라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또한 ,2024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2025년 세수 증가 효과도 종합소득세 증가폭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대비 3조 5,768억원 증가한 세수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양도소득세는 향후 금리 추이 등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나, 토지·주택 시장 모두 가격·거래량이 올해보다 증가하고 주식시장도 회복세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4조 163억원 증가한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12)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2024. 9. 2.)
13)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2024. 9. 2.)

이중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수전망에 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한 세수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2023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정부는 2022년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을 토대로 2022년 연간 세수를 재추계한 후 관련 경제지표(2023년 토지·건물가격 상승률 전망 등)의 증가율을 반영하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역시 경제지표와 세수실적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2023년 12조 1,6372억원(△40.9%)의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추계방식을 다시 변경하여 2023년 9월 재추계한 2023년 연간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최신 정보 반영)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지표-세수 간 관계 체계적 반영)하여 세수추계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의 정부 재추계 결과는 2024년 예산 대비 5조 8,317억원의 세수오차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양도소득세 오차 현황]

(단위: 억원)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20년	167,621	236,558	68,937	29.1
2021년	168,857	367,072	198,215	54.0
2022년	224,380	322,333	97,953	30.4
2023년	297,197	175,560	△121,637	△40.9
2024년	224,165	165,848*	△58,317	△26.0
2025년(예산안)	225,941			

* 2024년 징수실적, 오차, 오차율은 정부 세입 재추계치(재전망시점 2024.9..)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작성

양도소득세의 추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의 주요 설명변수로 '토지가격·거래', '주택매매가격·거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어, 세액을 토지분, 주택분, 건물분등으로 나누어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 토지분 및 주택분 등은 제도 변화로 인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는 세수 중 하나이므로, 제도의 신설 및 도입으로 인한 설명변수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세목별 추계시 활용된 설명변수]

구 분	설명변수
종합소득세	⋆ 경상 GDP
양도소득세	⋆ 토지가격·거래, 주택매매가격·거래,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증권거래대금
근로소득세	⋆ 취업자수, 상용근로자수, 명목임금
이자소득세	⋆ 수신금리
법 인 세	⋆ 상장사 영업이익,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수신금리, 법인금융자산
상속증여세	⋆ 토지·주택가격,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개인금융자산 (상속세는 70세 이상 사망자수 추가 감안)
부가가치세	⋆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개별소비세	⋆ 에너지수요전망, 담배 반출량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대금
교 통 세	⋆ 휘발유·경유 수요전망
관 세	⋆ 수입, 환율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지가 상승률
주 세	⋆ 맥주·탁주 출고량

자료: '2025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 기획재정부

2021년 전국 기준 주택매매가격의 상승률이 10%에 육박한 이후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등의 형태로 조세 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이 시행된 바 있음. 이는 DiPasquale-Wheaton의 저량-유량(stock-flow)모형을 근거로 부동산관련 조세가 자산 시장 균형에서 임대료와 주택가격에 관계를 결정하여, 주택 임대료 수입에 대한 과세, 주택보유세의 부과, 양도소득세 과세 모두 동일한 임대료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 등을 근거로 한 것임.[14]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제의 개편은 제도의 변동이 세원의 규모 자체를 변동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세수를 추정하기 위해 제도변화의 효과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제도 변화 효과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추정되지 않고 있거나, 발표 시차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제 개편의 효과를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의 추정에 대해서는 단순 회귀변수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을 나누어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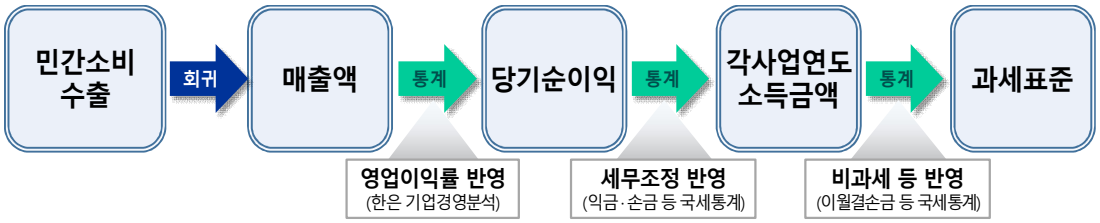
14)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방안', 한국경제학회, 이삼호, 국회미래연구원

별적인 차이를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법인세의 경우, 기존에는 (2024년도 세입예산안) 회귀모형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을 도출하고, 소득공제 이월결손금등의 국세통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22년 28조 6,324억원, 2023년 23조 1,509억원 등 대규모 세수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세수입 세수오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15].

정부는 2023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단순화된 회귀모형(거시변수로부터 매출액을 구한 뒤, 당기순이익등을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2024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변동성이 큰 상장기업의 실적 추정을 위해 향후 시장의 경기 변동 예측을 모두 반영한 증권시장 실적 전망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세수추계 모형을 보완하였음. 그러나 2023년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하반기 중간예납 감소 및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상장기업의 납세액 추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2024년 법인세 기준 14조 4,662억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임.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3년 예산안)



15) [주요 세목의 본에산 대비 세수오차]

(단위: 억원)

연도	총국세 오차	주요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2021년	613,357	242,963	**170,909**	45,515
2022년	525,554	229,469	**286,324**	41,480
2023년	△563,859	△129,156	**△231,509**	△78,517
2024년	△296,101	△83,572	**△144,662**	22,887

* 2043년 오차는 정부 세입 재추계치(재전망시점 2024.9.)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

[최근 법인세 오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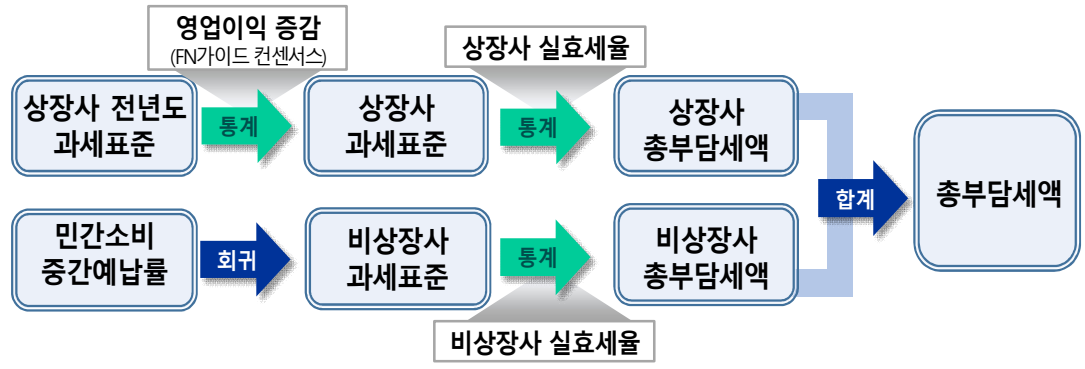
(단위: 억원)

연도	본예산 (A)	징수실적 (B)	오차 (B-A)	오차율 (B-A)/B
2020년	644,190	555,132	△89,058	△16.0
2021년	533,054	703,963	170,909	24.3
2022년	749,380	1,035,704	286,324	27.6
2023년	1,049,969	603,768	△266,076*	△30.6*
2024년	776,649	631,987	△144,662	△18.6
2025년(예산안)	885,013			

* 2024년 징수실적, 오차, 오차율은 정부 세입 재추계치(재전망시점 2024.9.)을 기반으로 한 예상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작성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2025년도 세입예산안 세수추계 시, 정부는 단계적 국세통계를 적용하는 대신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기업 유형별로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을 전망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음. 특히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증권사 컨센서스)등을 감안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전망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예시> 법인세 신고분 추계모형('25년 예산안)



이러한 개선사항이 반영된 '25년 세입예산안 법인세 추계모형으로 과거 5년간 세수를 재추계 한 결과, 추계오차는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세입예산안 법인세 추계 모형 활용 과거 5년간 세수 재추계 결과]

구 분	세수실적	기존 추계모형	오차		개선 추계모형	오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9년	721,743	819,305	97,562	13.5	760,154	38,411	5.3
2020년	555,132	541,916	△13,216	△2.4	541,592	△13,540	△2.4
2021년	703,963	761,626	57,663	8.2	695,025	△8,938	△1.3
2022년	1,035,704	1,003,235	△32,469	△3.1	991,299	△44,405	△4.3
2023년	804,195	868,978	64,783	8.1	845,689	41,494	5.2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 추계모형 구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① (상장사 과세표준) 2025년 예산안 중 법인세의 자진납세신고분 세수 추계시 상장사의 과세표준을 도출하기 위해 정부는 상장사의 전년도 과세표준에 '상장기업 과세표준 증감률[16]'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고 있고, 과세표준 증감률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가중평균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음.

'24년 귀속 상장사 과세표준 = '23년 귀속 상장사 과세표준 × (1+ 상장기업 과세표준 증감률)

그러나 전년도 상장사 과표에 단일한 수치(2025년도 기준 60.4%)를 바탕으로 '24년도의 상장사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세수 추계의 적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세원분포의 불균형성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상장사들의 과세표준을 일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임.[17]

따라서 과세표준의 증감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가중평균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과세표준 또한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으로 계층화하여 추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음. 특히 OECD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의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추계는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2023년도의 세수오차는 반도체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부터 유발된 법인세의 세수결손으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세를 추계함에 있어 가능한 한 변수를

16) 코스피 기업의 FN가이드 컨센서스 전망, 코스닥 기업 1분기 실적치 및 영업이익 및 과세표준의 최근 추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17) 2023년 법인세 신고분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총 부담세액의 30%가량을 부담하는 상황임.

세분화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8)]

[2023년 법인세 신고분 상세]

(단위: 개, 억원)

구분	법인수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액	총부담세액
상위 5대	5	367,164	91,603	40,584	51,023
상위 10대	10	452,063	112,556	41,007	71,552
상위 50대	50	1,099,175	271,845	62,954	208,904
상위 100대	100	1,323,068	326,091	67,748	258,370
중견 기업	6,139	374,386	78,584	10,301	68,511
중소 기업	964,736	1,474,198	259,973	55,674	206,346
전체	1,030,960	4,590,657	973,150	159,773	815,982

② (비상장사 과세표준) 2025년 예산안 중 법인세의 자진납세 신고분 중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추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회귀모형을 활용하였음. 일반적으로 국세수입을 전망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시계열 방법, 탄성치 방법 및 진도비 방법으로 구분됨. 이중 시계열 방법은 세목별로 거시경제변수를 설명변수로한 회귀식을 바탕으로 예측된 경제변수를 대입하여 산출한 세목별 세수에 세법개정효과 등을 반영하는 추정방법임. 비상장사과세표준의 경우 시계열방법에 따라 작년까지의 경제지표-세수실적간 관계를 분석하여 내년의 세수를 추계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회귀모형의 추계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외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세수가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회귀모형을 통한 세수 추계가 세수 오차를 확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여러 예측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결과를 조합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3,2024년도 예산안 세입 추계 당시 양도소득세 추계 관련 개선 사안으로 제시한 회귀모형과 증가율을 모두 반영하는 추계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3년 예산대비 12.2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고, 2024년 예산대비 5.8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등 세목별 오차 수준은 여전히 높아, 개선 방안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18) 법인세수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기업 이익이 경기변화 및 개별기업의 여러 확률적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법인세의 경우 3변수 모형들의 예측성과가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로 인해 모형이 복잡해짐에도 불구하고, 추가변수가 예측에 기영하는 정보가 큼을 의미한다, 「구조변화를 고려한 세수추계 개선방안 모색」. KDI 정책연구, 2015

◇ **'23년 추가 개선사항: '회귀모형' 추계법(지표-세수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반영)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추계법(세수 급변동시 최신추세 반영)의 장점 조합**

○ **(당초) '회귀모형'** 추계방식(~'21년 사용)과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추계방식('22년 사용) 모두에서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

- **(회귀모형) 작년**(D-1)**까지**의 **경제지표-세수실적 간 관계**를 분석하여 **내년**(D+1) **세수추계 → 세수 급변동** 시기 **오차 확대**
-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올해**(D) **세수 전망치**에 **경제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여 **내년**(D+1) **세수추계**
  → **경제지표-세수실적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 **(개선) 올해 세수 전망치**를 토대로(최신 정보 반영) **회귀모형을 통해 도출한 증가율을 반영**(지표-세수 간 관계 체계적 반영)하여 내년 **세수추계**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기획재정부가 법인세를 추계하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설명변수인 '민간소비' 및 '소비자물가'와 비상장사 법인의 매출과 상관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러 예측모델을 함께 사용하여 결과를 조합하는 기법에 의한 모형 보완은 모형의 예측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2024년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국내 총생산(GDP)성장률 발표 등에 따르면,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늘었으나,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하였음. 또한 2022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빠르게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낮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 대비 소득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여 실질 구매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실질민간소비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19] 이와 같이 민간소비가 개별기업 매출의 경제상황을 대변할만한 변수로서 대표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비상장사의 과표를 추정하는 방식은 내재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증가율을 추정 후 이를 전년도 과세표준에 곱하는 방식 이외에도 회귀모형을 통해 세수 추계한 비상장사의 과세표준과, 기준년 대비 경제 지표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여 추계한 비상장사의 과세표준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보완하는 방법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끝으로 법인세의 경우 차년도 세수(2025년도)가 전년도 기업 실적(2024년)을 바탕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예산안 의결 시까지 활용했던 전망치 사이

19) 고물가와 소비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KDI 현안 분석

에 간극이 큰 경우 이를 반영한 세입재추계를 예산안 의결 전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예산안 편성 당시 활용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전망치는 해당 연도 3/4분기 이전에 발표된 자료[20]들을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임. 그러나 법인세 관련 한국은행 및 국회예산정책처 등 주요 경제분석기구들이 제시하는 자료는 3/4분기 이후에 발표되는 자료도[21] 상당수 존재함. 또한, 주요 대기업이 3/4분기 매출액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시기는 연례적으로 11월 중반으로 이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전임.[22]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기 전까지 가용할 수 있는 법인 매출 실적 및 경제전망치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이를 반영한 세입재추계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 한국은행, KDI 등

21) 한국은행 '2024년도 2/4분기 기업경여 분석 결과'. 2024.9.12

22)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4)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 제출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강화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시 한도 초과 사유 및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의 종료계획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다 철저한 국세감면액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 등에 따른 조세지출[23]의 합을 의미하고, 국세감면율은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칭함.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보건·복지·고용 분야 2조 3,774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4,592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3조 1,799억원, R&D 분야 1,426억원 등 상위 4대 분야 조세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총 78조 1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감면율은 15.9%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분야별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12대 분야 분류기준		2024년	2025년
1	일반·지방행정	93,533	95,667
2	공공질서·안전	0	0
3	외교·통일	7	7
4	국방	346	363
5	교육	10,460	11,270
6	문화·체육·관광	2,887	3,048
7	환경	21,824	22,991
8	보건·복지·고용	371,146	394,920
9	농림·수산·식품	60,989	65,581
10	SOC	11,203	12,620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834	173,632
12	R&D	29,839	31,265

* R&D 항목은 다른 분야와 중복계상

자료: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3)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및 전망(2019~2025)]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A)	495,700	529,357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총액(B)	3,066,963	3,036,717	3,639,730	4,229,237	3,703,803	3,949,465	4,122,410
국세감면율 [A/(A+B)]	**13.9**	**14.8**	13.5	13.0	**15.8**	**15.3**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3	13.6	14.3	14.6	14.3	14.6	15.2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산술평균 + 0.5%p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액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국세감면액은 69조 7,664억원으로 2022년 대비 6조 2,180억원(9.8%) 증가하였고, 국세감면율은 15.8%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24].

한편,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감면율을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25],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개년 중 법정한도를 초과한 해가 5개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4) ('14.) 14.3% → ('15.) 14.1% → ('16.) 13.4% → ('17.) 13.0% → ('18.) 13.0% → ('19.) 13.9% → ('20.) 14.8% → ('21.) 13.5% → ('22.) 13.0% → ('23.) 15.8%

25)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감면율을 한도 이하로 관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8조제2항은 과다한 국세감면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입법취지 하에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반영된 규정임[26].

그런데 최근 5년간 매년 국세감면액이 평균 4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고 수시로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이 권고 형식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남발될 우려가 있는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조세지출은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달리 신규 조세특례 제도 도입 시 세수감소 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이 다수 존재하고, 사전적으로는 예비타당성평가, 사후적으로 의무심층평가, 임의심층평가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의 결산심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종료가 예정된 조세지출 항목이라 하더라도 적용기한 연장 비율이 높아 조세지출 규모 증가에 대한 실질적 통제방안이 부족한 상황임.

[최근 5년간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연장 현황(항목)]

(단위: 건, %)

연도	일몰도래(A)	연장(B)	종료	연장 비율(B/A)
2019년	34	27	7	79.4%
2020년	54	45	9	83.3%
2021년	86	78	8	90.7%
2022년	74	64	10	86.5%
2023년	71	65	6	91.5%
최근 5년 평균	64	56	8	**87.5%**

* 주: 연장: 단순한 기한 연장 및 제도를 재설계하면서 일몰기한도 연장한 경우를 모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6)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 pp. 109~111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연장 현황(금액)]

(단위: 억원, %)

연도	조세지출	일몰도래(A)	연장(B)	종료	연장 비율(B/A)
2016년	374,436	29,825	29,764	60	99.8%
2017년	396,769	60,083	52,708	7,375	87.7%
2018년	439,533	66,586	66,347	239	99.6%
2019년	495,700	35,630	35,432	198	99.4%
2020년	529,357	83,598	65,741	17,857	78.6%
2021년	570,248	62,105	61,844	261	99.5%
2022년	635,484	108,868	108,043	825	99.2%
7년 평균	3,441,527	446,695	419,879	26,815	**94.0%**

* 주: 부분 일몰도래 조항은 별도로 집계·발표하지 않아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대규모 조세지출 수요가 발생하거나 경기 부양, 민생 회복 등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세수입의 감소와 조세형평성 저해를 초래하는 조세지출의 증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임.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국세감면율의 한도 준수 노력의무를 부여한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사유 및 일몰기한 도래 항목의 종료계획 등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의무화하고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이 계류되어 있음.

27) 안도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05),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10)

(5) 신규 조세지출 건의 시 세수보완 방안 마련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각 부처는 신규 조세감면 요청을 위한 조세지출건의서 작성 시 기존 조세지출 및 재정사업의 축소·폐지 등 세수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작성이 미흡한 조세지출 건의에 대해 추가·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일반적인 조세체계에 대한 특례를 통한 각종 재정지원으로서, 특정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지출의 증가는 곧 국가세입의 감소를 의미함[28].

조세지출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2024년 대비 4대 분야 조세지출이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대규모인 총 78조 1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29].

[연도별 조세지출 및 국세수입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조세지출		국세수입총액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2019년	495,700	12.78%	3,066,963	4.47%
2020년	529,357	6.79%	3,036,717	△0.99%
2021년	570,248	7.72%	3,639,730	19.86%
2022년	635,484	11.44%	4,229,237	16.20%
2023년	697,664	9.78%	3,703,803	△12.42%
2024년(전망)	714,305	2.39%	3,949,465	6.63%
2025년(전망)	**780,178**	**9.22%**	4,122,410	4.38%

* 국세수입총액: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한 금액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8)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 9.
29)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5년도에는 2024년도 대비 보건·복지·고용(+2조 3,774억원), 농림·수산·식품(+4,592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3조 1,799억원), R&D(1,426억원) 등 상위 4대 분야 조세지출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조세특례제한법」[30]은 조세지출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목적, 정책효과 및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등을 포함한 조세지출건의서를, 적용기한이 종료되거나 기존 조세특례 사항 중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조세지출평가서를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31]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새로운 국세감면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2024년 3월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조세특례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의 축소·폐지 방안, 예산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해당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고, 유사 세출예산과의 중복여부 및 세수 보완방안 작성이 미흡한 건의서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것이라 공표하였음.

그런데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조세지출건의서를 살펴보면 신규 조세특례 제도

---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생 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내용 및 통계자료는 충실히 기재되어 있으나 세수 확보 방안이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각 부처는 조세지출건의서 작성 시 신규 요청하는 조세지출과 목적이 유사한 조세지출 또는 세출예산이 있는 경우 상호보완효과 및 중복조정여부를 기재하고 신규 조세지출 도입에 따른 적절한 세수 보완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재한 건의서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확대' 등에 대한 조세지출건의서에서 조세특례제도 도입을 통해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세수를 보완하겠다는 일반적인 정책효과를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감면액 보충방안은 누락하였음.

해양수산부는 '우수 화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영어(營漁)자녀 등에 대한 농지 등 증여세 감면 확대', '영어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5건의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면서 세수 보완방안으로 '도시(都市)민 어촌유지 지원사업 폐지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음. 그런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귀어·귀촌 정책 추진을 위한 귀어귀촌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주기업 법인세 감면이나 어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조세지출 건의 대상과 관련이 없고, 해당 사업은 2023년도에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서 2025년도 세출예산 조정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2024년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관련 조세지출건의서를 살펴보면[32], 중소벤처기업부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보장 지출 절감 및 향후 경기 회복 시 세수 증대 기여 예상' 등 모호한 논리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국가 재정 및 세입 측면에 대한 보완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 비록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가 2020년도부터 도입되어 수 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한 제도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몰을 전제로 한 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국세감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감면액 보충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32)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지출평가서와 조세지출건의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이는 기존 공제제도의 일몰 도래에 따라 적용기한 연장을 건의하는 조세지출평가서와 제도 항구화를 위한 조세지출건의서를 복수로 제출한 것으로 보임.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말까지에서 2025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522)」을 제출하였음.

[2024년 신규 조세지출 건의내용 및 세수 보완방안]

건의부처	신규 조세지출 건의내용	세수 보완방안
산림청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확대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세수를 보완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대상 확대(준보전산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 화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지자체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2023년 종료
	영어자녀 등에 대한 농지등 증여세 감면 확대	
	영어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어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업권 범위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70%)	미기재

자료: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24년도 조세지출건의서 일부 발췌

이처럼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지출건의서 중 상당수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세수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인 건의서 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다고 밝힘[33].

정책의 시행 여부 및 예산 규모의 통제가 가능한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은 제도의 일몰을 전제로 신규 특례를 도입하더라도 연례적인 적용기한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제도의 경직성이 크고, 납세자의 행동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출 규모의 예측 및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조세지출의 경직성과 더불어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33) 다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건의서 등의 작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처별 조세특례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세지출건의서 작성양식에 유사 조세지출·세출예산과 세수 보완방안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조세지출건의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다는 입장임.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 조세지출 도입 시 부처별 건의 단계부터 유사 재정지출과의 비교·연계, 세수 보완방안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 도래 조세지출 항목 연장 현황 : 2020~2024년]

(단위: 건, %)

구분	2020년 일몰도래	2021년 일몰도래	2022년 일몰도래	2023년 일몰도래	2024년 일몰도래
종료	9(16.7%)	8(9.3%)	10(13.5%)	6(8.5%)	7(24.1%)
기한연장	40(74.1%)	55(64.0%)	49(66.2%)	58(81.7%)	14(48.2%)
재설계연장	5(9.3%)	23(26.7%)	15(20.3%)	7(9.9%)	8(27.6%)
합계	54	86	74	71	29

* 주: 재설계 연장: 제도를 재설계하고 일몰기한도 연장한 경우
기한연장: 제도의 재설계 없이 일몰기한만을 연장한 경우
2024년의 경우 정부 세법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신규 조세감면을 요청하려는 각 부처에서는 조세지출건의서 작성 시 「국가재정법」을 준수하여 기존 조세지출 및 재정사업의 축소·폐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공표한 바와 같이 세수 보완방안이 미흡한 조세지출 건의에 대해 추가·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세지원의 합리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할당관세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의 국회 제출 예결산 서류 반영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시행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국회 제출 예결산 서류에 반영하고,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할당관세 부과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제71조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할당관세를 규정하고 있고, ① 원활한 물자 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 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높여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4)]

그러나 할당관세는 관세수입의 직접적인 감소와 수입재화의 국내가격 인하효과로 인한 부가가치세등의 세수 감소를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의 사전적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재량에 의해 시행이 결정되고 있음.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관세를 낮추어 수입을 촉진하고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국내 시장 상황 및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

「관세법」 제71조제4항[35)]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2023년도 할당관세 부

---

34)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 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 117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재료,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와 물가 불안 대응 등을 위한 중소기업·농축수산업등 분야에 주로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었음.

2023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2022년 1조 9,694억원 대비 8,940억원 감소한 1조 753억원으로, 2022년대비 LNG 0% 할당관세의 적용기간 축소 및 LNG 수입금액 하락 등으로 인한 감소분과, 소고기, 항공유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품목에서의 제외(약 3,100억원)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음.

[2019년~2023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추정)액]

(단위, 억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관세 수입액(결산, A)		78,821	70,585	82,270	103,241	72,882
할당관세	품목 수	79개	79개	92개	119개	117개
	세수지원액(B)	4,709억원	3,742억원	6,758억원	19,694억원	10,753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4.2%)	(△20.5%)	(80.6%)	(191.4%)	(△45.4%)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6.0%)	(5.3%)	(8.2%)	(19.1%)	(14.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연도별「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 보고」에서 발췌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는 22년 연속 100개 품목을 초과하여 세수지원액 규모도 두 해 모두 1조원을 초과하는 상황임(2022년 1조 9,694억원, 2023년 1조 753억원). 이에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의 비중도 2019년 약 6.0%에서 2023년 약 14.7%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할당관세 부과는 국내 시장의 상품가격에 변동을 주어 소비 및 경제주체 간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기타 내국소비세의 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등의 내국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36],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37]에 대해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38]으로 하여 부과되고 있음.

[관세와 부가가치세 관계]

수입시 납부할 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 기타 내국소비세 (기타 내국 소비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수입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부가세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액 관세액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율

할당관세 정책이 시행되어 특정 물품의 관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결과적으로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유발되어 세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됨. 이는 할당관세 정책을 통한 세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기획재정부에서 산출한 할당관세 지원액을 초과할 것을 의미함.

2023년 관세 징수액은 7.3조원으로 2022년 10.3조원 대비 3.0조원 감소하였고, FTA 체결에 따른 실효세율의 하락으로 지속적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세원에 대한 조밀한 관리 및 세수 예측 규모에 대한 국회의 심의 필요성이 제고되는 상황이지만, 할당관세 관련 사안은 예산안 첨부서류등에 관세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등은 이루어지지 않아 할당관세와 관련한 사전적인 심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가능한 경우 물가 안정등의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연례적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농수산물 및 천연 자원(LNG)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

36)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7)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8)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지속여부 등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39]

또한, 현재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적 통제 절차도 미흡한 상황임. 할당관세의 사후적 통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에서 할당관세 세수지원 추정액 및 물가·거시경제 관련 효과 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짐. 이후 「관세법」 제71조제4항[40]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간략한 서면보고만 이루어질 뿐,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해 대외적 공표도 완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41]

따라서 정부는 할당관세 부과로 인한 세수 효과 분석을 부가가치세등 기타 세목까지 포함하여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할당관세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둘째, 정부는 할당관세의 시행으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 및 부작용을 엄밀하게 검토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와 세수 감소분 및 경제적 순손실의 효과등을 비교하여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3년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할당관세 시행으로 수입가격 1% 하락 시 생산자가격 인하 효과는 △0.26%~△1.11%,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0.10%~△0.84%로 나타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보다는 생산자가격 인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현행법이 할당관세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 하고 있는 가격안정 효과가 일정 부분 거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할당관세 시행으로 인한 물가 안정 효과가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유통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음. 한국개발원(KDI)의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재 1%인하 시 소비자 가격 인하효과는 돼지고기 0.51%, 소고기 0.12% 닭고기 0.28%가 최대치였으며, 인하 시점도 7개월에서 1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TRQ 할당관세 수입업체별 배정현황('20~'24.8)> 분석 결과, 2022년 7월 정부의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39) 다만 할당관세는 품목 소관부처가 관련 업계 수요조사, 수급여건, 가격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신청시기(9월말) 및 검토기간(10~12월)을 감안하여 국회 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40)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1) 참고로 할당관세 실적·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도 해당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발주처(기획재정부)의 원문공개 비동의를 이유로 부분공개되고 있음.

지원으로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한 주요 업체에 식품 대기업 계열사가 대거 포함 되어 있어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들이 190억원대의 관세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되는 할당관세 정책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음.[42] 예정처에 따를 경우 정부는 물가상승 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등의 수입 증가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반복 시행하였으며, '20년~'24.3월 기간 중 농축산물 할당관세 대상 품목 수와 물량은 증가추세임. 할당관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일시적인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수입물량 확대 등 단기적 · 일시적 정책의 반복 시행은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할당관세 적용으로 할당관세 적용 물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일례로 2024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대책'으로 동년도 하반기에도 농산물 및 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가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일부 농산품은 수매비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유발한다는 의견이 제기 된 바 있음.

이와 같이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당관세의 도입 목적인 물가 안정등의 효과는 크지 않으나, 할당관세 부과 품목의 관련 종사자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전가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할당관세의 도입에 따른 물가 안정의 효과는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귀속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할당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가격이 하락한 관련 품목 산업 종사자들에게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 사회적 총후생은 증가하더라도 피해가 소수에게 집중될 수 있으므로, 할당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한당사자들의 편익과 비용의 변화 등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과세당국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세수 지원액의 규모뿐만 아니라, 저율의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후생 손실 및 순편익의 규모와 할당관세 부과 시 물가 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42) 「NABO FOCUS 제71호 농축수산물 물가동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4.5.16.

다.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중장기 경제전략의 체계적 수립을 위한 원칙 마련 필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미래전략국)

< 현 황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은 중장기 대내외 여건과 위험요인을 점검·분석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정책연구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9억 2,000만원임.

[2025년도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920	920	-	-
- 중장기경제전략 수립	330	330	-	-
- 중장기위 운영 및 간담회 개최	410	410	-	-
-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90	90	-	-
- 기타 정책연구	90	90	-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칙 하에 중장기 경제전략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은 인구위기, 경제구조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는 ① 중장기 대내외 여건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②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및 미래전략포럼 등 간담회 개최, ③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12년 신설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전략국을 신설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 중장기 전략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음.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총 6차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는 2023년 7월 구성한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활동 중임.

그런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2차례의 종합전략과 1차례의 분야별 전략을 발표한 이후 7년간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후 2024년에 4월과 10월 2차례 인구위기 및 저탄소 경제와 관련한 분야별 전략에 관한 자문보고서를 발표하였음.[43)]

중장기 경제전략의 성격상 매년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현재와 같이 중장기 경제전략의 형식이나 수립주기 등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은 사업수행을 위한 원칙이 부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43) 2018년 출범한 4기 중장기전략위원회까지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2021년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부터는 민간전문가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분야별 중장기 전략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 역할이 변경되었음.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현황]

위원회	구성	일자	내 용
1기	2012. 4.	2012. 12. 26	-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2기	2014. 11.	2015. 12. 17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발표
3기	2016. 8.	2017. 3. 31	-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중장기전략 발표
4기	2018. 1.	-	-
5기	2021. 6.	-	-
6기	2023. 7.	2024. 4. 29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자문 보고서)
		2024. 10. 7	-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자문 보고서)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기·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경제전략 마련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발생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 전략 발표를 유보하였으며, 중장기 전략 연구·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일부 정책과제는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향후 미래전략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공론화 및 구체화를 거친 후 종합적인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중장기 경제전략은 인구구조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므로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원칙 하에 중장기 경제전략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음.

(2)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필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 현 황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은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합동 조직으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업계·학계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15대 프로젝트별 추진상황 점검 관리 및 애로사항 등의 발굴·해소, R&D·정책금융·규제혁신 등 지원 인프라 정비, 신성장 4.0 전략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100만원이 감액된 5억 100만원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 중 일반수용비는 2024년 대비 9,1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용역비는 2024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1331-306)	552	501	△51	△9.2
- 일용임금	31	31	-	-
- 일반수용비	**225**	**134**	**△91**	**△40.4**
- 공공요금 및 제세	6	2	△4	△66.7
- 특근매식비	13	3	△10	△76.9
- 임차료	46	19	△27	△58.7
- 일반용역비	**100**	**200**	**100**	**100**
- 기타운영비	14	3	△11	△78.6
- 국내여비	13	13	-	-
- 국외여비	10	10	-	-
- 사업추진비	18	18	-	-
- 관서업무추진비	36	36	-	-
- 정책연구비	20	20	-	-
- 자산취득비	10	2	△8	△80
- 고용부담금	10	10	-	-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신성장 4.0 브랜드 홍보를 위한 예산의 편중을 지양하고,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신성장 4.0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성장전략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은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을 위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추진단운영규정”이라 함)의 제정[44]에 따라 2023년도부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임.

추진단운영규정에 따르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 수립, 신성장 4.0 전략 관련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 신성장 4.0 전략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성과 점검, 신성장 4.0 전략 관련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025년 3월말까지 운영하는 한시 조직으로, 기획재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15대 프로젝트[45]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다년간 범부처 전담조직이 밀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동 추진단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이후 훈령 개정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3개월분, 사업비 성격의 경비는 12개월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운영비성 경비를 3개월분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추진단 연장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비성 경비의 경우 추진단 운영기한 연장 여부와 별개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2개월을 편성[46]하였다는 입장임.

---

44) 국무총리훈령 제838호, 2023. 2. 24. 제정, 2023. 2. 24. 시행

45) 사이버보안, AI반도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양자기술, 의료 마이데이터, 배터리,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의료, 로봇,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스마트그리드 등

46) 조직 운영기한이 연장되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나, 기존 추진단의 운영기한 연장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예비비 편성 요건(예측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중 예측가능성 미충족으로 예비비 편성이 어려움. 반면, 사업비성 경비를 12개월 편성했으나 조직 운영기한 연장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타부서로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가능하다는 입장

그런데 동 사업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안 1억 3,400만원 중 관련 업계 간담회 참석수당 8,400만원을 제외한 4,180만원이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및 홍보용 기념품 제작 용도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용역비 예산안 2억원에 대해서도 상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 용도로 편성된 6,000만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이 유튜브 운영 및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과 홍보영상 제작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 2025년도 예산안 주요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목명	내 용	예산액
일반수용비	**가. 대국민 홍보(41,812)** **· 홍보책자 제작 : 50쪽×50원×6,200부=15,500** **· 홍보용 기념품 제작 : 26x1,000개=26,312** 나. 관련 업계 간담회 참석수당(84,000) · 애로사항 수렴 관련 간담회 : 150x15명x20회=45,000 · 기타 업무관련 전문가간담회 :150x13명x20회=39,000 다. 사무실 운영경비(8,080) · 추진단 운영용품 등 구입비 : 500×3팀×3개월=4,500 · 회의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 150x3팀×3개월=1,350 · 관련 도서구입 : 20x9권x3개월=540 · 현장방문, 간담회 물품지원 : 500x3개월=1,500 · 신문 및 잡지구독 : 190x1개월=190	134백만원
일반용역비	가. 상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60,000) · 상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 : 60,000*1회=60,000 **나. 대국민 홍보(140,000)** **· 유튜브 운영 : 40,000*1회=40,000** **·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 50,000*1회=50,000** **· 신성장 4.0 홍보영상 제작 : 50,000*1회=50,000**	200백만원
사업추진비	· 유관기관 및 업계 업무협의 : 30×15명×20회=9,000 · 간담회 개최 등 : 30×15명×20회=9,000	18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 애로사항 수렴 관련 업계 간담회 : 30x20명×20회=12,000 · 유관기관 업무협의 : 30x20명×20회=12,000 · 언론 등 기타 기관과 업무협의 : 30x20명x11회=6,600 · 국회 업무협의 : 30x15명x12회=5,400	36백만원
정책연구비	신성장전략추진관련 정책연구 : 20,000x1회=20,000	20백만원
그 밖에 세목		93백만원
합 계		501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르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 5억 100만원 중 약 36.3%에 해당하는 1억 8,180만원이 홍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단 운영규정 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다양한 업무를 규정[47]하고 있음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 홍보 관련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

특히 일반용역비 사업으로 편성된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의 경우 숏폼은 특성상 짧은 영상을 통해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불러오고,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하므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숏폼 수상작들의 홍보효과 제고를 통해 신성장 4.0 전략의 대국민 홍보 강화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 홍보 관련 일반용역비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목명	내 용	예산액
일반용역비	○ 대국민 홍보(140,000) - 유튜브 운영 : 40,000 * (목적) 대국민 친숙 SNS 매체(유튜브) 활용 홍보로 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도 제고 -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 50,000 * (목적)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바이오·양자) 등 신성장 프로젝트 유관 혁신기술에 대한 대국민 관심, 참여 및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콘텐츠(숏폼) 공모전 시행 - 신성장 4.0 홍보영상 제작 : 50,000 * (목적) 민간 전광판 등 대국민 생활 접점을 활용한 일상 속 신성장 프로젝트 노출 확대로 정책 인지도 제고 ○ 상담회 및 세미나 등 개최(60,000)	200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7)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획재정부에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 수립
2. 신성장 4.0 전략 관련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
3. 신성장 4.0 전략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 및 성과 점검
4. 신성장 4.0 전략 관련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 및 인재양성 방안 마련 등 인프라 정비
5. 신성장 4.0 전략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6. 신성장 4.0 전략 관련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 등의 지원
7. 신성장 4.0 전략 관련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업
8. 신성장 4.0 전략 관련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9. 그 밖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 두 번째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대상을 학생에서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참가 분야도 기존의 숏폼 외에 디자인(웹툰, 일러스트)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상 규모도 2023년 13점에서 2024년에는 26점으로 확대하는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모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임.[48)]

또한 현재도 신성장 4.0 전략 종합 추진 계획 수립, 프로젝트 진행상황 점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애로·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15대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 부각된 3대 게임체인저(AI·바이오·양자) 기술 혁신을 위한 몰입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등 추진단운영규정에 부합하게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설치·운영 목적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배정한 2023년에는 일반수용비 예산을 세목조정하여 신성장 4.0 관련 공모전 및 시상식 등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예산 대부분을 불용하였음. 따라서 추진단운영규정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신성장 4.0 추진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더욱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15대 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동 조직의 운영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기한 연장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도 신성장 4.0 브랜드 홍보 등 홍보 관련 예산 외에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홍보 관련 사업에의 예산 편중을 지양하고, 추진단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48) 2024년 공모전 공고의 조회수(소통24 기준 이하 동일)가 686회로 전년 458회보다 228회(약 50%) 증가*하였고, 2024년 공모전 참여 건수 또한 37편으로 2023년 26편보다 11점(42%) 증가하였으며, 2023년 공모전 수상작 영상의 조회 수 또한 평균 646회로 공모전 공고 조회 수보다 188회(41%) 많기에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임.

* 2023년 중앙행정기관 주최 숏폼 공모전 공고 조회 수 현황

① (여가부) 2023년 청소년상담 1388 숏폼 공모전 : 232회, ② (기상청) 지진, 지진해일, 화산 정보 쇼-츠 영상 공모전 : 154회, ③ (새만금개발청) 2023 새만금 숏폼 영상 공모전 : 315회

(3) 효과적인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마련 필요 (혁신조달지원, 국고국)

< 현 황 >

「혁신조달지원」 사업은 공공조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혁신제품을 지정·평가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900만원 증가한 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혁신조달지원」 사업 내 국외업무여비(220-02)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순증한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혁신조달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비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혁신조달지원(2233-305)	352	371	19	5.4
- 일반수용비(210-01)	55	55	-	-
- 임차료(210-07)	7	7	-	-
- 국외업무여비(220-02)	-	**69**	**69**	순증
- 정책연구비(260-02)	290	240	△50	△17.2

< 검토의견 >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국제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혁신조달지원」 사업은 공공조달의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공공조달의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까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조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 등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이에 더 나아가, 2024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를 계획하면서 2025년 예산안에는 「혁신조달지원」 사업에도 국외업무여비(220-02)가 신규로 6,900만원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안 혁신조달지원 사업 국외업무여비 세부 산출근거]

(단위: 천원)

내역	산출근거	총액
공공조달 관련 국제회의 및 포럼 참석	항공료: 19,111 일비: 690 숙박비: 2,364 식비: 1,408	23,573
해외 조달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항공료: 34,252 일비: 1,725 숙박비: 8,291 식비: 4,159	48,427
단수조정		△3,000
계		69,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다만, 국제조달회의 및 포럼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현재 조달청은 해외조달기관·국제기구와 조달분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사업을 조달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조달회의나 포럼에 참석하고 있음. 아울러 국내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정부조달 전시회 참여와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WTO 정부조달위원회,

FTA 정부조달분야 협상 참석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900만원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인 「국고업무관리(2233-302)」사업에 편성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비추어볼 때, 기획재정부, 조달청 세부사업에 정부조달협력 강화와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산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외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025년도 예산안 공공조달 관련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산출내역	금액
조달청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해외확산	WTO GPA 등 회의 참석	4,590
		해외정부기관과의 조달분야 국제협력 회의 참석	3,804
		국제기구 및 회원국 공공조달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참석	8,400
		국제 조달 워크숍 및 전자조달 역량강화 워크숍	36,600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나라장터 수출관련 세미나・워크숍 참여	12,044
		조정재원	△225
		계	65,213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	해외정부조달 전시회 참가	27.049
		해외정부조달 시장조사	5,542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21,938
		신흥개도국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및 기업설명회・상담회 개최	16,144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바이어 초청여비	78,300
		UN 조달시장 진출지원	9,313
		조정재원	775
		계	156,553
기획재정부 「국고업무관리」 (2233-302)	국가계약제도 운영	담배규제관련 국제회의 참석	8,622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12,934
		FTA 정부조달분야 회의	5,883
		조정재원	△147
		계	27,292

자료: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제출 사업설명자료(Ⅱ-1) 재구성
* 중복가능성이 존재하는 내역 음영표시

(4)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를 위한 노력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현 황 >

「국유재산관리」 사업은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비와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 배상금·반환금 및 은닉재산 등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하는 사업임.

「국유재산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사업은 국유재산특례 일몰제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 예산 대비 순증한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유재산관리(2234-302)	701	651	△50	△7.1
- 국유재산관리지원	26	256	-	-
- 국유재산관리	407	292	△115	△28.3
- 국유재산협력	38	38	-	-
-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	**65**	**65**	**순증**

< 검토의견 >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과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사업은 2022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2022년 1월)으로 특례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사업임. 현재 특례 존치평가의 기준·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한 상태이며 존치평가의 주체와 평가절차 및 사후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임. 참고로 2025년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국유재산특례는 15개[49]이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존치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다만, 실효성 있는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첫째, 조속히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2월말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50]. 또한 존치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나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함[51].

---

4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및 제16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등

5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안) 제3조의4(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②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이 만료 되는 해당 연도의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관 국유재산특례의 존치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존치평가를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5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평가지침과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2025년 시행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국유재산존치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존치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둘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과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간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은 조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표본 추출을 통한 방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짐. 표본추출에 있어 기존 실태점검 내역 및 결과, 특례 유형과 운용 현황 등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으나[52], 존속기한은 고려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 평가의 요소로서 입법목적 달성도, 특례활용계획 및 실적 등 효과성,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 등이 반영되고 있는 바, 이는 국유재산특례 실태점검 요소인 특례운영의 적정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를 위한 예산 및 인력 규모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조달청은 위임받은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을 위하여 현장조사원을 운영[53]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와 실태운용점검을 연계할 경우 다양한 현장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구분	산출내역
민간평가단 인건비	9,220천원 × 3명 = 28백만원
연구원 인건비	6,170천원 × 3명 = 19백만원
회의비	30천원 × 20명 × 6회 = 4백만원
여비 및 인쇄비 등 운영비	9백만원
전문가 활용비	500천원 × 4명 = 2백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 5% = 3백만원
계	65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52)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지침」 제6조(운용실태점검 방법)** ① 조달청장은 매년 중앙관서의 장이 운영하는 특례에 대하여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수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샘플링 점검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대상 기관의 이전 실태점검 내역, 실태점검 결과, 특례 운용 건수 등
2. 점검 대상 특례의 유형, 규모, 운용 기간, 운용 지역, 근거 법률 및 조항 등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운용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표본추출에 있어 존속기한 만료 기한을 고려하도록 하여 존속평가 대상 국유재산특례가 실태운용점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 실태운용점검 시, 존치평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를 함께 수집하는 등 효율적인 존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53)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 소관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에서 국유재산 현장조사 인력 28명 운영을 위한 예산 1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음.

(5) 적정 소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 (국제 재정협력 강화, 예산실)

< 현 황 >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은 재정 이슈의 국제화에 따른 주변국·선진국의 재정 관련 대응 경험과 Know-How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해외 재정당국 간 신속·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액된 3억 2,900만원임.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의 2025년 예산안 중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2024년과 동일하게 각각 1,400만원과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 재정협력 강화 사업(2444-301)	720	329	△391	△54.3
- 일반수용비(210-01)	35	35	-	-
- 임차료(210-07)	11	11	-	-
- 일반용역비(210-14)	200	200	-	-
- 국내여비(220-01)	**14**	**14**	**-**	**-**
- 국외여비(220-02)	**62**	**62**	**-**	**-**
- 사업추진비(240-01)	8	8	-	-
- 국제부담금(340-12)	391	-	△391	△54.3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국제재정포럼이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국내여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됨에도 우선적으로 국외여비로 편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여비 일부를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주요국 재정당국과 교류협력 사업」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재정포럼 참석을 위한 국내·외 여비 등으로 편성되며, 국제재정포럼은 한국과 OECD 회원국 간의 재정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처음 한국에서 개최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다가 2016부터는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54],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와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개최지
제1차	2009. 7. 1.~ 2009. 7. 2.	한국 서울
제2차	2011	한국 서울
제3차	2013	한국 서울
제4차	2015	한국 서울
제5차	2016	프랑스 파리
제6차	2017	한국 서울
제7차	2018	프랑스 파리
제8차	2019	한국 서울
제9차	2021	한국 서울
제10차	2022	프랑스 파리
제11차	2023. 9. 26. ~ 2023. 9. 27.	한국 서울
제12차	2024. 9. 25. ~ 2023. 9. 26.	프랑스 파리
제13차	2025	한국 서울

자료: 기획재정부

54) 2020년은 코로나19로 국제재정포럼 개최 불가능

2025년의 경우, 제13차 국제재정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행사 사전준비 등으로 국내여비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국외여비 편성 필요성은 감소함.

한편, 국제재정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홀수년도(2021년은 코로나19로 미개최)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2019년의 경우 국외여비 중 6,700만원을 국내여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고, 2023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로 편성된 6,200만원 전액을 국내여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그동안 집행가능성이 낮은 국외여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국내개최로 인해 부족한 국내여비를 세목조정을 통해 충당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5년에 예산 편성에도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19년~2025년 국제 재정협력 강화사업 여비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여비	예산	이전용 등	집행
2019	국내여비	15	67	82
	국외여비	**80**	**△67**	**13**
2020	국내여비	16	-	-
	국외여비	79	-	-
2021	국내여비	15	-	3
	국외여비	**68**	**-**	**-**
2022	국내여비	15	△11	4
	국외여비	65	△4	61
2023	국내여비	14	62	76
	국외여비	**62**	**△62**	**-**
2024.9	국내여비	14	-	-
	국외여비	62	-	42
2025	국내여비	14		
	국외여비	**62**		

주: 2020-2021년은 코로나19로 포럼 미개최
자료: 기획재정부

(6)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 예산 소관 부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예산실)

< 현 황 >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은 각 분야 재정전문가 및 재정지출 주체(지자체)의 의견 수렴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전문성과 현장의 여건'이 반영된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 예산 홍보 등을 통해 재정 관련 대국민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7억 3,200만원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예산홍보 등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16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2445-401)	2,732	3,732	1,000	36.6
- 예산홍보 등	**607**	**1,607**	**1,000**	**164.7**
- 협의기반구축	1,312	1,312	-	-
- 분야별 예산편성지원	813	813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금융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이므로, 향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 운영을 소관 부처가 담당하여 사업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며,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출범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민간투자자 및 시행사 등 주요 주체들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맞춤식 홍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예산홍보 등 사업」에 일반용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을 운영하려는 것이며, 지원단의 일반용역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컨설팅·교육 지원단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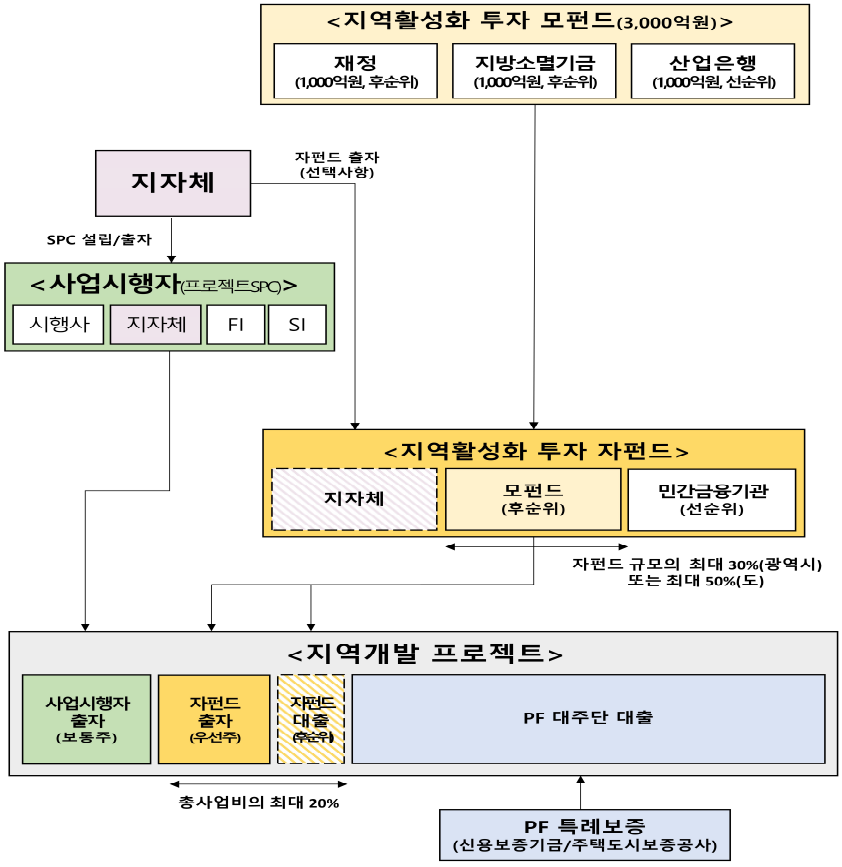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예산액
프로젝트 컨설팅	■ '25년 200회(1회당 2.4백만원) * 200회 = 2024년 연간 예상실적 기준	480
지자체 교육	■ '25년 84회(1회당 5백만원) * 84회 = 14개 지자체, 지자체별 연 6회	420
펀드 데이터·네트워크 관리비	■ 관련 데이터 및 네트워크 축적·관리 펀드 홍보자료 제작 등	100
합 계		1,000

자료: 기획재정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적극적 수요 창출을 위한 컨설팅·교육 예산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 10억원을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55],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56],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57]이 모펀드 운용을 맡아 펀드 지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동 펀드를 통해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구조]



자료: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후속조치 주요내용(2023.8.31.)' (관계부처 합동)

55) 금융위원회 지역활성화투자펀드사업(일반회계 2414-320)
56)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61-300)
57)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韓國成長金融投資運用, K-Growth)은 2013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공동으로 운용하던 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6년 설립된 주식회사임

기획재정부는 전담부서(예산실 內 지역활성화투자팀)를 설치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정부 내 협의·조정하였으며, 동 펀드를 제도설계부터 추진해 온 예산실이 동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정부 내에서 가장 높은 점, 금융·지방재정·건설 등 다분야다부처 제도들이 융합된 점, 정책수요자인 지자체에서도 예산실에서 동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컨설팅·교육 예산 10억원을 예산실 사업 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 조성을 위한 재원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결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원부담 주체의 책임과 관리하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결정과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는 펀드에 재원을 출자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분담하고,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비목 조정 필요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현 황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700만원이 감액된 72억 8,700만원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알리오 등 공공기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종합포털로 발전시켜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17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2531-300)	7,304	7,287	△17	△0.2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4,109	3,877	△232	△5.6
-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47**	**1,759**	**112**	**6.8**
- 공운위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554	539	△15	△2.7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 및 국제컨퍼런스	855	973	118	13.8
- 기타운영비	139	139	-	-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알리오 등 공공기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어 있는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일반연구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알리오 등 공공기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통합공시)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11조(혁신포털의 설치운영)[58]를 근거로 알리오, 잡알리오, 알리오플러스, 청년일자리올인원서비스 등의 공공업무시스템 인프라 및 상용 S/W 자원관리, 보안관리, 품질관리 등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예산을 2025년에는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였음

[2025년도 알리오 등 공공기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알리오 등 공공기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47	1,759	112	6.8
- 일반수용비(210-01)	9	9	-	-
- 관리용역비(210-15)	**1,040**	**1,720**	**680**	**65.4**
- 일반연구비(260-01)	505	-	△505	△100.0
- 자산취득비(430-01)	93	30	△63	△67.7

자료: 기획재정부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④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통합공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11조(혁신포털의 설치·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혁신포털을 설치·운영한다.

「알리오 등 공공기관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편성된 2025년 관리용역비 예산은 17억 2,000만원이며, 이 중 5억 6,800만원은 공공기관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과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임.

세부내역을 보면,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아카이브 구축 및 고도화에 1억 9,200만원, 알리오플러스(공공기관 시설·물품·장비 정보제공시스템)의 콘텐츠 확대 및 UI 등 인터페이스 고도화를 위해 2억원, 잡알리오(공공기관 채용정보 공개시스템)의 UI 등 인터페이스 및 앱 고도화에 9,000만원 등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 업무로 되어 있음.

[2025년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 용	비목	예산액
공공업무시스템 유지·운영	청년일자리올인원서비스 관리전환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증액	관리용역비	1,152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알리오)아카이브 구축 및 권한관리 고도화 192 (알리오플러스)콘텐츠확대 및 UI 등 인터페이스 고도화 200 (잡알리오)UI 등 인터페이스 및 앱 고도화 90 (경영평가)시스템권한 등 프로세스 고도화 44 (업무네트워크)이력관리 및 편의기능 구현 42	**관리용역비**	**568**
자산취득	스토리지 추가 용량(3TB) 구매	자산취득비	30
조달수수료	전년과 동일	일반수용비	9
합 계			1,759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59]에 따르면 관리용역비(210-15)는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이며,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

5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10-15 관리용역비)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260-01 일반연구비)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예산 5억 6,800만원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하였는데, 기능개선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관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관리용역비 17억 2,000만원 중 5억 6,800만원은 시스템 유지 및 운영 목적이 아닌 공공업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므로 비목의 성격에 맞게 관리용역비로 편성하기보다는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도입을 위한 면밀한 준비 필요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재정정책국)

< 현 황 >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은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 국내외 주요기관 및 주요국·국제기구간 재정 협력 강화,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액된 8억 5,600만원임.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969	856	△113	△11.7
-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197**	**380**	**183**	**92.9**
- 국내외 재정협력	411	115	296	△72.0
-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361	361	-	-

< 검토의견 >

2025년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는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심층평가 시범수행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 마련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정전략기획 시책 수립 및 제도연구 사업(내역사업)」에서는 2025년 신규로 도입되는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비(260-02) 예산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는 그동안 조세특례 심층평가와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별도로 나뉘어 시행되어 조세지출과 재정을 병행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조세·재정을 병행 지원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분석을 위해 도입되었음. 참고로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각각의 법적근거 및 평가대상에 따라 다른 세부사업에서 별도로 추진되고 있음.

[재정사업/재정지출/조세·재정지출 대상 심층평가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세부사업	평가 대상	근거 법령	예산액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	재정사업 평가 (2644-300)	재정사업	국가재정법(제85조의8)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3)[60]	720백만원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영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 (2131-306)	조세지출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61]	1,330백만원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운영 (본사업)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1132-401)**	**재정 및 조세지출 병행 지원 사업**	**통합심층평가를 규정하는 법령 규정은 없음[62]**	**180백만원 (신규 편성)**

60)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의 성과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

그동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재원관리, 유사 중복 제거, 평가 및 환류 등 재정운용의 전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사업 목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조세지출 심층평가는 각각의 법률을 근거로 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조세·재정지출사업을 함께 아울러 실시하는 통합심층평가는 각 심층평가와의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을지, 두 평가대상(조세지출사업, 재정사업)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평가 기준·방식에 대한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제도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운영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7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관련 논의 및 2024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하여 도입이 결정되어, 2024년 9월 국회 제출된 2025년 예산안에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운영 예산(본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시범사업 운영 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62) 통합심층평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정 및 조세지출 병행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법령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추진 경과]

시 기	추진 내용
2024. 7. 12.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관련 논의
2024. 8. 21.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발표
2024. 9. 2.	2025년 예산안 제출(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예산 신규 편성)
2024. 9. 19. ~ 2025. 2. 16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 운영 용역 실시**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심층평가를 시범수행[63]함으로써 평가 수행체계 및 방법을 도출하고 운영상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통합심층평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평가 기준·방법 등에 대한 지침 마련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2024년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 내용	세부사업	계약액	용역 기간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 운영	심층평가 시범수행, 심층평가 운영 관리를 위한 운용·수행지침 마련	정책연구개발 (7135-302)[64]	156백만원	2024. 9. 19. ~ 2025. 2. 1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일반적인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사업은 도입 결정부터 본사업 예산안 편성까지 짧은 기간에 추진됨에 따라 시범사업 역시 2025년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추진되어 2025년 2월에야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따라서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시 참고 및 검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통합심층평가의 평가대상 사업 또는 사

63) 영상콘텐츠 진흥 사업군, 고용 장려 사업군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은 현재 미정임.

64) 2024년 7·8월 도입 결정에 따라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없었으며, 「정책연구개발 사업」의 목적이 추진정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보완을 위한 용역 수행이므로 동 세부사업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업군 역시 시범사업 종료 후 선정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정비 필요성은 지속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통합심층평가 제도화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으며, 내년초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5년 통합심층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 2월 시범사업 결과로 개선방안, 운영 및 수행지침 등이 도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상사업 선정, 평가기관 선정 등의 행정절차도 완료되어야 비로소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추후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9) 성과지표 측정방식 개선 필요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 재정정책국)

< 현 황 >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장기재정전망, 재정위험 관리 등을 통하여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1억 5,300만원임.

[2025년도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정건전성 관리강화(2712-302)	161	153	△8	△5.0
-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 정책동향 수집·분석·발간 등	86	77	△9	△10.5
- 국가채무 등 재정관련 대외 협력 강화	13	16	3	△23.1
-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 개선 및 지표 관리 강화	62	60	△2	△3.2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재정기획'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실적 측정방식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개년의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해당연도에 실제 달성된 재정건전성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정책목표 달성도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실적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사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인 '재정기획(2700)'은 4개의 단위사업에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정기획(2700)을 구성하는 단위사업·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단위사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세부사업명	2025년도 예산안
2700	재정기획	2711	국가재정운용 계획수립	300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997
		2712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301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856
				302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153
				303	재정교육	655
				304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92
				305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75
		2713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50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	20,770
				50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정보화)	19,303
				504	한국재정정보원운영	37,050
				506	재정정보분석	565
		271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300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121
합 계						**81,137**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기획재정부)'를 토대로 재구성

2025년 성과계획서 상 '재정기획'의 프로그램 목표는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이며, 성과지표는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을 목표치 이내로 관리'하는 것임.

['재정기획'의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 현황]

프로그램 목표	성과지표	구분	'24	'25	'25 목표치 산출근거	'25 실적 측정산식
[프로그램 목표Ⅱ-6] 재정운용의 중장기 전략수립기능을 강화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목표치 하회 (단위: %)	목표	7.8	7.6	지난 10년간 ('14~'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7.6%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실적	-	-		
		달성도	-	-		

자료: '2025년도 성과계획서(기획재정부)'를 토대로 재구성

재정기획의 성과지표 산출근거 및 측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표치는 '지난 10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로 설정하며, 실적은 '해당연도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로 측정함.

['재정기획'의 성과지표의 구체적인 측정 산식・방법(2025년 성과계획서 기준)]

구 분	측정 산식 또는 측정 방법	세부측정 산식
목표	과거 10년('14~'23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기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14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4~'18년 5년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 '15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5~'19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16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6~'20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17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7~'21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18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8~'22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19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9~'23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20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4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21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1~'25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22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2~'26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23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3~'27년 5년간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 10 = 7.6
실적	**'25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 ('25~'29년)상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	**'25년 제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5~'29년 5년간 국가채무의 연평균증가율**

그런데, ‘재정기획’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목표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므로 지난 10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산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연도의 실적을 측정하는 방식은 실제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재정기획’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실적 측정 방법(2025년 기준)인 ‘2025년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25~’29년 국가채무의 연평균증가율)’은 ’25~’29년까지 정부가 전망하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산출한 연평균 증가율로서 실제 달성된 수치가 아닌 정부의 중기계획이므로 해당연도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9~2023년[65] 국가재정운용계획(2019년 9월 제출)상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과 결산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과 결산 상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은 괴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66]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결산상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재정 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731.5	805.5	887.6	970.6	1,061.3
	연평균 증가율[67]	**9.8**				
결산 상	국가채무	723.2	846.6	970.7	1,067.4	1,126.8
	연평균 증가율	**11.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65) 실제 결산상 국가채무 수치가 확정된 연도는 2023년까지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를 실제 수치(결산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5개년은 2019년~2023년까지이므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연평균증가율과 결산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함.

66)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수치와 결산상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0·2021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른 요인이 클 것으로 보임. 이런 사례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수치는 향후 5년간 해당연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바 실제와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67) 연평균 증가율 산식 = $(최종값/최초값)^{(1/연차)}-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증가율을 단순평균할 경우 실제 연평균 증가율 수치와 다르게 나타나므로,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기하평균)하여 평균 성장률을 환산하는 방식 사용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실제 달성된 재정건전성 지표(실제 확인된 해당연도 국가채무 증가율 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등 프로그램 정책목표 달성도를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과지표 실적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재정기획'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목표치(지난 10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에 대하여도 달성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지표 활용 등을 검토"하라는 지적[68]이 있었으므로 성과지표 실적 측정방식 개선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8) 2024.9.12.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10)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예비비, 예산실)

< 현 황 >

예비비[69]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계상하는 자금으로, 사용 목적을 예산총칙에서 정해놓은 목적예비비와 사용 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됨.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6,000억원 증액된 4조 8,000억원임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예비비(3069-300)	4,200,000	4,800,000	600,000	14.3
- 목적예비비	2,200,000	2,600,000	400,000	18.2
- 일반예비비	2,000,000	2,200,000	200,000	10.0

자료: 기획재정부

69)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2025년에 편성된 예비비 4조 8,000억원은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18.2%(4,000억원) 증액된 2.6조원,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10.0%(2,000억원) 증액된 2.2조원으로,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년 대비 14.3% 증가한 4조 8,0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재해 상시화, 물가안정, 의료개혁 등 긴급한 민생경제 지원 등 예비비 소요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세부적으로 보면, 목적예비비는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대책비, 의무지출 부족분 보전소요 대응, 코로나 치료제 지원, 항공청 조직개편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반영하였고, 일반예비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소요액 증가와 안보예비비 증액 등이 반영되었음.

[2025년 예비비 정부(안)]

(단위: 조원)

구분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목적 예비비	**집중호우·태풍·가축전염병 등 재해대책비 - 최근 재해대책비 규모 증가 추세 (10년간 0.7조원→3년간 1.4조원)**	1.5 ~ 1.7
	의무지출 부족분 보전소요 대응 등 - 영유아보육료,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최대 0.5조원 발생	0.5 ~ 0.7
	코로나치료제 지원(0.4조원), 항공청 조직개편 등(0.1조원)	0.5 ~ 0.6
	소 계	2.6
일반 예비비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2.2
	물가상승에 따른 소요액 증가	
	안보예비비 증액	
합 계		4.8

자료: 기획재정부

첫째,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해대책비 규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최소 1조 5,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 소요될 것을 가정하여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재해대책비 규모는 연간 1.4조원 수준이며, 개별 부처에 편성된 재해대책비 규모도 202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70], 목적예비비 중 재해대책비 용도로 최소 1조 5,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22년까지는 편성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 감소 등으로 2023년의 경우 예산액 4조 6,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2,121억원, 일반예비비 1조 970억원 등 총 1조 3,091억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은 28.5%로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예비비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1-2024년 예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집행	집행률	예산
합계	97,000	92,721	95.6	55,000	47,049	85.6	46,000	13,091	28.5	42,000
목적예비비	81,000	78,713	97.2	37,000	33,473	90.5	28,000	2,121	7.6	22,000
일반예비비	16,000	14,008	87.6	17,000	13,575	79.9	18,000	10,970	60.9	20,000

자료: 기획재정부

70) 일례로, 환경부는 2024년에 하천재해대책비로 2,500억원, 재해복구비로 50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예산안에도 하천재해대책비로 2,320억원, 재해복구비로 500억원을 계상하였음.

(11) 국제투자협력단의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 마련 필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한-UAE 정상회담 성과사업인 UAE 국부펀드의 총 300억 달러 對 한국 투자를 계기로 하여 타국의 정부, 국부펀드, 연기금 등 투자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 효과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8,600만원임.

[2025년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예비비			(B-A)/A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3135-309)	-	511	86	86	순증
- 일반수용비	-	23	3	3	순증
- 특근매식비	-	1	0	0	순증
- 임차료	-	77	16	16	순증
- 일반용역비	-	90	15	15	순증
- 기타운영비	-	4	1	1	순증
- 국내여비	-	8	2	2	순증
- 국외여비	-	255	37	37	순증
- 사업추진비	-	30	4	4	순증
- 관서업무추진비	-	23	8	8	순증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이후 법령상 근거가 없어지는 동 조직의 구체적인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의 직제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각 부처의 국정과제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 부처의 장관이 1~2개 과를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추진함.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71]에서는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임시정원(자율기구)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통칙에 따르면 자율기구의 운영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결정된 UAE의 300억 달러의 대(對)한국 투자자금이 속도감 있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소속으로 2023년 2월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72]을 마련함. 동 규정에서는 지원단을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73]. 같은 해 4월 25일 6명[74]으로 구성된 추진단에 대해 업무추진비 5,000만원, 일반수용비 1억 600만원, 국외업무여비 3억 5,500만원 등 7억

---

7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72)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다른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아랍에미리트의 對한국 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여 조속한 성과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이하 "금융투자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3년 8월 22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4년 2월 2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73)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조직의 설치)**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금융투자지원단"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74) 단장 : 3급 국장

3,800만원의 9개월분 예비비를 편성함. 이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2개월분의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예산을 편성함.

[2023회계연도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예비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A)	예비비(B)	증감(B-A)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738,400	순증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	106,750		
◦ 특근매식비[210-05]	-	5,670		
◦ 임차료[210-07]	-	81,500		
◦ 일반용역비[210-14]	-	120,000		
◦ 기타운영비[210-16]	-	3,420		
◦ 국내여비[220-01]	-	12,000		
◦ 국외여비[220-02]	-	354,750		
◦ 사업추진비[240-01]	-	24,81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5,500		
◦ 정책연구비[260-01]	-	-		
◦ 건설비[420-03]	-	4,000		

자료: 기획재정부

1년 한시로 구성된 금융투자지원단이 2024년 2월 21일 종료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투자협력단을 2024년 2월 22일부터 국제금융국 소속으로 구성함[75].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의 근거 규정 비교]

구분	금융투자지원단	국제투자협력단
목적	○국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촉진	
	○아랍에미리트의 對 한국 투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	
소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기능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정책 수립 및 제도 등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투자 협력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5) 국제투자협력단의 근거가 되는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비교할 때 대상국이 UAE에서 범위가 다소 확장되었다는 점과 소관 국(局)이 변경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있음.

구분	금융투자지원단	국제투자협력단
	○국내외 홍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금융투자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韓-UAE 고위급 투자 협력 대화 등 협력 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	2023. 2. 22. ~ 2024. 2. 21.	2024. 2. 22. ~ 2025. 2. 21.
조직의 구성	단장(기재부 3급 또는 4급) 및 직원(기재부 공무원 및 파견자)	

자료: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1년 한시 국제투자협력단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5,350만원, 일반수용비 2,250만원, 국외업무여비 2억 5,568만원 등 9개월분 예비비인 5억 1,078만원을 편성함. 이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2개월분의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예비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A)	예비비(B)	증감(B-A)	%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510,784	순증	순증
◦ 일반수용비[210-01]	-	22,50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특근매식비[210-05]	-	560		
◦ 임차료[210-07]	-	77,000		
◦ 일반용역비[210-14]		90,000		
◦ 기타운영비[210-16]	-	3,800		
◦ 국내여비[220-01]	-	7,650		
◦ 국외여비[220-02]	-	255,676		
◦ 사업추진비[240-01]	-	30,50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3,100		
◦ 정책연구비[260-01]		-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지원단 및 국제투자협력단 대부분의 운영비를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배정하고 다음 연도에 2개월분의 운영비만 예산안으로 편성함에 따라 국회는 동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국회에서 심의하는 여타 세부사업과의 형평성도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의 직제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2025년 2월 22일 이후의 동 사업의 추진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2일 이후는 국제금융국 산하에 팀을 구성하여 동 사업내용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현재 동 세부사업을 6명의 인원이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해 국제금융국 산하에 팀을 구성할 경우 약 3명의 인원만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기획재정부는 동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의 직제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12) 범정부 차원의 APEC[76] 개최 위해 사업관리 철저 필요 (대외경제협력강화, 대외경제국)

< 현 황 >

「대외경제협력강화 사업」은 다자무역체제 구축에 대응하고, FTA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신흥경제권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9억 6,000만원이 증액(366.0%)된 50억 4,000만원임.

「대외경제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을 살펴보면, 「APEC 준비기획단 운영」,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APEC 재무차관회의 개최」, 「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 개최」 등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5개의 내역사업(총 41억 4,800만원)이 전년 대비 순증하였음.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외경제협력강화 사업 (3231-301)	1,080	5,040	3,960	366.0
- 대외경제협력강화	1,080	892	△188	△17.4
- APEC 준비기획단 운영	-	**1,161**	**1,161**	**순증**
- APEC 재무장관회의 개최	-	**1,310**	**1,310**	**순증**
- APEC 구조개혁장관회의 개최	-	**1,310**	**1,310**	**순증**
- APEC 재무차관회의 개최	-	**188**	**188**	**순증**
- 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 개최	-	**179**	**179**	**순증**

76)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훈령에 따른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라는 범부처 차원의 조직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5년 제23차 마닐라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의향을 공식 발표하고 회원국의 동의로 의장국 수임이 확정되었음. 이후 2022년 7월에는 제131차 국제행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동 정상회의에 대한 타당성조사 면제 및 개최계획이 승인됨.

2023년 8월에는 대통령훈령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외교부장관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준비기획단 단장 및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여 정상회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됨.

2024년 9월 동 대통령훈령이 개정되어 국무총리를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외교부장관을 준비기획단 단장으로, 외교부 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격상시켰음. 외교부에 따르면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상향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 경과]

- 제1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계획"으로 수임 방안 확정('15. 10. 22.)
- 제23차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정상회의 개최 의향 공식 발표 및 회원국 동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확정('15. 11. 19.)
-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 결과 및 후속조치"로 2025 APEC 의장국 수임 보고('15. 11. 24.)
- 제131차 국제행사심의위원회 타당성조사 면제 및 개최계획 승인('22. 7. 29.)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59호)」 공포('23. 8. 17.)
- 제1차 「2025 APEC 준비위원회」 회의 의결로 「2025 APEC 개최도시선정 위원회 」 설치('24. 3. 18.)
- 제2차 「제2025 APEC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의결 및 APEC 주요회의(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분산 개최 방안 의결로 개최 준비 본격 개시('24. 6. 27.)
-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0호)」 일부개정('24. 9. 20.)

자료: 외교부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동 대통령훈령[77]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에는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

관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준비기획단의 업무로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등이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동 대통령훈령 개정 전인 2024년 5월 국무총리훈령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운영코자 하였고, 동 준비기획단 운영을 위한 경비 및 재무장관회의, 구조개혁장관회의, 재무차관회의 및 고위급재무관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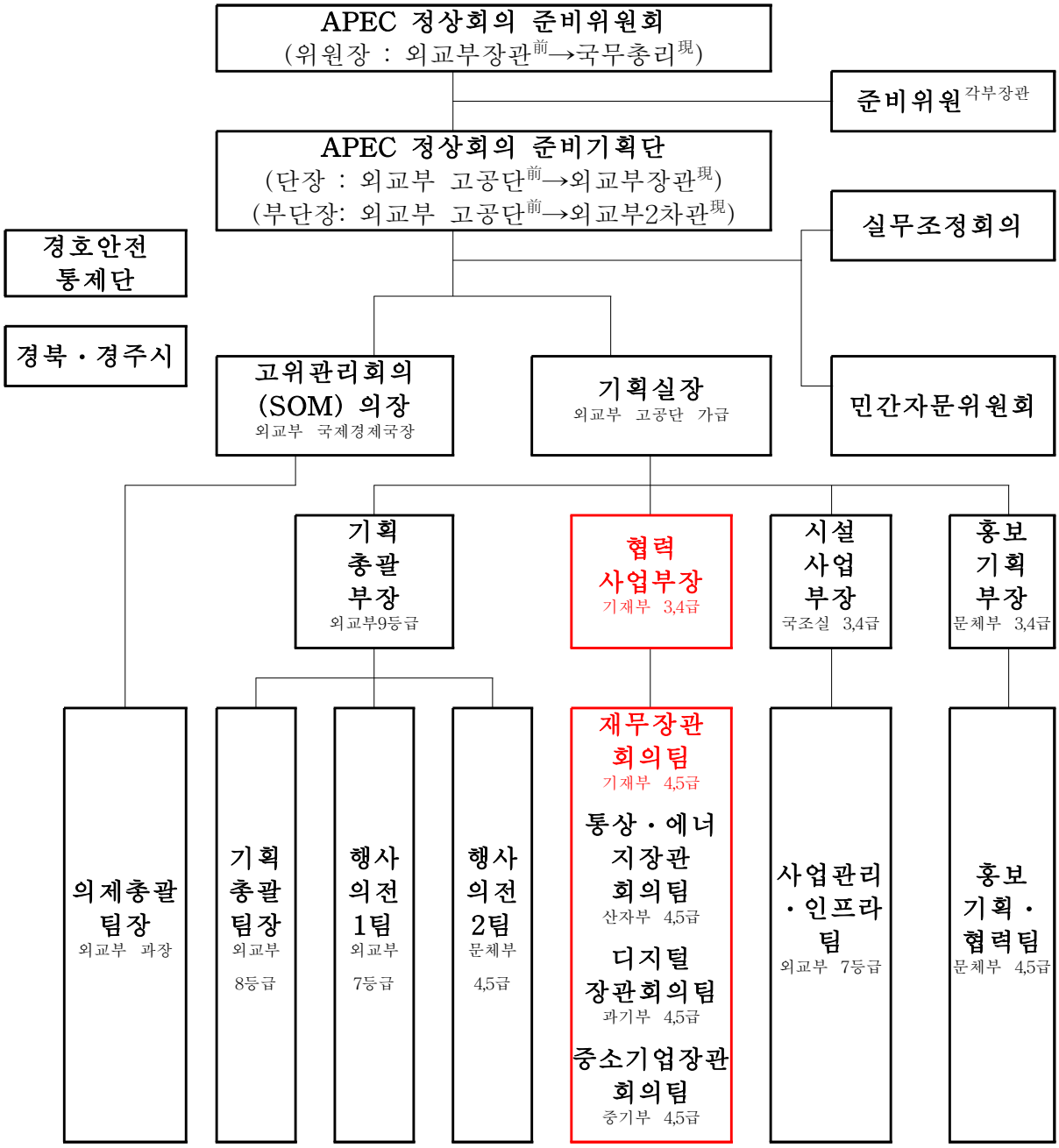
77)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경호처장·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8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9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외교부장관으로,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단의 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위관리회의 의장 :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기획실장 :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⑥ 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⑦ 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회의 개최를 위한 경비 등 총 41억 4,800만원을 2025년 동 세부사업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APEC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은 대통령훈령에 따른 준비위원회와 설치 및 기능이 상이한 별개의 조직으로 대통령훈령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판단하였고, 대통령훈령에 따른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를 준비하는 조직으로 부처별 장관회의 준비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음.

그러나, 별도로 기획재정부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내에서 회의 준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반대의견이 있어 기획재정부는 2024년 11월 현재 별도정원을 배정받지 못한 상황임. 대신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내에 기획재정부 별도정원으로 협력사업부장 1인 및 재무장관회의팀 3인 등 총 4인을 승인하였고, 2024년 11월 기준 현원은 협력사업부장 1인 및 재무장관회의팀 1인 등 총 2인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체제]



자료 :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내부 TF를 구성하여 기재부 자체의 준비기획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기획재정부가 재무장관회의 등 기획재정부 소관 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내

부 TF 방식의 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범부처 차원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APEC 재무장관회의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협조하며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음.

(13) 우리나라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OECD 조직 신설의 효과성 제고 위한 노력 필요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기여금(ODA)(신규), 대외경제국)

< 현 황 >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사업」은 우리나라의 자발적 기여금 출연을 통해 OECD 경제국 내 동남아 데스크2 조직을 신설하여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 대한 OECD 경제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7억 9,900만원이 순증된 7억 9,900만원(55만 유로[78])으로, 전액 국제부담금 세목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 사업(ODA)(신규)(3241-400)	-	799	799	순증
- 국제부담금	**-**	**799**	**799**	**순증**

78) 기획재정부는 1유로당 1,452.73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함.

<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자발적 분담금으로 OECD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므로, 조직 신설에 따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OECD 경제국(局) 내 동남아시아 데스크 2 신설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출연하는 사업을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동 기여금을 통해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 대한 OECD 경제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임.

동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3년 10월 OECD 경제국은 사무국 공식 서면이 아닌 OECD 경제국 부국장 명의로 2024년 6월부터 시작 예정인 신규 동남아데스크 신설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OECD 회원국에 기여를 요청하는 서신을 송부함.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설 데스크 운영을 위한 55만 유로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 기여를 골자로 세부사항을 협의 중임.

[자발적 기여금 55만 유로 산출근거]

- 인건비 : 433,800 유로
■ 데스크 운영을 위한 사무국 측 Senior Economist 1인(팀장), 팀원 Economist 1인 채용 비용 등
- 미션비 : 63,032 유로
■ 국별보고서 작성 준비를 위한 정책미션(출장) 비용 등
- 기타 행정비용 : 53,168 유로
■ 데스크 조직 관리 및 통계전문가 관련 공통비용, 사무실 대관 비용, 자발적 기여금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동남아 프로그램 10주년 기념식 세션'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고, OECD 경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을 통해 동남아데스크 신설 관련 사항을 논의함.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추진 경과]

- OECD 경제국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기존 동남아시아 데스크 외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대상으로 '24. 6.부터 시작되는 동남아데스크2 신설에 대한 한국 기여를 요청하는 경제국 부국장 명의 제안서 송부('23.10.17)
- 주OECD 대표부는 동남아데스크2 신설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본부에 공유했으며, 기여 규모·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 사무국과 실무 협의 지속('23.10~)
- OECD 각료이사회('24.5월) 계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동남아 프로그램 10주년 기념식 세션에서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OECD 경제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면담을 통해 동남아데스크2 신설 관련 사항을 긍정적으로 논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1은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 대한 OECD 경제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데스크1은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고 있음[79].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OECD 경제국의 비회원국[80]에 대한 경제분석 및 보고서 발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 사례는 없음.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OECD 이코노미스트와의 면담 이외에는 공식적인 MOU 절차 및 자발적 기여에 대응하는 OECD의 기여[81]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여금으로 OECD 조직을 신설할 경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데스크2 신설에 기여할 경우, 일본과 함께 OECD 내 유이한 아시아 국가이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식화하고 역내 및 OECD 내 리더십을 확대하기 좋은 기회라는 입장임.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를 신설하기 위해 우리나라 이외에는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하겠다는 국가가 아직 없음. 따라서 OECD 동남아데스크2가 신설될 경우,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기여하여 만들어진 동남아데스크1 사례와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9) OECD는 데스크·국가별 구체적 납입금액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음.
80)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예산규정상 회원국에 대한 경제분석은 회원국 분담금인 Part1 예산을 활용하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자발적 기여금인 Part2 예산을 활용한다는 입장임.
81)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기여로 동남아시아 데스크2가 신설될 경우, OECD 측에서 매년 경제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때 발간 문서에 한국의 기여를 통해 작성이 됨을 명시한다는 입장임.

또한, 처음으로 OECD 조직 신설을 위한 기여금을 우리나라가 납부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등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음.

(14) 비ODA[82]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필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ODA), 대외경제국)

< 현 황 >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고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ODA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3억 6,500만원이 감액된 213억 1,800만원임.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자 정책자문」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5억 4,000만원이 감액된 14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ODA) (3234-301)	23,683	21,318	△2,365	△10.0
- 양자 정책자문	**15,680**	**14,140**	**△1,540**	**△9.8**
- 국제기구 공동컨설팅	5,015	4,370	△645	△12.9
-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2,635	2,452	△183	△6.9
- 운영비	353	356	3	0.8

8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출처 : ODA Korea 누리집).

< 검토의견 >

ODA 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비ODA 국가 정책자문 등을 위한 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공적개발원조(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 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임[83].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ODA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을 의미함[84].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에서 국가별(아시아,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사업으로 편성된 내역은 국무조정실 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고 조정되고 있는데, '협력국 긴급요청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대상 국가는 모두 ODA 국가임[85].

---

83) 출처 : ODA Korea 누리집

8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5년도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 편성내역]

계속(24/25) ('24)2,940 → ('25)5,460백만원 +85.7%

- 아시아·오세아니아 1,560 (13개×400×30%)
- 중동·아프리카 810 (6개×450×30%)
- 중남미 1,200 (8개×500×30%)
- CIS·유럽 540 (4개×450×30%)
-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1,350 (10개×450×30%)

신규(25/26) ('24)12,740 → ('25)8,680백만원 △31.9%

- 아시아·오세아니아 2,520 (9개×400×70%)
- 중동·아프리카 1,260 (4개×450×70%)
- 중남미 1,750 (5개×500×70%)
- CIS·유럽 945 (3개×450×70%)
- 협력국 긴급요청사업 2,205 (7개×450×70%)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협력국 긴급요청 사업'은 현재는 미정이나 긴급한 정책자문 소요가 있을 경우 동 예산을 활용하여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것인데, 지원 예정국으로 ODA 국가와 비 ODA 국가가 혼재되어 있음.

[양자 정책자문 내역사업 중 비ODA 국가 대상 사업리스트]

(단위 : 백만원)

번호	국가	사업명	2025년 예산안	
			신규(70%)	계속(30%)
1	영국	한-영 디지털 표준 및 핵심기술 역량 강화	316	135
2	스페인	바스크주 P5G 도입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359	154
3	호주	호주 NSW-한국 수소 공급망 협력	314	134
4	오만	전력계통 보강 컨설팅	386	166
5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시 테크노파크 운영방안 및 활성화 전략 마련	319	137
6	슬로바키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성과 평가 및 지원	283	121
7	폴란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디지털 전환 및 혁신정책 수립	283	121
계			2,260	968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4년 착수한 7건의 비ODA국가 사업에 소요되는 9억 6,800만원을 포함하여 2025년에도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ODA 사업인 「경제발전경험공유(ODA) 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ODA 예산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측면에서도 ODA 국가와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에서 비ODA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15)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시 현물·현금출자 비중 고려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대외경제국)

<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현금출자를 통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000억원 순증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 안정화)사업」의 2025년 예산안 1,000억원은 전액 일반출자금(460-01) 세목으로 구성됨.

[2025년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사업 (3236-302)	-	100,000	100,000	순증
- 일반출자금	**-**	**100,000**	**100,000**	**순증**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15조→25조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현물/현금 출자비율에 대한 심의사항을 감안하여 현물/현금출자의 비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86]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15조원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법이 개정되기 직전에는 한도 15조원 중 납입 자본금이 14조 7,733억원으로 한도 소진율이 98%였음. 당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출자된 14조 7,733억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현금출자 3조 6,486억원, 정부 현물출자 7조 1,392억원, 산업은행 출자 2조 8,205조원, 한국은행 출자 1조 1,650억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이때의 정부출자 중 현금출자와 현물출자의 비중은 약 1:2였음.

[법 개정 직전(2024년 2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내역]

(단위 : 억원)

정 부			산업은행	한국은행	총계
현금	현물	소계			
36,486	71,392	107,878	28,205	11,650	147,73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법정 자본금 상향과 관련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정부의 현물/현금출자 비중'과 관련하여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전체회의[87]와 법안심사소위원회[88]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정부출자 중 현물출자 비중이 2/3로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출자 계획을 당장 확정지을 수 없으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현금출자 비중을

86)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 제413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2024. 2. 19.
88) 제413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2024. 2. 21.

조금 더 높이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그러나, 법안이 의결된 이후 정부는 방산수출 지원 등을 위해 2024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에 2조원의 현물출자를 실시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는 1,000억원의 현금출자를 위한 금액을 편성하였음. 2023년 연초 58.5%였던 현물출자비중과 비교할 때 2024년 11월 현재의 현물출자 비중은 11.5%p 증가한 70.9%임.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액 중 현물출자 비중]

(단위 : %)

2023년		2024년		2025년
연초	연말 (현물출자 2조원 실시)	연초	연말 (현물출자 2조원 실시)	예산안 (현금출자 1,000억원)
58.5	66.2	66.2	70.9	70.4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정책금융 수요, 정부 재정지원 여력, 국책은행의 건전성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도 한국수출입은행 현금출자 예산안으로 1,000억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예산안대로 현금출자가 이뤄진다면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액 중 현물출자 비중은 70.4%일 것으로 예상됨.

최근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비중이 점증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현물출자는 출자 이전 예산안 심의·의결을 받는 현금출자와 비교할 때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89] 국회의 출자 과정에서의 통제 방안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받을경우 현금출자보다 현물출자의 여신승수효과가 더 적기에[90] 여신의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법안논의 과정에서의 심의사항을 감안하여 현물/현금 출자의 비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89)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90) 기획재정부는 법안논의 당시 현금출자의 여신 승수효과는 7~8배, 현물출자의 승수효과는 4~5배라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음.

(16) 국제금융기구와의 MOU 약정액 대비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안 검토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출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빈곤 감축 및 녹색성장 등 세계 경제 당면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제부담금(340-02)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35억 9,800만원(24.2%)이 감액된 2,614억 5,600만원임.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액된 주된 사유로는 우크라이나에 한시로 지원하는 「WB 협력기금」 5천만 달러와 「EBRD 재난대응특별기금」 5천만 달러가 전년 대비 순감했고,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2023년도 예산 불용분을 2024년도에 반영함에 따라 2024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2025년도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3334-301)	345,054	261,456	△83,598	△24.2
- WB 금융혁신기금	11,758	6,900	△4,858	△41.32
- WB 녹색성장기금	**15,600**	**46,920**	**31,320**	**200.77**
- WB 초급전문가 JPO 파견	2,823	3,161	338	11.97
- 한-WB 협력기금	**110,714**	**80,040**	**△30,674**	**△27.71**
- WB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3,986	4,140	154	3.86
- ADB e-Asia 지식협력기금	**28,182**	**33,785**	**5,603**	**19.88**
- ADF-13차 재원보충	21,232	-	△21,232	△100.00
- ADF-14차 재원보충	-	27,438	27,438	순증
- 한·아프리카 경제협력기금	15,600	16,560	960	6.15
- EBRD 기술자문협력기금	1,868	4,140	2,272	121.63
- EBRD 지속가능인프라기금	-	1,380	1,380	순증
- EBRD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1,742	1,805	63	3.62
- EBRD 기후행동 특별기금	2,619	1,380	△1,239	△47.31
- EBRD 재난대응 특별기금	65,000	-	△65,000	△100.00
- IDB 지식협력기금	2,637	-	△2,637	△100.00
- IDB 빈곤감축기금	7,837	5,520	△2,317	△29.56
- IDB 재정혁신협력기금	5,200	5,520	320	6.15
- 한·IMF 기술협력기금	7,176	7,352	176	2.45
- IMF 빈곤감축성장기금	29,180	15,415	△13,765	△47.17
- 한·CABEI 협력기금	11,900	-	△11,900	△100.00

< 검토의견 >

2025년도 예산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국제금융기구와의 MOU 약정액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적정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부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국제분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가 실제 국제기구에 납부해야할 'MOU상 국제기구별 2025년도 약정액'과 2025년도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동 세부사업의 여러 기금 중 **「WB 녹색성장기금」, 「WB 협력기금」 및 「ADB e-Asia 지식협력기금」**의 예산안이 MOU상 2025년에 납부하여야 할 약정금액보다 595억 7,500만원 높은 수준임.

[MOU상 2025년도 납입액 대비 2025년도 국제금융기구 분담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총사업 예산	MOU상 2025년 납입액(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3334-301)			205,069	261,456	52,073	27.5
WB	- 금융혁신기금	26,940	6,735(500만불)	6,900(500만불)	0(-)	0.0
	- 녹색성장기금	289,713	29,634(2,200만불)	46,920(3,400만불)	16,560 (1,200만불)	54.5
	- 초급전문가 JPO 파견	3,882	3,882(288만불)	3,161(229만불)	△814 (△59만불)	△20.5
	- 협력기금	188,580	51,186(3,800만불)	80,040(5,800만불)	27,600 (2,000만불)	52.6
	- IFC 녹색회복혁신기금	40,410	4,041(300만불)	4,140(300만불)	0(-)	0.0
ADB	-e-Asia 지식협력기금	134,700	17,929(1,331만불)	33,785(2,448만불)	15,415 (1,117만불)	83.9
	- ADF 14차 재원보충	114,900	28,730	27,438(원화약정)	△1,292	△4.5
AfDB	-한·아프리카경제협력기금	32,328	16,164(1,200만불)	16,560(1,200만불)	0(-)	0.0
EBRD	- 기술자문협력기금	4,041	2,869(213만불)	4,140(300만불)	1,201 (87만불)	40.8
	- 지속가능인프라기금	1,347	1,347(100만불)	1,380(100만불)	0(-)	0.0
	-초급전문가 JPO 및 인턴파견	1,913	1,913(142만불)	1,805(131만불)	△152 (△11만불)	△7.7
	- 기후행동 특별기금	6,061	1,347(100만불)	1,380(100만불)	0(-)	0.0

IDB	- 빈곤감축기금	26,940	5,388(400만불)	5,520(400만불)	0(-)	0.0
	- 지식협력기금	미계획	5,388(400만불)	0(-)	△5,520 (△400만불)	순감
	- 재정혁신협력기금	26,940	5,388(400만불)	5,520(400만불)	0(-)	0.0
IMF	- 기술협력기금	33,675	8,082(600만불)	7,352(533만불)	△925 (△67만불)	△11.2
	- 빈곤감축성장기금	75,378	15,046(1,117만불)	15,415(1,117만불)	0(-)	0.0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주 1 : MOU상 2025년 납입액 기준환율 : 1,347원/$, 예산안상 2025년 납입액 기준환율 : 1,380원/$
주 2 : 기획재정부는 MOU상 2025년 납입액에 기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ODA 종합시행계획을 승인받음.
* 달러 기준 (B-A) 및 (B-A)/A 값에 1,380원/$을 곱하여 원화로 표시

구체적으로, 「WB 녹색성장기금」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8,000만 달러를 납입하는 MOU를 체결(2023. 10.)하여 2025년에 2,200만 달러를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으로는 약정 대비 1,200만 달러 증액된 3,400만 달러(469억 2,000만원)가 편성되었고, 「WB 협력기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조 9,000만 달러를 납입하는 MOU를 체결(2022. 10.)하여 2025년에 3,800만 달러를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으로는 약정 대비 2,000만 달러 증액된 5,800만 달러(800억 4,000만원)가 편성되었으며, 「ADB e-Asia 지식협력기금」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1억 달러를 납입하는 MOU를 체결(2023. 5.)하고 2025년에 1,331만 달러를 납입하기로 ODA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으로는 종합시행계획 대비 1,117만 달러 증액된 2,448만 달러(337억 8,500만원)가 편성되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WB 녹색성장기금」의 경우 2024년 세계은행 측의 사업 신청수요가 3,800만 달러 수준으로 납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등 협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약정한 2,200만 달러보다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WB 협력기금」의 경우 세계은행 최고위급인 '디지털 부총재직'에 최초로 한국인이 임명(2024. 9.)됨에 따른 신규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ADB e-Asia 지식협력기금」의 경우 2024년 높은 사업 신청 수요, 2025년 초급전문가(JPO) 신규파견 등을 감안하여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최근 5년간 동 세부사업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와 미리 MOU 등으로 협약한 금액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연례적으로 매우 높은 집행률[91]을 보임. 다만, 2023년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219억원을 불용하고

해당 금액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함.

[최근 4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37,088	82,883	-	-	-	82,883	80,505	97.1	97.1	-	2,378
2021	217,302	217,302	-	-	-	217,302	213,280	98.2	98.2	-	4,022
2022	155,436	155,436	-	-	-	155,436	155,160	99.8	99.8	-	276
2023	159,348	159,348	-	-	-	159,348	137,400	86.2	86.2	-	21,948
2024	345,054	345,054				345,054	344,109	99.7	99.7	-	-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필요한 부분이나, 2024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와의 MOU 약정 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91) 편성환율과 집행환율의 괴리로 인한 환차 발생으로 연례적으로 100%가 아닌 90%대 후반의 집행률을 보임.

(17) HW 및 시스템 SW 예산에 대한 감리비 조정 필요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경제공급망기획관)

< 현 황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사업」은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고, 공급망 안정화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8억 7,400만원 순증된 18억 7,400만원임.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사업」의 2025년 예산안 중 일반연구비는 2024년 대비 11억 7,100만원이 순증된 1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 (3240-302)	-	1,874	1,874	순증
- 일반연구비	**-**	**1,171**	**1,171**	**순증**
- 정책연구비	-	500	500	순증
- 자산취득비	-	203	203	순증

< 검토의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HW 및 시스템 SW 예산에 대한 감리비' 1,976만원이 동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92]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동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될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예산 중 하드웨어(HW)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SW)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해 예산을 요구하고, 신규 HW에 탑재되는 개발 SW를 이관하기 위한 예산, 기타 SW 구입 및 응용프로그램(AP) 개발 예산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동 세부사업의 예산안을 신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의 HW 및 시스템 SW 예산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부 클라우드를 활용하기로 하고, 상용 SW 구입 및 AP 개발을 위한 예산을 동 세부사업의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음.

그러나, 상용 SW 구입 및 AP 개발 예산에 대한 감리비만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HW 및 시스템 SW 예산에 대한 감리비까지 동 세부사업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동 세부사업에서 시스템 구축 감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5,067만원 중 1,976만원을 감액하여 1억 3,091만원을 감리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

9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물자 및 원재료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등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관리기관"이라 한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8)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근매식비 예산의 조정 필요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실)

< 현 황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 사업」은 예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특정업무경비(250-03목), 특근매식비(210-05목)[93], 기타운영비(210-16목)로 구성되며,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0억 8,500만원임.

예산실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중 2025년 특근매식비(210-05목) 예산은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7111-216)	1,185	1,085	△100	△8.4
- 특근매식비(210-05)	**297**	**197**	**△100**	**△33.7**
- 기타운영비(210-16)	64	64	-	-
- 특정업무경비(250-03)	824	824	-	-

자료: 기획재정부

93) 특근매식비(210-05) 지급대상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 검토의견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의 특근매식비 예산이 예산실의 연중 통상업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예산실)의 최근 3년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 집행률은 78.5%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2023년 집행률은 31.7% 수준이며, 예산실이 예상하는 2024년 특근매식비 불용액은 1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6.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2022-2024년 특근매식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2022			2023			2024.9월말		
	예산	집행	불용액	예산	집행	불용액	예산	집행	불용 예상액
특근매식비	303	238	61	303	96	200	297	73	188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는 2022년까지 국내 출장 공무원에게 국내여비 외에 특근매식비도 중복적으로 지급되었는데[94], 2023부터는 이러한 중복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불용액이 증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내 출장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에는 운임, 식비, 숙박비, 일비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출장자에게 별도로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의 중복지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실이 2023년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출장자에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을 타당한 조치로 이해됨.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 특근매식비를 1억 9,700만원 편성하여 2024년에 비해 일정부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년, 2024년 특근매식비 집행실적을 고려해

94)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 받은 자는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볼 때,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3-2024년 특근매식비 월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	303	95.7	8.2	12.7	12.9	5.7	7.5	12.9	15	9.7	3.3	6	1.5	0.4
			87.9											
2024.9	297	73.2	73.2									-	-	-

자료: 기획재정부

(19) 중복 계상된 국내여비를 조정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조정실)

< 현 황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일반국민,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경제재정 관련 교육 및 경제 분야 융복합 교육을 통해 복잡·다변화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25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며, 예산안은 21억 4,300만원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일반국민 경제교육 및 기획재정부 직원, 타 부처 공무원 직무교육, 융복합교육 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예산으로 17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미래융복합경제교육(7135-310)	-	2,143	2,143	순증
- 교육과정 운영	**-**	**1,724**	**1,724**	**순증**
- 교육과정교재 개발	-	50	50	순증
- 홈페이지 구축	-	150	150	순증
- 기타 운영경비	-	219	219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2025년 예산안에 중복적으로 계상되어있는 국내여비 일부를 조정하고,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경제교육지원 사업과의 역할분담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미래융복합경제교육사업」은 충남 태안정책연수원[95]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교육 과정, 기획재정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국제교육, 시책교육, 기획재정부와 타 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을 하는 융복합교육 과정 등, 총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교육과정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육인원과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교육과정 운영 교육인원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교육인원(명)	예산안
일반국민 경제교육 과정 운영	400	318
직무기본교육 과정 운영	240	108
직무전문교육 과정 운영	2,500	881
융복합교육 과정 운영	1,000	314
국제교육 과정 운영	100	41
시책교육 과정 운영	200	63
합 계	4,440	1,724

자료: 기획재정부

첫째, 동 사업에서 편성된 국내여비 중 일부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연간 교육인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4,440명을 교육 장소인 충남 태안연수원으로 수송하기 버스임차료(210-07) 예산을 3억 1,360만원 계상하였음.

95) 충남 태안정책연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총사업비 464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연면적 12,438㎡)로 설립한 교육시설이며, 2024년 9월 완공되어 2024년 11월부터 운영될 예정임

[2025년 버스임차료(210-07) 예산안]

(단위: 천원)

사업명	교육인원(명)	예산안
일반국민 경제교육 과정 운영	400	51,200
직무기본교육 과정 운영	240	19,200
직무전문교육 과정 운영	2,500	160,000
융합교육 과정 운영	1,000	64,000
국제교육 과정 운영	100	6,400
시책교육 과정 운영	200	12,800
합 계	4,440	313,600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버스임차료 예산과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교육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국내여비로 1일당 50,000원[96]을 편성하고 있는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여비를 감액하는 규정[97]을 감안하여 국내여비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 과정별로 감액이 필요한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음.

[교육 과정 예산 중 국내여비 감액 필요 내역]

(단위: 백만원)

교육 과정	정부안	조정안	감액 필요
직무기본교육 과정 운영	108	96	△12
직무전문교육 과정 운영	881	756	△125
융합교육 과정 운영	313	244	△69
국제교육 과정 운영	41	36	△5
시책교육 과정 운영	63	53	△10
합 계	1,406	1,185	△221

자료: 기획재정부

96)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2> 공무원 국내여비(일비 25,000, 식비 25,000)

97)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둘째,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지원 사업(일반회계, 7135-304)을 통해 2006년부터 지역의 경제교육 여건 개선 및 일반국민 경제교육 확대를 위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개설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024년 현재, 총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98] 통해 민간 부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제교육기반조성 및 경제교육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 2024년 대비 29.4%가 증액된 82억 4,000만원임.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18억 7,200만원 중 16억 5,000만원은 전국 16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예산이 2024년 40억 1,200만원에서 2025년 56억 6,200만원으로 경제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반영한 것임.

이와 같이 기존 경제교육사업을 통해 일반국민에 대한 경제교육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원 예산도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99]이므로 신규로 추진하는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이 기존 사업의 교육 노하우(Know-How) 등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AI 기술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기존 경제교육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98)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99)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은 2022년 35억 2,100만원, 2023년 61억 7,700만원, 2024년 63억 6,800만원으로 매년 크게 증액되고 있음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관련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경제교육지원 사업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교육목적	국민(민간) 경제교육	국민(민간) 경제교육 직무교육
법적근거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교육대상	국민(민간)	국민(민간) 기재부 등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교육분야	경제	경제, 재정, 융복합
25년 예산안	8,240	2,143
내역사업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원 5,662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1,068 경제교육인력양성 980 경제이해력 조사 177 경제교육 협력지원 100 국제협력강화 149 경상경비 104	교육과정 운영 1,724 교재개발 50 홈페이지 개발 150 기타 운영경비 219
수행방식	직접/위탁	직접/위탁

자료: 기획재정부

2.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동 법 제75조에 근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100]

2025년도 지특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3조 8,689억원에서 8,751억원 증액된 14조 7,440억원이 편성됨. 이 중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3조 422억원에서 8,666억원(6.6%) 증가한 13조 9,089억원임.

[2025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B-A)	
	예산액(A)	예산안(B)		(B-A)/A
○ 주세	35,759	32,093	△3,666	△10.3
○ 일반회계 전입금	61,970	59,533	△2,437	△3.9
○ 특별회계 전입금	30,440	42,782	12,342	40.5
○ 계정간 전입금	2,039	-	△2,039	순감
○ 전년도 세계잉여금	215	4,680	4,465	2,080.2
합 계	**130,422**	**139,089**	**8,666**	**6.6**

자료: 기획재정부

지특회계는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됨. 지역자율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에 의한 포괄보조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시·도 및 시·군·구 포괄보조사업 중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100)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지자체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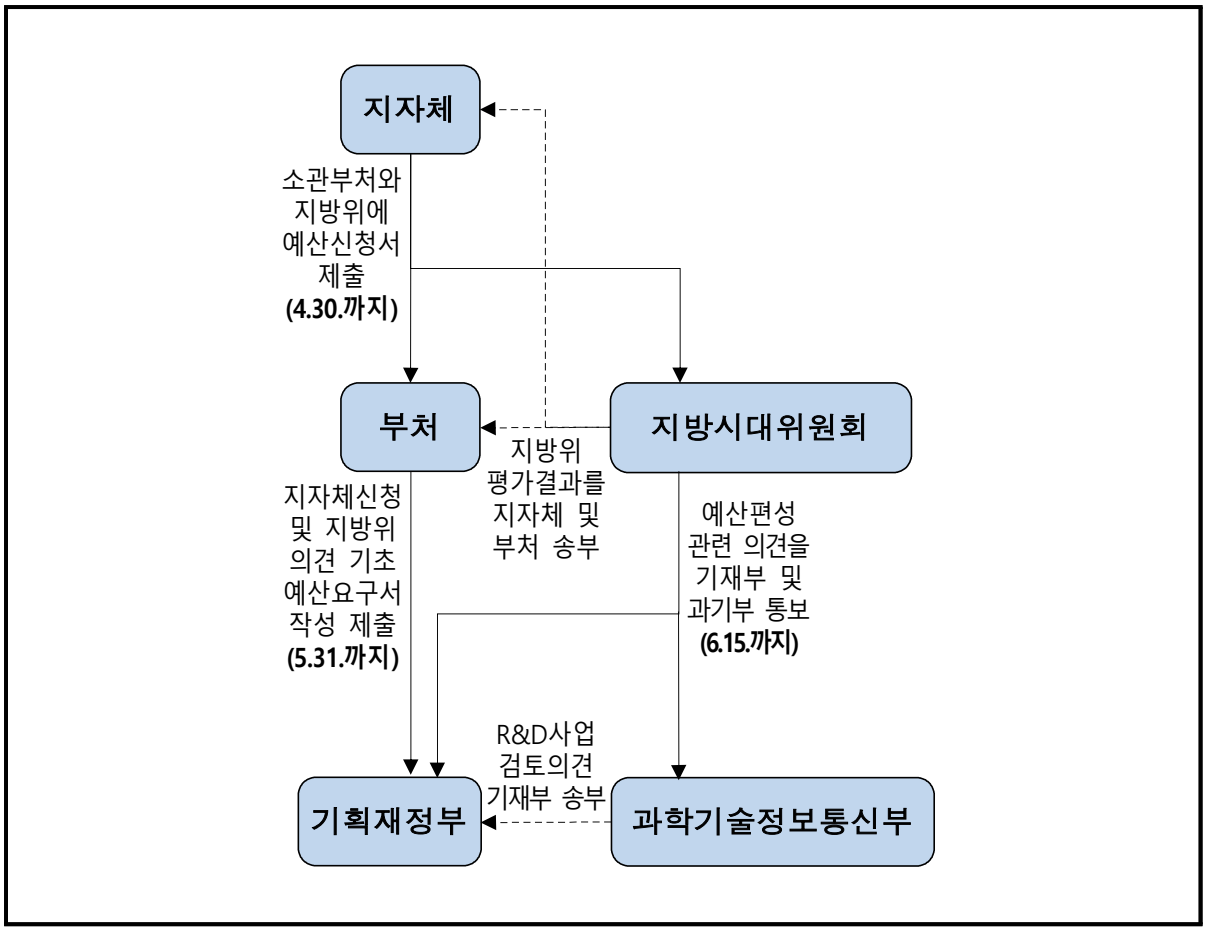
지역지원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중앙부처가 각 시·도의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하여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요구내용을 조정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지자체 자율편성사업과 부처 직접편성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구분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편성	① 시·도 자율 편성사업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③ 시 자율편성사업	④ 도 자율편성사업 ⑤ 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 직접편성	-	⑥ 부처직접 편성사업	⑦ 부처직접 편성사업	⑧ 부처직접 편성사업

주: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지역자율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출한도(계속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③·④·⑤ 자율편성사업(세종·제주계정)
: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⑥·⑦·⑧ 부처직접편성사업(지역지원계정, 세종·제주계정)
: 광역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 편성
자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4. 4.)을 재구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자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2024. 4.)

3.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개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이후 국채관리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각각 흡수·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 통합), 융자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흡수), 차관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흡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2024년 계획 대비 13조 3,676억원 감소한 309조 2,991억원으로서, 기타기금 예탁(△24조 9,685억원) 및 지방채 인수(△2조 5,900억원) 감소 등에 기인함.

2025년도 수입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국공채 발행수입은 201조 2,618억원으로 2024년 계획 대비 42조 8,397억원 증가하고, 특별회계·기타기금 예수금은 총 26조 3,397억원으로 2024년 계획 대비 1조 998억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기타기금 예탁원금회수는 총 43조 9,961억원으로 2024년 계획 대비 68조 1,492억원 감소하였음.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 초	수 정(A)			(B-A)/A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54-541)	56,521	56,521	144,789	88,268	156.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12,805	212,805	261,099	48,294	22.7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77,239	77,239	79,727	2,488	3.2
지방자치단체융자원금회수(75-751)	12,231	12,231	18,931	6,700	54.8
국공채발행수입(81-811)	158,422,061	158,422,061	201,261,798	42,839,737	27.0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 초	수 정(A)			(B-A)/A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100	100	100	-	-
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92-922)	1,047,712	1,047,712	622,391	△425,321	△40.6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111,097,618	111,097,618	43,373,753	△67,723,865	△61.0
계정간예탁원금회수(92-925)	-	-	171,801	171,801	-
특별회계예수금(94-942)	3,555,178	3,555,178	4,449,098	893,920	25.1
기금예수금(94-943)	21,684,692	21,684,692	21,890,555	205,863	0.9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95-951)	18,262,006	18,262,006	29,492,437	11,230,431	61.5
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95-952)	225,542	225,542	313,389	87,847	38.9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7,811,388	7,811,388	6,950,224	△861,164	△11.0
계정간예탁이자수입(95-955)	6,971	6,971	3,473	△3,498	△50.2
총계(총괄계정)	322,472,064	322,472,064	309,033,565	△13,438,499	△4.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54-542)	1,834	1,834	1,420	△414	△22.6
비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54-543)	2,878	2,878	2,264	△614	△21.3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3,856	3,856	5,168	1,312	34.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75-752)	9,376	9,376	6,738	△2,638	△28.1
비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75-753)	45,051	45,051	12,217	△32,834	△72.9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40,000	40,000	50,000	10,000	25.0
한국은행예치금회수(85-851)	81,294	81,294	185,147	103,853	127.7
일반회계전입금(91-911)	5,217	5,217	-	△5,217	△100.0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4,886	4,886	2,400	△2,486	△50.9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237	237	134	△103	△43.5
총계(융자계정)	194,629	194,629	265,488	70,859	36.4
총계(차관계정)	-	-	-	-	-
총 계	322,666,693	322,666,693	309,299,053	△13,367,640	△4.1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예탁금은 86조 7,344억원으로 2024년 계획 대비 5조 578억원 증가하였음. 국고채 원금 상환액은 117조 5,351억원으로 2024년 계획 대비 8조 9,890억원 증가하고, 이자 상환액은 30조 4,779억원으로 2조 2,180억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기타기금 예탁금은 총 47조 2,434억원으로 2024년 계획 대비 26조 6,260억원 감소하였고, 지방채 인수는 2조 5,900억원 감소하였음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 초	수 정(A)			(B-A)/A
지방채인수(1031-100)	2,600,000	2,600,000	10,000	△2,590,000	△99.6
기타민간차입이자상환(1071-760)	10,000	10,000	10,000	-	-
국고채이자상환(1071-780)	28,259,942	28,259,942	30,477,898	2,217,956	7.8
기타경비(3576-201)	3,205	3,205	3,205	-	5
일반회계예탁(8520-851)	81,676,517	81,676,517	86,734,360	5,057,843	6.2
특별회계예탁(8540-853)	4,423,658	4,423,658	2,766,163	△1,657,495	△37.5
특별회계예수원금상환(8601-900)	3,008,739	3,008,739	1,621,411	△1,387,328	△46.1
특별회계예수이자상환(8712-900)	235,466	235,466	226,401	△9,065	△3.8
기타기금예탁(9020-900)	69,445,731	69,445,731	44,477,199	△24,968,532	△36.0
기타기금예수원금상환(9130-910)	23,298,237	23,298,237	24,266,958	968,721	4.2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9220-920)	964,437	964,437	904,817	△59,620	△6.2
한국은행예치(9702-970)	100	100	100	-	-
국고채원금상환(9862-981)	108,546,032	108,546,032	117,535,053	8,989,021	8.3
총계(총괄계정)	322,472,064	322,472,064	309,033,565	△13,438,499	△4.2
총괄계정예수원금상환(9502-950)	-	-	171,801	171,801	-
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9602-960)	6,971	6,971	3,473	△3,498	△50.2
한국은행예치(9702-970)	186,538	186,538	89,094	△97,444	△52.2
장애인자립자금융자(4531-300)	560	560	560	-	-
민간보육시설지원(4731-300)	560	560	560	-	-
총계(융자계정)	194,629	194,629	265,488	70,859	36.4
총계(차관계정)	-	-	-	-	-
총 계	322,669,898	322,669,898	309,302,258	△13,367,640	△4.1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융자금에 대한 편성금리의 적정성 검토 및 수입액 조정 필요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국고국)

< 현 황 >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은 통화금융기관에 융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 받는 수입이며 2024년 계획 대비 4억 1,400만원이 감소한 1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은 기존에 산업은행에 대해 이루어진 융자금 이자를 회수하는 수입으로서, 2024년 계획 대비 6억 1,400만원이 감소한 2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54-542)	1,834	1,420	△414	△22.6

[2025년도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54-543)	2,878	2,264	△614	△21.3

< 검토의견 >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리가 최근 국고채 5년물의 평균금리 및 융자금리 결정 기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융자금리로 조정하고 수입액을 감액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의 융자사업인 「장애인자립자금융자(융자)」사업과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 사업을 위해 신규로 통화금융기관에 융자한 자금에 대한 이자와 과거 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 받는 수입임.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은 기존 산업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는 수입임.

참고로 「장애인자립자금융자(융자)」사업과 「민간보육시설지원(융자)」사업의 융자금액은 각각 5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융자사업 축소 및 이관을 통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사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융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제공에 활용되고 있음.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기존 융자금액과 신규융자금액에 대한 융자금리가 4%로 반영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융자금리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에 따르면 융자금리[101]는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되고, 대출금리[102]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결정됨.

---

101)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10조(융자금리)** ① 융자금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 같은 단일기관에 대한 대출 : 0.5%
2. 융자대상자의 수가 적은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 : 1.0%
3.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 1.5%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융자사업의 수지현황,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자금수요자의 성격,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및 융자계정의 수지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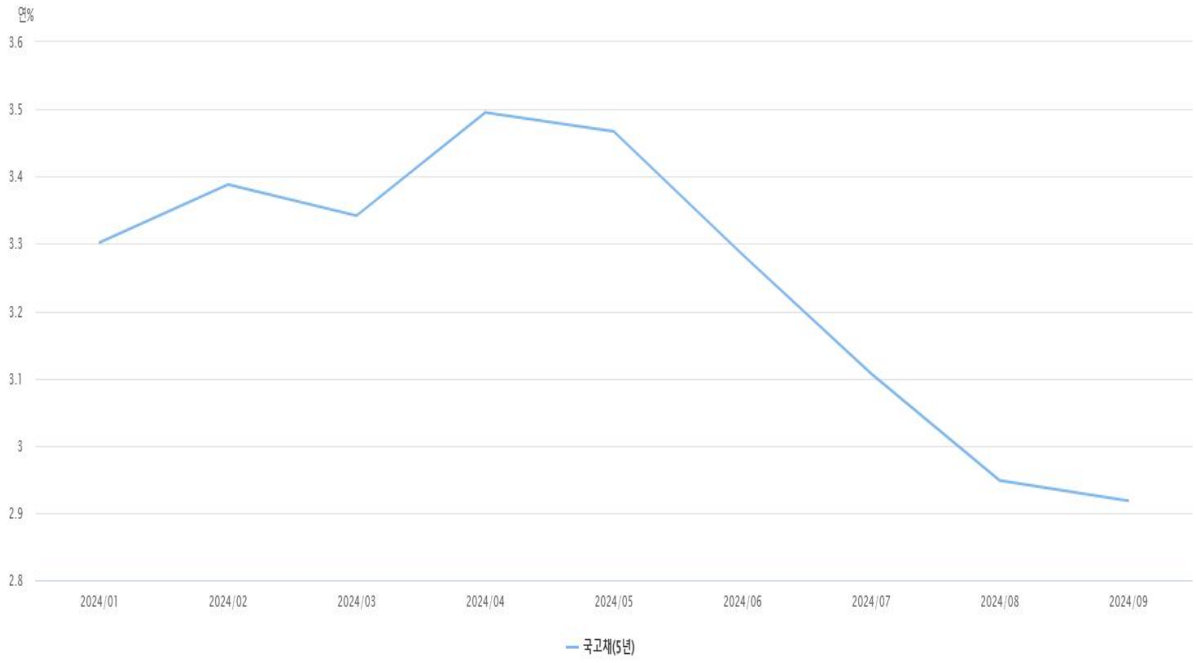
102)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제12조(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소수점 두자리 단위로 조정하며, 해당 분기 동안 적용한다. 다만, 국채금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의 금리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출금리 및 융자금리 결정기준]

대출금리 =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의 평균 융자금리 = 대출금리 - 취급수수료(0.5~1.5%)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 국고채 5년물 시장금리는 2.918%에 불과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국고채 금리 인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차감하여 결정되는 융자금리를 4%로 편성한 것은 대출금리를 4.5~5.5%로 예상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시장금리를 높게 상정한 문제가 있음.

[국고채 5년물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더욱이,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편성 조달금리는 3.4%로 되어있고 이는 평균 국고채 발행금리를 3.4%로 예상한 것이므로 대출금리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5년물 유통수익률과 금리 인하 요인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3.4%로 설정하고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융자금리는 1.9~2.9%로 조정하여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의 수입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음.

(2)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적정 수준의 일반수용비 반영 필요 (기타경비(총괄계정), 국고국)

< 현 황 >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원활한 자금관리·집행, 국·공채 인수, 기금 예탁 및 재예탁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3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기타경비(총괄계정)(3576-201)	3,205	3,205	-	-
- 일반수용비(210-01)	**3,184**	**3,184**	-	-
- 국내여비(220-01)	2	2	-	-
-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	-
- 사업추진비(240-01)	9	9	-	-

< 검토의견 >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발행 수요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바, 당초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계획과 수요 예상액에 맞추어 적정 수준만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비(총괄계정)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부터는 「국채법」[103]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104]에 근거하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동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크게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지급하는 사무처리 수수료와 판매대행기관인 증권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로 구분되고 사무처리 수수료는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105]에 따라 분기별로 2.5억과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지급하게 됨.

한편, 증권사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됨[106].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수수료는 20bp 이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입찰가격을 통해 제시한 보수율을 적용하여 '발행물량×보수율'로 지급됨.

---

103)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10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② 총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예탁
3.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4.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5. 국채의 원리금 상환
6.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보증채무 이행
8. 국채 관리를 위한 경비
9. 그 밖에 총괄계정의 조성·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05)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사무처리 수수료)** ① 전자등록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분기별 2.5억 원에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액의 0.015%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06)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판매대행기관의 선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개인투자용국채의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일 것
2.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국고채전문딜러일 것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경쟁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의해 제1항의 판매대행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판매대행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입찰 결과 연 1조원 발행과 14bp의 보수율을 적용하여 4년간 56억원 지급으로 판매대행기관과 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실제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제 발행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조원을 한도로 발행할 계획이므로 수수료 지급을 위해 31.6억원을 편성하였고 연간 국채 발행계획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임.

[2025년 예상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수수료]

구분	산출근거	금액
전자등록기관 수수료	2.5억원×4분기 + 14,000억원×0.015%	12.1억원
판매대행기관 수수료	14,000억원×0.14%	19.6억원
계		31.7억원

하지만 개인투자용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8월부터 청약액이 발행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9월과 10월에는 수요부진으로 인해 발행 한도의 30% 가량만이 청약된 상황임. 이에 따라 사무처리기관과 판매대행기관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수료 역시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에 비해 40% 증액한 개인투자용 국채 1.4조원 발행을 계획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수수료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개인투자용국채 청약실적]

(단위: 억원)

구분	발행계획	발행액	청약액	청약경쟁률
6월	2,000	2,000	4,262	2.13:1
7월	2,000	2,000	3,207	1.60:1
8월	2,000	1,897	1,897	0.95:1
9월	1,500	455	455	0.30:1
10월	1,500	539	539	0.36:1

자료: 기획재정부

더욱이, 금리 인하기에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표면금리가 결정[107]되고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개인투자용국채 수요가 202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고채 최고 낙찰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23.9.	23.11.	24.1.	24.3	24.5.	24.7.	24.9.
10년물	3.955	3.955	3.275	3.420	3.540	3.185	3.000
20년물	3.830	3.610	3.305	3.370	3.425	3.085	2.920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통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국채 예상 발행액을 조정하고 제한된 기금 재원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적정 소요만을 반영하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을 위한 수수료를 편성할 필요가 있겠음.

107)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금리)**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가산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한다.

2)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개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의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용되고 있음.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2024년 수정 계획(3조 2,705억원) 대비 2,115억원(6.5%) 증가한 3조 4,820억원이며, 수입은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매각대 1조 7,779억원, 국유재산 대여 등 재산수입 1,479억원,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174억원, 정부내부수입 9,783억원, 여유자금회수 4,60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출은 청·관사 등 공용재산취득사업 등 사업비로 1조 82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인 정부내부지출로 13,500억원, 여유자금운용 10,46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안에는 총 24개의 신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항 목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자체수입	2,057,212	2,042,888	△14,324	△0.7
-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매각대	1,773,906	1,777,878	3,972	0.2
-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143,213	147,922	4,709	3.3
-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40,093	117,088	△23,005	△16.4
○ 정부내부수입	558,797	978,278	419,481	75.1
- 기금예탁원금회수	475,000	860,876	385,876	81.2
- 기금예탁이자수입	83,797	117,402	33,605	40.1
○ 차입금	-	-	-	-
○ 여유자금회수	654,494	460,829	△193,665	△29.6
합 계	**3,270,503**	**3,481,995**	**211,492**	**6.5**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항 목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업비	1,025,969	1,082,624	56,655	5.5
- 공용재산 취득사업	945,969	982,624	36,655	3.9
(계속사업)	900,496	968,072	67,576	7.5
(신규사업)	45,473	14,552	△30,921	△68.0
- 비축토지 매입사업	80,000	100,000	20,000	25.0
○ 기금운영비	2,795	2,686	△109	△3.9
○ 정부내부지출(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1,250,000	1,350,000	100,000	8.0
○ 차입금 이자상환	-	-	-	-
○ 여유자금운용	991,739	1,046,685	54,946	5.5
합 계	**3,270,503**	**3,481,995**	**211,492**	**6.5**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신규 세부사업안]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5년	
		요구	조정
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시설 취득	196	196
청사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390
기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신축	1,706	1,169
기타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조성	565	113
청사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	2,482	1,000
청사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27,688	24,209
청사	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리모델링	21,763	21,763
청사	법무부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신축	920	390
기타	법무부 대검찰청 별관 증축	881	881
청사	관세청 청사시설 리모델링	19,878	19,878
청사	국세청 경기광주세무서 청사 신축	435	427
청사	경찰청 청·관사시설 리모델링	1,785	683
청사	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87	87
청사	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신축	350	350
청사	경찰청 강원인제경찰서 신축	158	158
청사	경찰청 강원청 경찰특공대 신축	260	260
청사	경찰청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축	360	243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5년	
		요구	조정
청사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4,224	4,224
청사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하늘바다파출소 부지매입	1,295	130
청사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정보서비스센터 신축	245	178
청사	영등포 복합창업허브 신축	233	233
청사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714	714
청사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512	512
기타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2,000	1,200

나. 검토의견

(1) 공용재산취득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총괄, 국고국)

< 현 황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청·관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비효율을 개선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용재산취득사업의 2025년 계획액은 2024년 대비 488억원 증가한 9,826억원임.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개요]

(단위: 억원)

지 출			
구 분	'24년 (비중, %)	'25년(안) (비중, %)	증감 (증감률, %)
합 계	32,705	34,820	2,115 (6.5)
○사업비	10,338 (31.6)	10,826 (31.1)	488 (4.7)
- 공용재산취득	**9,338 (28.6)**	**9,826 (28.2)**	**488 (5.2)**
(계속사업)	**8,996 (27.5)**	**9,681 (27.8)**	**685 (7.6)**
(신규사업)	**342 (1.0)**	**146 (0.4)**	**△197 (△57.6)**
- 비축토지매입	1,000 (3.1)	1,000 (2.9)	- (-)
○기금운영비	28 (0.1)	27 (0.1)	△1.1 (△3.9)
○공자기금예탁	12,500 (38.2)	13,500 (38.8)	1,000 (8)
○여유자금운용	9,839 (30.1)	10,467 (30.1)	628 (6.4)

< 검토의견 >

일부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 지연과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적기에 공용재산취득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실시하는 공용재산취득사업 중 일부에서 동일 사유로 인한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대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 10월 부지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9월까지 부지선수공급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3년 계획액은 전액 자체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2024년 계획액 역시 전액 집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청주지법 충주지원 신축(1331-413)	1,278*	-	-	4,237	4,237	-	3,815
- 건설보상비(410-00)	1,278	-	-	3,438	3,438	-	3,438
- 실시설계비(420-02)	-	-	-	799	799	-	352
- 시설부대비(420-05)	-	-	-	-	-	-	25
*2023년 계획액은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을 통해 계획액을 전부 감액							

또한 「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 신축」 사업의 경우 2023년에 기본조사설계비, 2024년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으나, 설계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에 따라 기존에 반영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5년 계획안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또 다시 반영하였음.

[서울서초경찰서 신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3년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계획 현액	집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경찰청 서울 서초경찰서 신축(5131-824)	406	-	636	-	573
- 기본설계비(420-01)	-	-	87	-	125
- 실시설계비(420-02)	406	-	541	-	448

아울러,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취득(6031-320)」의 내역사업인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 신축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 및 설계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시점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전액을 2025년에 반영하고 있음.

[통영해양경찰서 장승포파출소 신축 2025년 요구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旣 투자 ('22년 까지)	'23년 (결산)	'24년		'25년	'26년 이후
				당초	현액		
합 계	1,070	-	-	57	57	1,013	-
- 건설보상비	-	-	-	-	-	-	-
- 기본설계비	24	-	-	24	24	-	-
- 실시설계비	33	-	-	33	33	-	-
- 공 사 비	994	-	-	-	-	994	-
- 감 리 비	13	-	-	-	-	13	-
- 시설부대비	6	-	-	-	-	6	-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절차가 지연될 경우, 원자재 값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적기에 공공청사를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대국민 업무에 불편을 야기하고 임차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료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또한 집행부진으로 인한 이월 또는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불용 예정인 재원을 자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임차료 지급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회가 심의·확정한 계획과 상이한 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옴[108].

108) 2023년 결산 기준 불용 예정인 재원을 활용하여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액을 1,016억 4,300만원 증액한 바 있음.

더욱이 2024년 10월 15일 기준 전체 내역사업 451개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311개(70%)에 이르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는 공용재산취득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과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적기에 공용재산취득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국유재산관리기금 내역사업 집행률 현황(2024. 10. 15. 기준)]

집행률	개수
0~30%	269
30~50%	42
50% 이상	140
계	451

자료: 기획재정부

(2)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계획안 조정 필요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 국고국)

< 현 황 >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5131-330)」 사업은 노후·협소한 지구대 등 청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33억 8,100만원 증액된 506억 6,000만원이 계획되었음.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5131-330)」 사업의 내역사업인 「경기북부 남양주 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에는 2024년 대비 22억 5,100만원 증액된 24억 8,500만원이 계획되었음.

「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6031-360)」 사업은 노후·협소한 태안해양경찰서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2억 2,900만원이 감액된 2억 8,400만원이 계획되었음.

[2025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 계획안(일부)]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A)			(B-A)/A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 (5131-330)	47,279	48,530	50,660	3,381	7.15
- 경기북부 남양주 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	234	234	2,485	2,251	962.0
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 (6031-360)	513	513	284	△229	△44.6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사업집행절차와 공용재산취득계획안에 따를 때 일부 공용재산취득사업의 경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이 예상되는 바, 국회심의 과정에서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비, 공사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시행되는 공용재산취득사업은 기본·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공사발주 및 착공, 준공의 순서로 진행되며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 후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착수되어야 함. 아울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착공 이후의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공용재산취득사업 사업집행절차]

기본 및 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착공	⇒	준공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 지출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이월이 불가능하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109]. 이 때, 지출원인행위[110]란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공용재산취득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을 맺은 때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됨. 따라서 2024년도 안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2024년에 반영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이월이 불가하고 불용될 수 밖에 없음.

공용재산취득사업 중 일부에서 2024년 계획된 설계비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계획안에는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 진행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예상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계획안에 대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을 가한다는 점, 계획 변경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109)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0) **「국고금관리법」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이 예상되는 다음 사업의 경우 설계비, 공사비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먼저,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5131-330)」의 내역사업인 「경기북부 남양주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의 경우 2024년 계획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있으나 실제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예상 시기는 2025년인 바, 위 사업에 반영된 실시설계비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5년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예상되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시설계비를 2025년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경기북부 남양주 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 세목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경기북부 남양주 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	234	2,485	2,251	962.0
- 건설보상비(410-00)	180	1,569	1,389	771.7
- 기본설계비(420-01)	23	-	△23	△100
- 실시설계비(420-02)	**30**	**-**	**△30**	**△100**
- 공사비(420-03)	-	899	899	순증
- 감리비(420-04)	-	12	12	순증
- 시설부대비(420-05)	1	5	5	400.0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라 준공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111]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공사비가 전액 반영되어 있는 바, 실 소요액에 맞춰 공사비 등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음.

[실시설계용역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실시설계비	2025년 실시설계비(안)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계획
경기북부 남양주 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	30	-	25. 4.

자료: 기획재정부

111) 평내파출소 재건축 사업의 경우 당초 25년 11월 준공에서 26년 5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으며 장승포파출소 신축 사업의 경우 당초 25년 12월 준공에서 26년 6월로 준공이 연기됨.

[경기북부 남양주남부경찰서 평내파출소 재건축 2025년 요구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旣 투자 ('22년 까지)	'23년 (결산)	'24년		'25년	'26년 이후
				당초	현액		
합 계	2,719	-	-	234	234	2,485	-
- 건설보상비	1,749	-	-	180	180	1,569	-
- 기본설계비	23	-	-	23	23	-	-
- 실시설계비	30	-	-	30	30	-	-
- 공 사 비	899	-	-	-	-	899	-
- 감 리 비	12	-	-	-	-	12	-
- 시설부대비	6	-	-	1	1	5	-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태안해양경찰서 신축(6031-360)」의 경우 2024년 계획안에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있으나,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5년 3월에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임. 이에 따라 기본설계비 불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계획안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어 기본설계비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비를 기본설계비로 변경하는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5년도 해양경찰청 파출장소 청사취득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 신축(6031-320)	513	284	△229	△44.6
- 기본설계비(420-01)	**513**	**-**	**△513**	**△100**
- 실시설계비(420-02)	-	284	284	순증

[태안해양경찰서 기본설계 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기본설계비	2025년 기본설계비(안)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계획
해양경찰청 태안해양 경찰서 신축	513	-	25. 3.

자료: 기획재정부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인건비의 지급 비목 변경 필요 (인건비, 국고국)

< 현 황 >

「인건비」 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탁 관리·운영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억 3,900만원 증액된 2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인건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인건비(3579-101)	1,814	2,053	239	13.2
- 보수(110-01)	1,814	2,053	239	13.2

< 검토의견 >

보수(110-01)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112]하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회계 사무, 결산보고서 작성 사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113].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이므로 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총액인건비, 여비 등 경상경비 및 각종 공과금 등 재산경비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을 통해 지출되고 있음. 다만,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위탁 관리·운영 인력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출을 보수(110-01) 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보수(110-01)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을 말함. 따라서 법령으로 공무원에 대한 정해진 봉급과 각종 수당만이 보수(110-01)로 지급이 가능함.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110-01)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112) **「국유재산법」 제26조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①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한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1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장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다른 기금을 살펴보면,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114]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 인건비를 민간위탁사업비(320-02)[115]로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에 운용·관리 사무를 위탁[116]하고 있는 기후대응기금 역시 인건비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음.

[기금 별 관리·운용 위탁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세부사업명	비목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
국유재산관리기금	인건비(3579-101)	보수(110-01)	1,814	2,053
	경상운영비(3579-2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981	633
대외경제협력기금	인건비(3679-1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9,028	21,352
	기금관리비(3676-2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3,901	5,454
기후대응기금	인건비(7177-1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975	2,035
	기금운영비(7177-201)	민간위탁사업비(320-02)	722	694

자료: 기획재정부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2023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비목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되는 급여성 비용을 보수(110-01)로 편성하기보다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작성하고 다른 기금과의 편성 상 통일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음.

11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115)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116)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위탁기관 고시」 제1조(위탁기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4) 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계획 재수립 및 계획액 재검토 필요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국고국)

< 현 황 >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은 재외문화원의 노후·협소한 건물을 개선하고 거점별 주요도시 문화원을 단계적으로 국유화하여 국제문화교류 기반 확대와 한국문화홍보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인 「주 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은 동유럽권역의 한국문화 홍보 전진기지 설치를 확대하고 임차 운영 중인 튀르키예 문화원의 국유화를 통해 한국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대비 74억 5,800만원 감소한 30억 7,000만원이 계획되었음.

[2025년도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5431-320)	11,728	4,224	△7,504	△64.0
-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	**10,528**	**3,070**	**△7,458**	**△70.8**
- 주워싱턴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	1,200	1,154	△46	△1.3

< 검토의견 >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을 위한 예정 부지 매입이 주재국 정부의 승인 거절로 인하여 이뤄지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새로운 예정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한편, 2025년 계획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은 주요도시 문화원을 국유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외한국문화원 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나 공용재산 리모델링 사업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수행 근거[117]가 마련됨에 따라 국유재산기금으로 이관되었음.

내역사업인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은 현재 임차하여 운영중인 튀르키예 한국문화원을 국유화하려는 사업으로서 2020년 국유화사업 수요조사 평가 결과 대상국가로 선정된 이후, 2023년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운영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업임.

[주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일정	내용
‘20. 3.	국유화사업 수요조사 평가 결과 대상국가 선정
‘23. 4.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운영전략 및 계획 수립
‘24. 5.	주재국 정부와 부동산 매입 승인 협의
‘24. 9.	부동산 매입계약 체결
‘25. 2.	리모델링 실시설계 완료
‘25. 12.	리모델링 준공(기간 10개월,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117)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1조(취득사업의 대상)**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제10조의 취득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종류
가.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재산(부동산 및 그 종물에 한 함)으로서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취득 후 일반회계 소속이 되는 공용재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별표1] "공용재산취득사업 비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취득사업의 비대상
2. 취득방법
가. 대상 : 매입, 신·증축, 리모델링, 유상관리전환, 유상교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비대상 : 건축물의 유지·보수, 임차 등과 같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3. 비용내역
가. 대상 : 토지매입비(건물 등 포함), 기본조사설계비(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은 제외, 이하 같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6개 항목(건물매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포함)
나. 비대상 : 공용재산 취득기간 동안의 임차비용, 유지보수비용, 신·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비용, 이전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국유화사업 총사업비 구성 및 산출]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산 출 근 거
합 계	16,478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국유화사업
건설보상비	11,080	5.2백만원 × 2,000㎡ + 680백만원(중개수수료 등) ※ 중개수수료(2%), 취득세(4.4%), 법률자문비 15백만원
실시설계비	284	3,171백만원 × 5.95% × 1.5배(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 5. 시설부대경비 마. 건축부문요율 제3종(복잡)상급
공 사 비	4,806	1.58백만원 × 2,000㎡ + 1,635백만원(기존건물 복구비 등) ※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리모델링) 단가×국제공사비지수
감 리 비	297	3,171백만원 × 9.37% ※ 5. 시설부대경비 바. 전면책임감리비요율(복잡)
시설부대비	11	3,171백만원 × 0.36% ※ 5. 시설부대경비 가. 건설부문요율(시설부대비)

자료: 기획재정부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취득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 9월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튀르키예 정부의 부동산 매입 불허[118]에 따라 기존 예정부지에 한국문화원을 건설 및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내에 새로운 매입부지를 확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승인 및 부동산 매입계약 체결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나 새로운 매입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부지 탐색,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현지 실사 등 관련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24년 10월 현재까지 부지 탐색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긴 어려움.

118) 튀르키예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제약이 있으며, 수도인 앙카라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은 구매할 수 없고 외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구매가 가능함. 외교부는 기존 후보지에 대하여 튀르키예 정부에 매입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해당 후보지가 정보민감시설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매입을 불허하였음.

[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국유화 리모델링 사업집행절차]

재외문화원	추진 사항 및 유의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계획 수립 및 건물 계약(매입)	○국유화 계획 보고 및 본부 실사 추진 ○최종 건물 확정 및 계약 체결	* 본부 실사단 파견 - 해당 국가별 법령에 따라 필요 시 매입 권한위탁서 발급 - 상반기 운영비 지원
↓		↓
설립 절차 진행	○주재국 정부기관 설립 절차 진행 ○시설 공사 업체 선정	외교부, 문화부 등 관련기관 협의
↓		↓
리모델링 실시 및 개원 준비	○리모델링 실시 및 개원 행사 준비 ○문화원 운영 계획 수립 ○개원 행사 주요인사 참석 및 홍보	* 하반기 운영비 지원 * 개원 행사 지원 - 국내인사 참석 추진
↓		↓
개원	○개원 행사 실시 및 홍보	* 개원식 참석
↓		↓
문화원 운영	○문화원 운영 및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 문화원 운영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더욱이 내년도 공사의 시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하나, 매입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반영되어있는 실시설계비와 공사비의 집행을 위한 용역발주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은 이월될 수 없고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이월될 수 있는 바, 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가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예산은 불용 처리 되어야함[119].

이에 따라, 부동산 매입계약,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공사 용역계약 등이 2024년 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지출원인행위가 부존재하여 2024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고 2025년 계획안에 따라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편성된다고 할지라도 예정 부지 매입을 위한 자

119)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산취득비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은 불가능하게 됨. 또한 연내 계약체결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매입부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시공 업체 선정의 부실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 비목별 세부 계획]

	2024			2025 계획안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 사업	10,528	10,528	-	3,070
- 실시설계비(420-02)	284	284	-	-
- 공사비(420-03)	1,922	1,922	-	2,884
- 감리비(420-04)	118	118	-	179
- 시설부대비(420-05)	4	4	-	7
- 자산취득비(430-01)	8,200	8,200	-	-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이를 종합해볼 때, 튀르키예 한국문화원 국유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매입부지 선정 및 용역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한 경우 지출 역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바, 튀르키예 정부의 예정 부지 매입 승인 거절 이전 편성된 2025년 계획안은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겠음.

(5)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관사 안정성 평가 추진체계 개편 검토 필요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국고국)

< 현 황 >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사업은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지원하여 국유재산 활용도와 재정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신규 세부사업으로서 2025년 계획액은 2024년 대비 순증한 12억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노후청관사 안정성평가」는 노후 공공청관사 대상으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별하여 국유재산 활용도를 제고 및 재정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계획액은 2024년 대비 순증한 9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6933-300)	-	1,200	1,200	순증
- 노후청관사 안정성 평가	**-**	**900**	**900**	**순증**
- 기본조사용역	-	200	200	순증
- 맞춤형컨설팅	-	100	100	순증

< 검토의견 >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관사 안정성 평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추진체계가 복잡해지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외교부와 면밀히 협의하여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관사 안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교부가 직접 재외공관 노후청관사 안정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규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심사함에 있어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함[120]. 「공용재산취득사업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후청관사 안전성 평가」는 신규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적 반영 요소인 안전성을 평가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기존에 기금운영비로 일부 수행되던 노후청관사 안전성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외교부 일반회계 소관 사업으로 수행되던 노후 재외공관 안전성 평가를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획재정부가 노후청관사 안전성 평가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경우, 통일적인 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신규 공용재산 취득사업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관사 안전성 평가까지 일괄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수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첫째, 기획재정부가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관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외공관재산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재외공관재산법」은 다른 국유재산과 달리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 권한을 외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보전 사무도 외교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21].

---

120)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①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12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동산의 취득)**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노후청관사 안전성평가」 사업은 국내 공공재산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성평가 또한 포함하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가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국가별로 위치와 수행 사무 등이 상이한 재외공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는 해외 소재 국유재산의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재외공관재산법」의 목적[122]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둘째, 재외공관 안전성 평가의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효율적인 안전성 평가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현재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외교부가 현지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재외공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경우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맡긴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시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기존 추진체계와 달리 위탁 수수료와 용역 수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측면이 있고 위탁·용역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적인 절차 역시 이중적으로 발생하게 됨.

[재외공관 안전성 평가 추진체계 변화]

기존 추진체계

외교부	⇒ 용역 계약	현지 업체

변화 추진체계

기획재정부	⇒ 민간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 용역 계약	국내 업체

제5조의2(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보존) ①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보존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2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운용·유지·보존·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기금의 안전성평가는 재외공관용 부동산 운용·유지 차원이 아닌 기금 신규사업의 주요 심사기준인 객관적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고 외교부가 현지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노후청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객관적인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재외공관의 경우 공관 소재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안정성 평가 기준을 수립 및 제공할 경우 객관적 심사자료로서 안정성 평과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재외공관 관리에 대한 외교부의 노하우나 전문성 활용과 효율적 사업 추진 측면에서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재외공관에 대한 노후청사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외공관에 대한 안정성평가를 외교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2024년 수정 계획 대비 1,807억 6,700만원 증가한 2조 3,895억 1,300만원으로, 주로 대개도국차관 규모를 2024년 수정 계획 대비 1,547억 4,900만원 증액한 것에 기인함.

2025년도 수입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1조 3,423억 8,800만원을 전입할 계획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는 6,339억 5,100만원을 예수할 계획임. 대개도국차관에 따른 융자금 원금 회수는 2,776억 1,500만원, 융자 이자 수입은 624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여유자금 예치금 회수는 591억 1,2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는 2억 6,900만원, 여유자금 운용수입은 137억 4,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2,208,746**	**2,389,513**	**180,767**	**8.2**
일반회계 전입금	1,218,749	1,342,388	123,639	10.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656,249	633,951	△22,298	△3.4
융자금 원금 회수	245,891	277,615	31,724	12.9
융자금 이자 수입	53,968	62,430	8,462	15.7
여유자금 회수(정부예금 회수)	30,081	59,112	29,031	96.5
면허료 및 수수료	66	269	203	307.6
여유자금 운용 수입	3,742	13,748	10,006	267.4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지출 계획안에 따르면 대개도국차관 계획액은 2조 1,867억 2,800만원으로, 아시아차관은 8,814억원, 아프리카차관은 3,810억 2,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동-CIS 차관은 859억 9,900만원, 중남미차관은 380억 8,900만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8,002억 1,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대개도국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559억 5,200만원을, 경협증진자금(EDPF)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38억 5,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은 870억 7,400만원, 기금 운영비는 268억 600만원,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29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2,208,746**	**2,389,513**	**180,767**	**8.2**
대개도국차관	2,031,979	2,186,728	154,749	7.6
- 아시아차관	849,890	881,400	31,510	3.7
- 아프리카차관	416,981	381,025	△35,956	△8.6
- 중동·CIS차관	112,383	85,999	△26,384	△23.5
- 중남미차관	43,864	38,089	△5,775	△13.2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608,861	800,215	191,354	31.4
대개도국차관 지원	36,715	55,952	19,237	52.4
경협증진자금 지원	1,470	3,853	2,383	162.1
공자기금예수 원금 및 이자 상환	56,541	87,074	30,533	54.0
기금 운영비	22,929	26,806	3,877	16.9
여유자금운용	59,112	29,100	△30,012	△50.8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대외경제협력기금 비공개 규정의 「정보공개법」상 절차준수 필요 (총괄, 개발금융국)

< 현 황 >

단위사업 「대개도국차관지원」은 「대개도국차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망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차관사업의 준비·실시·사후관리와 같이 사업 진행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세부사업 「사업진행컨설팅」과 차관사업을 심사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전문가 고용, 국제기구 협조융자 수수료 지급, EDCF 업무 관련 정책연구 실시 등을 위한 세부사업 「사업심사평가연구」 및 각종 홍보 활동, EDCF 아카데미, 현지 인력 채용 등을 위한 「개발협력증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대개도국차관지원(3376)	**36,715**	**55,952**	**19,237**	**52.4**
- 사업진행컨설팅(ODA) (3376-302)	30,182	45,746	45,746	51.6
- 사업심사평가연구(ODA) (3376-632)	4,027	5,278	5,278	31.1
- 개발협력증진(ODA) (3376-633)	2,506	4,986	4,986	96.6

< 검토의견 >

비공개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규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협력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123]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조문 체계도는 다음과 같음.

[대외경제협력기금법령 조문 체계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 목적 §2 정의 §3 기금의 설치 §4 기금의 재원 §5 장기차입 §6 <삭 제> §7 기금의 용도 §8 기금의 지원요건 §9 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10 기금운용위원회 ①② §11 일시차입 ①② §12 여유자금의 운용 §13 기금의 회계기관 ①② §14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② §15 감독 및 명령	§1 목적 §2, §3 <삭 제>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② §5 위원회의 구성 ①② §6 위원장의 직무 ①② §7 위원회의 운영 ①②③ §8 의안의 부의 §9 위원회의 간사 §10 위원회의 운영세칙 §11 기금의 지원절차 ①~⑤ §12 기금운용계획 §13 결산보고서 §14 여유자금의 운용 §15 기금계정의 설치 ①② §16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② §17 기금의 회계연도 §18 기금의 회계처리 ①② §19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 보고 §20 기금운용관리규정 ①②	§1 목적 §2 지원요청 시에 받을 서류 ①② §3 검토의견의 첨부 §4 중요한 사업

자료: 조에 항이 있는 경우에만 항을 표시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수행하는 EDCF 세부사업 중 사업성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제7호[124]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1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24)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개도국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어음 할인, 채무 보증 또는 유가증권 인수를 포함하며, 이하 "융자등"이라 한다) 또는 출자
2.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업의 시험적 실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3.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운용지침」 제11조[125]를 근거로 하고 있음.

[EDCF 세부사업 중 사업성 사업의 법적근거]

세부사업명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
아시아차관(융자)(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
아프리카차관(융자)(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
중동-CIS차관(융자)(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
중남미차관(융자)(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1호
사업진행컨설팅(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7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
사업심사평가연구(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7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
개발협력증진(ODA)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7조제7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

현행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규정 중 대외 공개된 규정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을 받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총 네 개 규정임. 위 규정 이외의 주요규정·지침, 수은 내규 및 개별 기준은 전부 대외 비공개하고 있음.

---

4. 그 밖에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등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의 이율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경우 그 대출에 따른 손실 보전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5)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차관지원비 지원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의 발굴·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차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도국정부등 또는 재외공관에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2. 개도국정부등이 차관 및 보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3. 지원대상사업이 기술이나 자금조달 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 때, 문제점 등의 조사 또는 해결을 위하여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개도국정부등이 환경영향 평가,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지원대상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대응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5. 개도국정부등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등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
7.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외경제협력기금 규정 체계]

구 분	규정 및 주요 내용	공개 여부
EDCF 관련 법령	1.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기금의 용도, 위탁, 기금운용위 등)	○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 기금법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지원절차, 기금운용관리규정 등)	○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 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지원요청시 받을 서류 등)	○
EDCF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1.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지원업무의 종류, 차관조건, 사후관리방법 등)	○
	2.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 지원대상국가, 대상사업, 사업참여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
	3.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 기본방향 - 협력사업 유형, 지원 우선순위, 협력분야, 협력대상국, 지원조건에 대한 방향을 명시	×
수은 내규	1.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규정 - 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사업준비, 심사, 구매, 융자실행 등)	×
	2.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세칙 - 업무규정에 따라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사업준비, 심사, 구매, 융자실행 등)	×
	3.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기준 - 업무규정 및 업무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사업준비, 심사, 구매, 융자실행 등)	×
개별 기준	1. 대외경제협력기금 평가기준 - 기금지원사업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평가기준, 평가절차 등)을 규정	×
	2.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설정기준 - 기금지원사업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설정에 필요한 사항(부문별 표준 성과지표)	×
	3. 환경사회영향 심사기준 - 기금지원사업 환경사회영향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심사기준, 심사방법 등)	×
	4. 외부전문가 고용기준 - 외부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업무범위, 지급기준, 참여제한 등)	×
	5. 대외경제협력기금 완공사업 사후관리 지원 기준 - 기금지원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지원대상, 심사, 지원절차 등)	×
	6.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관련 민원처리기준 - 기금지원사업 구매 관련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원칙, 처리절차, 조치사항 등)	×
	7. 대외경제협력기금 정보공개기준 - 기금지원사업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원칙, 공개대상 정보, 공개방식 등)	×
	8. 경협업무 중점사무소 세부업무기준 - 경협업무 중점사무소의 사업단계별 세부 업무사항(발굴, 중간점검, 평가 등)	×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2호에 따라 구속성지원 원칙, 지원 대상국가 목록, 세부 심사기준 등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곤란하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의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중 비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하고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은 2021년 5월 개정된 비공개 세부기준에 대한 개선 결과를 2024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비공개 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개선 결과를 내년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비공개 중인 규정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음.

---

1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5년 ODA 종합시행계획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 철저 관리 필요 (대개도국차관(단위사업), 개발금융국)

< 현 황 >

「대개도국차관」은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기금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증진시키는 단위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아시아차관(융자)(ODA)」, 「아프리카차관(융자)(ODA)」, 「중동-CIS차관(융자)(ODA)」, 「중남미차관(융자)(ODA)」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으로 구성됨. 동 단위사업의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47억 4,900만원이 증액된 2조 1,867억 2,800만원임.

[2025년도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대개도국차관	2,031,979	2,186,728	154,749	7.6
- 아시아차관(융자)(ODA) (3331-301)	849,980	881,400	31,510	3.7
- 아프리카차관(융자)(ODA) (3331-303)	416,981	381,025	△35,956	△8.6
- 중동-CIS 차관(융자)(ODA) (3331-305)	112,383	85,999	△26,384	△23.5
- 중남미차관(융자)(ODA) (3331-306)	43,864	38,089	△5,775	△13.2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3331-309)	608,861	800,215	191,354	31.4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일반적으로 ①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간 협의를 거쳐 후보사업을 확정한 후, ② 기술적 · 경제적 ·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③ 수원국의 차관신청 이후 사업심사를 하며, ④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승인하고, ⑤ 공여협정(A/G), 시행약정(A/R) 또는 기본약정(F/A) 등의 협정에 따라 차관계약을 체결한 뒤, ⑥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⑦구매, 사업실시 및 자금을 집행하는 체계로 진행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진행절차]

단 계	진 행 절 차
사업 발굴	○정상회담, 고위급회의 또는 EDCF 사무소 등을 통해 수원국의 개발수요 파악 ○정부 간 정책협의를 통해 후보사업(Rolling Plan) 등 확정
타당성조사(F/S)	○수원국 자체적 타당성조사 또는 수원국 요청시 수은 발주로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조사
사업 심사 (현지심사 포함)	○수원국의 차관신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 요청 ○수은은 사업범위, 사업비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승인	○기재부장관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조건 등 지원방침을 결정
정부간협정 체결	○정부간 공여협정(Agreement; A/G), 시행약정(Arrangement; A/R) 체결 단,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F/A) 체결시, AR 생략(대부분 F/A 체결)
F/A 교섭 및 체결	○정부간 공여협정(기본약정 포함)에 따라 수출입은행장은 수원국 정부와 차관계약 내용에 대해 교섭하고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 체결
컨설턴트 고용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은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컨설턴트를 선정하고 고용계약 체결
본구매	○사업실시기관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사 선정 후 구매계약 체결
사업실시 및 자금지출	○공정진행 단계에 따라 컨설턴트 및 본구매 계약자 앞으로 대금 지급
사후관리	○완공점검(사업완공보고서 접수시점)시에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 ○사후평가(완공점검 후 2년) 시에는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수원국 국민 복리증진 및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종합적 평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 검토의견 >

「2025년 ODA 종합시행계획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하여야 함[127]. 종합시행계획은 매년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그 기준으로 활용됨. 동 법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은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승인'이 된 내역사업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2025년 ODA 종합시행계획안」에 의결된 금액대로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내 내역사업들의 2025년도 계획안을 대부분 편성함. 그러나,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동 계획안 대비 증액되기도 하였는데, 세부사업별 해당 내역사업은 아래와 같음.

---

12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제5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 의결 후 변경된 사정을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항 전단에 따라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을 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차관(융자)(ODA) 사업 중 ODA 종합시행계획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

(단위: 년, 백만원)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구속성	'23			'24. 8말 기준			'25		ODA승인안 대비 증액사유
				계획	변경	결산	계획	변경	결산	ODA안	계획안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사업	19-28	○	21,620	10	-	15,494	15,494	-	5,489	7,941	본구매 선수금
	문화유적지 소방방재시스템 개선사업	23-27	○	2,863	914	914	7,133	7,133	609	9,201	11,674	본구매 선수금
방글라데시	객차 260량 구매사업	24-28	○	-	-	-	8	8	-	8	734	컨설턴트 선수금, 기성금
베트남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1차)	20-25	○	8,948	15,325	15,119	5,470	5,470	3,975	156	1,800	본구매 집행액 조정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2차)	23-27	○	2,038	1,572	877	949	949	642	2,830	7,489	본구매 선수금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	21-26	○	28,035	42,185	41,348	31,357	31,357	24,471	4,570	20,468	본구매 집행액 조정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17-25	○	11,171	18,322	18,037	10,096	10,096	3,671	1,320	4,200	본구매 집행액 조정
	미안-까오랑 도로 건설사업	24-30	○	-	-	-	1,733	1,733	-	11,318	15,910	본구매 선수금
	벤째성 종합병원 건립사업	20-26	○	15,936	-	-	15,021	15,021	-	5,768	12,600	본구매 선수금
	비엣찌 하수도 건설사업	12-25	○	389	-	-	291	291	-	264	3,600	본구매 잔여대금
	중부지역연결도로 건설사업	21-25	○	3,639	4,602	4,602	4,541	4,541	2,182	2,249	10,800	본구매 집행액 조정 ('25 완공 전망)
	케넷철도 개량사업	22-27	○	5,093	540	222	12,677	12,677	6,590	2,298	10,246	본구매 집행액조정
	하노이약학대학 건립사업	16-27	○	8,067	10	-	9,913	9,913	-	4,956	6,000	본구매 선수금
	호아빈성도로확장 및 제방구축사업	24-30	○	-	-	-	616	616	-	9,168	10,800	본구매 선수금
스리랑카	루완웰라 상수도 사업	19-25	○	1,766	10	-	2,018	2,018	2,776	3,900	11,380	채무 재조정 MOU합의완료 및 집행 재개
인도네시아	서부지역 농업관개시설 개선사업	21-27	○	14,007	5,796	1,377	18,721	18,721	835	7,505	12,064	본구매 집행액 (선수금 등) 조정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24-29	○	-	-	-	1,190	1,190	-	667	2,757	컨설턴트 앞 2차 선수금 및 기성금 추가
	지속가능한 농촌 연결성(교량) 개선사업	24-27	○	13,359	-	-	18,300	18,300	666	7,115	12,434	본구매 선수금
	청정 시엠립을 위한 우회도로 개발사업	24-26	○	812	10	-	20,896	20,896	-	8,798	16,100	본구매 선수금

(단위: 년, 백만원)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구속성	'23			'24. 8말 기준			'25		ODA승인안 대비 증액사유
				계획	변경	결산	계획	변경	결산	ODA안	계획안	
파키스탄	45번 국도 개선·확장사업(2차)	24-28	○	4,707	299	-	841	841	-	5,526	10,873	본구매 선수금(PMC 파견 통한 행정절차 촉진)
	45번 국도(캘카탁~치트랄) 개선·확장사업	22-28	○	15,379	996	787	16,841	16,841	-	7,231	13,317	본구매 집행액 추가(PMC 파견 통한 행정절차 촉진)
	우정공공서비스 현대화사업	24-27	○	2,023	10	-	413	413	-	2,856	9,708	본구매 선수금(PMC 파견 통한 행정절차 촉진)
	카라치 IT 파크 건립사업	24-30	○	17,044	3,361	-	3,170	3,170	3,988	19,570	47,507	본구매 집행액 추가(PMC 파견 통한 행정절차 촉진)
필리핀	PGN 해상교량 건설사업(Section A)	25-31	○	-	-	-	-	-	-	-	3,215	사업진행 경과 따라 집행 예정
	PGN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사업	23-26	○	12,603	10,012	9,318	12,624	12,624	-	62	7,604	본구매 선수금(필리핀 정부 최우선 추진사업)
	라구나호순환도로 건설사업(1단계)	25-29	○	-	-	-	-	-	-	-	360	사업진행 경과 따라 집행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아프리카차관(융자)(ODA) 사업 중 ODA 종합시행계획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

(단위: 년, 백만원)

국가	사업명	사업기간	구속성	'23			'24. 8말 기준			'25		ODA승인안 대비 증액사유
				계획	변경	결산	계획	변경	결산	ODA안	계획안	
에티오피아	남부 국가전력망 확충사업	21-29	○	29,451	4,146	3,705	13,472	13,472	35,203	8,289	22,206	본구매 기성금 조정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사업	24-27	○	20,662	-	-	29,308	29,308	-	22,867	56,551	본구매 선수금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40편성(320량) 구매 사업	24-38	○	-	-	-	112,411	112,411	181,603	84,217	113,419	24년 : 1,930억 25년 : 1,130억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 중 ODA 종합시행계획안 대비 증액된 내역사업]

(단위: 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구속성	'23			'24. 8말 기준			'25		ODA승인안 대비 증액사유
				계획	변경	결산	계획	변경	결산	ODA안	계획안	
ADB	캄보디아 무역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Sub-Program 2)	24-25	×	-	-	-	-	-	-	-	33,675	'24. 10. 22. ADB와 MOU 체결
WB	우크라이나 사회분야 프로그램차관	25-25	×	-	-	-	-	-	-	13,644	127,965	신속한 전쟁 복구지원 위한 프로그램 차관 지원
	탄자니아 도도마 지속가능한 통합 교통사업	25-29	×	-	-	-	-	-	-	-	50,513	탄자니아 재무부 의사결정 대기중
WB, ADB, GCF, ADFD	솔로몬군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24-28	×	1,300	10	-	2,303	2,303	6,283	10,644	12,773	최초 인출조건 충족(24. 6.) 이후, 예상 집행 소요 조정
민간협력 전대차관	인도네시아	25-29	×	-	-	-	-	-	-	11,000	64,850	사업 준비중
	캄보디아	25-29	×	-	-	-	-	-	-	-	64,850	사업 준비중
	미정	미정	×	-	-	-	5,000	5,000	-	-	25,000	사업 준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ODA 종합시행계획은 2024년 6월 26일 의결된 것으로,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이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2025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ODA 종합시행계획에서 승인된 계획안보다 2025년도 계획안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대개도국차관 단위사업 중 ODA 승인안 대비 증액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시아차관(융자)(ODA)」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세부사업에서 증액됨.

「아시아차관(융자)(ODA)」 세부사업의 경우 ODA 승인안 대비 증액된 대부분의 사유가 본구매 선수금을 증액하기 위함이나, 본구매 선수금은 사업실시기관(수원국)과 사업자 간 계약서 체결 시 약정서에 명시된 금액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본구매 선수금을 지급하고, 2023년 및 2024년도의 집행실적과 2025년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절차들이 원활히 수행되는지를 고려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3) 사업계획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 내역사업 계획안 적절성 검토 필요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은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국제개발금융기구 협조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현지 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수원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규모 민간부문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913억 5,400만원이 증액된 8,002억 1,500만원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도네시아 민간협력전대차관」 및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각각 648억 5,000만원이 순증된 64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대상국이 정해지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미정)」 내역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250억원이 순증된 2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사업(3331-309)	608,861	800,215	191,354	31.4
- 인도네시아 민간협력전대차관	-	64,850	64,850	순증
-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	64,850	64,850	순증
- 민간협력전대차관(미정)	-	25,000	25,000	순증

< 검토의견 >

구체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협력전대차관은 민간협력차관 지원대상인 개발도상국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을 개도국 금융기관에 대해 융자하는 것임.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128]에 따른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129]에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 제16조(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130]에서는 구체적인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개도국금융기관(이하 "신청인")은 차관의 용도, 한도설정 금액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해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신청인은 사전협의가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에 한도설정 승인을 신청함. 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해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함.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장은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한도설정승인을 통지하고 한도 내에서 개별차관을 승인 및 실행함.

---

128)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자방법 등 출자업무에 관한 사항
2. 융자의 종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융자업무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5호에 따른 손실 보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29)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8조(지원업무의 종류)** 법 제7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기후변화대응, 개도국 중소기업,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법인에 대한 융자(이하 "민간협력차관"이라 한다)
12. 제11호 융자의 지원대상인 개도국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대하기 위한 자금의 개도국금융기관에 대한 융자(이하 "민간협력전대차관"이라 한다)

130)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16조(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 제8조 제12호의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영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도국금융기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협조융자기관은 차관의 용도, 한도설정 금액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입은행장과 사전협의를 한다.
2. 신청인은 제1호의 사전협의가 구체화된 경우 수출입은행장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입은행장에게 한도설정 승인을 신청한다.
3. 수출입은행장은 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수출입은행장에게 통지한다.
5. 수출입은행장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한도설정승인을 통지하고, 한도내 개별차관을 승인·실행한다.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

① **신청인** ↔ **수은 은행장** : 차관의 용도, 한도설정 금액 및 지원조건 등에 관한 사전협의
② **신청인** → **수은 은행장** : 사전협의 구체화된 경우 한도설정 승인 신청
③ **수은 은행장** → **기획재정부장관** : 신청내용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④ **기획재정부장관** → **수은 은행장** : 심사보고서 검토 후 지원방침 결정하여 통지
⑤ **수은 은행장** → **신청인** : 한도설정승인 통지 및 한도 내 개별차관 승인·실행

자료: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

위 절차에 따라 민간협력전대차관이 승인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해당 차관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안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임[131].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목적으로 1,527억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규정된 민간협력전대차관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계획안으로 편성함. 따라서 편성된 1,527억원은 차관의 용도, 한도, 지원조건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원방침도 결정되지 않은 계획액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현지 금융기관 후보들과 사업의 모델, 조건 등을 협의 중으로 사업을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전이어서 첫 번째 단계인 사전협의도 이행하지 못했으나 사업 예산 규모가 확정된 이후 현지 금융기관을 조속히 선정하고 사업 승인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전대차관의 경우 개발사업 차관

13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②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기관이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이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종합적·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연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이 포함된 시행계획안(이하 "분야별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조정 및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승인과 집행 간 시차가 짧아 2025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민간협력전대차관을 위해 편성된 「인도네시아 민간협력전대차관」 내역사업,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내역사업 및 대상 국가도 결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미정)」 내역사업의 사업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32].

132) 참고로 국무조정실에서 의결한 「2025년도 ODA 종합시행계획」에서는 3개 내역사업 중 「인도네시아 민간협력전대차관」만 승인되었으며, 승인 금액은 100억원임.

(4) 사업진행컨설팅 사업 집행관리 필요 및 12개월 사업수행 전제로 편성된 사업관리컨설턴트 내역사업(신규) 계획 조정 필요 (사업진행컨설팅(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은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사업진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차관지원의 경쟁력 및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5억 6,400만원(51.6%)이 증액된 457억 4,600만원임.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업준비지원」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86억원 증액된 34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업관리컨설턴트(신규)」 내역사업의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48억원 순증되었음.

[2025년도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3376-302)	30,182	45,746	15,564	51.6
- 사업준비지원	**25,560**	**34,160**	**8,600**	**33.6**
- 사업실시지원	2,160	3,969	1,809	83.8
- 사후관리지원	2,094	2,347	253	12.1
-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74	470	396	535.1
- EDCF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시스템 고도화	294	-	△294	△100.0
- 사업관리컨설턴트(신규)	**-**	**4,800**	**4,800**	**순증**

<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저조한 「사업진행컨설팅(ODA)」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12개월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신규 내역사업 「사업관리컨설턴트」의 계획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연례적으로 저조한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최근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임. 2020년부터 2024년(8월 말)까지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업준비지원」 내역사업의 계획 현액 대비 집행액은 2020년 50.1%, 2021년 31.7%, 2022년 44.7%, 2023년 64.9%, 2024년(9월 말 기준) 32.5%로 매년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음. 「사업실시지원」 내역사업의 계획 현액 대비 집행액도 2020년 41.6%, 2021년 27.2%, 2022년 33.5%, 2023년 59.6%, 2024년(9월 말 기준) 32.7%로 매년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2022년 및 2023년 집행률은 0%임.

[2020~2024년 사업진행컨설팅(ODA)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년					'21년					'22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사업진행컨설팅(ODA)	**19,600**	**24,772**	**11,879**	**8,703**	**4,189**	**19,458**	**28,161**	**8,805**	**13,127**	**6,229**	**22,161**	**35,288**	**14,983**	**13,997**	**4,308**
-사업준비지원	17,000	21,332	10,668	7,437	3,228	17,478	24,915	7,889	12,419	4,607	18,458	30,877	13,804	13,721	3,352
-사업실시지원	1,800	2,504	1,042	1,020	441	1,440	2,460	670	708	1,082	1,920	2,628	880	1,709	39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	800	936	169	247	521	540	787	247	-	540	784	784	-	-	784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	-	-	-	-	-	-	-	-	-	999	999	299	567	133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	-	-	-	-	-	-	-	-	-	-	-	-	-	-
-사업관리 컨설턴트	-	-	-	-	-	-	-	-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3년					'24년(9월말 기준)					'25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계획안
									계획현액	집행액	
사업진행컨설팅(ODA)	25,127	41,124	25,904	13,493	1,727	30,182	43,675	10,238	30,182	4,624	45,746
-사업준비지원	21,450	35,172	22,831	11,257	1,084	25,560	36,817	11,746	25,560	7,180	34,160
-사업실시지원	2,400	4,109	2,450	1,579	80	2,160	3,739	1,073	2,160	681	3,969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	1,072	1,072	-	657	415	2,094	2,751	657	2,094	-	2,347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205	771	623	-	148	74	74	10	74	10	470
-외화금고 운영 및 자금이체 시스템 고도화	-	-	-	-	-	294	294	-	294	-	-
-사업관리 컨설턴트	-	-	-	-	-	-	-	-	-	-	4,8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동 세부사업의 모든 내역사업의 집행이 저조하고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동 세부사업의 계획액을 2022년에 전년 대비 13.5%, 2023년에는 13.2%, 2024년에는 20.1%, 2025년도는 51.6% 증액하여 편성함.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위해 대개도국차관을 증액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개도국차관지원 계획액을 증액할 필요성도 일견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업예산의 증액뿐 아니라 사업의 집행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12개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한 「사업관리컨설턴트」 내역사업의 계획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2025년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관리컨설턴트」 내역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133]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동 내역사업을 위해 시범으로 2023년 파키스탄[134], 2024년 우즈베키스탄[135]에 사업관리컨설턴트를 1년간 파견하여 수원국 사업실시기관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음.

2025년 계획안은 6개국에 사업관리컨설턴트를 파견하기 위해 각국 8억원씩 총 48억을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파키스탄에 실제 파견된 사업관리컨설턴트의 1년 계약비

133)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제11조(차관지원비 지원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의 발굴·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차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대한민국국민등의 수주 가능성 제고,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컨설턴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4) 2023년 10월 계약 체결(2023. 12. ~ 2024. 12.)
135) 2024년 4월 계약 체결(2024. 4. ~ 2025. 4.)

용 9억 700만원을 감안하여 계획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사업관리컨설턴트(PMC) 시범사업 및 2025년도 PMC 파견 계획]

구분	국가	현황 및 주요사업	실적/예산
'24년 시범	파키스탄 ('23. 10. ~'24. 10.)	- 파키스탄 도로청 사업 진행 가속화 - 도로사업 포괄적 기술 자문 제공 - 파키스탄 EDCF 全사업 현황 보고 및 적시 대응 등 현장 지원 (PCP, F/S, 상세설계, 사업 진행보고서 검토 등)	<'24년> 9.1억원(계약액) 중 7.7억원 집행(9월말 기준) <'25년> 8억원 편성
	우즈베키스탄 ('24. 4. ~'25. 4.)	- F/S 지원 : 수원국 내부 승인절차 지원, 공사비 추계자료 작성, F/S 보고서를 현지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완·번역 및 관련 부처 앞 설명 등 - 컨설턴트/본구매 계약 지원 : 입찰절차 전반 지원, 상세설계의 현지법령 부합 여부 검토, 공사 계획 적정성 검토 등	<'24년> 6.8억원(계약액) 중 3.1억원 집행(9월말 기준) <'25년> 8억원 편성
'25년 신규	볼리비아	- (추진 현황) 수원국의 PMC 파견신청서 접수 완료('24.6월) - (주요 관리사업) 에스꼬마-차라싸니 도로건설 사업, 월라꼬요-데사과데로 도로확장사업 등	<'25년> 8억원 편성
	인도	- (추진 현황) 수원국 재무부와 PMC 파견 협의 중 - (주요 관리사업) 웨스트벵갈 산업회랑 건설사업 및 동 지역 신규사업 발굴·개발 지원	<'25년> 8억원 편성
	엘살바도르	- (추진 현황) PMC 파견 검토 중 - (주요 관리사업) 아카후틀라 항만 개발사업	<'25년> 8억원 편성
	미정	- 미정	<'25년> 8억원 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 시범 실시한 사업관리컨설턴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국가에 파견되는 사업관리컨설턴트는 1월이 아닌 연중에 계약이 체결되어 다음 연도까지 1년간 컨설턴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국가재정법」[136]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관리컨설턴트」 내역사업의 계획액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계약서에 선수금과 중도금의 비율을 마련하며 컨설턴트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선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동 내역사업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6)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사업관리컨설턴트 파견 계획 중 인도 「웨스트벵갈 산업회랑 건설사업」 내역사업은 2025년도 계획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동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컨설턴트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사업관리 컨설턴트」 내역사업 계획안의 적정 규모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5)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별도사업으로 분리 편성 필요 (사업심사평가연구(ODA), 개발금융국)

< 현 황 >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은 대개도국 차관사업 관련 기술전문가 고용 및 외부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원조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2억 5,100만원(31.1%)이 증액된 57억 2,800만원임.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조융자사업관리」의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30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 (3376-632)	4,027	5,728	1,251	31.1
- 기술전문가 고용	1,761	2,033	272	15.5
- 정책연구	200	206	6	3.0
- 협조융자 사업관리	**2,057**	**3,027**	**970**	**47.2**
- 기금관련위원회 개최	9	12	3	33.3

< 검토의견 >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수수료 비용으로 편성되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은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획액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은 대개도국 차관사업을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전문가를 고용하고 EDCF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등 외부 용역사업 지원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원조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137]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협조융자 사업관리」는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편성된바, 협조융자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사업심사평가연구(ODA)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구체적으로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에 편성된 계획안 30억 2,700만원은 전액 일반수용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미주개발은행(IDB)에 74만 8,646달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10만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85만 4,860달러, 세계은행(WB)에 49만달러를 협조융자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임.

---

137)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제11조(차관지원비 지원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지원대상사업의 발굴·실시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차관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도국정부등 또는 재외공관에서 지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2. 개도국정부등이 차관 및 보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3. 지원대상사업이 기술이나 자금조달 등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공정이 지연된 때, 문제점 등의 조사 또는 해결을 위하여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개도국정부등이 환경영향 평가, 주민이주계획 수립 등 지원대상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대응을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5. 개도국정부등이 완공 이후 운영·관리 등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컨설턴트 파견, 기자재 지원 등을 요청한 경우
6. 개도국정부등이 프로그램차관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과제, 개발사업 등 실시를 위하여 컨설턴트 파견을 요청한 경우
7.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5년도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 세부 편성내역]

협조융자 사업관리 : (2024) 2,057 → (2025) 3,027백만원, +47.2%

- (요구) 국제금융기구(IDB, CABEI, AfDB, WB 등)에 '25년 협조융자 사업관리비 지급 약정액 편성(+47.2% 증액)
- (산출) 1) IDB Facility Agreement상 '25년 수수료금액 : US $748,646 x @1,380 = 1,033백만원
  2) CABEI Facility Agreement상 '25년 수수료금액 : US $100,000 × @1,380 = 138백만원
  3) AfDB Facility Agreement상 '25년 수수료금액 : US $854,860 × @1,380 = 1,180백만원
  4) WB Facility Agreement상 '25년 수수료금액 : US $490,000 × @1,380 = 676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기술전문가 고용 등의 업무를 협조융자 방식에서는 MDB가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이 「기술전문가 고용」 내역사업과 일부 유사한 면이 있어 동 사업에 편성해왔다는 입장임.

다만, 기획재정부는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이 융자지출 사업에 부대하는 경상지출 성격이기 때문에 「대개도국차관지원」 단위사업 내 개별 세부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을 예산실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3년 5월 발간된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협조융자 사업관리」 내역사업을 개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하라는 평가결과가 있었음.

4) 복권기금

가.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에 따라 설치됨(2004. 4. 시행).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6.1% 증가한 8조 8,685억원이며, 이 중 복권기금 지원사업비로 3조 2,251억원이 편성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중 약 35%는 법정배분사업으로서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개 기금·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복권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등이 정하고 있는 비율대로 배분하고 있으며, 2025년도 계획안에는 1조 1,051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나머지 약 65%는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명시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2조 1,19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복권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항 목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복권판매수입	72,918	76,879	3,961	5.4
○ 여유자금 회수	1,097	999	△98	△8.9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740	700	△40	△5.4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5,610	6,288	678	12.1
○ 미지급 당첨금	534	545	11	2.1
○ 기타 이자, 불용액 등	2,681	3,274	593	22.1
합 계	**83,580**	**88,685**	**5,105**	**6.1**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복권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항 목	2024년 당초	2024년 수정(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복권판매 사업비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	43,234	43,234	45,558	2,324	5.4
○ 부담금 등	120	120	117	△3	△2.5
○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0,941	31,241	32,251	1,010	3.2
- 법정배분(과학기술진흥기금, 보훈공단 등)	10,402	10,402	11,051	649	6.2
- 공익사업(서민주거안정, 소외계층 등)	20,539	20,839	21,199	360	1.7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700	700	1,582	882	126.0
○ 여유자금 운용	1,603	1,303	1,554	251	19.3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320	6,320	6,852	532	8.4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663	663	770	107	16.1
합 계	**83,580**	**83,580**	**88,685**	**5,105**	**6.1**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적 예산 배분 필요 (총괄, 복권위원회)

< 현 황 >

복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는 10개 기금·기관(이하 “법정배분기관”이라 함)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138]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50억원이 증액된 1조 1,051억원이 편성됨.[139]

복권법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140]하에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

---

13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139) 복권수익금(복권판매수입(7조 6,879억원) - 복권판매사업비(4조 5,558억원) - 사행산업부담금(110억원) = 3조 1,211억원)의 35%인 1조 924억원에 2023년도 법정배분금 정산액(복권법 시행령 제17조제7호에 따른 2023년도 예산과 결산 차액의 정산)128억원을 더한 금액임

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기존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음.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141]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6년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2025년도 법정배분사업 기금·기관 및 배분비율]

(단위: %)

구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증진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도특별회계	사회복지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법정배분비율	12.583	10.371	5.310	6.356	14.286	17.267	17.267	4.286	5.846	6.428
실제배분비율(가감 후)	12.461	8.324	5.576	7.474	13.075	17.253	17.267	4.286	7.015	7.269

자료 : 기획재정부

140)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임.
141)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검토의견 >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경직된 배분구조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정배분제도는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정배분기관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복권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2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정배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배분기관의 재정 상황 및 사업 필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복권수익금이 정률 배분되는 문제[142]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배분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1년 복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복권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143]

142) 감사원,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2021. 5.

14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가감조정에 따른 2025년 복권기금 법정배분 계획액]

(단위: 억원)

평가순위	법정배분기관	24년 배분액	2025년 가감조정					23년 결산차액 (E)	최종 배분 계획액 (F=A+B+C+D+E)	증감 (F-A)	
			기초 법정 배분 (A)	1단계 (B)	2단계 (C)	3단계 (D)	가감율 (%)				(%)
	합 계	10,402	10,924	△258	△33	291		128	11,051	128	1.2
1	산림환경증진자금	730	639	128	-	-	+20.0%	9	775	137	21.4
2	근로복지증진기금	728	694	104	-	18	+17.6%	10	826	132	19.0
3	보훈복지의료공단	701	702	70	-	22	+13.1%	7	801	99	14.1
4	중소벤처진흥기금	635	580	29	-	-	+5.0%	8	617	37	6.4
5	과학기술진흥기금	1,251	1,375	-	△13	-	△1.0%	13	1,374	0	0.0
6	제주도특별회계	1,796	1,886	-	-	-	-	22	1,908	22	1.2
7	사회복지모금회	417	468	△23	-	23	-	6	474	6	1.2
8	지방자치단체	1,699	1,886	△151	-	149	△0.1%	22	1,906	20	1.1
9	국가유산보호기금	1,526	1,561	△211	-	78	△8.5%	20	1,448	△112	△7.2
10	국민체육진흥기금	920	1,133	△204	△20	-	△19.7%	11	920	△212	△18.8

자료 : 기획재정부

※ (1단계) 종합평가(성과평가+자금소요평가) 결과 상·하위 4개 기관에 대해 각각 20%, 15%, 10%, 5% 차등 배분
(2단계) 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및 사업수요 등 감안 추가 감액
(3단계) 1~2단계 감액재원을 성과 우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가산
(결산차액) 복권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23년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기 배분된 금액 차액을 정산

그러나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배분액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최근 복권판매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법정배분액 전체 규모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배분비율이 조정되더라도 최종 배분액은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는 등 가감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보임.

[최근 5년간 복권 판매수입 및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배분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판매수입(계획액)[1]	54,358	63,903	67,429	72,918	76,879
법정배분액[2]	8,325	9,844	10,346	10,401	11,051

1) 국회확정액 기준
2) 복권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최종배분액

이에 따라 법정배분금 중 일부가 여유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함.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법정배분된 금액만큼 사업을 편성하지 못해 복권기금 전출금 일부를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144]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법정배분으로 인하여 전출금이 오히려 증가('24년 1,251억원 → '25년 1,374억원)하고 여유자금 운용 규모도 증가('24년 344억원 → '25년 375억원)하고 있음.

[2025년도 복권기금 전출을 활용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계획		2025년 (B)	증감 (B-A)
	당초(A)	수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25,055**	**125,055**	**137,447**	**12,392**
①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4,222	4,222	4,202	△20
② 과학영재양성	14,463	14,463	14,425	△38
③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R&D)	12,664	12,664	12,045	△619
④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3,876	3,876	3,487	△389
⑤ 스페이스이노베이션	776	776	-	△776
⑥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	-	-	12,000	12,000
⑦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등지원	-	-	360	360
⑧ 연구산업기반조성	1,460	1,460	1,630	170
⑨ 과학문화확산사업	14,767	14,767	14,540	△227
⑩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18,844	18,844	19,684	840
⑪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5,080	5,080	4,740	△340
⑫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	6,500	6,500	-	△6,500
⑬ 우수과학자포상	-	-	1,622	1,622
⑭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	1,500	1,500	1,450	△50
⑮ 뉴스페이스 투자지원사업	5,000	5,000	3,500	△1,500
⑯ 뉴미디어활용과학문화 디지털콘텐츠제작확산	1,500	1,500	6,230	4,730
⑰ 여유자금운용	**34,403**	**34,403**	**37,532**	**3,129**

자료 : 기획재정부

144) 과학기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규모: '21년 1,162억원 중 220억원, '22년 1,305억원 중 293억원, , '23년 1,100억원 중 20억원, '24년 1,251억원 중 344억원

또한, 자체 수입원이 있어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이나 기금에 대해서도 법정배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이 지급된다는 문제도 있음.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000억원, 영화발전기금에 600억원을 각각 전출할 계획임에 비추어 볼 때,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한계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202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지출(안)]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자체수입			2,334,415
정부내부수입	- 기금전입금(복권기금)	92,044	494,148
	- 공공기금예탁금원금회수	360,000	
	- 공공기금예탁금이자수입	42,104	
여유자금회수			150,000
합 계			2,978,563
사업비			1,616,460
기금운영비			31,208
정부내부지출 (기금간거래)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공공자금관리기금)	600,000	775,583
	- 기금 간 전출(문화예술진흥기금)	100,000	
	- 기금 간 전출(복권기금)	15,583	
	- 기금 간 전출(영화발전기금)	60,000	
여유자금운용			555,312
합 계			2,978,563

자료 :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경직된 배분구조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법정배분 대상 기금・기관의 재정상태 및 복권기금 전출사업의 세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의 효과성 제고 필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복권위원회)

< 현 황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시설을 조성하여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에 12억 8,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6341-312)	-	1,285	1,285	순증

<검토의견>

기획재정부는 신규로 구축되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를 조성하여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법률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유도, 범죄예방, 사회복지비용 감소로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적 사업임. 동 사업은 「법률구조법」[145]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라고 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법무부의 「법률구조 사업(1131-300)」과 관련하여 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146]에 따라 공익사업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2014년 동안 총 152억 3,600만원이 지원되어 전국에 총 7개의 센터를 구축한 바 있음.

[2009년~2014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지역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7개소
복권기금지원액	3,348	2,800	2,800	1,888	1,800	2,600	15,23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울산센터는 임차

145)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14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25년의 경우 관할 인구수 및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천에 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하여 복권기금 계획안에 12억 8,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법무부의 경우 법률구조 세부사업(1131-300)의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법률구조 활동비 257억원[147] 및 청·관사취득 및 관리 72억원 등 총 657억원을 편성하였음.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사업」은 센터를 구축하여 다중채무자[148], 불법 사금융피해자[149], 소상공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등 무료법률구조,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등 상시교육, 개인워크아웃,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증가[150]하고, 다중채무자 연체율이 증가[151]하며, 개인회생·파산 건수가 증가[152]하는 등의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복권기금의 지원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신규로 구축되는 센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우선, 현재도 공단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에 개인회생·파산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단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센터 홍보를 하고 있지만, 법률구조 사업 실수요자들의 센터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임.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9%)이었으며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대 피해자도 25.7%나 되었음.

---

147) 개인회생·파산신청 관련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관재인선임비용 등 소송비용 지원
148)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
149)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피해자
150)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법률구조 건수: 293건('22년) → 814건('23년) → 775건('24년 8월 기준)
151)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동네 사장님, 열에 여섯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뛰어"(매일경제, 2024.10.8.) 등
152) 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 건수: 130,113건('21년) → 131,429건('22년) → 162,256건('23년)

[연령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분포현황]

(단위: 건)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인원(명)	2	5,382	10,091	3,094	1,477	670	233
비율(%)	0.01	25.69	48.17	14.77	7.05	3.20	1.11

자료: 기획재정부

이러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자는 상대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구조사업 등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을 지원하는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임. 따라서 신규 센터 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외에 실수요자를 타케팅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센터의 위치 및 법률구조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으로 법원을 방문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선제적으로 센터 사업을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취약주거 거주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을 도심 외곽[153] 또는 낙후지역[154]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센터의 존재를 인지하고 보다 용이하게 센터를 방문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센터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공단의 법률상담은 대면상담 외에도 비대면 상담인 챗봇상담,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비대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병행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센터(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공단 지부 등)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5년 인천 센터 신축 이후에도 복권기금으로 2028년까지 의정부, 창원, 춘천, 전주, 청주, 제주에도 순차적으로 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므로 센터 구축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153) 도심·'핫플'은 그나마 버틸 만… 도심 외곽은 '줄폐업(신동아, 2024.8.24.) 등

154)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97.4%)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이며, 주택유형은 주로(49.1%) 다세대·다가구 거주자임.(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0.3.))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가.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155]

동 기금의 수입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8,019억원이 계획되었음.

[2025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자체수입	41,704	38,542	△3,162	△7.6
- 이자수입	15,740	13,083	△2,657	△16.9
- 대위변제회수	3,065	3,011	△54	△1.8
- 보증료수입	22,899	22,448	△451	△2.0
○ 정부내부수입	10,000	10,000	-	-
- 출연금	10,000	10,000	-	-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여유자금회수	761,562	753,362	△8,200	△1.1
합 계	**813,266**	**801,904**	**△11,362**	**△1.4**

자료: 기획재정부

15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관리·운용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동 기금의 지출 중 사업비는 신규사업인 맞춤형컨설팅과 특별인프라펀드의 반영으로 전년 대비 685.1% 증가한 1,14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영비는 전년 대비 8.7% 감소한 8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 업 비	14,564	114,348	99,784	685.1
- 대위변제	14,081	13,583	△498	△3.5
- 구상권관리비	76	68	△8	△10.5
- 보증료환급	407	397	△10	△2.5
- 맞춤형컨설팅	-	300	300	-
- 특별인프라펀드	-	100,000	100,000	-
○ 기금운영비	9,693	8,851	△842	△8.7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	-	-
○ 여유자금운용	789,009	678,705	△110,304	△14.0
합 계	**813,266**	**801,904**	**△11,362**	**△1.4**

주1) 대위변제: 산업기반신용보증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업시행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기금이 보증채무를 채권은행에 직접 이행
주2) 구상권관리비: 부실기업으로부터 구상권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송·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
주3) 맞춤형컨설팅: 민자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주4) 특별인프라펀드: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의 실시 근거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특별인프라펀드, 재정관리국)

< 현 황 >

「특별인프라펀드 사업」은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에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특별인프라펀드 (2032-460)	-	100,000	100,000	순증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의 실시 근거 및 사업 내용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사업이란 기존에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도로·항만·철도·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 기금에서 2025년에 신규로 편성한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은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 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펀드의 자금은 기금과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여 조성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 계획안에 일반출자금(460-01) 1,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동 출자금 규모 1,000억원은 기금 기본재산[156]의 10% 수준으로 기금의 안정성 및 기금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임.

정부는 2024년 10월 2일에 1994년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30주년을 맞이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 및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4대 분야 18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추진과제 중 하나가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 임.[157]

---

15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은 1조 8억원임.

157) 2025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규사업 중 하나인 "산업맞춤형컨설팅(2032-304)"도 동일하게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서, 2025년 계획안에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됨.

[(참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24.10.2.) 중점 추진과제]

분야	과제	개선방안
사업 발굴·협상	1. 개량운영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개량증설 사업 대상 확대 · 관리운영기간 만료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민자사업 적극 활용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
	2.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활성화	· 생활SOC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보증 신설 · 통합 생활SOC 사업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 인하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유도 · 8대 권역별 지역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3.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	· 결합형 민자사업 주무관청 지정 제도 도입 ·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확대
	4.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활성화	·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도입 · 새로운 대상시설 우대 보증 신설
	5. BTO 정부고시사업 확대	· 부문별 민자사업 5개년 계획 마련 ·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쟁적 협의 우선 검토
	6.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 사업 도입	·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절차 마련
	7. 재정-민자사업 연계 강화	· 재정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 개편 ·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확대
	8. 탄력적 사용료 및 소통 확대	· 대심도 도로 등 탄력적 사용료 책정 · 적격성조사 시 최초제안자 소통 확대 · 사업제안 시 제안비용 최소화
금융 조달	9.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 여건 개선	**·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 ·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 은행의 인프라 투자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공공기관 출자 활성화
	10.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	·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사모펀드의 공모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활성화
	11. 신용보증 지원 확대	· 보증공급 확대(2.4 → 4.0조원 이상) · 보증한도 확대(최대 1 → 2조원)
	12. 민자금융 회수시장 활성화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합리화 · 민자금융 회수시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

분야	과제	개선방안
건설·운영	13. 공사비변동 위험 합리적 분담	· 수익형 민자사업 공사비상승 부담 완화 ·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비상승 부담 완화 · 자재비 변동 리스크 헤지 방안 마련
	14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	· 수익률 조정 주기 유연화
	15. 재정지원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유연화 · 민자사업 취득세 감면 연장 · 민투심 상정 대상 간소화(운영비 소폭 증액) · 지방비 매칭 의무 폐지(환경사업)
	16. 부대사업 활성화	· 역세권개발, 유원시설 등 부대사업 대상 확대 · 부대사업 사용·수익기간을 본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부대사업 우대 보증 신설 · 부대사업 수행을 별도 법인에 위탁·대행 허용
지원	17. 지원기능 및 교육·정보 제공 강화	· 기본계획 정비 및 표준안 확대 제공 · 교육 상시화(온라인) 및 심화 교육(오프라인) 도입 · 전문기관 지정 확대 ·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을 통한 종합적 정보제공
	18. 국제협력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민자제도를 위한 환경 조성	·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제협력 활성화 · 민간투자사업 30주년 기념 주간행사 개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구성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자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적시·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음.

특별 인프라펀드 구성 시 KDB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할 예정이며, 10년 기간으로 운용하여 2025년 실시 시 2034년 말까지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임. 기획재정부는 2,000억원 규모의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 시 민간투자사업의 의무 출자비율(15% 이상) 등을 고려할 때 펀드 운영기간(10년) 동안 총사업비 약 7조원[158]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58) 7조원 × 60%(민간투자비 비율) ×15%(자기자본 비율) × 1/3 = 약 2,000억원

[특별 인프라펀드 운용(안)]

구 분	내 용
운용사	○ KDB인프라자산운용
약정규모	○ 2,000억원+α (산업은행 1,000억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민간 금융회사 α)
투자대상	○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
투자한도	○ 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하
투자기간	○ 준공 시까지(준공 시 투자금 회수)
투자금납입	○ Capital Call 방식[159]
존속기간	○ 설정일로부터 10년
목표수익률	○ 국고채(5년)+α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로, 동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증 역할을 담당하던 기금이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특별 인프라펀드 관련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159)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한도내에서 출자 이행의 요구가 있는 때에 출자하는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46조 (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법 제32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기금을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8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이란 연기금투자풀에의 예탁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에 대한 출자,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를 의미한다.

※ 2024.10.14. 개정 시 신규로 추가된 부분임

「민간투자법」제30조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보증채무의 이행(제1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제2호),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3호),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제5호)’로 규정되어 있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제2호),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제3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제30조제1항에서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이라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 제32조제5호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또는 제4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볼 때 특별 인프라펀드에 출자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에도 부합하므로 가능하다는 입장임.[160]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30조는 사업시행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며, 기금의 구체적 용도는 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도 펀드에 출자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민간투자법」 제3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호 또는 제4호가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법과 시행령의 해석을 거치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인해야 비로소 어떠한 사업이 실시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상황임.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보증 및 그에 수반되는 역할만 하던 기금이 새로운 성격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근거 및 관련 내용을 기획재정부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예를 들어, 기금의 보증 업무와 관련해서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가 어떤 것인지, 보증의 한도는 기본재산의 20배 이내로 할 것 등을 「민간투자법」 제34조부터 제40조에서 대략적으로 정한 후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도 「민간투자법」 또는 시행령에 동 사업의 실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의 대략적인 투자대상이나 투자한도·방식·기간 등 사업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로, 법령상 근거 마련 후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160) 다만, 시행령 제28조제3항 또는 제4항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6조에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가 기금의 용도로 추가되어야 가능할 것임. 기획재정부는 2024년 10월 14일자로 기본계획을 개정하면서 동 문구를 추가하였음.

리스크에 대하여도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음.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인 만큼 투자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거나, SOC 건설 공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칫 투자한 금액을 예정한 기간 내에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공사비 증가 등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컨소시엄이 지위를 포기해 2024년 8월 민간 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했으나 참여한 건설사가 없어서 10월 초 다시 재공고 하는 등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며, 2016년 9월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2020년 4월 착공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당초 2025년 4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4년 5월 기준으로 공정률이 39%에 불과하여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끝에 2026년 12월 이후로 개통이 연장된 사례와 같이 착공 이후에도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 가능할 것임.

기획재정부는 특별 인프라펀드는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단계에만 투자되며 준공 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인 만큼,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예를 들어, 계획 대비 수요가 저조함 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견임.

그러나 비록 건설 단계에 대하여만 투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순 없으며, 건설 단계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하여 공사비 및 금융비용이 증가[161]함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금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특별 인프라펀드를 통하여 동 민간투자사업에 출자 지원까지 중복하여 실시한다면, 사업(건설)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대출에 대한 '보증'과 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두 분야에서 중복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사

161) 건설공사비지수(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2020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통계): 112.51(2021년 7월), 125.01(2022년 7월), 127.33(2023년 7월), 129.96(2024년 7월) 등 꾸준히 상승 중임.

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민간투자법」 제34조제3항[162]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이를 '운용배수'라 함),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163]에 따르면 기본재산(출연금 및 적립금)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BIS자기자본비율 최소한도인 8%를 반영하여 기금 내부 적정배수를 기본재산의 12.5배[164]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금 운용배수 추이를 보면 2015년에는 12배 수준이었으나 2020년 13.7배 수준으로 나타났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는 15.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운용배수가 커지고 있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등]

(단위: 억원, 건, 배, %)

연도	보증공급액	누계	보증공급 건수	보증잔액 (A)	기본재산 (B)	운용배수 (A/B)
2015	17,833	193,213	22	82,868	6,884	12.0
2016	25,905	219,118	17	93,325	7,183	13.0
2017	20,286	239,404	13	98,536	7,416	13.3
2018	20,832	260,236	16	105,539	7,753	13.6
2019	18,102	278,338	12	111,559	8,025	13.9
2020	20,513	298,849	12	114,001	8,345	13.7
2021	25,642	324,492	13	127,402	8,635	14.8
2022	23,106	347,598	6	128,873	8,789	14.7
2023	26,543	374,141	6	140,689	9,557	14.7
2024계획	24,000	398,141	-	145,059	9,640	15.1
2025계획안	30,000	428,141	-	154,928	10,008	15.5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10월 2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16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64) 운용배수 = 보증잔액(위험가중자산) ÷ 기본재산(자기자본) = 12.5배(=100/8)

이에 따른 기금의 보증공급 확대 기조로 인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용배수 확대가 예상됨.

예를 들어, 현재 사업당 금전채무 보증한도액이 1조원으로 이미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165][166]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대형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도액이 현재의 두 배인 2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한 신속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최대 보증공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이에 따라 기금 재정운용의 리스크도 커지게 될 것임.

기금운용 개시 이후 현재까지는 한 번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의 기본재산 규모와 보증한도액 등을 고려하면 한두 건의 대위변제로도 기금이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보증공급 확대 기조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비록 기금 기본재산의 10% 수준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특별 인프라펀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펀드운용사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투자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며, 선정한 민간투자사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나 손실이 전체 펀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오늘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제도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특별 인프라펀드 사

---

16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전채무(제2호의 금전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1조원
2. 사업시행자가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조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3천억원

166) 최근 5년간 보증한도액이 5천억원('19.5.) → 7천억원('22.11.) → 1조원('23.12.)으로 2배로 증가하였음.

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한다는 기금 본연의 업무수행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 사업의 실시 근거 및 사업 수행 방식, 사업 규모, 사업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후에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외국환평형기금

가.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원화와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함.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 64조 8,308억원 감소한 140조 2,894억원으로,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액 61조 7,213억원 감소에 기인함.

2025년도 수입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8조 663억원을 예수할 계획이고, 외평채 발행을 통한 외화 차입은 전년대비 1억달러 감소한 12억달러 규모로 계획하고 있고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20조원을 조달할 계획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1,489억원을 징수할 계획이고, 한국투자공사(KIC)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은 8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정부예금 회수는 78조 6,076억원, 기타이자수입・재산수입 등은 1조 7,30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205,120,149**	**140,289,389**	**△64,830,760**	**△31.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6,647,550	38,066,251	△18,581,299	△32.8
차입금(외평채 발행)	19,690,000	21,656,000	1,966,000	10.0
부담금(외환건전성부담금)	139,952	148,927	8,975	6.4
정부출자수입(KIC 배당금)	56,720	80,000	23,280	41.0
정부예금 회수	125,983,811	78,607,621	△47,376,190	△37.6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602,116	1,730,590	△871,526	△33.5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지출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상환 계획액은 32조 9,263억원, 예수 이자 상환 계획액은 5조 135억원이고, 2025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평채 원금 상환액은 18조원, 4억불 및 7억유로로 계획하고 있음. 그 밖에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1조 262억원, 한국은행 및 KIC 등에 대한 여유자금 예치는 81조 7,27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 운영비는 13억 5,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외국환평형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합 계	**205,120,149**	**140,289,389**	**△64,830,760**	**△31.6**
공자기금예수 원금 상환	94,647,550	32,926,251	△61,721,299	△65.2
공자기금예수 이자 상환	5,918,316	5,013,480	△904,836	△15.3
외평채 원금 상환	1,715,000	19,595,000	17,880,000	1042.6
차입금 이자 상환	1,165,188	1,026,196	△138,992	△11.9
여유자금 운용	101,672,838	81,727,105	△19,945,733	△19.6
기금 운영비	1,257	1,357	100	8.0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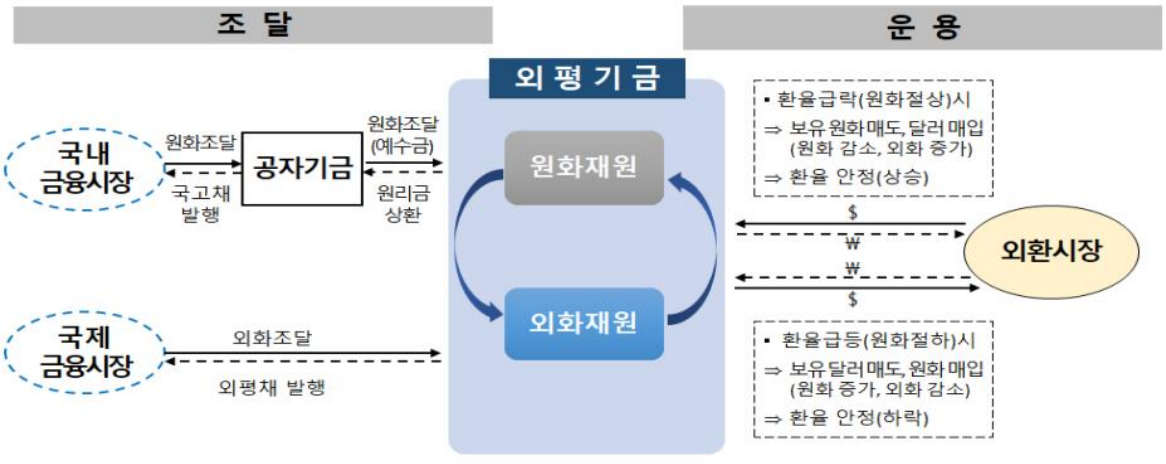
(1) 2024년 발행되는 원화표시 외평채 추이 감안하여 국공채상환 사업 계획액 조정 필요 (국공채수입/국공채상환, 국제금융국)

< 현 황 >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167]”을 위해 1967년 설치된 기금으로, 원화와 외화를 보유하면서 필요한 경우 외환시장의 안정화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정부는 외평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화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평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음.

[외평기금 안정화조치 체계도]



자료 : 기획재정부

167) **「외국환거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재무건전성 및 원화 재원 조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부터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을 통해 원화 재원을 조달키로 함. 이를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계획 중임.

「국공채수입」은 외평채의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수입임. 2025년도 예산총칙에 따르면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는 미화 12억 달러,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는 20조원으로, 이에 따라 2025년도 국공채수입은 21조 6,560억원이 편성[168]되었음.

[2025년도 국공채수입 계획안(외국환평형기금 수입계획안 중)]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국공채수입(81-811)	19,690,000	21,656,000	1,966,000	10.0
- 외화표시 외평채	1,690,000	1,656,000	△34,000	△2.0
- 원화표시 외평채	**18,000,000**	**20,000,000**	**2,000,000**	**11.1**

「국공채상환」은 외화표시 외평채 및 원화표시 외평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사업임. 2025년도 국공채상환은 2024년 대비 17조 8,800억원 증액된 19조 5,950억원이 편성되었음.

「국공채상환」의 2025년 계획안 중 국내차입금(원화표시 외평채) 상환은 2024년 대비 18조원이 순증된 18조원이 편성되었음.

168) 원/달러 환율 : 1,380원/1$ 상정

[2025년도 국공채상환 계획안(외국환평형기금 지출계획안 중)]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국공채상환(9860-980)	1,715,000	19,595,000	17,880,000	1042.6
- 국내차입금 상환	-	**18,000,000**	**18,000,000**	**순증**
- 해외차입금 상환	1,715,000	1,595,000	△120,000	△7.0

< 검토의견 >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발행되지 않고 있는 한도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일정을 감안해 2025년도 국공채상환 사업 계획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18조원 한도로 원화표시 외평채를 신규로 발행할 계획임.

그러나 원화표시 외평채를 전자등록, 발행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169]가 개정[170]되어야 하나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도 동 법률은 현행 그대로임[171].

---

16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①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3.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72조(한국은행에 관한 특례) ①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국채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국채등의 등록(「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1.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2.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3.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국채등이 이 법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170) 외평채는 국고채에 포함되지 않음.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크게 국고채, 국민주택채, 외평채, 재정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등이 있음.

171) 당초 정부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외국환거래법」에 한시규정으로 반영하고 추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국공채상환」의 2025년도 계획안 19조 5,950억원 중 18조원은 국내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인데, 이 18조원은 2024년도 계획된 1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가 전액 발행될 경우 해당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금액임.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04호) 및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04호) 심의경과 및 2024년도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국공채상환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따라 원화표시 외평채를 전자등록, 발행 및 유통하는 근거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04호)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804호)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됨.

(2) 중복계상된 통화금융기관예치 지출액 조정 필요 (통화금융기관예치, 국제금융국)

< 현 황 >

「통화금융기관예치」는 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예탁하는 것으로, 2025년에 정부 외화예산 환전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40억 달러 규모를 예치할 계획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조 2,388억 200만원이 증액된 6조 4,428억 200만원임.

[2025년도 통화금융기관예치 계획안(외국환평형기금 지출계획안 중)]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통화금융기관예치(9703-971)	5,204,000	6,442,802	1,238,802	23.8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는 외국환평형기금 여유자금을 예치·예탁한 금액을 회수하는 것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조 176억 3,200만원이 증액된 6조 4,428억 200만원임.

[2025년도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계획안(외국환평형기금 수입계획안 중)]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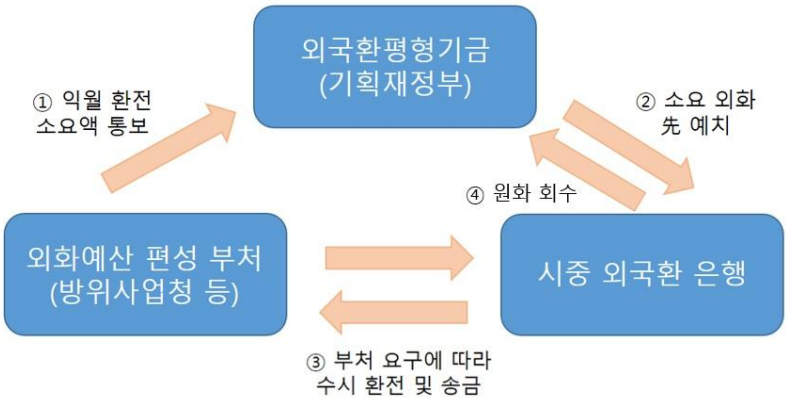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	5,425,170	6,442,802	1,017,632	18.8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억 달러 규모의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2025년은 외화예산환전 지출액을 중복계상하여 편성했는바, 1,380원/달러 기준 5조 5,200억원(40억 달러)을 2025년 계획액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외화예산환전제도는 정부예산 등이 외화로 환전되어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 각 부처가 시중 은행을 통해 환전하도록 하는 대신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로 환전해주는 제도임. 기획재정부는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고시)을 근거로 이를 운영하고 있음.

[외화예산환전제도 절차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동 제도는 2008년 처음 시행한 이후 금융기관 역마진 등 문제로 중단되었으나, 2014년부터 2019년 말까지 시행되었다가 '외환보유액 감소 우려'로 다시 중단됨. 2021년 9월 방위사업청 등의 요청으로 재개해 현재 방위사업청,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연도별 외화예산 환전실적]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위사업청	13.0	10	31.2	31.8	33.2	37.8	24.5	5.9	26.0	30.7
외교부	-	1.6	4.0	6.1	5.7	6.0	4.3	-	3.9	4.0
KOICA	-	0.4	2.7	2.9	3.4	3.6	1.9	-	-	-
기획재정부	5.1	-	-	-	1.1	1.2	0.2	-	-	0.9
질병청	-	-	-	-	-	-	-	-	2.8	0.9
농림축산부	-	-	-	-	-	-	-	-	-	1.6
계	**18.1**	**12**	**37.9**	**40.7**	**43.4**	**48.6**	**30.8**	**5.9**	**32.7**	**38.2**

자료: 기획재정부

주 :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2024년 집행실적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2022년부터는 매년 40억 달러를 외화예산환전제도를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2~2025년도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계획액]

(단위: 백만원, 억 달러, 원/달러)

구분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	2025년 계획안(B)
계획액	원화 기준	4,520,000	5,160,000	5,204,000	**6,442,802**
	달러 기준	40	40	40	**40**
계획 당시 원/달러 환율		1,130	1,290	1,301	**1,380**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계획안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40억 달러에서 편성기준환율인 1,380원/달러를 곱한 5조 5,200억원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6조 4,42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총 40억 달러의 외화예산을 매월 여러 부처에 교부하는데, 각 부처에서 이를 전부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잔액이 다시 외평기금으로 회수되고 이후에 또다시 외평기금에서 외화예산을 교부하는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연말 기준으로는 40억 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출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6조 4,42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식은 실질적으로 외화예산 지출액을 중복계상하는 것으로, 40억 달러의 외화예산 환전액 총액에 대해서만 기금운용계획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9,228억 200만원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동 사업에서 과다 계상된 금액 9,228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응하는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외국환평형기금(85-852)) 역시 9,228억 2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7) 기후대응기금

가. 개요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1월에 신규로 설치되었음.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의 총 규모는 2024년 계획 대비 9.6% 증가한 2조 6,224억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등 수입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일부(7%,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로서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등 수입은 2024년 대비 20.2% 증가한 3,630억원, 일반회계 전입은 2024년 대비 15.9% 증가한 1조 3,319억원으로 추산되었음.

이외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전입금이 전년 수정계획과 동일하게 각각 3,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권기금 전입금은 2024년 대비 0.6% 감소한 1,07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전년수준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항 목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배출권매각대금 등	3,020	3,630	610	20.2
○ 일반회계(교통세)	11,494	13,319	1,825	15.9
○ 교특회계 여유재원	3,000	3,000	0	좌동
○ 전력기금 여유재원	2,000	2,000	0	좌동
○ 복권기금 여유재원	1,083	1,076	△7	△0.6
○ 공자기금 예수금	3,199	3,199	0	좌동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2	-	△122	순감
합 계	**23,918**	**26,224**	**2,306**	**9.6**

자료: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2024년 계획 대비 2.8%가 증가한 2조 3,233억원이 편성됨. 기금 사업비 중 약 37.1%는 기업 및 산업전반의 저탄소화 지원, 도시 및 국토의 저탄소화 지원, 탄소흡수원 기반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계획안에는 8,607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비의 24.5%는 탄소중립 유망기업 및 인력육성,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 저탄소 생태계 조성에 배정되었으며, 2025년 계획안에는 5,684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산업·고용·지역에 공정한 전환 부문에서 기금 사업비의 8.9%, 2025년 계획안 상 2,07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탄소중립 미래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에 사업비의 29.5%, 2025년 계획안 상 6,864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항 목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 사업비	22,602	23,232	630	2.8
- (온실가스 감축)	9,784	8,607	△1,177	12.0
- (저탄소 생태계 조성)	6,063	5,684	△379	6.3
- (공정한 전환)	1,973	2,077	104	5.3
- (탄소중립 기반구축)	4,782	6,864	2,082	43.5
○ 기금운영비	27	27	0	좌동
- (인건비)	20	20	0	좌동
- (기금운영비)	7	7	0	좌동
○ 정부내부지출(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 등)	286	501	215	75.2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003	2,464	1,461	145.7
합 계	**23,918**	**26,224**	**2,306**	**9.6**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1)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의 추계 적정성 제고 필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미래전략국)

< 현 황 >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172]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2항제7호[173]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편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590억 600만원이 증액된 3,487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 (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289,694	348,700	59,006	20.4

172)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은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외 수입을 말함.

173)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②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 검토의견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 및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입 계획안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지출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집행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의 기타재산이자외수입으로 편성된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은 유상할당 경매 수입금[174]과 시장조성자 예비분 상환 수입금으로 구성되며, 2025년 계획안은 각각 3,403억 3,000만원과 83억 7,000만원으로, 총 3,487억원이 편성되었음.

유상할당 경매 수입금 계획안은 해당연도의 '예상공급량'에 '예상평균낙찰률'과 '예상낙찰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는데, 2025년 계획안은 배출권 3,290만톤 공급을 목표로 낙찰률을 61%로 하고, 예상낙찰단가를 2022년과 2023년의 경매 평균 낙찰가인 16,958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금액임. 이는 2024년 계획액 2,795억 4,200만원 대비 21.8% 증가한 수준임.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내 용	편성액
유상할당 경매 수입금	3,290만톤 (예상공급량) × 61% (예상평균낙찰률) × 16,958원 (예상낙찰단가)	340,330
시장조성자 예비분 상환 수입금	-	8,370
합 계		348,700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출 자료

174)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유상할당된 배출권을 경매방식으로 공급하여 얻은 수익으로,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매월 1회 경매가 실시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그런데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수입 실적은 2021년 이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계획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에는 수입금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21.6%에 불과하였고, 2024년 또한 10월 기준 실적이 계획액의 33.0%로 저조하여 계획액의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계획 및 실적]

(단위: 천톤, 백만원, %)

구분	계획 수량	입찰 수량(A)	응찰 수량	낙찰 수량(B)	낙찰률 (B/A)	낙찰 단가	수입금		
							계획(C)	실적(D)	D/C
2019	7,950	8,090	12,195	7,950	98.3	29,238	204,600	232,174	113.5
2020	8,250	9,434	9,428	8,171	86.6	30,385	215,818	248,017	114.9
2021	18,243	20,463	12,999	11,177	54.6	26,373	490,325	294,461	60.1
2022	25,800	23,236	14,585	13,642	58.7	23,243	730,584	316,714	43.4
2023	20,600	19,010	8,265	7,888	41.5	10,672	389,340	84,088	21.6
2024.10	10,150	10,150	12,559	9,436	93.0	9,790	279,542	92,283	33.0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또한, 2025년 계획안은 낙찰률은 61%로, 낙찰단가는 16,958원로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배출권 경매 낙찰률과 낙찰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3년 기준 평균낙찰률은 41.5%, 낙찰단가는 10,672원에 불과하였고, 2024년에는 낙찰단가가 1만원 이하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임.[175]

[최근 5년간 연도별 배출권 평균낙찰률 및 낙찰단가 추이]

(단위: %. 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낙찰률	98.3	86.6	54.6	58.7	41.5
낙찰단가	29,238	30,385	26,373	23,243	10,672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출 자료

175) 2024년 10월 기준 평균낙찰률은 93.0%로 2023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입찰물량이 2023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 결과]

구분		입찰물량(톤)	낙찰물량(톤)	낙찰률(%)	톤당 단가(원)	수입금(백만원)
계획액		20,600,000	-	59.0	23,000	279,542
수납액		**10,150,000**	**9,436,200**	**93.0**	**9,790**	**92,283**
	1월	450,000	202,500	45.0	8,200	1,659
	2월	200,000	123,700	61.9	9,050	1,118
	3월	200,000	200,000	100.0	9,100	1,818
	4월	-	-	-	-	-
	5월	100,000	100,000	100.0	8,650	864
	6월	200,000	200,000	100.0	8,650	1,728
	7월	1,000,000	1,000,000	100.0	9,000	8,990
	8월	1,000,000	610,000	61.0	9,000	5,484
	9월	3,500,000	3,500,000	100.0	9,600	33,563
	10월	3,500,000	3,500,000	100.0	10,600	37,059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제출 자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과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5년도 계획안대로 배출권 경매 수입금이 수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짐.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4~2025년은 2021~2023년 대비 배출권 할당량 감소로 배출권 공급이 축소되어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배출권 수입 확대를 위하여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 배출권 이월한도 확대 등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2024~2025년 배출허용총량이 2021~2023년 대비 소폭 축소될 예정이나, 해당 기간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들의 배출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배출권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176] 배출권 초과공급으로 경매 참여 수요가 감소하여 계획보다 낙찰률과 낙찰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배출권 매각 수입 규모가 계획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임.

176)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2024. 10.), p.81-84 참조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기간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량]

(단위: 백만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배출허용총량	592	592	596	572	572
인증 배출량	591	572	550	-	-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

기획재정부는 2023년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실적 저조에 따라 44개 세부사업의 사업비 1,799억원을 삭감하고, 3개 세부사업에서 총 440억 8,600만원의 재원 없는 이월 조치를 한 바 있음.[177] 이러한 사업비 삭감과 재원 없는 이월은 당해연도 지출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함은 물론, 다음연도 기금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 및 낙찰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입계획안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지출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의 집행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7)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4. 10.)

(2) 사업 진행 상황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환경부)

< 현 황 >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열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물에너지 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84억 1,400만원이 감액된 65억 8,500만원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억 5,800만원이 증액된 2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6131-620)	14,999	6,585	△8,414	△56.1
-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7,579	4,823	△2,756	△36.4
-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80**	**238**	**158**	**197.5**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7,340	1,524	△5,816	△79.2

< 검토의견 >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은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12개월분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내역사업인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은 수열 등 물에너지에 특화된 홍보관을 건립하여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체험 중심의 교육·홍보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부지 내에 연면적 578㎡ 규모로 건립 중이며,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설계 과정에서 홍보관 입지선정 문제로 당초 계획 대비 6개월이 지연되면서 2022년 11월에야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기본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었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4개월이 추가로 지연됨에 따라 2023년 5월에서야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였음.

또한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로 하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건립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9월 착공하였으나, 계약 업체가 2024년 3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공사를 미시행[178]하면서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2024년 10월 건축공사 재계약 공고를 시행하여 2025년 6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 위탁비 5개월분으로 편성한 2024년 민간위탁사업비 8,000만원은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이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준공이 당초 예정하였던 2024년 7월에서 2025년 상반기 이후로 지연되었음에도 2025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관리 위탁비 12개월분인 민간위탁사업비 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178) 기초 타설 후 철골공사 진행하여야 하나, 선금 임의사용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철근 제작 및 반입 미진행 등 공사 미시행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사업 계획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2024년 계획		2025년도 계획안	
계획액	산출내역	계획액	산출내역
8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80 ※ 관리 위탁비 5개월분 · 인건비 : 59.6(안내사 2인, 청소·시설물관리 1인) · 유지관리비 : 188(전력료, 세금·보험료, 수선유지비) · 위탁수수료 : 1.6(위탁사업비의 2%)	238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38 ※ 관리 위탁비 12개월분 · 인건비 : 143(안내사 2인, 청소·시설물관리 1인) · 유지관리비 : 90(전력료, 보험료, 수수료 등) · 위탁수수료 : 5(위탁사업비의 2%)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시행주체인 환경부에 따르면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은 2024년 10월 건축 계약을 발주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하고, 2025년 7월 관리위탁 및 개관준비를 거쳐 2025년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관리위탁에 필요한 5개월분의 금액을 제외한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25년도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사업 계획안 2억 3,800만원 중 관리위탁에 필요한 5개월분의 금액으로 인건비 5,950만원, 유지관리비 3,750만원, 위탁수수료 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입장임.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2025년도 계획안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조정계획액	산출내역
합계	238	99	
인건비	143	59.5	· 안내사 2인×59 /12개월* 5개월 · 청소·시설관리 1인×25 /12개월 * 5개월
유지관리비	90	37.5	· 전력·수도료 17.1 /12개월 * 5개월 · 보험료(화재보험,제3자배상보험 등) 1.2 /12개월 * 5개월 · 법정수수료 7.6 /12개월 * 5개월 · 수선유지비 34 /12개월 * 5개월 · 물품구입비 10.1 /12개월 * 5개월 · 광고선전비 20 /12개월 * 5개월
위탁수수료	5	2	· 위탁사업비(인건비+유지관리비)×2%

자료: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물에너지 종합 홍보관 준공 지연에 따라 집행이 어려운 7개월분의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겠음.

(3)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 현 황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후위기 심화·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채택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술·탄소중립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탄소중립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계획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사업수행 부처로 하여 각 부처별로 30억원 씩 편성되어 있음.

[2025년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A)	2025년도 계획안(B)	증감 (B-A)	(B-A)/A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중기부) (6231-601)	7,700	10,950	3,250	42.2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	**3,000**	**신규**	**신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환경부) (6231-700)	11,250	3,000	△8,250	△73.3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	**3,000**	**신규**	**신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산업부) (6233-300)	3,750	3,000	△750	△20.0
-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3,750**	**3,000**	**△750**	**△20.0**

< 검토의견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은 부처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사업화 성과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마련 및 부처 협업을 통한 신청 기업에 대한 명확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별 정액 지원이 아닌 지원 상한을 정하고 있어 사후 정산을 통한 집행잔액 반납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지침 제·개정 시 정산 절차의 마련을 통해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은 기존에 각 부처별로 진행하던 탄소중립 사업화 관련 지원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개편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중립분야 기업 육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으로 부처별로 기후대응기금 각 30억원을 계획하고 있음.

환경부의 경우 2024년까지 수행하던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사업을 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하고,[179]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매년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3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3년간 지원(국고보조율 70%)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컨설팅,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증·검증 등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최대 10억원 씩 3개 기업에 3년간 지원할 계획이며, 저탄소 설비 투자·국제탄소무역 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 등 동 부처의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임.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180]하고 있는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개편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관련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과 수요기업의 컨소시엄에 대해 컨소시엄 당 최대 6억원 씩 5개 컨소시엄[181]에 3년간 지원할 계획임.

---

179) 유망한 녹색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진단을 통해 기술개발·사업화·국내외 시장진출 등 기업 중심의 맞춤형으로 최대 3년간 지원(사업화 자금 7.5억원 기술개발 2.5억원 등 기업당 연 최대 10억원 지원)하여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음.

180) 2024년에는 세부사업인 「산업계순환경제기반구축(6233-300)」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수행

181)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 과정(원료-생산-유통-폐기-재활용)에서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는 경제체제로,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공급망 상 자원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재생원료나 중간제품 공급기업만 단독으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 절차]

절차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기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 · 산업부 · 중기부 공동		
과제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신규과제 사업화계획서 작성 · 신청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생산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접수		
과제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사전검토 → 전문가평가(발표 · 패널심사) → 전문가간 조정 → 최종선정심의위원회 환경부 : 사업화 과제 확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 선정 산업부 : 사업화 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서면심사 → 현장점검 → 선정심의 등 중기부 : 사업화 과제 확정
협약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관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관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진도점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생산연구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과제 목표 달성 여부 중간 점검, (필요 시) 현장점검		
연차실적계획서 검토 및 단계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단계)실적 · 계획서 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단계 구분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차실적 · 계획서로 연차평가 대체 환경부 : 심의 및 사업화 과제의 다음 단계 계획 확정	-	-
최종평가 및 정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결과 활용 및 추적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종료 5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성과실적 검토 → 전문가 서면평가(현장조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종료 5년 이내 성과활용보고서 평가 성과실적 검토 → 전문가 평가(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설비지원 등 후속 사업 연계 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는 2027년까지 선정된 기업별로 3년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을 하고, 2027년부터 사업 추진결과의 환류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탄소 감축효과, 사업화 성과 등을 비교 ·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화를 하는 것 보다는, 중간제품 및 완제품 수요기업과 다수 공급망이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화 및 실증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화 성과 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성과 공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업화 분야의 탄소감축 성과 평가에 있어서 정성평가와 성과사례 공유를 넘어선 성과지표의 설정은 당장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182]으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절한 성과지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동 사업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을 통한 통합 공모 절차를 운영하여 사업 골라담기 등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협업 없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기업이 여러 부처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동시에 지원받거나, 선정절차 진행 후 중복지원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여러 부처에서 중복선정된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는 '사업 골라담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함량 미달의 기업이 예비 후보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각 부처의 성격에 따라 지원 기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구분에 따라 기업을 명확히 가르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통합공고 시 신청 기업이 부처별 선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부처별 협업을 통해 명확한 자격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사업 방식이 상이한데, 환경부는 내역사업 계획안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이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출연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로, 각 내역사업 계획안은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연금의 경우 이를 받은 기관이 집행잔액을 유보하여 사용할 수 있음.[183]

다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非연구개발사업은 관

182) 산업분야별로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산정방법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동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마련 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음
183) 국회의정연수원, 예결산검토 표준교재, 5p

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계획안으로 편성되어 있는 기업당 지원 금액은 정액이 아닌 최대 지원 한도이므로 이러한 사업 성격상 집행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음.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사업출연금(350-02목)[184]이므로, 동 사업의 집행잔액은 출연기관에 유보되기보다는 국고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사업비 정산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명 등이 매년 변경되어 왔으며, 이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 등을 제·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정산 여부 및 방식에 변동이 있었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관련 사업의 정산 현황]

연도	사업명(사업 방식)	정산여부	정산방식
2021년	재제도 기반 제품서비스 신사업 개발 실증화 (출연)	정산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추진하였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용역계약이 진행되어, 자체 정산 보고서로 정산 갈음
2022년	순환경제 신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실증화 지원 (출연)	미정산	-
2023년	순환경제 신사업 발굴, 실증화 (출연)	정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등 준용하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실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84)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용되는 비용

한편,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관련 사업인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을 당초 민간위탁사업비로 운영하였으나, 보조사업으로 진행함이 적절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023년부터는 사업방식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음. 환경부는 이를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반납할 예정임.

[환경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관련 사업의 정산 현황]

연도	사업명(사업 방식)	정산여부	정산방식
2020년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일반용역비)	정산	위탁사업 감독 및 검사조서 작성
2021년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일반용역비)	정산	위탁사업 감독 및 검사조서 작성
2022년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정산	위탁사업 감독 및 검사조서 작성
2023년	녹색혁신기업성장지원 (민간경상보조)	정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반납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자료 : 환경부

따라서 정부는 출연사업으로 계획안이 편성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 동 사업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시 정산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종료 시기를 고려한 면밀한 집행 관리 및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간 연계 필요
(탄소중립그린도시, 환경부)

< 현 황 >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분야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발굴·시행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를 저감·흡수하여 효율적으로 탄소중립을 구현 또는 지향하도록 도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6억원이 증액된 178억 8,000만원임.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56억원이 증액된 17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과 동일한 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B)	증감 (B-A)	(B-A)/A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6331-302)	2,280	17,880	15,600	684.2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680**	**17,280**	**15,600**	**928.6**
- 탄소중립도시 조성	600	600	-	-

< 검토의견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2026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첫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추가 사업계획이 없어 기존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임. 따라서 2026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분야 사업인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응 등을 패키지화하여 지역 맞춤형 이행사업의 발굴 및 시행을 지원하는 사업임.[185]

동 사업은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186]에 따라 구상되었고,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라 함) 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 탄소중립도시의 마중물 역할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현재 관련 사업을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187]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를 대상 지자체로 선정한 이후 추가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지 않음. 이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수원시와 충주시에 대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6

185)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165p
186) 2020. 12. 7. 관계부처 합동
18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년에 자연 종료될 예정임.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1개소당 5년간 240억원을 지원(총 사업비 400억원, 국비 60%)하는 것으로, 1년차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2~5년차에는 설계, 시설 설치 및 공사를 진행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임.

그런데 동 내역사업은 2022년 4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이후 재정투자심사, 지방비 추경 확보, 계약 심사 등 주요 행정절차로 인해 시행계획 수립 일정이 지연되면서 차기 일정 및 집행 계획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2년 48.4%, 2023년에는 32.8%로 실집행이 부진하였음.

[2022년 및 2023년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2년						2023년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	1,920	1,920	960 [930]	960	-	48.4	2,400 (1,736)	2,540	2,004 [834]	-	536	32.8
-탄소중립그린도시조성	1,920	1,920	960 [930]	960	-	48.4	2,400 (1,736)	2,540	2,004 [834]	-	536	32.8

이와 같이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2025년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약 928%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 12억원을 제외하고, 수원시와 충주시 2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비인 시설 설치 및 공사 비용으로 개소당 80억 4,000만원씩 총 16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 계획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2024년 계획		2025년도 계획안	
계획액	산출내역	계획액	산출내역
1,68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1,680 가. 탄소중립그린도시 조성(1,680) ・2개소×400억원(조성비 총액)×60%(국고 보조율)×3.5%(3년차 조성비 계획반영비율)	17,28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16,080 가. 탄소중립그린도시 조성(16,800) ・36,000(잔여조성비)×2개소×60%(국고보조율) ×40%(연부율)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1,200 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1,200)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련 교육 등 주민인식개선 관련 사회전환프로그램 운영

자료: 기획재정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 환경부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2025. 3.) 이후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등 분야별[188]로 조성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므로 분야별 공사발주 및 선금 지급으로 2025년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동 내역사업은 2026년에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주체인 환경부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한 2026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188)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기후변화 적응, 자원순환 촉진, 사회전환프로그램 등

둘째,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은 주요 사업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여 상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의 내역사업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①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② 도시에서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③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사업,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사업, ⑤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7년간 최대 10개소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기 위해, 2024년부터 매년 2개소를 지정하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내역사업인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안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2개소에 대한 개소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금액인 각 3억원[189] 씩 총 6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전부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도시 조성」으로 사업이 일원화 됨에 따라 2026년까지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는데, 두 사업을 비교해보면 사업의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89) 지자체 사업제안서 검토·분석, 대상지자체 사업대상지 세부현황조사·분석·진단,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계획 구상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세부사업별 타당성 검토,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회의비 등), 일반관리비로 구성

[탄소중립도시 지정 제도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과의 연계 검토]

탄소중립도시 지정제도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8조)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수원시·충주시)	상호연계 가능여부
개념 (법 29조 제1항)	탄소중립 관련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계획·구현하는 도시	가능
지정기준 (영 28조 제9항)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것]	[탄소중립 그린도시 주요 사업내용]	가능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사업	1. 탄소중립 기반구축(HW) 중 에너지 전환	
	2.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조성·확충 및 개선 사업	2. 탄소중립 기반구축(HW) 중 흡수원 확대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3. 탄소중립 기반구축(HW) 중 자원순환 촉진	
	5.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탄소중립 기반구축(HW) 중 기후변화 적응 5. 탄소중립 사회전환 프로그램(SW)	
	탄소중립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될 것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내용 포함 예정	가능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확보 완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예정	가능
지정취소 기준 (법 29조 제6항)	탄소중립도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예정으로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정취소 가능	가능

자료 : 환경부

환경부는 30년까지 10개의 탄소중립도시 지정·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부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므로 탄소중립도시 지정 개수는 유동적이라는 입장인데,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향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한편, 탄소중립 관련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탄소중립도시의 사업내용 등의 유사성으로 인해 상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 및 사업주체인 환경부는 탄소중립도시의 통합 관리를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편입하는 등 사업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을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유지관리비 조정 필요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산림청)

< 현 황 >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대응을 위하여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간정보(GIS) 기반의 산림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계획안은 2024년과 동일한 53억 5,400만원임.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의 2025년 계획안은 2024년 대비 1,600만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계획 (A)	2025년 계획안 (B)	증감 (B-A)	(B-A)/A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사업(6133-301)	5,354	5,354	-	-
- 디지털숲가꾸기DB	1,200	1,032	△168	△14.0
-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1,036**	**1,020**	**△16**	△1.5
- 탄소중립통계시스템	3,118	3,302	184	5.9

< 검토의견 >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유지관리비 편성액은 2024년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음.

「산림탄소통계데이터MRV관리체계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은 202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른 각종 산림경영 및 자원조사 활동 데이터의 수집·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2023년에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4년에는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고도화 및 활용 서비스 모델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25년 계획안에는 구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해당 유지관리비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구축비를 기준으로 유지관리요율 15%를 적용하여 7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4,663백만원 (22년~24년 시스템 구축비)	×	15% (유지관리요율)	700백만원

자료: 산림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여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190]

190)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52**

> 3 **시스템 유지관리비**
> ○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품목 현황」을 작성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 ○ HW 유지관리비
> - 기존 유지관리비를 토대로 적정 예산 반영
>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 상용 SW 유지관리비
>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수토록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 ○ 개발 SW 유지관리비
>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 하자보수기간**으로 하고,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관리를 지양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연도별 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축비 예산	1,793	1,834	1,036
구축내용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기반 마련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산림경영(8종)·자원조사(26종) 데이터 수집 체계 마련	산림경영자원 데이터 수집 확대(9종) 및 활용 서비스 모델 구축

자료: 산림청 제출 자료

따라서, 산림경영·자원조사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7억원 중 2024년도 시스템 구축분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1,036백만원×15%)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 소관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76억 5,400만원(△18.6%) 감소한 2,964억 2,000만원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경상이전수입은 40억 8,200만원 증액 편성(14.5%)되었고, 가산금은 694억 1,700만원(△28.5%),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는 23억 2,000만원(△2.5%)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세청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일반회계	364,074	364,074	296,420	△67,654	△18.6

자료: 국세청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527억 5,800만원(2.7%) 증가한 2조 40억원임.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6.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298억 6,700만원(2.2%) 증액된 1조 3,912억 1,2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85억 1,000만원(6.2%) 증액된 1,468억 6,000만원임.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4,659억 2,800만원(3.2%) 증액된 4,659억원 2,800만원임.

[2025년도 국세청 세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일반회계	1,951,242	1,951,242	2,004,000	52,758	2.7

자료: 국세청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가) 신규사업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 신규 사업은 없음.

나) 주요 증액사업

국세청의 2025년도 주요 증액사업[191]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디지털세 운영지원', '조사활동지원' 사업으로 총 3개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및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이 50억 6,800만원(112.0%)이 증액됨.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시행에 따른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신고를 지원하고 새로운 제도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OECD행정지침 추가 발표 예정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 홍보비 예산이 1억 2200만원(62.2%) 증액됨.

'조사활동지원' 사업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예산 91억 2,500만원이 증액됨.

[2025년도 국세청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B-A)/A
【일반회계(3개)】		21,381	21,381	35,696	14,315	67.0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133-303	4,524	4,524	9,592	5,068	112.0
디지털세 운영지원	1136-300	196	196	318	122	62.2
조사활동지원	2131-302	16,661	16,661	25,786	9,125	54.8

191)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

나. 검토의견

(1)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기준 공개 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과세국)

< 현 황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결정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할 목적으로 2020년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0억 6,800만원이 증액된 95억 9,200만원임.

[2025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133-303)	4,524	9,592	5,068	112
- 일반수용비	4,524	9,592	5,068	112

< 검토의견 >

국세청은 2025년도부터 시행하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고,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명 변경 및 내역사업 분류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소형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유사 매매사례가 적고 시가 산정이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 재산가액 평가방법(우선순위)]

① 상속·증여 대상 재산의 시가(매매가, 감정가 등)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② 상속·증여 대상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시가

▽

③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공시가격 등)

한편,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192] 개정에 따라 시가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국세청은 2020년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193]으로 신고한 금액이 시가와의 차이가 큰 상속·증여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1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함으로써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에 국세청은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38억 8,9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감정평가 대상을 '주거용 부동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11억 7,9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음.

[2025년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분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비 고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건수	169건	269건	○전년 대비 100건 추가 편성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건수의 1.4배 반영
	건당 감정평가수수료	1,679만원	1,684만원	
	소요예산	23억 5,200만원	45억 3,000만원	○21억 7,800만원 증액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대상 건수	29건	36건	○전년 대비 7건 추가 편성 -제도 확대 시행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건수의 3배 반영
	건당 감정평가수수료	9,034만원	1억 786만원	
	소요예산	21억 7,200만원	38억 8,300만원	○17억 1,100만원 증액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신규)	대상 건수	-	70건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을 2023년도 상속·증여된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결과 활용
	건당 감정평가수수료	-	1,684만원	○소형빌딩 등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자료 활용
	소요예산	-	11억 7,900만원	○신규 편성
총계		45억 2,400만원	95억 9,200만원	○전년 대비 112% 증가

* 주: 2024년도에는 당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건수 * 건당 감정평가수수료)의 83% 수준만 편성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국세청은 신규사업인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예산 규모 산출을 위해 2023년도에 상속·증여된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한 결과, 평가대상에 해당한 70건을 2025년도 예상 감정평가 대상 건수로 활용하였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주거용 부동산이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이 규모가 큰 법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보다 소형빌딩과 같은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과 상대적으로 성격이 유사하고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평균값이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소유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사용하였음.

2025년도에 새롭게 도입하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이 비주거용 부동산과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중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에 대하여 국가 예산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해당 재산의 실제 가액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 실시를 유도하려는 사업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0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도입 당시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고가이거나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고 공표하면서 감정평가 대상 금액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음.

그러나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자 사업대상에 선정된 부동산의 수증자 등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및 각급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194].

194)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조심-2024-서-0047),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고 그 선정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서울고등법원-2023-누-41903), 서울행정법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과세관청은 관련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결산심사 당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또는 고려요소를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이에 2023년 7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①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가액과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추정시가가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②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개하였음[195].

국세청은 2025년부터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 본 사업은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감정평가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의 정확한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와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그런데 ‘초고가’는 주관적인 개념에 해당하여 기존의 비주거용 부동산보다 평가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더욱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개시 이전에 판단기준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정확한 재산가액에 근거한 세금을 부담·납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지만 적정한 과세수준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역할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으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납세자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하였음(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46).

19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2580호, 2023. 7. 3.)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 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면서 예산이 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국세청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시행 이전에 구체적인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인 감정평가 실시를 유도하여 행정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과 별개의 내역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대상 재산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디지털세 운영지원 관련 국가간 회의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디지털세 운영지원, 국제조세관리관실)

< 현 황 >

「디지털세 운영지원」은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196]가 최초 시행됨에 따라 OECD 및 양자회의 등 국제논의 참여, 대상기업을 위한 간담회·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한 제도 홍보 및 성실신고 지원, 과세논리 강화를 위한 전문자문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임.

[2025년도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디지털세 운영지원 (1136-300)	196	318	122	62.2

< 검토의견 >

국세청은 국가간 회의 관련 적정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국가간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10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197]는 143개국 중 138개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제[198] 중 글로벌최저한세(필라2)는 2022년말 국내입법[199]이 완료되어 2024

196) 글로벌최저한세는 2021년 10월 OECD에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제도로 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인 경우 추가과세하는 제도

197) OEDC/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주도

198) OEDC/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디지털세제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1과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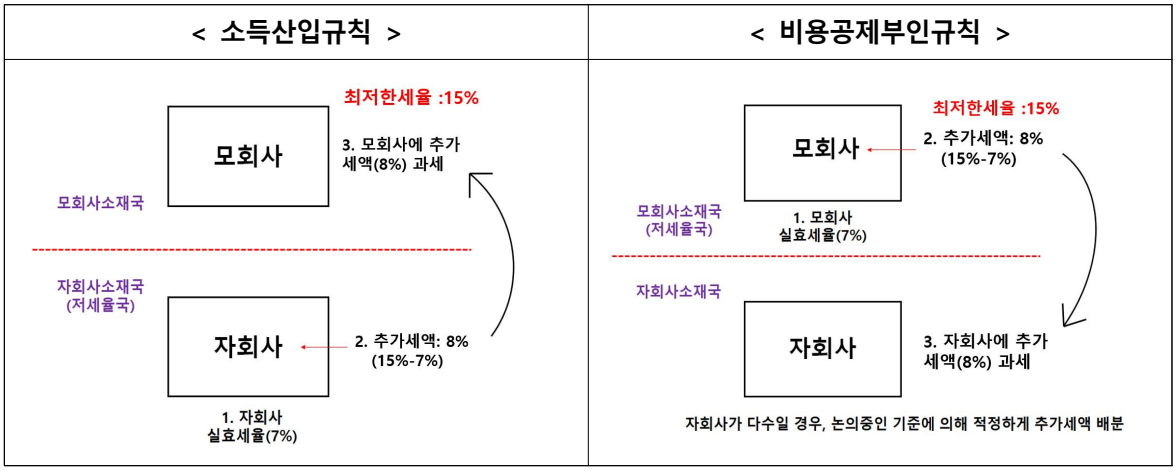
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음.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용되며,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부담세액이 소재지국별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세액만큼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임.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기본 개념]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소득산입규칙]**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 **[비용공제부인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



자료: 기획재정부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최초 시행됨에 따라 이행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제공·설명회 실시 및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6,400만원, 디지털세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비 6,000만원, OECD 및 양자간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억 8,9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19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제60조~제86조)

이중 2025년도 OECD 및 양자간 회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는 2024년도 예산 9,200만원 대비 105.4% 증액된 1억 8,900만원으로, 디지털세 과세 문제와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인한 세원잠식 문제 해결을 위해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OECD 참석은 13회, 양자간 회의 개최는 4회로 계획하고 있음.

[2025년도 디지털세 운영지원 관련 국외업무여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2025년도 예산안	예산안 산출근거
OECD 회의 참석	161,468천원	- 항공비: 3명×2,434천원×13회=94,961천원 - 체재비 : 숙박비(4일×3명×13회)+일비·식비(6일×3명×13회) = 66,507천원
국가간(양자) 회의 개최	27,532천원	① (베트남) 2,829천원 * 1회 = 2,829천원 - 항공권: 3명 × 303천원 × 1회 = 910천원 - 체재비 : 숙박비(3일×3명×$69×1회)+일비·식비(4일×3명×$67×1회) = 1,919천원 ② (미국) 11,136천원 * 1회 = 11,136천원 - 항공권: 3명 × 2.358천원 × 1회 = 7,075천원 - 체재비 : 숙박비(3일×3명×$150×1회)+일비·식비(5일×3명×$111×1회) = 4,061천원 ③ (영국) 7,954천원 * 1회 = 7,954천원 - 항공권 : 3명 × 1,407천원 × 1회 = 4,220천원 - 체재비 : 숙박비(3일×3명×$90×1회)+일비·식비(5일×3명×$74×1회) =3,734천원 ④ (일본) 5,285천원 * 1회 = 5,285천원 - 항공권 : 3명 × 558천원 ×1회 = 1,673천원 - 체재비 : 숙박비(3일×3명×$150×1회)+일비·식비(4일×3명×$111×1회) = 3,612천원

자료: 국세청

디지털세는 법률·집행의 적격여부 감사를 위해 OECD 주관 하에 국가간 상호평가를 하게 되므로 OECD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고,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정보공유 및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국가간(양자) 회의를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2024년도 OECD 회의 참석 및 국가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국가간 회의의 경우 9차례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2024년 10월 현재 추진실적은 전무하고 연말까지 2차례(호주 및 일본)의 국가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024년 10월 기준 OECD 회의 참석 및 국가간 회의 추진 실적]

구분	OECD 회의참석	국가간(양자) 회의 개최
횟수	54회(화상 48회, 대면 6회)	2회 예정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디지털세 이행준비를 위한 국내기업 중심의 사업설명회 추진과 증가한 OECD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인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는 국가간 회의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디지털세 운영지원 사업 관련 국가간 회의의 금년도 집행실적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도 예산안이 실소요 이상으로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은 국가간 회의 관련 적정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부터 국가간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근로자조합교부금 제도 변경을 반영한 예산 집행 필요 (납세조합법정교부금, 개인납세국)

< 현 황 >

「납세조합법정교부금」은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과세기반이 취약한 사업자들의 세원관리를 위해 조직된 납세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납세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 징수납부세액의 일정 비율만큼 국세청장이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음.

「납세조합법정교부금」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3,500만원 감액한 2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납세조합법정교부금(2136-300)	2,466	2,431	△35	△1.42
- 민간경상보조(320-0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466	2,431	△35	△1.42

< 검토의견 >

2024년 세법심사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액수의 하한 조정 등 교부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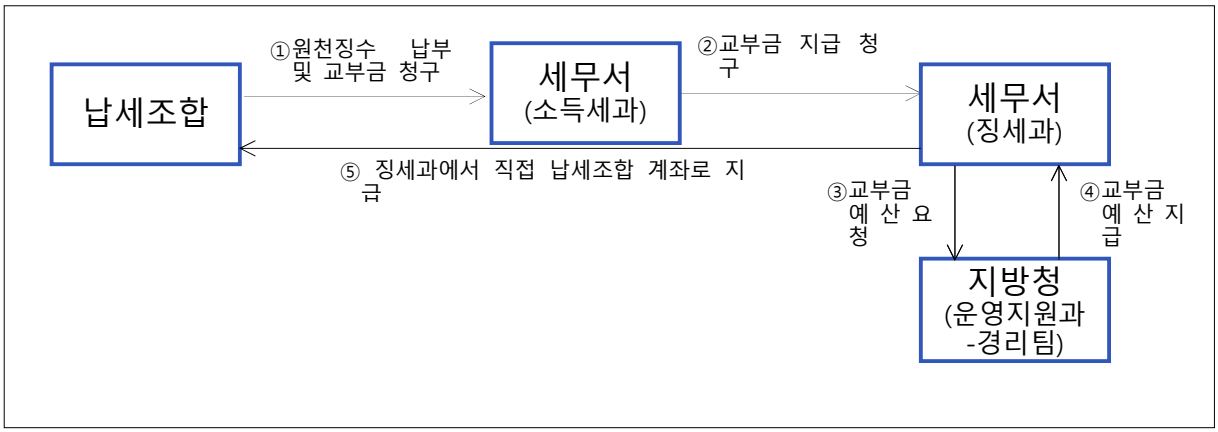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외국기관 등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와 농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등 과세기반이 취약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세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득세법」(제149조, 제150조 및 제169조)[200]은 이들 근로소득자

200) 「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와 영세사업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의 소득세를 징수·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공제하고 국세청장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조합을 통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장려하고 있음.

근로자조합은 외국기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50명 이상으로, 사업자조합은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서 제출하면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지방 국세청장이 승인·관리하게 됨.

[납세조합법정교부금 교부 절차]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에서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50조(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월 징수 납부세액의 2%(근로자조합은 2014년 1월부터 2%, 사업자조합은 2018년 1월부터 2% 적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201]

[연도별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근로자조합				사업자조합			
	수	징수세액	교부금 청구액	교부금 지급액	수	징수세액	교부금 청구액	교부금 지급액
2022년	20	148,447	2,840	2,840	27	389	8	8
2023년	19	124,346	2,337	2,337	14	324	6	6
2024.9월	20	119,394	2,387	2,183	22	186	4	3

자료: 국세청

한편, 정부의 ① 2024년 세법개정안은 과세인프라 구축 고도화 등 과세기반의 개선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자 납세조합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②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 및 제도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근로자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의 최저한을 2%에서 1%로 축소할 계획임을 밝힘.[202]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납세조합 교부금제도가 도입된 1962년에 비해 납세지원 인프라가 고도화되었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세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조합비를 부담하면서 납세조합에 가입할 유인이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법개정 예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① 최근 6년 평균 징수세액 감소율을 반영한 사업자조합교부금 600만원을 반영하고, ② 근로자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액수를 현행과 같은 월 징수 납부세액의 2%로 계산하여 예산을 산출하였음.

따라서 향후 2024년 세법심사 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근로자조합 교부금을 받는 기업이 20여개에 불과하여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201) 지급액 상한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202)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7.25.
근로자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최저한도 축소는 세법개정안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혜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과세인프라가 고도화되어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조합교부금 액수의 하한을 조정하고 납세 대상기업에 대한 전자신고를 강화하는 등 근로자조합 교부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 등을 반영한 위탁대상 선정 필요 (징수위탁수수료, 징세법무국)

< 현 황 >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국세 체납자 중 인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징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16억 2,300만원임.

[2025년도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징수위탁수수료(2232-303)	1,623	1,623	-	-
- 일반수용비	1,623	1,623	-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 법적 권한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고액체납 위탁을 축소하고 소액·단순채무 위탁비중을 확대하여 징수위탁 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등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203],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

203) **「국세징수법」**
제11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

부되지 아니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의 주소·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전화, 방문상담 등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3년부터 관할세무서장의 국세 체납액, 2014년부터 중앙관서(국방부, 산림청 등)의 장의 국가채권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부터는 현장밀착 관리체계로 전환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관할 세무서장은 ①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는 위탁받은 체납액 중 징수한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 체납 징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징수위탁수수료를 상향조정하였고, 이를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예상위탁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와 동일하게 16억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징수위탁수수료]

징수금액 구간	징수위탁수수료	
	개정 전	개정 후(2025.1.1.부터 시행)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10만원+ (1백만원 초과분 × 100분의 8)	징수금액 × 100분의 10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42만원+ (5백만원 초과분 × 100분의 8)	50만원+ (5백만원 초과분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 (1천만원 초과분 × 100분의 5)	90만원+ (1천만원 초과분 × 100분의 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 (1억원 초과분 × 100분의 2)	810만원+ (1억원 초과분 × 100분의 5)
5억원 초과	1,332만원	2,810만원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 1]

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그런데, 2023년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를 위탁한 총 위탁금액은 6조 1,296억원이었으나, 총 징수금액은 453억원, 총 징수율은 0.74%로 전년대비 0.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매년 1억원 초과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율이 1억원 이하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율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금액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체납액 징수 현황]

(단위: 원, 건, %)

연도	총 위탁금액(건)*	총 징수금액(건)**	총 징수율
2020년	**6조 1,471억원 (423,603건)**	**397억원 (30,871건)**	**0.65%**
1천만원 미만	1,239억원 (48,980건)	58억원 (7,008건)	4.7%
1천만원~1억원	2조 3,037억원 (251,133건)	283억원 (22,304건)	1.2%
1억원~5억원	3조 7,195억원 (123,490건)	56억원 (1,559건)	0.2%
2021년	**6조 3,267억원 (527,081건)**	**435억원 (31,384건)**	**0.69%**
1천만원 미만	1,404억원 (57,952건)	72억원 (9,045건)	5.1%
1천만원~1억원	2조 9,662억원 (348,285건)	305억원 (20,979건)	1.0%
1억원~5억원	3조 2,201억원 (120,824건)	59억원 (1,360건)	0.2%
2022년	**6조 2,519억원 (552,761건)**	**477억원 (41,083건)**	**0.76%**
1천만원 미만	2,144억원 (105,707건)	233억원 (29,001건)	10.9%
1천만원~1억원	2조 6,719억원 (318,922건)	211억원 (11,673건)	0.8%
1억원~5억원	3조 3,656억원 (128,132건)	33억원 (409건)	0.1%
2023년	**6조 1,296억원 (480,991건)**	**453억원 (44,044건)**	**0.74%**
1천만원 미만	2,011억원 (101,742건)	128억원 (17,844건)	6.4%
1천만원~1억원	2조 1,654억원 (257,210건)	262억원 (24,308건)	1.2%
1억원~5억원	3조 7,631억원 (122,039건)	63억원 (1,892건)	0.2%
2024년 6월	**6조 1,399억원 (463,625건)**	**222억원 (21,054건)**	**0.36%**

** 주1: 총 위탁금액 = 전년말 위탁금액 + 해당연도 위탁금액 - 해당연도 해지금액
** 주2: 총 징수금액 = 총 위탁금액 중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연도에 징수한 총 금액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참고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개하는 총 징수금액 및 징수율은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를 위탁한 금액 중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체납액을 합산한 수치로, 최근 3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제로 징수한 순 징수금액은 총 징수금액의 40% 수준에 불과함.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체납액 징수 이후 국세청에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액 징수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등을 심사·검증하여 수수료 지급을 결정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징수금액 대비 수수료 지급액의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8.27%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받은 수수료율과 현행 법령상 징수금액 구간별 수수료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질적으로 징수한 체납 건은 대부분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체납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순 징수금액 및 수수료율]

(단위: 억원, %)

연도	총 징수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순 징수금액*(A)	수수료 지급액(B)	수수료율** (B/A)
2020년	397	212	17	8.01%
2021년	435	188	15	7.98%
2022년	477	190	16	8.42%
2023년	453	176	15	8.52%
2024년 6월	222	141	12	8.51%

** 주1: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한 대상 징수금액
** 주2: 수수료율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대비 실제 지급 수수료 비율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비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징수위탁수수료율을 상향조정하여 고액체납 징수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단순한 납부독려 안내문 발송, 전화, 방문상담 등 단순한 사실행위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재산의 압류나 체납자 감치 신청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의도적인 고액체납 건을 징수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직 측면에서도 국세청의 체납분야 직원은 총 2,140명[204]인 반면, 한국자산관

204) 본청 11명, 지방청 165명, 세무서 1,964명

리공사의 징수업무 전담인력은 57명에 불과하여 6조원이 넘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하여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실적, 법적 권한 및 조직 등을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고액체납 위탁을 축소하고 소액·단순채무 위탁 비중을 확대하여 징수위탁 규모를 하향조정하는 등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도 결산심사 당시 시정요구사항으로 “국세청은 고액·악성채무에 집중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액·단순채무에 집중하는 이원화 추징 방식 등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징수 체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

(5) 내역사업에 부합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예산안 편성 필요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개인납세국)

< 현 황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납세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금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2억 6,500만원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진납세의식 제고’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세금교육’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한 문예작품 공모전 및 세금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 내역사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3132-300)	**3,265**	**3,265**	-	-
- 세금신고·납부안내	698	698	-	-
- 세금안내책자 제작	330	330	-	-
- 선진납세의식 제고	**678**	**658**	**△20**	**△2.9**
- 청소년세금교육	**510**	**530**	**20**	**3.9**
- 대중매체 홍보	300	300	-	-
- 온라인홍보활성화	425	425	-	-
- 조세박물관 운영	324	324	-	-

< 검토의견 >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을 위한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에 부합하도록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사업 중 ‘선진납세 의식 제고’에 편성된 ‘학생세금 문예작품 포상금’을 내역사업에 부합하도록 ‘청소년 세금교육’으로 편성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국세청은 동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사업 중 ‘학생세금 문예작품 포상금’ 2,000만원을 ‘청소년 세금교육’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음.

그런데 ‘선진납세 의식 제고’ 사업에는 이관된 ‘학생세금 문예작품 포상금’ 외에 일반용역비로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선진납세의식 제고’ 및 ‘청소년 세금교육’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비목	세부내역	예산안
선진납세의식 제고	일반수용비	성실납세 공모전 운영 및 콘텐츠 제작	120
		포스터 제작	11
		세금을 아는 주간	49
		세정홍보물 제작	148
	일반용역비	KTV 국세 매거진 제작 운영	200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120
	포상금	성실납세 공모전 운영 상금	10
청소년 세금교육	일반수용비	세금교과서 및 세금교육교재 제작	186
		청소년 세금 우수작품 전시운영비	78
		청소년 세금 작품 모음집 발간 등	30
		청소년 세금교육 콘텐츠(GBL 등) 제작	155
		청소년 세금 작품전 일반운영비	61
	포상금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운영 상금	20

동 사업은 국세청(국립조세박물관, 지방청 홍보관 등)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의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찾아가 매월 2회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4년간 35개 학교, 2,18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음.

[2025년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지원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건, 명)

연도	개최 건 수			참여학생 수
	학교	지역아동센터	기타	
2021년	10	0	1	450
2022년	13	0	0	620
2023년	12	1	1	423
2024년 9월	10	0	1	692
계	35	1	2	2,185

자료: 국세청

동 사업은 '어린이 직업체험 운영'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으로 일반용역비 비목(210-14)이 존재하는 '선진납세의식 제고'로 계속 편성되어 왔었다 하더라도 유사한 내역사업 예산을 비목에 따라 두 가지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청소년 직업체험 운영' 또한 내역사업에 부합하도록 '청소년 세금교육'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6) 세금포인트 제도 관련 인지도 조사 등 실시 및 모범납세자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현 황 >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되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납세자보호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납세자 권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발굴 및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3억 1,200만원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금포인트제도 홍보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다른 내역사업인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00만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납세자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3133-300)	1,303	1,312	9	0.69
-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	200	425	225	112.5
-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운영	70	70	-	-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수단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지도 조사, 맞춤 홍보방안 마련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우선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 마련·공개를 통한 공정성 제고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수단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지도 조사, 맞춤 홍보방안 마련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우선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5년도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예산은 2024년 대비 212.5% 증가한 4억 2,500만원으로, 그간 세금포인트의 사용률 저조 및 사용처 확대 필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2023년부터 홍보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1,100만원 집행, 2023년 1억 2,000만원 집행, 2024년 2억원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4억 2,500만원까지 증액 편성됨.

[세금포인트 홍보예산 2022~2024년 집행현황 및 2025년 집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구분	집행(예상)액	홍보내용 및 산출근거
2022	11	마스크 등	11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합계	11	-
2023	100	지하철역·버스	59	세금포인트 홍보 동영상 송출 및 제도 홍보
		옥외전광판	2	세금포인트 홍보 동영상 송출
		영상 제작	2	세금포인트 홍보 동영상 송출
		타포린백 등	57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합계	120	-
2024	200	대중매체(TV 광고)	151(예정)	하반기 TV광고 송출 예정
		포스터 등	3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합계	3	-
2025	425	대중매체(TV, 인터넷)	190	TV 송출: 30, 포털사이트: 60 영상제작비: 100
		서울역 및 지하철	132	서울역: 16.5 서울 및 지방 지하철: 115.5
		시내버스	50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50
		코엑스 스크린	33	
		리플릿 및 포스터	20	
		합계	42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매년 홍보예산이 증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수단을 마련하기보다는 홍보 매체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홍보 매체가 확대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는 용이하지만, 세금포인트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맞춤 홍보와 안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수단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지도 조사, 맞춤 홍보방안 마련 및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우선 실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마련·공개를 통한 공정성 제고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모범납세자 제도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제도로서, 1967년부터 매년 세법 등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의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발하여,

철도 운임 할인 및 공항 출입국 우대 등과 같은 사회적 우대 혜택과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1,060명을 신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음.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구 분	법 인	개 인
성실납세 사업자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사회공헌 사업자 및 사회공헌 근로자	추천기준일 이전 2년간 연간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기부, 봉사, 지역사회공헌, 고용확대,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한 자	

자료: 국세청

[2024년 기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구분		우대혜택 내용
세정상 우대	세무조사 유예	○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순환조사 대상자 이거나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되는 경우 배제
	정기조사 시기 선택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 가능
	납세담보 면제	○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납부기한 등의 연장·납부고지의 유예 시 2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비즈니스센터의 사무·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휴대용 통·번역기 대여 서비스 시행
사회적 우대	철도운임 할인	○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 시 주중 철도 운임 할인(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소 10%, 최대 30% 할인)
	무역보험료 할인	○ 모범납세자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이용시 무역보험료 할인(20%) 및 가입한도(50%) 우대
	공항출입국 우대	○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동반 3인까지 가능)
	무료주차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

자료: 국세청

그러나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국세체납,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사유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정 소득을 세금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쉽지 않아 고소득자와 법인 중심의 모범납세자 선정에 대한 기준 논란과 과도한 우대혜택 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모범납세자 선정취소 사유별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계	150	28	16	15	27	42	22
소득금액 경정	42	4	2	4	9	16	7
국세체납	36	11	9	3	6	4	3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20	3	1	1	3	9	3
기타[205]	52	10	4	7	9	13	9

자료: 국세청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납세 실적을 제고하고, 납세자에게도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모범납세자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은 모범납세자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없고, 현재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매년 모범납세자 추천(선발) 공고 시마다 내부 결정에 따라 변경되어 공정성 논란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공개를 통한 공정성 제고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5) 수입금액 경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세법상 의무 불이행 등

(7)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홍보대상 지역 확대 및 성실제출·실태분석 대상 근로자 축소방안 마련 필요(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

< 현 황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기존의 연·반기·분기별에서 매월 수집으로 단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복지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억 3,000만원이 감액된 25억 5,600만원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의 2025년도 일반수용비는 ① 제도 홍보비 15억 4,900만원, ② 안내문 제작 및 우편봉투 구입 2억 5,800만원, ③ 업무매뉴얼 등 제작 9,000만원 등 총 18억 9,700만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4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음.

[2025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3,390	2,560	△830	△24.5
- 일반수용비	2,303	1,897	△406	△17.6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6]의 후속조치로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임.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8개 인적용역 업종[207] 종사자에게 사업장

206) 2020년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07)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208]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함.

당초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됨.

[실시간 소득파악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대상별 추진일정]

대 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세법개정 (실시간소득파악)	인적용역, 일용근로 (2021.7월～)	용역제공자 (2021.11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2024.1월～)	상용근로자 (2026.1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산재보험 적용 특고 등 (2021.7월～)	플랫폼 종사자 (2022.1월～)	기타 특고 (2022.7월～)	전국민 (2026.1월～)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성실제출 및 실태분석 점검대상과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관련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관련 제도 홍보비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에 대중매체 홍보에 14억 8,500만원,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에 6,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임.

208)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25년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관련 홍보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상세	산출근거	금액
대중매체 홍보	케이블 등 TV 송출	4개사 × 33.5백만원 × 3개월	402
	라디오 송출	2개사 × 41백만원 × 3개월	246
	인터넷 광고	4개사 × 20백만원 × 3개월	240
	옥외 전광판 등 광고	6개사 × 17.2백만원 × 3개월	309
	영상 제작	2종 × 125백만원	250
	CM 제작	2종 × 4백만원	8
	배너 등 제작	3종 × 10백만원	30
	소 계	-	1,485
리플릿 등 인쇄물 제작	소득자료 제출 리플릿 등	300,000매 × 155원	47
	Y배너 제작	450개 × 14,000원	6
	상담용책받침 제작	8,000개 × 700원	6
	안내포스터 제작	2,000부 ×2,500원	5
	소 계	-	64
합 계		-	1,549

자료: 국세청

특히, 홍보예산의 77.3%인 11억 9,700만원이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집행될 계획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V, 라디오 송출, 인터넷 배너광고 및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광고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대중매체 홍보 관련 세부계획(안)]

구분		예산안	월평균 광고비	월평균 송출횟수
TV 송출	YTN, 연합뉴스TV,		5,000만원	60회
	IPTV 2개		1,700만원	1,500,000회
라디오 송출	MBC, CBS		66만원	62회
인터넷 광고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조세전문지		배너 1개당 2,000만원	700만회
옥외 전광판 등 광고	KTX(서울역, 부산역)		3,000만원	9,000회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000만원	3,000회
	서울역 앞 전광판		1,500만원	-
	서울지하철		2,700만원	6,000회
	광화문 고려빌딩		1,000만원	3,000회
	지하철 3호선		1,100만원	3,000회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2025년도 대중매체 홍보 관련 세부계획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 옥외 전광판 등의 광고는 KTX(서울역·부산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앞 전광판, 서울 지하철(1~4호선) 역사, 광화문 고려빌딩 전광판, 지하철 3호선 행선기 광고 등과 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가 2년 유예된 이후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옥외 전광판 등 광고가 수도권 지역에만 집중되어 홍보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부산 등 주요 광역시에도 지하철 노선이 있고, 지하철 역사 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홍보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외에도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도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실제출 및 실태분석 점검대상과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소득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 간이사업자, 상용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①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득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의무를 안내하고, ② '성실제출 안내문' 발송을 통해 소득자료 미제출 사업자[209]와 불성실 제출 혐의자[210]를 점검하는 한편, 소득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③ '실태분석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득종류 불성실 제출 혐의자[211] 점검 및 업종코드 오류신고에 대한 성실제출 안내[212]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안내문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도 예산 2억 5,100만원 대비 34.3% 감액한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9) 기한 내 소득자료를 미제출한 사업자에게 기한후 제출을 독려하는 안내
210)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출국, 군복무, 사망 등)를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점검
211)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오류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점검
212) 고용보험 적용 업종(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업종)을 업종이 불분명한 기타자영업으로 잘못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점검

[최근 3년간 안내문 제작 예산(안) 산출근거]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통합안내	·일용·간이(사업)·용역제공자 : 40만명×55원×43%×12회 ·기타소득 : 9만명×150원×43%×5회 ·상용근로 : 178만명×55원×43%×7회	·일용·간이(사업·근로)· 용역제공자 : 103만명×40원×47%×12회 ·기타소득 : 5.1만명×40원×47%×11회	·일용·간이(사업) : 12만명×40원×24%×12회 ·용역제공자 : 5.6천명×40원×12회 ·기타소득 : 7만명×40원×77%×12회 ·상용근로 : 165만명×40원×46%×3회
성실제출	·일용·근로 : **72만명**×150원×**3.5%**×4회 ·간이(사업) : **77만명**×150원×**0.7%**×4회 ·상용근로 : **184만명**×150원×**0.7%**×4회	·일용·근로 : **72만명**×40원×**4.1%**×1회 ·간이(사업) : **77만명**×40원×**1.1%**×4회 ·상용근로 : **184만명**×40원×**0.7%**×4회	·일용근로 : **73만명**×40원×**4.1%**×1회 ·간이(사업) : **87만명**×40원×**4.0%**×1회 ·상용근로 : **190만명**×40원×**0.6%**×1회
실태분석	·일용·근로 : **72만명**×150원×**0.8%**×6회 ·간이(사업) : **43만명**×150원×**1%**×6회	·일용·근로 : **72만명**×40원×**0.8%**×2회 ·간이(사업) : **36만명**×40원×**3%**×1회	·일용·근로 : **73만명**×40원×**16%**×1회 ·간이(사업) : **48만명**×40원×1회
업종코드 신설 안내	12만명×150원×10%×1회	11만명×40원×10%×1회	-
분기별 사전 안내	-	-	4천명×40원×4회
합계		251,000천원	165,000천원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성실제출 및 실태분석 안내문 발송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점검대상과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3.3%의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가짜 3.3 문제' 등 사회보험료 부담 회피를 위해 소득 종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업종코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은 고용보험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성실제출 및 실태분석 안내문의 발송을 통해 소득 유형 또는 근로자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외에도 동 제도의 필요성 및 중요도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실제출 및 실태분석 점검대상과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8) IOTA 회의 참석 관련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국제조세관리관실)

< 현 황 >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는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등 국제조세분야 업무를 위한 기본활동 수행, 국제회의 참석과 외국기관과의 세무협력, 국제조세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된 25억 7,600만원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의 내역사업인 「IOTA(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 회의 참석」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5,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03)	2,142	2,576	434	20.3
- IOTA 회의 참석	-	158	158	순증

< 검토의견 >

「IOTA 회의 참석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IOTA(Intra-European Organization of Tax Administrations)는 유럽지역 회원국들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공통과제 해결을 위하여 주요 세무 현안을 연구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로서 2024년 9월 현재 4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2021년 IOTA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음.

[IOTA 개요]

○ 설립목적: 조세행정 공통과제 및 세정발전을 위한 경험 공유
○ 설립: 1996년 최초 설립, 부다페스트에 사무국 소재
○ 회원국 현황: 2024년 현재 총 43개 정회원국 활동
※ 우리나라는 2021년 준회원국으로 가입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젠	벨기에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몬테네그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스르프스카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5년도 IOTA 회의 참석 관련 예산으로 고위급(청장급) 회의 참석 2회 및 실무자급 회의 참석 11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1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유럽 과세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최신 국제조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서·북유럽 지역에 비해 세무환경이 열악한 동유럽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2025년도 IOTA 회의 참석 관련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비목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IOTA 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220-02)	158	○ 고위급(청장급) 회의 참석 **2회**: 83백만원 - 항공료: 60,800천원 · (2명×8,000천원+6명×2,400천원)×2회 - 체재비: 21,746천원 · 숙박비(4일×8명×2회) + 일비·식비(6일×8명×2회)
			○ 실무자급 회의 참석 **11회**: 75백만원 - 항공료: 52,800천원 · 2명×2,400천원×11회 - 체재비: 22,679천원 · 숙박비(3일×2명×11회) + 일비·식비(5일×2명×11회)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2021년 IOTA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회의 참석 실적[213]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2021년 및 2022년의 총회는 화상회의로 갈음하였음. 2022년에는 실무자급 회의 5회 참석이 있었고, 2023년에는 총회 1회, 실무자급 회의 5회 등 총 6회의 회의 참석이 있었으며, 2024년은 9월 현재 기준 총회 1회, 실무자급 회의 1회 등 2회 참석 외에 실무자급 회의에 1회 참석할 예정임.

[2021년 가입 이후 IOTA 회의 참석 현황]

연도	회의명	기간	장소	참석자	의제
2024	총회	6.17~6.22	헝가리	차장 등 5명	과세당국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과학의 활용
	인사관리포럼	10.28~10.30	헝가리	2명	사람중심의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
	이전가격 사례연구	12.3~12.5(예정)	헝가리	3명(예정)	이전가격 사례연구
2023	총회	6.27~7.1	조지아	국제조세관리관 등 4명	디지털경제와 세무행정의 과제
	커뮤니케이션 포럼	10.9~10.14	헝가리	2명	디지털화와 납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
	디지털전환 모범사례 포럼	11.6~11.11	헝가리	2명	디지털혁신 필요성 및 변화에 대한 대응
	인사관리 포럼	11.13~11.18	헝가리	2명	미래지향적 인사관리
	자동정보교환(AEOI) 포럼	12.3~12.9	헝가리	3명	정보교환 활용 방법과 당면과제
	가상자산 포럼	12.11~12.15	헝가리	2명	가상자산 관련 과세당국의 위험과 기회
2022	총회	6.29~6.30	화상	3명	공정평등 과세실현을 위한 국세행정
	PCP 포럼	4.4~4.9	헝가리	3명	IOTA 운영방안 및 작업반 현황과 개선방안 제시
	커뮤니케이션 포럼	10.10~10.15	헝가리	3명	과세당국 및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소통의 측면
	인사관리 포럼	11.14~11.19	헝가리	2명	세무행정에서의 인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방안
	BEPS 이행측정 포럼	12.5~12.10	헝가리	3명	BEPS 대응을 위한 조치이행 관련
	자동정보교환 포럼	12.12~12.18	헝가리	3명	CRS 준수 강화를 위한 IT활용 소개 및 비준수 해결을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
2021	총회	6.30.~7.2	화상	국세청장 등 7명	IOTA 25주년 기념, 대한민국 준회원국 가입, 사무총장 선거 등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13)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IOTA 참석 예산은 국외업무여비 'OECD 등 회의참석'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 별도 편성·집행을 계획함.

과거 회의의 주요의제 등을 고려할 때, 「IOTA 회의 참석 사업」은 진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제교류협력 중심의 사업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과거의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고위급(청장급) 회의 참석 2회, 실무자급 회의 참석 11회라는 계획도 현실적으로 모두 집행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감액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IOTA 회의 참석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 현 황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세상담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도입, 우편물자동화센터, 정보화센터, 국세통신망 유지·관리 등 국세행정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억 1,800만원이 증액된 494억 6,100만원임.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9,900만원이 감액된 1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7133-500)	48,143	49,461	1,318	2.7
-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347	148	△199	△42.7

< 검토의견 >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시행시기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추가로 유예되더라도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법률 제19563호, 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가상자산소득은 당초 2022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점, 과세 시행 이전에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2차례 시행이 유예되었음[214]. 다만, 「법인세법[215]」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한편, 2022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재정위원회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를 승인하였고, 우리나라는 2023년 미국, 호주 등 47개 국가와 함께 CARF의 이행 확산을 위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음[216].

이후 정부는 2024년 9월 현행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에 암호화자산 정보를 추가하는 등 CARF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7]」과 국가 간 정보교환 개시시기를 감안하여 가상자산의 과세 시행시기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8]」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초로 의결한 2020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도에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필요한 가상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한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과세 시행 유예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2024년도 예산에는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탈세 혐의 분석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 사업비 및 소프트웨어 취득비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7월 기준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14) 2020년도 세법개정: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
2021년도 세법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1년 유예)
2022년도 세법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2년 유예)

215) **「법인세법」**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6) 현재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의거하여 108개국과 각국의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암호화자산 등 가상자산은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되어 현행 체계 하에서는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4. 9. 2., 의안번호 3523)

2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24. 9. 2., 의안번호 3518)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편성 및 집행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2021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에 필요한 가상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연구비	475	475	100.0%
2022	과세 유예에 따른 예산 미편성	-	-	-
2023	과세 유예에 따른 예산 미편성	-	-	-
2024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세무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ISP 사업비, 블록체인 지갑주소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추적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7	309 (7월 기준)	89.0% (7월 기준)
2025(안)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취득비	148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5년도 예산안에는 2024년에 도입한 상용 소프트웨어의 갱신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800만원 외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징수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는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개시되므로, 만약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 심사 결과 과세시기가 유예되지 않고 현재 공포된 법률에 따라 2025년도부터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시행된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세무조사를 위해 거래자료의 누적·통합관리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비 등 25억 3,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개요]



자료: 국세청

또한, 과세 시행이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 CARF 이행을 위해서는 거래자료의 수집 및 국가 간 교환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AXIS)[219] 내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수집 및 국가 간 통보·접수에 활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일반연구비 2억 8,4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임.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증액 필요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용	증액소요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구축	1,643
		가상자산 통계시스템 구축	527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감리비용	284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SW 구매	56
		가상자산 구축 조달수수료	20
		소계	**2,530**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암호화자산 정보교환(CARF) 기능 개발비*	**284**

*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AXIS) 내 CARF 관련 응용프로그램 추가개발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19)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등의 교환을 위한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AXIS: Automatic eXchange & analysis of foreign Information System)을 2015년부터 구축·운영중임.

앞선 두 차례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논의 당시 과세 인프라 미구축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점[220]에서 과세 시행에 대비한 가상자산 관리·통계 시스템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도 시행 유예에도 불구하고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2024년 세법개정안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시기가 또 한 차례 유예되더라도 추후 원활한 과세 시행을 위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기능 개발 관련 예산 등의 증액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20)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2020.1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 회의록(2020.11.12., pp. 37～49) 등 참고

(10) 구로세무서의 조속한 이전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임시청사 이전비용, 운영지원과)

< 현 황 >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은 국세청 세무서 청사, 관사시설 등의 이전 시 수반되는 이전비용 및 임시청사 임차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9억 6,500만원이 감액된 393억 5,000만원임.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의 내역사업인 「신규관서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5억 300만원이 감액된 1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임시청사 이전비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임시청사 이전비용(7138-303)	40,315	39,350	△965	△2.4
- 신규관서	**2,619**	**1,116**	**△1,503**	**△57.4**
- 계속관서	36,126	36,095	△31	△0.1
- 준공관서	1,570	2,139	569	36.2

< 검토의견 >

구로세무서 청사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보수비 지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속하고 적법한 청사 이전을 위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내역사업인 「신규관서 사업」은 당해연도 신규 청사 건립 착공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 임차료,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동대구세무서 신청사 착공 및 현청사 철거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 및 임차료 6억 1,200만원과 구로세무서 청사 임차료 5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로세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관서로, 국세 수납 및 환급 업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세원관리, 세무 상담 및 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청사 건물은 1976년 준공 후 48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건물 내·외벽 및 바닥에 균열 등이 존재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3,10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2011년, 2017년에 각각 실시한 안전도 평가결과 D등급과 C등급[221]을 판정받는 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5년간 구로세무서 청사 유지보수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 평균
시설장비 및 유지비	69	49	63	64	69	63
공사비	41	42	17	19	38	31
합계	110	91	80	83	107	94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국세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상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구로세무서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편성하여 구로구 내 교정시설 이적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원)에 청사 신축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222].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 계획액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2025년(안)
계획액	1,033	464	73	1,024	2,045	282	2,883
계획현액(A)	569	341	137	525	4	282	
집행액(B)	292	277	82	110	-	-	
집행률(B/A)	51.3%	81.2%	59.9%	21.0%	0%	0%	

221)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6조(신규사업의 타당성 심사) ① 기금청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안전도를 우선 심사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 심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1. 사무용·사업용 공용재산

가. 안전도(기본조사 용역 결과, 안전성 평가 결과, 안전진단 결과 등의 권고내용 감안, 안전등급 D(미흡) 이하는 신축으로 우선 고려, 안전등급 B(양호)~C(보통)은 리모델링으로 우선 고려)

(이하 생략)

구로세무서 청사의 경우 비축용 토지[223]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일반적인 청사시설 취득사업과 달리, 먼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현청사 부지와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이전 예정 부지를 교환한 이후 신청사 준공시까지 현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임[224].

구로세무서 신축·이전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을 2019년부터 2023년으로 계획하고 2019년부터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부지 확보방식 변경, 관련 업무에 대한 서울특별시 내 주관부서 선정 지연 및 구로세무서와 서울특별시 간 토지 소유권 이전 방식에 대한 이견[225]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준공시기를 2027년으로 연장하였음.

[구로세무서 이전사업 추진 경위]

	추진 경위
2019	구로세무서 이전대상 부지 매입 추진
2020. 6.	공공개발기획단을 서울특별시 주관부서로 선정 부지확보 방식 변경(매입→교환)
2023. 6.	토지지원리츠[226], 서울특별시에 이전대상 부지 기부채납
2024. 10.	**구로세무서-서울특별시 간 부지교환 협의 진행중**
2025. 上	부지교환 완료 및 임차 예정
2027	신청사 준공 및 청사 이전 예정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 및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사업”을 토대로 재구성

한편, 「국유재산법[227]」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

222) 국세청 청사시설의 건립은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은 본 사업을 통해 집행함.

22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224)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신청사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청사 부지는 기획재정부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구로세무서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현청사 부지에 대한 수요를 표명하여 부지교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225) 구로세무서는 사업시행자(토지지원리츠)가 서울특별시에 이전대상 부지를 기부채납한 이후 국세청과 서울특별시 간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자 한 반면,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와 국세청 간 소유권의 직접 이전이 이루어지고 서울특별시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

22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227)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公有)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하고, 이때 쌍방의 가격이 다르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함.

현 구로세무서 청사 건물 및 부지는 국가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으로서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부지와 교환한 이후 해당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므로 쌍방교환이 가능하지만 가격차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에 따르면 국유 부지가 서울특별시 소유 부지보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특별시에서 교환에 따른 차액을 국가에 금전납부해야 하는데, 최근 10년간 부지 교환 방식을 통해 세무서 청사를 이전한 사례가 없으므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교환 이후 차액 납부 등 사후 절차까지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음.

구로세무서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부지확보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청사 이전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일반적인 청사 이전방식과 달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간 교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부지교환이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때마다 월 5,600만원의 임차료 소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따라서 국세청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임차료 지출 최소화를 위하여 구로세무서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부지 교환 및 차액 납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본다.
③ (생 략)

제54조(교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①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생 략)
② ~ ⑪ (생 략)

관세청 소관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197억 8,100만원(△16.5%) 감소한 1,002억 9,100만원임.

2024년도 본예산 대비 벌금 및 과료는 19억 700만원(78.4%) 증가하였고, 몰수금 및 추징금은 5억 1,900만원(28.9%) 증가하였으며 면허료 및 수수료는 256억 2,200만원(△25.4%)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관세청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일반회계	120,072	100,291	△19,781	△16.5

자료: 관세청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 관세청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41억 2,500만원(△0.6%) 감소한 6,582억 5,000만원임.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59.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15억 9,200만원(3.3%) 증액된 3,577억 6,1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8억 1,900만원(2.4%) 증액된 353억 3,300만원임.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3,600만원(△5.9%) 감액된 2,651억원 5,600만원임.

[2025년도 관세청 세출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 일반회계	662,375	658,250	△4,125	△0.6

자료: 관세청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가) 신규사업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등 2개임.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사업은 「관세법」 제3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세정보원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한 사업이고,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사업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세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관세청 예산안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일반회계(2개)】	15,315	-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1441-503)	13,180	· 인건비 11,355, 경상경비 2,193 · 자체수입 △368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 (1442-531)	2,135	· 전략과제 1개 840 · 일반과제 3개 1,295 · 커스텀즈랩 사업단 운영 168

자료: 관세청

나) 주요 증액사업

2025년 주요 증액사업[228]은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사업,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사업,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사업 등 총 4개임.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사업은 2년차로, 시작품 제작 및 테스트 등을 위해 증액되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사업은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228) 2023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인건비 제외)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능력 강화, FTA 이행환경 점검, 원산지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내역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증액됨.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 사업은 기존 ‘FTA 및 국제협력’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내역사업 이관 및 상담인력 증원분이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사업은 X-ray 판독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X-ray 판독 훈련센터 구축 비용이 반영되어 증액됨.

[2025년도 관세청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본예산(A)	2025년도 예산안(B)	증감 (B-A)	(B-A)/A
【일반회계(4개)】	10,521	15,961	5,440	51.7
○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개발(R&D)	500	1,500	1,000	200
○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4,237	5,845	1,608	38
○ 납세자 권익보호	333	1,273	940	282.3
○ 관세인재개발원 운영지원	5,451	7,343	1,892	34.7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1)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감액 필요 (면허료 및 수수료, 심사국)

< 현 황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서 발급에 수반되는 수수료 등의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항목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품목분류사전심사수수료 등이 계상되고 있고,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1,010억 2,000만원)보다 256억 2,200만원(25.4%)이 감액된 753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718억 9,800만원, 기타 수수료[229] 35억원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95.4%)을 차지함.

[202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101,020	75,398	△25,622	△25.4

< 검토의견 >

최근 보세판매장 매출액 추이를 고려할 때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 예산을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시장의 발굴, 관련 규제완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230]에 따라 운영인의

229) 품목분류사전심사, 개항외출입허가,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증명서・통계표 등의 교부수수료 등
230) **「관세법」**

보세판매장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됨. 구체적으로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구간에는 0.1%, 2천억원 초과 1조원 미만 구간에는 0.5%,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는 1%의 수수료율로 계상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나,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하여는 0.01%의 수수료율이 계상됨. 이와 같이 계상되는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구분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대기업 면세점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	0.01%
	2천억원 이하	0.1%
	2천억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총매출액	0.01%

한편,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의 영업상 애로를 고려하여 2020년,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경하였는데, 이후 두 차례 연장하여 2023년 매출분까지는 감경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①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운영인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③ 법 제176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연단위로 해당 연도분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간에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특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로 718억 9,800만원을 추계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관광의 정상화를 감안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평균치를 2024년도 예상매출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보세판매장 '24년 예상매출액*으로 특허수수료를 산정하고 기타 보세구역수수료 및 기타수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 = 보세판매장 수수료(71,898) + 기타 (3,500) = 75,398 * 관광 정상화를 감안하여 '19~'22년도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평균치를 '24년도 예상매출액으로 설정

그런데 2024년도 1월부터 8월까지의 보세판매장 매출액(관세청 신고액 기준)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8월까지의 보세판매장 누적매출액은 9조 6,469억원인데, 이는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같은 기간의 평균 누적매출액 12조 1,398억원의 80% 수준으로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의 반등이 없다면 편성된 예산보다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보세판매장 매출액 추이 비교(관세청 신고액 기준)]

(단위: 억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2024	중소중견 면세점		414	287	304	311	329	321	308	324	2,597
	대기업 공기업 면세점	중소중견	2,038	1,244	1,690	1,773	1,740	1,602	1,481	1,524	13,092
		그외 제품	13,457	7,621	9,872	10,421	10,473	10,073	8,276	10,586	80,779
	소계		15,909	9,152	11,866	12,505	12,542	11,996	10,065	12,434	**96,469**
2019 -2022 평균	중소중견 면세점		520	368	395	371	379	419	394	436	3,282
	대기업 공기업 면세점	중소중견	2,404	1,931	2,618	2,215	2,385	2,205	1,984	2,300	18,042
		그외 제품	12,780	11,303	12,873	12,223	12,551	12,074	12,199	14,074	100,077
	소계		15,703	13,602	15,887	14,805	15,315	14,699	14,577	16,810	**121,398**

자료: 관세청

또한, 최근 5년간 보세판매장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이후 2023년에는 일정 수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 것과는 달리 실제 매출액은 13.8조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24.9조원) 대비 약 55% 수준에 머물렀음.

[2019~2023년 보세판매장 매출액]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중소중견 면세점		9,536	5,819	2,280	2,817	3,927
대기업 공기업 면세점	중소중견	43,974	20,528	26,365	20,107	19,094
	그외 제품	195,074	128,705	149,689	155,285	114,565
총계		**248,585**	**155,052**	**178,334**	**178,207**	**137,586**

이는 대내적으로는 면세업계의 송객수수료율[231] 하향 조정에 따른 구매유인의 감소,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의 관광 트렌드가 단체관광(유커)에서 개별관광(산커)으로 변화한 점, 엔저에 따른 일본 방문 관광객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방문 관광객이 감소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국내 면세 시장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업이익도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232]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추후 정부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한시적 인하 조치[233]를 2024년 매출분에 대하여도 연장 적용한다면 예산과 실적치의 오차는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은 실현가능한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장기적으로는 높은 구매력을 갖춘 대체 시장의 발굴, 관련 규제 합리화 등 면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31) 대기업 5개사 기준 송객수수료율(%, 단체관광객 매출액 대비) : ('21)46.0%, ('22)48.2%, ('23)32.0%
232) 대기업 5개사 기준(전체 매출의 약 90%) '23년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 이후 '23.3분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적자 지속(기획재정부)
233) 2020년~ 2023년 매출분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부과

(2)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강화 필요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통관국)

< 현 황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은 통관단계에서 위법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등 수출입 물류의 흐름 촉진과 함께 국민건강·사회안전 보호를 위한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27억 3,500만원) 대비 2억 7,300만원이 감액된 24억 6,200만원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관안전지원' 사업은 수출입 통관 검사강화를 위한 검사 소모품 지원,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등에 대한 물품 조사를 통한 통관단계 위법물품 반입 차단 등 수출입 물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은 2023년(16억 8,600만원) 대비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13억 8,800만원임.

[2025년도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1131-301)	2,735	2,462	△273	△10.0
- 통관안전지원	**1,686**	**1,388**	**△298**	**△0.2**
- 보세화물관리	1,049	1,074	25	2.4

< 검토의견 >

안전 인증 규제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통관물품의 반입과 이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통관안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은 해외 판매 중이거나 국내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위험 업체 및 물품 등 위험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한편,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을 살펴보면, 거래건수 기준으로 2019년 4,299만건 수준에서 2023년 1억 3,144만건 수준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거래금액도 2019년 31억불 규모에서 2023년 53억불 규모로 1.7배 가량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건 수	42,988	63,575	88,380	96,120	131,443
금 액	3,143	3,754	4,658	4,725	5,278

자료: 관세청

이와 함께, 위해식품·의약품 등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물품의 반입과 지재권 침해 물품 및 마약·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적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해물품의 반입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주요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세관장[1] 확인대상	지재권 침해	사회안전[2] 위해물품	기 타[3]	합 계
2019년	34,564	13,742	2,365	75,084	125,755
2020년	61,768	44,742	3,416	115,761	225,687
2021년	56,408	34,624	4,483	144,658	240,173
2022년	80,989	62,326	8,011	142,213	293,539
2023년	90,563	67,749	7,557	94,182	260,051

1) 검역, 위해 식·의약품, 수입요건 미비 등, 2) 모의총포·도검류 등, 3) 품명·수하인상이, 저가신고 등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로 어린이제품(34개), 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 국민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해외직구 제품에 대하여는 관련된 안전에 관한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는데,[234] 안전 인증으로 인한 물품가격의 상승,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의 반발로 동 계획은 철회되었음. 대신 사전에 안전성 분석 등을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하여 반입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 방식으로 방침을 선회한 바 있음.[235]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에서 사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안전성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위험관리에 활용하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은 규제의 강도가 큰 안전 인증제도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고,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위해물품의 반입을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안전성 분석의 결과로 위해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게 됨.

그런데, 정부는 안전성 분석을 위한 물품구매 예산으로 2025년 예산안에 전년도보다 400만원 증액한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약 480여종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 물품 분석 소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예산 산출내역]

'24년 예산 산출내역	'25년 예산 산출내역
· 400종×50천원=20,000천원	· 480종×50천원=24,000천원

실제로, 관세청에서 지난 4월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평균 구입 가격 : 3,468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중 15%에 해당하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236]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을 확인한 바 있는데, 두 플랫폼에서 '어린이 제품'으로 검색하더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안전성 분석은 이 중 매우 극소수의 제품에만 이루어졌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23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5.16.)
235)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2024. 5. 19.)
23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 이하), 납(100㎎/㎏ 이하)

[2024년 해외 어린이 제품 안전성 분석 결과(2024. 4. 30.)]

유형	분석 건수	검출 건수	검출 비율(%)	검출항목	검출 범위(%) (안전기준치 초과)
신발	17	9	5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45%~5.05% (최대 50.5배 검출)
학용품	59	6	1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4%~7.03% (최대 70.3배 검출)
장난감	19	4	2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2%~0.43% (최대 4.3배 검출)
액세서리	60	7	12	중금속(납, 카드뮴)	1.3%~22.7% (최대 3,026배 검출)
가방	13	1	8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6% (최대 1.6배 검출)
		3	23	중금속(납)	0.9%~2.7% (최대 270배 검출)
기타	84	8	9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6%~8.21% (최대 82.1배 검출)
합계	252건	38건	15%		

따라서, 안전 인증 규제의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는 통관물품의 반입과 이에 따른 위해물품 반입 위험 증대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출입물품 안전성 위반 우범업체 및 물품조사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기본경비와 중복된 위험관리 우수활동 포상금 감액 및 밀수 신고 포상금 현실화 필요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조사국)

< 현 황 >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사업」은 해외 위험관리 조직과의 상호 공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세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7억 4,100만원임.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사업' 은 이 위험관리 확산을 위해서 우수부서 포상 및 업무 매뉴얼·적발사례집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1,200만원임.

[2025년도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1333-304)	741	741	0	0
- 위험정보 교류 ·협력	15	15	0	0
- 관세국경 위험정보 수집	214	214	0	0
-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12**	**12**	**0**	**0**
- 위험관리 모델 개발	500	500	0	0

< 검토의견 >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은 기본경비에 편성된 포상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 내역사업의 포상금을 감액하고 동일 프로그램 중 소요가 큰 밀수신고 포상금을 증액하여 예산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사업'은 동 사업 예산에 우수위험 정보 제공자와 고위험물품 선별·감사 적발자 및 정보분석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700만원이 계상되었음. 그러

나 해당 포상금은 「본부기본경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있음.

[위험관리 우수활동 포상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2025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	○ 포상금(310-03) : 7백만원 가.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6,000천원) · 포상금 2회 × 3,000천원 = 6,000천원 나.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1,000천원) · 포상금 4회 × 250천원 = 1,000천원	7	○ 포상금(310-03) : 7백만원 가.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6,000천원) · 포상금 2회 × 3,000천원 = 6,000천원 나.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1,000천원) · 포상금 4회 × 250천원 = 1,000천원

자료: 관세청 제출

관세청의 2025년 「본부 기본경비」 예산안 및 동 사업의 소관 부서인 「조사국 기본경비」 예산안에도 업무 성과 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이 각각 4억 200만원, 1,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그 중 관세청 「본부 기본경비」의 포상금에는 위험관리 우수부서 대상 기관운영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국 기본경비」의 포상금에는 밀수단속 등 업무성과 우수자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기본경비에 편성된 포상금과 별도로 위험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기타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관세청 조사국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	지급액	지급사유
20년	4,200	4,200	마약 정보분석, 국경관리 경진대회 등
21년	11,200	11,196	경제범죄 우수사례, 마약 특별단속 우수사례, 수사기법 경진대회, 금융사기 모니터링, 주변종사자 우수사례
22년	10,200	10,200	경제범죄 우수사례, 가정의 달 우수수사사례, 올해의 사건(정보분석) 우수작, 우수 조사의뢰 제공, 전자상거래 악용 우수수사사례 등
23년	10,200	94,000	우수 조사의뢰 제공, 국민건강 위해물품 특별단속 우수사례, 마약적발 X-ray 우수판독사례, 우수 분석 착안사례 등
24년	10,200	10,200	마약적발 X-ray 우수판독사례

자료: 관세청 제출

한편 동 세부사업의 소관실국인 조사국의 기타 세부사업인 「밀수단속 사업」[237]의 내역사업인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은 2023년에 예산액(5억 600만원) 대비 4억 3,200만

237) 코드 : 일반회계 1331-300

원을 초과한 집행이 이루어져 부족분을 인건비에서 이용하였음. 2024년도에도 9월 기준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의 포상금 집행액은 4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5억 600만원 대비 98%내외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의 이·전용이 예상됨.

[연도별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명)

구분	예산액	지급액	지급률	건수	인원	평균	
						건당	인당
’21년	660,000	476,931	72.3%	480	480	994	994
’22년	660,000	664,510	100.1%	855	855	776	776
’23년	506,000	938,130*	185.4%	709**	709	1,323	1,323
’24.9월	506,000	495,000	97.8%	402	402	1,105	1,105
’25년(예산안)	506,000						

자료: 관세청 제출

* ’23년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에서 432백만원을 포상금으로 이용하여 집행

** 소액 외화휴대밀반출입 등이 포상 대상에서 제외(’23.5월 포상훈령 개정)됨에 따라 집행건수는 감소

이러한 예산 집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의 이·전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가 제출한「관세법」개정안 등이 의결될 경우 밀수신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 소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는 ① 수출입 금지물품 대상에 방위사업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확대 정의되고 ② 마약류의 물품등을 명시적으로 수출입 금지 대상 품목에 포함되며, 마약류 관련 포상금 상한액이 1.5억에서 3억으로 상향됨에 따라 밀수 신고 건수 및 포상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대외적 환경 변화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밀수신고 포상금은 사업소요에 비해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으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험관리 우수활동 포상금은 관세청 내 기본경비로 지급하는 포상금과 중복되어 불요불급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사업의 ‘우수위험 정보제공자 포상’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관세법」개정 예정 및 마약류 밀수출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예산은 증액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적정수준의 기관운영출연금 규모 검토 필요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정보데이터정책관)

< 현 황 >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은 관세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관세정보원에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131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1442-503)	-	13,180	13,180	순증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관세정보시스템”)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과거 명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이었음.

당초 관세정보시스템은 관세청장이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2010년 최초 지정공고 시 단독 응찰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연합회’)[238]가 운영사업자로 지정되었음. 그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연합회가 관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고, 관세청은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용역비를 연합회에 지급해왔음.

그런데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인 관세정보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195)이 2023년 1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되었음.[239]

238) 연합회는 관세정보시스템의 기획·조사·컨설팅, 연구 업무와 해외 보급을 위한 시장개척·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6년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관련 민간기업들이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임. 연합회는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외에도 관세정보시스템의 해외 수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

239) **「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에 관세정보원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연합회에서 관세정보시스템 수출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제외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던 조직과 관련 자산·부채 등을 관세정보원이 승계하였음.

「관세법」에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 113억 5,500만원과 경상경비 21억 9,300만원에서 자체수입 3억 6,800만원을 차감하여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131억 8,000만원이 신규사업인「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에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관세정보원은 과거 연합회가 관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던 업무를 승계하여 수행하는 것인데, 연합회가 이전에 지급받았던 용역비에 비해 관세정보원 운영 출연금이 17.1% 증액되었으므로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까지는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이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1441-500) 내 내역사업인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에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되어 왔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1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연합회에 지급되었음.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은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이를 관세정보원에 출연할 신규사업인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사업」에 이관하여 편성하였음.

---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1. (생략)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조사·컨설팅·연구·교육·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동 사업에 13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대비 19억 2,000만원 증액(증가율 17.1%)된 것임.

[국가관세망 운영 관련 예산 이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예산(안)				예산집행방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관 전	국가관세망 운영	11,260	11,260	11,260	-	연합회에 관리용역비 지급
이관 후	한국관세정보원 운영(출연)	-	-	-	13,180	관세정보원에 기관운영출연금 출연

자료: 관세청

그런데 관세정보원은 관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출연받는 것이며,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용역비를 지급받았던 기존의 연합회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이를 고려할 때 관세정보원에 교부되는 출연금은 연합회에 지급되었던 용역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연합회에 지급되었던 용역비에 비해 17.1% 증액되었음.

이와 같이 출연금이 증액되어 편성된 이유는 그동안 편성된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 예산에 비해 연합회에서 과다한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관세정보원이 승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부를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했기 때문임.

2024년도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관세망 운영을 위한 72명 및 기술지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43명 등 총 115명에 대한 직접인건비 76억 6,800만원이 관리용역비로 편성되었는데, 2024년 8월 말 기준 관세정보원은 현재 140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2024년도 국가관세망 운영 사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구분</th><th>예산액</th><th>산출내역</th></tr>
<tr><td rowspan="3">국가관세망 운영</td><td>관세망 운영</td><td>7,601</td><td>
<table>
<tr><th colspan="2">직무</th><th>인원수</th><th>인건비</th></tr>
<tr><td rowspan="9">직접인건비</td><td>IT PM</td><td>1</td><td>103</td></tr>
<tr><td>IT품질관리</td><td>3</td><td>330</td></tr>
<tr><td>응용SW개발</td><td>16</td><td>1,297</td></tr>
<tr><td>IT시스템관리</td><td>31</td><td>2,210</td></tr>
<tr><td>IT시스템기술지원</td><td>16</td><td>818</td></tr>
<tr><td>DB관리</td><td>2</td><td>150</td></tr>
<tr><td>보안사고대응</td><td>3</td><td>247</td></tr>
<tr><td>합계</td><td>72</td><td>5,155</td></tr>
<tr><td colspan="3">제경비</td><td>1,755</td></tr>
<tr><td colspan="3">부가세(10%)</td><td>691</td></tr>
<tr><td colspan="3">총합계</td><td>7,601</td></tr>
</table>
</td></tr>
<tr><td>기술지원 상담센터 운영</td><td>3,659</td><td>
<table>
<tr><th colspan="2">직무</th><th>인원수</th><th>인건비</th></tr>
<tr><td rowspan="4">직접인건비</td><td>IT PM</td><td>1</td><td>103</td></tr>
<tr><td>IT시스템관리</td><td>13</td><td>927</td></tr>
<tr><td>IT시스템기술지원</td><td>29</td><td>1,483</td></tr>
<tr><td>합계</td><td>43</td><td>2,513</td></tr>
<tr><td colspan="3">제경비</td><td>813</td></tr>
<tr><td colspan="3">부가세(10%)</td><td>333</td></tr>
<tr><td colspan="3">합계</td><td>3,659</td></tr>
</table>
</td></tr>
<tr><td>합계</td><td>11,260</td><td>
<table>
<tr><th colspan="2">직무</th><th>인원수</th><th>인건비</th></tr>
<tr><td colspan="2">직접인건비</td><td>115</td><td>7,668</td></tr>
<tr><td colspan="3">제경비</td><td>2,568</td></tr>
<tr><td colspan="3">부가세(10%)</td><td>1,024</td></tr>
<tr><td colspan="3">합계</td><td>11,260</td></tr>
</table>
</td></tr>
</table>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 인원 현황(2024년 8월)]

(단위: 명)

구분	원장	감사	경영지원본부	전자통관운영본부	관세행정운영본부	기술지원센터	연구교육센터	사이버관제센터	합계
인원	1	1	15	27	40	49	1	6	140

자료: 관세청

현 관세정보원 인력 140명 중 기관 신설에 따라 인력소요가 발생한 원장 1명, 경영본부 인력 15명, 연구센터 인력 1명 등 18명을 제외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투입 인력은 123명으로, 2022년~2024년 계약인력 115명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

관세정보원은 과거 편성된 용역비에 계상된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운용한 결과, 인건비 소요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 사전기획보고서상 검토결과 고려 필요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R&D), 정보데이터정책관)

< 현 황 >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은 세관 공무원·연구자 등이 관세행정 현장 수요 발굴, 기획, 연구개발·적용까지 함께 참여하여 관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21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1442-531)	-	2,135	2,135	순증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인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을 갖고 있음.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은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5의 비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 중 관세청 소관 예산은 총 156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240]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역시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3의 비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사업기간은 2025년~2028년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략과제인 ①컨테이너 구조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일반과제인 ②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③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④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등 총 4개 과제에 대한 연구비 19억 6,700만원과 사업단 운영비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40) 2021년 30억원, 2022년 44억 1,700만원, 2023년 45억 8,400만원, 2024년 3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안 세부내역
전략 과제 연구비	□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 8억 4,000만원 - 예산산출 : 2,40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AI를 활용한 컨테이너 불변구조에 집중할 수 있는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개발을 통해 X-ray 판독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
일반 과제 연구비	□ 동시다종 마약 신속 검사키트 : 4억 5,500만원 - 예산산출 : 1,30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인체 접촉 가능성이 차단된 패치형 마약검사 키트를 개발하여 현장 직원의 안전보호 및 마약검사 키트의 국산화
	□ X-Ray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기술개발 : 3억 3,600만원 - 예산산출 : 96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직원의 역량을 높이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영상데이터를 체계적 수집, 관리, 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체계 구축
	□ 국경 반입단계 불법 마약류 탐지를 위한 후각지능 기술·시스템 구축 : 3억 3,600만원 - 예산산출 : 960백만원 × 6/12개월 × 70%(관세청·과기정통부 7:3) - 연구내용 : 밀폐된 공간의 기체를 포집하여 분석하는 후각지능 기술에서 마약류 탐지분야 대응기술을 개발해 탐지견을 대체한 입국장 · 특송화물 감시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사업단 운영비	□ 사업성과 도출 및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할 '커스텀즈랩 사업단' 운영 : 1억 6,800만원 - 예산산출 : 1개 × 320백만원 × 9/12 x 70% = 168백만원

자료: 관세청

< 검토의견 >

첫째, 동 사업 내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개발' 과제는 편성된 예산안과 사전기획보고서상 연간 소요 연구비 간 차이가 있으므로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위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최종보고서[241]에 따르면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 적발 기술 개발' 과제

241) '관세행정의 지속적 연구개발(R&D)을 위한 과제발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무한지식공작소, 2024. 1월

의 총 소요예산은 40억원이며 연간 소요예산은 10억원임.

이에 따르면 동 과제에 대한 연구비는 2025년도 예산안에 3억 5,000만원(연간 연구비 10억원 × 6/12개월 × 70%)이 편성되어야 함. 그런데 관세청은 연간 연구비를 기획보고서에서 책정한 소요예산의 2.4배인 24억원으로 책정하고, 8억 4,000만원(연간 연구비 24억원 × 6/12개월 × 70%)을 편성하였음.

[컨테이너 고정공간 은닉물품 적발 기술개발 과제 연도별 연구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연구비 (A)	**2,400×6/12 =1,200 (6개월분)**	**2,400 (12개월분)**	**2,400 (12개월분)**	**2,400 (12개월분)**	**8,400**
관세청 편성 연구비(A×70%)	840	1,680	1,680	1,680	5,880
과기부 편성 연구비(A×30%)	360	720	720	720	2,520

자료: 관세청

이에 대해 관세청은 AI와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스마트화 및 자동통합검색 기술개발' 사업 내 '인공지능 기반 컨테이너 내부 위험물 분석기술 개발' 과제(2020년~2023년)의 연간 연구비인 14억 2,050만원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개발' 사업 내 'AI-X-ray 적용 시스템 개발' 과제(2023년~2025년)의 연간 연구비인 33억 3,330만원을 평균하여 연간 연구비 24억원을 책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사전기획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한 금액과 달리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과제의 목표와 세부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 사업 연구비의 평균금액을 소요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해당 R&D 과제의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단운영비의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연구비 19억 6,700만원과 사업단운영비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연구비 대비 사업단 운영비 비율이 8.54%임.

그런데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총 연구비 대비 총 사업단운영비의 비율이 5.71%였으며, 1차년도인 2021년에는 그 비율이 5.01%였음.

[연구비 및 사업단운영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2.0 사업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계	2025년 (1차년도)
연구비(a)	2,857	4,167	4,334	3,400	14,758	1,967
사업단운영비(b)	143	250	250	200	843	168
연구비 대비 사업단운영비 비율(b/a)	**5.01%**	6.00%	5.77%	5.88%	**5.71%**	**8.54%**

자료: 관세청

실제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비가 아닌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앞서 추진되었던「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R&D) 사업」에 비해 「관세행정 현장맞춤형 기술개발 2.0(R&D) 사업」은 연구비 대비 사업단운영비 비율이 더 높은 수준임. 따라서, 사업단운영비의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사업 지연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 감액 필요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정보데이터정책관)

< 현 황 >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은 관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거나 구축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55억 1,000만원이 감액된 636억 3,800만원임.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신속·정확한 통관서비스와 다양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억 7,500만원이 증액된 9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1531-302)	79,148	63,638	△15,510	△19.6
- 시스템 구축	**5,949**	**9,224**	**3,275**	**55.1**
-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27,279	21,373	△5,906	△21.7
- 국가관세망 운영	11,260	-	△11,260	△100.0
-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	936	936	순증
- 관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794	8,045	△749	△8.5
-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574	9,427	△1,147	△10.8
- 전산장비 도입	5,992	5,436	△556	△9.3
- 세관 정보화 지원	9,300	9,197	△103	△1.1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내역사업인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과 「시스템 장비도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내내역사업인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체계, 통과절차, 전자상거래 전용 대민서비스가 포함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7억 100만원 증액된 72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내역사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32억 1,500만원임. 사업 2차년도인 2025년도의 예산안으로 장비도입비 21억 6,400만원과 개발·PMO·감리비 50억 4,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29년	합계	비고
장비도입비 (임차료)	541	2,164	2,164	5,951	10,820	
개발비 등 (일반연구비)	967	5,045	6,384	-	12,395	감리, PMO 등 포함
합계	1,508	7,209	8,548	5,951	23,215	

자료: 관세청

< 검토의견 >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24년도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므로, 2024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의 '2024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2023년 5월)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4년 5월까지 입찰공고 및 계약을 완료한 후, 2024년 6월에 기술협상 등 사업에 착수하여, 2024년 하반기까지 신규시스템 분석·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전자상거래 불법마약 밀수단속 플랫폼 구축 사업의 당초 추진 일정]

□ 추진체계 (또는 추진절차)

○ ('23.11.) 제안요청서 작성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 → ('24.2.) 과업심의위원회 및 보안성 검토 진행 → ('24.3.) 행안부 사전협의 진행 → **('24.5.) 입찰공고 및 계약** → ('24.6.) 기술협상 등 사업 착수 → ('24.下) 신규시스템 분석·설계 → ('25) 국자원 장비 입주 및 SW 개발 → ('25.12.) 통합테스트·인수테스트 및 시범운영 → ('26.3.) 시스템 운영

* (1년차) 분석·설계, (2년차) 장비 도입 및 시스템 개발·구축

자료: 관세청, '2024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발췌

그런데 본사업이 무응찰로 인해 2024년 9월 말 현재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1차 입찰이 2024년 6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2차 입찰이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되었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음.

또한, 최초 입찰공고상 관세청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계약업체가 2024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기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이 불발되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2024년도(1차년도) 과업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2024년도 예산의 이월이 예상됨. 그리고 1차년도 과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지 못하여 2025년에 2차년도 과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2025년도 예산 역시 이월될 우려가 있음. 만약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업의 완료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기면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에서는 최근 몇 년간 발주 및 계약 체결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이 이월된 사례가 다수 있음. 예를 들어, 2020년에는 발주지연으로 10억 9,0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에는 계약체결 지연으로 11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음.

[최근 4년간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사업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내내역사업	이월금액	이월 지연 사유
2020년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1,009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능형 정보기술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았던 사업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발주 지연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	72	위 본사업 이월에 따라 감리사업도 이월
	국가간 원산지 자료교환 확대 사업	65	코로나 19로 양국 간 자료교환 항목 및 절차, 기술표준 및 보안기술 등 기술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지연으로 발주 지연
2021년	AI X-RAY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	133	관세청 조직개편 진행으로 X-Ray 장비관리 담당 부서 변경 등에 따른 입찰공고 지연
2022년	내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423	입찰공고(21.12월), 계약(22.3월) 등 정상 추진하였으나 투입인력 집단 코로나 19 감염으로 공정지연
	내부정보시스템 전면개편 감리	79	위 본사업 이월에 따라 감리사업도 이월
	우편물정보와 X-Ray 동시구현	157	입찰공고(22.4월) 후 무응찰(3회)로 계약 체결 지연
2023년	국가관세망 노후장비 교체	1,186	입찰공고(22.12월)까지 정상추진하였으나 조달절차와 기술협상 등 장기간 소요되어 계약체결 지연

자료: 관세청

따라서 2024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에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업 범위를 재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7) 고객지원센터 상담인력 처우개선 필요 (납세자권익보호, 기획조정관)

< 현 황 >

「납세자권익보호 사업」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3억 3,300만원) 대비 9억 4,000만원 증액된 12억 7,300만원임.

증액 사유는 FTA 및 국제협력(1500-1531-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7억8,300만원)이 동 납세자권익보호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은 무역, 통관 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과 수출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무역협정·법규에서부터 수출입 통관절차, 국가·물품별 원산지결정기준, 세율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7억 8,300만원)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9억 4,000만원임.

[2025년도 납세자권익보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납세자권익보호 사업 (7130-400)	333	1,273	940	282.3
- 납세자보호 위원회 운영	97	97	0	0
- 납세자보호제도 운영 및 관리	236	236	0	0
-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	**(783)***	**940**	**157**	**20.1**

* FTA 및 국제협력(사업코드: 1500-1531-300)내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을 '25년 납세자권익보호 사업으로 이관

< 검토의견 >

해외직구 등 통관절차 문의 급증에 따라 전화상담 포기 건수가 증가하고, 응답률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 열악한 처우로 상담사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어 상담사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고객지원센터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민과 수출입 기업의 문의에 대한 정확한 통관정보 제공, 해외직구 피해 등 상담 및 수출입 관련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국민과 기업의 수출입 관련 불편 민원을 접수하는 기능을 수행함.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 등으로 통관절차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직구 물품의 지식재산권 위반, 위해물질 초과 등에 따른 안전관리·검사 강화 정책의 시행에 따라 행정절차에 대한 문의수요와 통관지연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서비스 공급 역량의 신장은 정체되어 있어 상담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간 상담 건수는 1.4배 증가, 같은 기간 해외직구 관련 상담은 2.1배 증가하였고,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른 상담 건수 급증으로 전화상담 포기 건수는 최근 3년간('21~'23) 약 42배 증가하였으며, 전화상담 응답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담원 수		20	20	20
상담 건수		166,359	202,982	240,103
해외직구	건수	67,563	116,502	143,152
	비중	41%	57%	60%

[관세청 고객지워센터 전화상담 포기 건수 및 응답률]

(단위 :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포기 건수	1,668	19,940	69,640
응답률	98.2	84.3	66.2

한편, 전화상담 인력은 2015년 이후로 2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낮은 보수와 단년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 등 열악한 처우로 매년 절반 가까운 민간 상담 경력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경력과 역량을 갖춘 경력자들의 퇴사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노하우의 인수인계, 실무 교육 등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관세 상담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사 인력 현황 및 이직율(퇴사율)]

(단위 :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담인력*	20	20	20	20	20
퇴사인원	7	10	11	10	10
퇴사율(%)	35	50	55	50	50

*팀장 1명, 파트장 2명 포함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상담사 근속연수]

(단위 : 명, 2024. 9 기준)

근속기간	5년 이상(장기)	2년~4년	1년~2년	1년 미만
인원	3	6	5	6

이에 정부는 국민(납세자)에 대한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2월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소속의 고객지원센터를 납세자보호팀 소속으로 통합하면서,[242] 2025년 정부예산안에는 상담인력 4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음.

24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 및 실장·국장·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예산 산출내역]

'24년 예산 산출내역	'25년 예산 산출내역
· 민간상담원 용역비(783백만원) 20명x3.26백만원x12월	· 민간상담원 용역비(940백만원) 24명x3.26백만원x12월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상담 민원의 급증, 열악한 처우로 인한 경력자의 높은 퇴사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조치로 국민과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 2024년 타 부처 민간 상담인력 위탁사업 예산 비교

(단위 만원, 임금+운영비 등)

구분	관세청	국세청	대검찰청
1인 월 위탁 예산 (총액/인원)	326만원 (7.8억원/20명)	362만원 (76.8억원/177명)	341만원 (3.27억원/8명)
중소기업벤처부	**방위사업청**	**한국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360만원 (33.7억원/78명)	353만원 (6.36억원/15명)	363만원 (4.35억원/10명)	368만원 (627억원/1,420명)

자료: 관세청

(8) 전년도 타 사업의 직접 수행을 이유로 증액 편성된 기본경비의 예년도 수준의 감액 필요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 현 황 >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상적 필수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기관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200만원 증액된 3억 5,200만원임.

[2025년도 관세평가분류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7118-258)	350	352	2	2.9

< 검토의견 >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는 기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의 직접 수행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공모 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기타 세부사업에 별도로 편성되었으므로, 예년도 수준으로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한 관서운영비,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의 필수적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동 사업 예산은 2022년 2억 6,500만원, 2023년 2억 7,1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 3억 5,000만원으로 약 8,000만원 가량 증액되었음. 이는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증액분,「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사업」[243] 의 내역사업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의 직접 수행을 위한 비용 증액분이 반영된 결과임.

243) 코드: 일반회계 1231-302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예산(안)액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265	271	350	352

자료: 관세청 제출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은 2023년까지 1억 5,7000만원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공모전의 위탁용역 대신 직접 수행을 요구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에서는 일반 용역비 예산(1억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사 진행을 위한 임차료(606만원)와 포상금(5,000만원)만이 편성되었음.

2024년 예산안 심의 당시 관세청은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에 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비용(홍보, 시상식, 책자발간, 심사 수당 등)을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해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예산 편성 시 기본경비와 주요 사업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 ‘연구 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 사업’의 특성 상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주요 사업비가 아닌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안에 공모사업의 직접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4,900만원을 편성한 것임.

[관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비교]

(단위:천원)

2024년		2025년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00	○ 일반용역비(210-14) : 전액감액 → 직접운영으로 전환 ○ 임차료(210-07) : 6,062천원 가.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 행사진행 : 공모전 개최 6,062천원 ○ 포상금(310-03) : 50백만원 ・ 우수논문 및 평석 시상 : 연구논문(1,667천원×24편=40,000천원)+판례평석(937천원×16편,15,000천원)-절사(5,000천원)	99,000	○ 일반수용비(210-01) : 49백만원 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운영(49,062천원) ・ 홍보 및 행사 비용: 11,000천원 ・ 전문가 수당 : 21,000천원 ・ 책자인쇄 : 17,100천원 ・ 단수조정 : -38천원 ※ 직접 운영 경비 부족 예산 요구 ○ 임차료(210-07) : 전액 감액 → 행사 간소화를 위한 대관 비용 삭감 (세관 시설 활용) ○ 포상금(310-03) : 50백만원 ・ 우수논문 및 평석 시상 : 연구논문(1,667천원×24편=40,000천원)+판례평석(937천원×16편,15,000천원)-절사(5,000천원)

자료: 관세청 제출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추가편성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중 기존에 편성되었던 공모전의 직접 수행을 위한 비용은 삭감되지 않고 유지되어 있음.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중 공모전의 직접 수행 비용으로 증액된 금액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은 감액되어 편성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연구논문 등 공모사업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2		23		24	25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예산(안)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141	141	140	140	56	99
_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사업	일반용역비	84	84	84	83	0	0
	사업추진비	7	7	6	7		
	임차료					6	0
	일반수용비						49
	포상금	50	50	50	50	50	50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일반수용비(210-01)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2	23	24	25
	예산	예산	예산	예산(안)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265	271	350	352
- 일반수용비	159	164	191	191
1. 기본수용비	49	55	82	81
2.~ 12.(기타)	110	109	109	110

* 기본경비 〔('23)271→('24)350 (+79)〕 증가 사유 : 공공요금(+36) 및 시설유지비(+10) 현실화, 공모전 소요경비 등 기본 수용비(+27) 반영

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연구 공모전의 직접 운영 전환으로 이전에 8,400만원이었던 일반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일반수용비로서 8,4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4,900만원이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에 편성되었으므로, 안정적인 공모전 운영 및 행사 진행을 위해 2024년에 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중 공모전 직접 수행을 위한 비용은 2025년도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2024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 사항과 같이 예산 편성 시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요 사업을 위한 운영경비를 기본경비에 편성하는 것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만약 공모전 운영을 위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주요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②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사업을 일반용역비가 아닌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도록 지적한 것은 사업의 직접 운영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2023년 일반용역비 수준의 일반수용비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현재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4,900만원과 관세평가분류원에 공모전 운영을 위해 편성된 기본경비 2,700만원을 합하면 7,600만원으로 관세청이 중기계획 당시 요구한 6,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운영경비가 편성된다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관세분류평가원의 기본경비」 중 기타 세부사업에 별도로 편성되어 그 예산 소요가 크지 않은 비용만큼 기본경비를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조달청 소관

가. 개요

(1) 조달특별회계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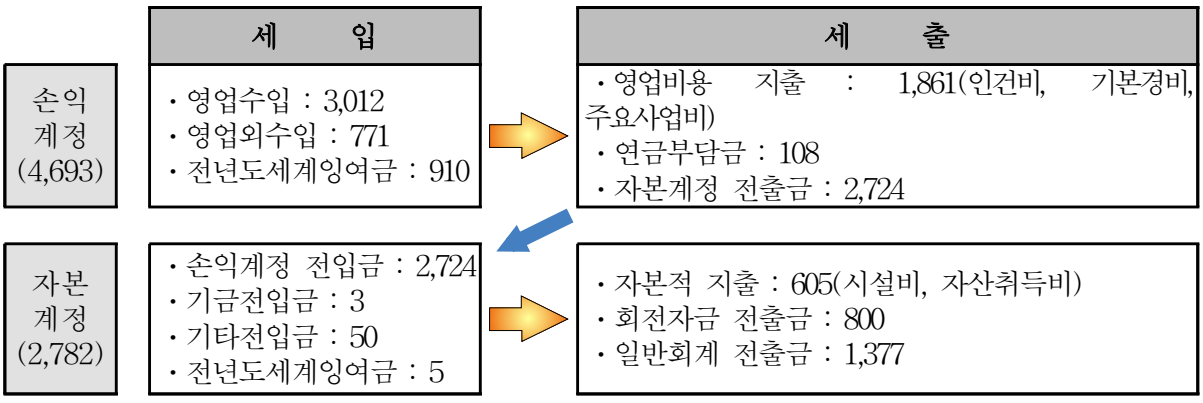
조달특별회계 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각 계정의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임.

손익계정 세입예산은 총 4,693억원으로 영업수입은 내자·외자·시설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비축물자 판매차익 등의 수입 3,012억원, 위약금, 회전자금 예치이자 등 영업외 수입 771억원, 2025년 손익계정의 추정 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세계잉여금 910억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 손익계정 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세입 총액 4,69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비 1,861억원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10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 손익계정 잉여금 2,724억원은 자본계정으로 전출될 예정임.

자본계정 세입예산은 총 2,782억원이며 계정간 전입금, 기금전입금, 기타전입금, 2025년 자본계정의 추정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정간 전입금은 손익계정 잉여금이 자본계정 세입으로 전입된 것으로써 2,724억원이 계상됨. 자본계정 세출예산은 자본계정 세입 총액 2,782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기본경비 등 자본적 지출에 관한 예산으로 60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유자금 운용으로 회전자금 전출금 80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77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2025년도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구조]

(단위: 억원)



총 계 : 7,475억원
순 계 : 4,751억원
주: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자본계정 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계정간 전입금으로 전입되는 2,724억원을 차감한 금액임.

(2)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입예산안 규모는 7,47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552억 1,600만원) 감소하였음.

영업수입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3,012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업외수입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770억 7,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2024년 예산대비(B-A)	
			금 액	비 율
총 계	802,688	747,472	△55,216	△6.9
순 계	542,263	475,108	△67,155	△12.4
<손익계정 계>	446,953	469,246	22,293	5.0
영업수입	288,500	301,217	12,717	4.4
·내자구매 사업	232,181	232,211	30	-
·외자구매 사업	5,782	5,058	△724	△12.5
·시설공사 사업	40,686	52,869	12,183	29.9
·원자재비축 사업	9,851	11,079	1,228	12.5
영업외수입	65,539	77,079	11,540	17.6
전년도세계잉여금	92,914	90,950	△1,964	△2.1
<자본계정 계>	355,735	278,226	△77,509	△21.8
계정간전입금	260,425	272,364	11,939	4.6
전년도세계잉여금	7,918	530	△7,388	△93.3
기금전입금	92	322	230	250.0
기타전입금	87,300	5,010	△82,290	△94.3

(3)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7,475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9%(552억 1,600만원) 감소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447억 9,1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2024년 예산대비(B-A)	
			금 액	증감률(%)
총 계	802,688	747,472	△55,216	△6.9
사업성 예산안	242,486	246,574	4,088	1.7
・인건비	85,575	87,431	1,856	2.2
・기본경비	13,678	14,352	674	4.9
・주요사업비	143,233	144,791	1,558	1.1
비사업성 예산안	560,205	500,898	△59,304	△10.6
・자본계정 전출	260,425	272,364	11,939	4.6
・공무원연금부담금	10,286	10,818	532	5.2
・회전자금 전출	70,000	80,000	10,000	14.3
・일반회계 전출	219,491	137,716	△81,775	△37.3

(4)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25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1개,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임.

[2025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B-A)	증감률 (%)
	본예산(A)	요구	조정(B)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	477	477	477	순증

2024년 예산 대비 20억 이상 또는 20%이상 증가(단, 회전자금전출금은 제외)한 주요 증액사업은 총 7개 세부사업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45억 500만원),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26억 4,400만원),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50억 700만원),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29억 6,800만원), 조달전문교육 운영(19억 8,400만원),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3억 5,300만원), 청관사 개보수 및 임차(47억 9,000만원) 총 7개 사업이 2024년 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20억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B-A)	증감률 (%)
	본예산(A)	요구	조정(B)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3,585	4,505	4,505	920	25.7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544	2,644	2,644	2,100	386.0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0,097	15,007	15,007	4,910	48.6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816	2,968	2,968	1,152	63.4
조달전문교육 운영	1,265	1,984	1,984	719	56.8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257	353	353	96	37.4
청관사 개보수 및 임차	2,485	4,790	4,790	2,305	92.8

나. 검토의견

(1) 혁신조달 관련 성과지표 보완과 혁신제품 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확립 필요
(총괄, 신성장조달기획관)

< 현 황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244]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혁신제품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에 혁신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공공혁신조달사업과 관련된 2025년 예산안은 5개 세부사업에 걸쳐 총 61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공혁신조달사업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목명	사업 내용	2025년 예산안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233-332)	일반용역비 (210-14)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관리강화(ODA)	720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민간경상보조 (320-01)	해외인증취득비 등 수출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1,200

24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사업명	세목명	사업 내용	2025년 예산안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일반수용비 (210-01)	혁신성평가심의회 운영 등 혁신제품 선정 및 관리비	432
		혁신제품 경진대회 운영비	12
		혁신조달사업 홍보	100
	임차료 (210-07)	혁신제품 임차	3,500
	일반용역비 (210-14)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2,865
		혁신조달 경진대행 행새대행 용역	88
		지역기반 혁신제품 구매확산	100
	기타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등)	기타 혁신조달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53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R&D) (1235-338)	연구개발연구 활동비등 (360-05)	공공혁신수요·국민아이디어로 제안된 공공문제 해결(시범구매연계형), 기지정된 혁신제품 중 제품경쟁력 제고(스케일업형)를 위한 연구개발	2,800
	연구개발기획 평가관리비 (360-06)		168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43)	자산취득비 (430-01)	혁신제품 시범구매 (국내 및 해외 실증)	49,400
합 계			61,438

< 검토의견 >

조달청은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 등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정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혁신제품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효율성 및 수요기관·조달기업 만족도 등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 등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혁신조달사업은 2019년 '공공구매 조달확산' 정부혁신 역점과제 선정과 함께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음.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신규사업 도입과 함께 큰폭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왔으며, 2025년 예산안은 614억 3,800만원으로 사업이 도입된 2019년 예산(24억 3,000만원)과 비교시 약 25배로 예산이 증가함.

[공공혁신조달사업 관련 예산의 연도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혁신제품 시범구매	2,400	29,301	44,500	46,500	48,300	53,000	49,400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혁신제품 선정 및 관리비	30	350	347	324	324	432	432
	원가적정성 및 규격 검토	-	380	400	300	-	-	-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위탁	-	-	500	500	-	-	-
	경진대회 및 홍보비	-	200	200	200	200	200	200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	-	-	680	2,160	2,265	2,865
	지역기반 혁신제품 구매확산	-	-	-	-	100	100	100
	기타 운영경비 (공공요금,여비, 사업추진비 등)	-	12	53	52	52	53	53
	혁신제품 임차	-	-	-	-	-	-	3,500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안)
공공혁신 수요기반 혁신제품 (R&D)	연구개발비 및 기평비	-	-	-	-	1,716	1,816	2,968
정부조달 국제협력 체제 구축	수출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	-	-	-	-	-	1,200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ODA)	-	-	-	-	-	-	720
합 계		2,430	30,242	46,000	48,556	52,852	57,866	61,438

*□ : 음영표시는 2025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5년 예산안에도 혁신제품 임차, 수출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ODA)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제품 관련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혁신조달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경과하였고 관련 예산 역시 급격한 증가추세('19년 예산 대비 '25년 예산안 규모 25배 증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규모에 걸맞은 사업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지와 성과 측정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조달청 2025년 성과계획서상 혁신제품 관련 성과지표 및 성과 달성도를 살펴보면 성과지표는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매출액이며, 연간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의 합계치를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조달청은 전년 실적 수준으로 해당연도 목표치를 설정(2025년은 전년 실적이 아닌 목표치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임.

[공공혁신조달사업 관련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혁신제품 매출액 (억원)	목표	1,800	2,452	4,285	7,394	7,394	'24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	연간 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합계
	실적	2,452	4,157	7,394	-	-		
	달성도	136.2	169.5	172.6	-	-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주 목표 중 하나는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산'[245]이므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을 것이며, 혁신제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2020년 1,800억원 대비 2023년 실적은 7,394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한 것 역시 조달청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증가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의 수행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혁신제품 품목수가 2020년 345개 대비 2023년 1,858개로 약 5.4배 증가하였음을 볼 때 혁신제품군 자체가 증가한 원인 역시 있을 것으로 보임[246].

[연도별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및 지정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조달시장 매출액	-	1,800	2,452	4,157	7,394
누적 지정건수 (해당연도 신규 지정건수)	66	345 (279)	968 (623)	1,574 (606)	1,858 (284)

*2019년 10월에 혁신제품 지정이 시작됨에 따라 2019년 공공조달시장 매출액은 미집계함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45) 다만, '혁신제품의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확산' 외에도 혁신기업 지원에 따른 국가 기술력 향상, 공공분야 실증 등을 통한 혁신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의 목표도 주요한 국가차원의 정책 목표일 것임.

246) 특히,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2022년 및 2023년은 2021년 및 2022년에 걸쳐 혁신제품 지정건수가 크게 증가(2021년 623건, 2022년 606건 지정)함에 따른 후속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관련 성과지표는 2024년까지는 전년도 실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목표를 확대하여 왔으나, 2025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에서는 혁신제품 지정건수가 감소('22년 606건 → '23년 284건)하고 있고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어느정도 성장을 이루었다는 판단 아래 전년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2024·2025년 목표치:공공조달시장 매출액 7,394억원)으로 설정하였음.

혁신제품 발굴을 통한 지정건수 증가 및 혁신제품의 국내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증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정책목표는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혁신조달기업들이 내실있는 성장을 이루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조달청은 혁신시제품의 상용화, 혁신제품의 기술력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혁신조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향상에 공공조달시장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설정 등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 성과 측정은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과업의 달성여부 등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법정 전문기관으로 운영될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업무 효율성 및 수요기관·조달기업 만족도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은 혁신제품 제도 전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적·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임. 혁신제품 지원센터 사업 역시 최초 시작된 2021년 이후 매년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어 왔으며, 2021년(9억원) 대비 2025년 예산안(28억 6,500만원)은 약 3배 증가한 규모임.

[연도별 혁신제품 지원센터 관련 예산의 연도별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900**	**1,480**	**2,160**	**2,265**	**2,865**
- 스카우터 및 인큐베이팅	-	300	401	401	401
-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	380	380	380	380
- 규격검토	300	300	500	500	500
- 원가검토	100	-	30	85	285
- 혁신제품평가 및 교육위탁	500	500	699	699	699
- 사업성과 측정·분석	-	-	100	100	100
- 정책연구	-	-	50	50	50
- 혁신제품 지정실태조사	-	-	-	50	50
- 혁신제품 해외실증 운영지원	-	-	-	-	200
- 혁신적 조달기업 원스톱 지원서비스	-	-	-	-	200

*2021년: 예산 편성시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항목은 없었으나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위탁' 과업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규격검토(3억원)· 원가검토(1억원)은 혁신제품 지원센터 용역 외 별도의 계약건으로 진행함

**2022년: 예산편성시 '스카우터·인큐베이팅,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과업만이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과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규격검토, 혁신제품 평가 및 교육위탁' 과업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함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24년까지는 일반 용역사업(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용역)으로서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재)한국조달연구원의 단일응찰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한국조달연구원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음.

조달사업법 개정(2024.7.3. 시행)[247]으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전문기관 명칭: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문기

24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관을 통한 운영방식[248]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2024년 진행한 1차 공고(9월) 및 재공고(10월)에서 한국조달연구원만이 단일 응모하여 현재 한국조달연구원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사실여부 및 지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적합평가를 실시 예정임[249].

일반 용역사업으로 진행된 2024년까지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용역은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의 달성여부 및 실적만을 평가하고 그 실적을 토대로 향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사실상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수요기관·조달기업의 만족도 등의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2023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용역의 실정 달성 내용]

구분	실적 기준	2023년 실적
혁신제품 규격검토	·혁신제품 규격서(법정인증 등) 및 연장서류 검토	· 규격검토 536건, 지정연장 검토 190건
혁신제품 평가·교육	· (교육) 수요기관 및 기업 대상 교육 · (안내) 뉴스레터 발간 준비, 전시회 지원 · (컨설팅) 기업 및 기관 요구 대응 등	· 교육 35회 · 매거진 발간 2회 · 초중고아이디어공모전 지원 · 전시회 공동개최 및 컨설팅 대응, · 바이럴마케팅 상시 진행
혁신시제품 지정 등 업무지원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혁신시제품 평가 관련 서류 검토 등	평가서류 검토 685건, 규격추가 검토 82건, 평가 안내 자료 등 제작지원, 시범구매 서류 검토 612건
스카우터 및 인큐베이팅 지원	·(스카우터) 조달시장 밖 혁신제품 발굴 및 컨설팅 지원 ·(인큐베이팅) 기관 및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지원	· 스카우터 총 125개 추천, 데모데이 3회 실시(53개 제품발굴), · 기관·국민수요 대상 135건 인큐베이팅 실시, 기관 혁신수요 과제 사전 검토 등

248) 전문기관(혁신제품 지원센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되며, 위탁 계약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법령에 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49) 조달청에 따르면 한국조달연구원이 적합평가에 통과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및 조달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될 예정임.

구분	실적 기준	2023년 실적
해외진출 코디네이팅	· 수출지원사업 매트릭스 제작 및 홍보, · 수출지원사업 참가 연계 등	· 수출지원사업 검토 286건(152건 선정) · 해외실증 수요적합성 검토 31개사
혁신제품 원가검토	· 혁신제품 단가계약 및 시범구매 계약 원가검토	· 단가계약 및 시범구매 원가검토 총 38건
사업성과 측정분석	· 혁신구매 실적검토, 제도 성과 측정 등	· 실적검토 3,616건 · 성과관리 755개 기관(1,858개 혁신제품) · 만족도 조사 1,580건
혁신조달 정책연구	· 혁신제품 제도 발전방안 등 정책 연구	· 지역연계 R&D 사업추진 방안, · 혁신제품 ODA진출 사전조사, · 만족도 심층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벤처나라 상품지정 서류・규격검토	· 벤처나라 제품지정 및 전용몰 등록 지원	· 신규지정 신청 1,651건 · 연장지정신청 2,222건 · 벤처나라 신규등록 3,567건 · 규격 신청 299건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한편, 2024년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운영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조달사업법령[250]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며, 조달청고시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251]에서도 매년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사업계

2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③ 조달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2.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2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251)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사업관리 계획
2. 관련 조직운영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3. 계약관리 방안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사업추진일정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획서를 검토하고, 연도별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실적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하는 정도의 평가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음.

전문기관인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혁신제품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252]할 것이며, 3년 후 업무 재위탁시에도 조달사업법령에 정하는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한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 달성여부 등만을 고려하여 재위탁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업계획서 및 사업추진실적 등을 검토하는 것은 현행 일반 용역사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방식에서도 이루어지는 절차로, 2025년부터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용역을 낙찰받은 사업수행자가 아닌 법상 독점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기관의 지위로서 사업을 수행함을 고려할 때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등 질적 부분에 대한 성과 측정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위탁계약에 대한 과업 달성 등의 평가와 병행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수요기관·조달기업의 만족도[253] 등),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정도(혁신조달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채택·보완된 정책 정도 등),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 기여도 등에 대한 질적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 수행에 반영토록 하고 업무 재위탁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등의 성과평가체계 수립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감독·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매년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가 영 제3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2)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사업위탁 및 계약)** ① 조달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이내의 단위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범위 및 사업예산 등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253) 조달청고시인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수요기관·조달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측정방식 등을 규율하지 않고 있어 단순 훈시규정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임.

*제8조(감독·보고 및 지원센터 의무) ④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공공구매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법률에 맞는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 운영 필요 (조달정보화(정보화), 공정조달국)

< 현 황 >

「조달정보화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조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장비 운영유지, 시스템 운영 위탁,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6억 5,700만원 감액된 185억 9,200만원임.

「조달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스템운영위탁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2억 3,200만원 감액된 11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조달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정보화(정보화)(1131-501)	22,249	18,592	△3,657	△16.4
- 나라장터직접운영	1,070	1,102	32	3.0
- 전산장비운영유지	5,071	4,654	△417	△8.2
- 시스템운영위탁	**15,425**	**11,193**	**△4,232**	**△27.4**
- 시스템구축사업	683	1,643	960	140.6

< 검토의견 >

전자조달지원센터는 근거 법률이 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함)[254]에 따라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고 함)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 업체등록,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처리하고 있음.

또한, 전자조달법[255]에서는 나라장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인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2017년 공고절차를 통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도별 전자조달지원센터 위탁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최초 위탁사업 예산 편성 이후 위탁업무들이 추가됨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69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25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등) ①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5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전자조달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전자조달지원센터 위탁사업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비목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조달정보화(정보화)	관리용역비(210-15)	3,980	4,753	5,420	6,153	6,612	7,085	5,855	6,987

자료: 조달청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의 도입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 7월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포함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3년 3월 법 제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후 공고 및 평가절차를 거쳐 2017년 10월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의 도입 경과]

일 시	내 용
2012. 7.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포함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국회 제출
2013.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2017. 5. ~ 9.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절차 진행
2017. 10.	대전대 산학협력단을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
2018. 1. ~ 현재	대전대 산학협력단, 전자조달지원센터 업무 수행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정부가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사유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나라장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지원을 담당케 함으로써 나라장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전자조달법에서는 주된 업무인 '나라장터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기술연구·교육지원, 나라장터 수출 지원, 전자조달 국제협력 등)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전자조달법(제23조제2항)상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업무]

1.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2.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3.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4.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5.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6.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러나 전자조달지원센터로서 대전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실제 업무를 살펴보면 주된 업무인 나라장터의 관리·운영지원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은 나라장터와 일부 연계된 '조달정보시스템(목록정보시스템, e-발주시스템 등 17개) 운영'과 나라장터와 직접 관련없는 '조달청 전산장비 운영·전산소모품 납품 등'의 업무만을 전자조달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음. 전자조달법에서 나라장터의 관리·운영지원 외로 규정하고 있는 '기술연구·교육지원, 나라장터 수출 지원, 전자조달 국제협력 등'의 업무(제2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역시 센터 지정 이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지 않음.

[전자조달지원센터의 법률상 업무 및 실제 수행업무]

법률상 업무 (전자조달법 제23조제2항 관련)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실제 수행 업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제23조제2항 제1호)	나라장터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미수행 ※ 다만, 조달청은 해당 조문을 근거로 '목록정보, e-발주 등 조달정보시스템(나라장터와 일부 시스템 연계) 운영, 사무용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등)의 유지 관리, 전산소모품 납품 업무 등'을 전자조달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음.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연구 및 교육지원 (제23조제2항 제2호)	미 수 행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제23조제2항 제3호)	미 수 행

법률상 업무 (전자조달법 제23조제2항 관련)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실제 수행 업무
조달업무의 전자화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 (제23조제2항 제4호)	미 수 행
전자조달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홍보 지원 (제23조제2항 제5호)	미 수 행
국내기업의 외국정부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협력사업 (제23조제2항 제6호)	미 수 행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3조제2항 제7호)	미 수 행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반면에, 민간업체인 'A' 업체가 '나라장터의 관리·운영지원' 업무를 조달청으로부터 위탁[256]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어, 전자조달법에서 정하는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주업무(나라장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를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민간업체가 수행해오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A' 업체는 '나라장터' 관리·운영 업무 외에도, 나라장터의 하위시스템이거나 나라장터와 전체 시스템이 연결[257]되어 있는 시스템, 나라장터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스템[258] 등을 함께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음.

256)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A업체가 입찰에서 낙찰받거나 A업체의 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A'업체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됨.
257)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공사비정보광장, 조달통합정보시스템 등
258) 스마트나라장터, IT서비스관리, 하도급지킴이 등

['A' 업체의 위탁업무 현황]

위탁업무 (시스템명)	시스템 등 개요	나라장터와의 연관성 (*시스템상 연계 정보·기능)
나라장터	입찰공고, 업체등록,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계약된 상용품을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나라장터의 하위시스템
공사원가 통합관리 시스템	시설공사 원가계산, 입찰·계약내역 작성,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종합심사·종합평가낙찰제심사, 총사업비공사 검토 등 시설공사 업무를 통합 관리	나라장터 로그인 기능 사용, 입찰 및 기술검토, 개찰, 계약 정보 등 나라장터의 전반적인 행정 데이터 연계 *나라장터와 전체 시스템 연계
공사비 정보광장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를 분석하여 건설사업 초기단계 발주기관의 예산책정(개략공사비 예측)을 지원	나라장터 로그인 기능 사용, 나라장터 공고 입찰 및 계약 정보 데이터 연계, 나라장터 사용자 정보 조회 *나라장터와 전체 시스템 연계
조달통합 정보시스템 (DW)	조달청 내부직원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로데이터 수집 및 통계정보 제공	나라장터에서 생성된 원천 데이터 수집 후 통계서비스 제공 중 *나라장터와 전체 시스템 연계
스마트 나라장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나라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나라장터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전체 나라장터 시스템 중 입찰정보조회 서비스, 입찰 및 계약 서비스, 알림 서비스, 일정관리 서비스를 직접 연계하여 제공
IT서비스관리 (ITSM)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요청, 변경요청사항 관리	나라장터 IT서비스 요청 및 프로그램 변경사항 관리 *나라장터 응용프로그램 형상관리, 콜센터 사용자콜정보 연계 등
하도급 지킴이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따른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스템	나라장터 계약(원도급)에 따른 하도급 관리(계약, 대금 등) *나라장터와 계약 및 대금지급 정보 연계
온통조달	조달통합정보(DW)시스템과 외부 공공기관실적 정보가 합쳐진 집계형 보고서 제공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연계하여 통계서비스 제공(전체 공공조달규모의 62% 수준) *나라장터 이용 공공기관의 전체 계약정보 연계

위탁업무 (시스템명)	시스템 등 개요	나라장터와의 연관성 (*시스템상 연계 정보·기능)
공공건설 일자리 알리미	조달청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근로자의 구직, 건설업체의 기술자 수급 등 건설근로서비스를 제공	나라장터와 연계·분석을 통한 일자리 관련 정제된 데이터 및 통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나라장터와 공사계약, 입찰, 사용자, 공사발주 계획 정보 연계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대해 조달청은 나라장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바로 나라장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나라장터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최초 3년의 지정기간동안 검증과정을 거치고자 하였으나, 이후 차세대나라장터 구축이 추진됨에 따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전까지는 안정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운영체제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조달청은 현재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역시 나라장터와의 업무·시스템상 일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259].

그러나, 2013년 전자조달법 제정 이후 2017년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까지 5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역시 2017년부터 추진[260]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달청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 도입 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등 개선 노력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전자조달지원센터가 위탁받은 정보시스템들을 살펴보면 나라장터와 일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있으나, '성과관리시스템, e-감사시스템, 교육학사관리 시스템' 등은 성과관리·감사·교육 등 조달청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체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부 데이터를 나라장터로부터 제공받는 수준에 불과하고, '조달청 전산장비 관리 및 전산소모품 납품'은 나라장터와의 연계성을 인정할 수 없는 단순 전산장비·소모품 유지업무로 보여짐. 이처럼 나라장터와의 연계성이 없거나 낮은 업무들을 전자조달법상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업무로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자조달법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의 취지[261]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임.

259) 다만, 전자조달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법문구대로 해석할 경우 나라장터 본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라장터와 일부 연계된 시스템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나라장터를 제외하더라도 조달청은 'A' 업체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들이 전자조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들보다 나라장터와 연계성이 높거나 나라장터 본연의 기능 지원에 가까운 점을 인정하고 있음.

260) 2017년 연구용역 발주 → 2018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61)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다른 법률에 업무수행 근거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

조달청은 2023년 기준 70억 3,551만원의 용역(전산소모품 납품 제외) 계약, 2억 9,028만원의 전산소모품 납품 등 전자조달센터 업무 대가를 지급하여, 2023년 기준 총 73억 2,579만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함.

[전자조달지원센터(대전대 산학협력단)의 위탁업무 현황]

위탁업무 (시스템명)	시스템 등 개요	나라장터와의 연관성 (*시스템상 연계 정보·기능)
목록정보 시스템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식별하고 고유의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목록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나라장터 입찰 및 종합쇼핑몰 등재, 계약 등에 사용하는 분류체계와 물품정보 연계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 품목명, 규격, 사용자정보 등 연계
e-발주	제안요청, 제안평가 등 정보화사업 발주업무 지원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제안요청, 제안평가 등 정보화사업 등 발주업무 지원 *사용자 정보, 제안요청서, 입찰공고·평가정보, 평가결과정보 연계
e-제안요청 도움	AI 기반, 제안요청서(RFP) 자가진단 서비스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자가진단,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통해 나라장터의 수요기관 발주업무 지원 *나라장터 사용자 정보, 입찰공고정보 연계
혁신장터	혁신상품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혁신상품 공공조달 플랫폼	나라장터와 수요기관 구매 등 계약절차를 연계하여 처리 *나라장터의 기업·기관 정보, 경쟁적대화, 혁신제품 구매실적 등 식별번호 등 연계
벤처나라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벤처나라 공공조달 플랫폼	나라장터와 견적, 주문 등 계약절차를 연계하여 처리 *나라장터와 견적·주문 관련 시스템 연계
공정조달 관리시스템	다수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감시·차단하고, 의심징후 건을 조사·처리하는 시스템	나라장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감시하고 불공정조달 사건처리 *나라장터 계약정보, 납품요구, 종결영수증 및 외부 연계기관 데이터 연계

나, 해당 업무들은 전자조달법상 인정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도 역시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위탁업무 (시스템명)	시스템 등 개요	나라장터와의 연관성 (*시스템상 연계 정보·기능)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	조달청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을 위한 평가건에 대해 평가위원을 모집,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위원의 구성을 위한 교섭을 수행하는 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되는 물품·용역 계약의 평가위원을 모집·관리하고,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교섭시스템 운영
글로벌 코리아마켓	정부조달 경험을 가진 우수조달기업 물품을 해외조달시장에 소개, 해외바이어와 연결하는 시스템	나라장터에 등록된 한국조달기업 및 상품 소개 *나라장터와 사용자 정보 연계
빅데이터	나라장터에 축적된 방대한 조달데이터를 분석하여 조달청·공공기관·조달업체 등의 조달업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빅데이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활용 *나라장터 입찰·낙찰 및 계약정보 등의 데이터 연계
조달정보 개방포털	조달청에서 생성·취득·관리하는 조달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개방하기 위한 통합 온라인 창구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나라장터 데이터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라장터의 중요(조달요청부터 납품까지 전반적인 데이터) 데이터 연계
국유재산 관리시스템	은닉재산 등 조사하여 소유권 국유화 및 택지 개발 등 무상귀속을 협의하는 시스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내부 조직 및 사용자정보 활용 *나라장터와 사용자 데이터, 공통코드 데이터 연계
RFID 물품관리	정부물품의 취득부터 처분까지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물품관리업무 효율화 및 재정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RFID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물품 등록에 필요한 나라장터 계약 관련 정보 활용 * 공공기관 물품등록에 필요한 정보(검사검수, 계약업체, 납품통보, 주문정보) 등 연계
온나라 시스템	조달청 온나라-포털 내 게시판, 지식, 학습동호회 등 운영, 전자문서의 기안, 결재, 문서송수신과 메모보고, 과제관리 등의 기능 제공	조달청 온나라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일부 나라장터 정보 활용 *나라장터와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 관련 정보를 수요기관, 조달업체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달청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조달 통계자료에 나라장터 정보 활용 *나라장터 입찰공고, 우수제품, 녹색인증 관련 정보 연계
성과관리	조달청 부서별 성과를 모니터링·분석하고, 성과평가를 관리하는 시스템	조달청 성과관리를 위하여 일부 나라장터 정보 활용 *나라장터 사용자 및 부서 등 일부 데이터 연계

위탁업무 (시스템명)	시스템 등 개요	나라장터와의 연관성 (*시스템상 연계 정보·기능)
e-감사	조달청 감사업무를 위한 익명 부패, 갑질신고센터, 성폭력신고센터, 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진단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조달청 감사업무를 위하여 일부 나라장터 정보 활용 *나라장터 사용자 및 부서 등 일부 데이터 연계
교육학사 관리 시스템	조달교육원 교육과정·교육신청 안내, 교육과정 관리, 강사관리 등 조달교육 업무기능 관리 시스템	조달청 직원 등의 교육학사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나라장터 정보 활용 *나라장터 기관 및 업체 정보 연계
조달청 전산장비	조달청 내 사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등)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나라장터와 연계성 없음
전산소모품	조달청 사무용 전산장비의 소모성 부품(토너 등)의 공급	나라장터와 연계성 없음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렇듯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센터 도입의 주된 사유인 나라장터 관리 및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전자조달법에서 정하는 센터업무를 대부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위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전자조달지원센터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확보 및 민간분야 활용 방안 등 마련 필요 (조달정보화(정보화), 공정조달국)

< 현 황 >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공공조달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하여 6만 9,000여개의 공공기관과 57만 조달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자조달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6억 5,700만원 감액된 185억 9,200만원임.

[2025년도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정보화(정보화)(1131-501)	22,249	18,592	△3,657	△16.4
- 나라장터직접운영	1,070	1,102	32	3
- 전산장비운영유지	5,071	4,654	△417	△8.2
- 시스템운영위탁	15,425	11,193	△4,232	△27.4
- 시스템 구축	**683**	**1,643**	**960**	**140.6**

「조달정보화(정보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재·개정, 정책의 변화, 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라 조달정보화시스템을 구축·재구축하는 사업임. 「시스템 구축」 사업 중 일부인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는 4대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에 대한 통합적인 계약·수급·품질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민관협력 통합계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3억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시스템 구축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 시스템 구축	683	1,643	960	140.6
◦LH 입찰내역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1,029	1,029	신규
◦공사비정보광장 고도화를 위한 ISP	-	313	313	신규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	**301**	**301**	**신규**

< 검토의견 >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이 단순한 계약정보의 전산화를 넘어 실질적인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급·품질 관련 데이터의 확보,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및 민간 분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조달청이 구매·공급하는 물품 중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품목인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를 4대 관급자재로 분류,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4대 관급자재의 연간 조달규모는 6조원, 전체 시장규모는 32조원으로 공급 안정성이 경제·사회·안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데, 4대 관급자재의 실무적인 계약관리를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분산하여 처리하면서 산업특성·산업현황·업계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고 있어 4대 관급자재의 수급 불안 시 대응이 어렵고, 품질·가격관리 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특히, 2022년~2023년 대규모 관급레미콘 수급차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조달청은 민관협력 우선납품제, 분할납품기한제, 품질불량 판정자재에 대한 즉각적인 거래정지 조치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 수급 및 품질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공사[262]에 핵심적인 4대 관급자재에 대하여 그간 분산 관리되던 계약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급 및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으로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을 편성하였음.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급 및 품질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AI 등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조달청(제도 및 계약 담당), 업체, 수요기관, 유관품질점검기관 등 다양한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겠다는 계획임.

---

262) 교통시설(도로·교통·항만 등)·문화시설·교육시설 등 대규모 국민 이용시설 및 주거시설(아파트 등) 등

< 4대관급자재 민관협력시스템 개념도 >



자료: 조달청

또한, 기존 조달청의 4대 관급자재 관리가 단순히 계약관리(계약체결, 불이행 시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은 계약·납품요구·납품·품질관리·대금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건설 성수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관급자재 수급차질 문제와 공공건축물의 안전 관련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대관급자재 민관협력시스템 주요 목표]

구분	현재(AS-IS)	개선(To-Be)
통합계약관리	▪ 각 지방청 분산관리 ▪ 수기작업	▪ 전 지역 통합관리 ▪ 전산 통합관리
납품이행관리	▪ 납품 미이행, 지체 등 파악 불가 ▪ 대금지급 지연	▪ 납품 전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 ▪ 검사·검수시스템으로 신속한 대금지급
통합품질관리	▪ 불량제품 신속 차단 불가 ▪ 품질관련 부처별 업령(業齡) 및 업체정보 미연계	▪ 공사현장 납품 시 불합격 여부를 실시간 조회하여 유통 차단 ▪ 유관기관 품질관리 시스템 연계
선제수급관리	▪ 연간 수요량 예측이 불가 ▪ 수급차질 사전 대응 불가	▪ 연간 관급수요 규모 예측 ▪ 수급동향 선제 파악, 수요물량 확보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 부재(조합 중심 관리) ▪ 생산능력 및 실제 생산정보 파악 불가	▪ 전국 생산업체 정보데이터 보관 ▪ 생산능력 파악으로 적기 대응

자료: 조달청

다만,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4대 관급자재를 사용하는 공공공사 관련자가 가진 다양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달청이 동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 담당자, 업체, 수요기관, 유관품질점검기관 등 다양한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보유한 정보값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구매선택·수급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야 함.

예를 들어 조달청이 수급불안 발생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생산가능능력, 생산정보, 납품정보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조달청은 실제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납품 현황, 여유 생산능력 등에 대한 데이터 또는 예상치를 어떻게 확보·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업체별 민수공급량, 주요공사현장 정보, 국토교통부 및 LH 등 타기관 품질점검·공장점검 결과 등 업체, 수요기관, 시공사, 품질점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수급 및 품질 관련 정보들을 신속하게 취합·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스템 설계 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조달청은 각 시스템 이용자가 보유한 정보 중 취합이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주요 시스템 이용자별 보유 정보 취합 사항]

구분	취합 필요 내용
조달청 (본청/지방청/지원센터)	계약(물가변동 시) 제출받은 가격·업체 관련 정보, 최근 관급·민수 자재 공급실적 통계, 한국은행·스틸데일리 등 물가 및 자료, 각 지방청 품질점검 결과 등
계약업체	생산가능능력, 월간/분기별 납품 진행 현황, 조합 배정 관련 정보, 유관기관 품질·공장점검 결과, 납품장소(하치장, 생산공장) 정보 등
수요기관	중요공사현장, 분할 납기 설정을 위한 소요량 통보서 등
유관기관 (국토부, LH 등)	품질·공장점검 결과, 연간 시설공사 계획 등

자료: 조달청

아울러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 관련 공급체계·납품 및 품질 관리·수요량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관이 협력하는 계약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단순한 계약정보의 전산화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분석하는 AI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에서 보유한 관련 정보들이 주기적으로 시스템으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민간 분야가 보유한 업체정보·수급현황 등의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을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가 시스템이 분석·제공하는 정보를 생산·영업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를 위해 업계가 생산계획이나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간·분기별·월별 자재 예측 수요량 등 맞춤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민간 분야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활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이에, 조달청은 4대 관급자재 민관협력계약시스템이 단순한 계약정보의 전산화를 넘어 실질적인 수급 및 품질 관리에 기여하는 민관협력시스템으로 구축되기 위한 수급·품질 관련 데이터의 확보,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및 민간 분야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으로의 편성 필요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기획조정관)

< 현 황 >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은 아태 지역 전자조달 확산과 공공조달 통상 확대를 위해 조달 네트워크를 설립·운영하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달 우수사례 지식경험 교류를 통한 조달역량을 강화하고, 아태 지역 조달기관 간 협력망 구축 및 이를 통한 우리 조달기업의 역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1억원이 증액된 26억 4,400만원임.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은 혁신제품[263]을 통한 필리핀의 결핵진단 기술 선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7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1233-332)	544	2,644	2,100	386
-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544	544	-	신규
-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	1,380	1,380	신규
-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	-	**720**	**720**	**신규**

263) ① 이동식 X-ray, ② AI 의료영상판독 SW, ③ 방사선 보호 가운 등 3개 혁신제품 지원

< 검토의견 >

조달청은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원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동 내역사업은 아태 지역의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첫째, 조달청은 ODA 사업으로 추진하는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상 제기된 위험요인의 해소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원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19년부터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조달시장을 신수출시장으로 개척하기 위해 수출과 연계한 해외실증을 진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포화 상태인 국내 조달시장을 벗어나 약 2조 달러의 경쟁가능한 해외조달시장[264]으로의 진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에 특화된 혁신적 조달기업과 ODA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사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패키지화된 혁신제품의 활용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ODA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현지 결핵 진단 인프라 현황 및 사업 수요를 조사, 사업추진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외교부 검토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을 「2025년 국제개발협력(ODA)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심의·의결하였음.

조달청은 동 ODA 사업의 추진을 통해 중소 혁신기술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달청에 따르면 ODA 전문기관인 KOICA는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ODA사업에 적합한 제품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혁신제품에 대한 가장 많은 정

264) 약 13조 달러의 해외조달시장 중 경쟁가능한 GPA가입국, 국제기구, ODA 조달시장 규모의 합이 2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3년 기준 국내조달시장의 12배 규모임.

보를 보유하고 있는 조달청이 혁신제품 ODA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또한,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포함한 혁신기술 조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으로 총 159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달청은 기존 지원 방식이 아닌 ODA 사업으로 필리핀에 이동식 X-ray, AI 진단장비, 방사선 보호가운 등 3가지 혁신제품(이하 “기자재”라 함)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해외실증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평균 2~3억원) 제품 성능 및 품질 검증에 필요한 최소 수량, 최단 기간으로 테스트하는 것이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 지역에 다량으로 물품 보급이 어려우며, 결핵진단 관리 사업의 경우 현지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여 해외실증 등 기존 제도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임.

[2025년도 혁신기술 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안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1237-433)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14,000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1,200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233-332)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	720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내역사업은 총 3년에 걸쳐 2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 내용 및 소요예산(계획)을 살펴보면 사업 1차년도인 2025년도에는 7억 2,000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으며, 2차년도인 2026년도에는 12억원이, 마지막 3차년도인 2027년도에는 4억 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하고 있음.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 연도별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주요 사업 내용 및 예산	총 소요예산
2025년도(1차년도)	· 전문가 파견: 210 · 기자재 공급: 450 · 전문가 초청 및 연수 등 역량강화: 60	720
2026년도(2차년도)	· 전문가 파견: 210 · 기자재 공급: 900 · 전문가 초청 및 연수 등 역량강화: 90	1,200
2027년도(3차년도)	· 전문가 파견: 130 · 기자재 공급: 150 · 전문가 초청 및 연수 등 역량강화: 200	480
합 계		2,400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조달청은 동 내역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는데, 기자재의 경우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265]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지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업체 공고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임. 이에 따라 조달청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 수행업체가 필리핀 현지에서 기자재를 활용하여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그런데 사업 수행업체가 필리핀 현지에서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X-ray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서[266]에는 수원국 측 사전진단 인력 확보 미비로 인한 사업 효율성 저하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하고 있음.

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필리핀 의료법상 방사선사 자격 보유자만 이동식 X-ray의 사용이 가능한데, 필리핀 공공 의료체계에서는 엑스레이를 보유한 종합보건소(Super Health Center)와 상급 병원에서만이 방사선사를 보유하고 있음. 해당 방사선사들은 소

2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266) 한국조달연구원, 2024. 2.

속기관의 엑스레이 촬영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결핵 사전진단 사업 참여에 일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은 우리나라 혁신기술 조달기업의 혁신제품을 필리핀 현지에서 활용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해당 혁신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임. 따라서 필리핀 현지에 이동식 X-ray 등 혁신제품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 기간 동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품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투입 기자재를 활용하여 결핵 사전진단을 수행할 현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투입 기자재의 활용 상 어려움으로 인해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수행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해 조달청은 2023년 12월 한국 조달청과 필리핀 예산관리부 간 MOU 체결, 2024년 4월 필리핀 조달청장과 양자회의, 2024년 5월 조달청장 필리핀 방문 양자회의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조달청이 최초로 추진하는 조달 혁신제품의 시장개척·수출 지원과 ODA 전략을 융합하는 신규 ODA 사업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조달청은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이 아태 지역의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아태 지역 전자조달 확산과 공공조달 통상 확대를 위한 조달 네트워크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에 ADB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를 발족하고 2015년 설립총회를 개최함.

조달청과 ADB는 2015년부터 아태 지역의 전자조달 확산을 위해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역내 전자조달을 확산[267]시켜 나가고 있으며, 조달청은 ADB의 지속적인 아태 지역 협력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ODA 예산으로 편성하여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음.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184	184	184	184	184	544	2,644
-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184	184	184	184	184	544	544
- 키르기스스탄 전자 조달 구축 사업	-	-	-	-	-	-	1,380
-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	-	-	-	-	-	-	720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268]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ODA

267) 회원국 중 전자조달도입국 : (2013년) 12개국 → (2018년) 22개국 → (2022년) 33개국

26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① 조달청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조달시장 및 공공입찰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3. 조달 물품·용역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를 통해 개발도상국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축적으로 국제 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그런데, 2019년부터 편성하고 있는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ODA)」 사업의 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자조달을 확산하여 정부조달의 투명성 증대 및 조달 분야 부패 감소에 기여하고, 역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달제도·전자조달 노하우를 공유하는 「아태지역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25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내역사업도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및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 구축 사업」으로, 아태 지역의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성격에 부합하는 아태 지역의 전자조달 확산 및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의 아태 지역 현지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의 경우 우리기업 혁신제품의 수출 및 개발도상국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전자조달 확산이라는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조달청은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사업인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5) 전통문화상품 홍보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업무협의 강화 필요 (조달 물자 및 계약 관리, 구매사업국)

< 현 황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은 조달물자 구매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달물자 구매계약상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50억 700만원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판로지원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10,097	15,007	4,910	48.6
- 공무직운영	3,361	3,873	512	15.2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174	134	△40	△23.0
-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 관리 지원	330	310	△20	△6.1
- 우수제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 운영	909	909	-	-
- 정보기술 및 용역서비스 선진화	115	115	-	-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206	206	-	-
-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판로지원	**94**	**242**	**148**	**157.4**
- 공공혁신조달사업 운영비	3,050	7,149	4,099	134.4
-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1,858	2,069	211	11.4

< 검토의견 >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 홍보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상품 개발·보급에 관한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과의 협업 및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인 「전통문화상품 조달물자 지정 판로지원 사업」은 전통문화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전통문화상품 선정심사,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 전통문화상품 전시회 및 판로지원, 홍보 등을 하는 사업임.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 보급을 확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전통공예품 등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하여 제3자 단가계약[269]을 체결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공공분야에 조달하고 있음.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 사업은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무형문화재 등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조달물자로서의 전통문화상품을 적극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홍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전통문화상품 홍보예산안은 2024년 대비 1억 4,800만원 증액된 2억 371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2025년 전통문화상품 홍보 예산 편성내역]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편성 내역	- **전통문화상품 전시회 개최 : 2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8,300,000원×**2회**=16,600천원 · 현수막 설치 : 800,000원×**2회**=1,600천원 · 전시대 대여 : 900,000원×**2회**=1,800천원 - **공공기관 홍보 : 20,000천원** · **홍보책자 발간 : 10,000천원** · **홍보동영상 : 10,000천원** -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시회 개최 등) : 15,710천원	- **전통문화상품 전시회 개최 : 4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8,300,000원×**4회**=33,200천원 · 현수막 설치 : 800,000원×**4회**=3,200천원 · 전시대 대여 : 900,000원×**4회**=3,600천원 - **전통문화상품 홍보 : 61,000천원** · **홍보물 제작(팜플렛, 포스터, 동영상, 미디어 홍보물 등): 36,400천원** · **공공기관 대상 전시회 : 24,600천원** - **지역 연계형 전통문화상품 전시대 설치 : 87,000천원** - 전통문화상품 판로지원(정부조달문화상품 특별전시회 개최 등) : 15,710천원
합 계	55,710천원	203,710천원

*굵은 글씨는 2024년 대비 2025년 신규·추가확대된 부분임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69) 조달청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하는 계약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장인 및 생산업체는 개인이거나 소규모 가내수공업이 주를 이루므로 전문적이고 경쟁력있는 홍보 역량을 갖추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조달청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상품을 홍보함으로써 전통문화상품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전통문화상품의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국가유산기본법 등[270]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시회 등의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문성이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거나, 업무협의 등을 통해 조달청 홍보방식에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의 판로 진출 활성화를 위해 나라장터종합쇼핑몰[271](전통문화상품관)과 국가유산진흥원의 KHmall[272]의 연계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시회,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홍보 등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홍보사업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업무협의를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연도별 전통문화상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은 연간 약 20억원 수준[273]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공공조달 판매실적의 부진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

270)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6.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271)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272) 국가유산청 산하기관인 국가유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전통문화상품 전문쇼핑몰

273) ('20) 13억 → ('21) 19억 → ('22) 22억 → ('23) 26억

이를 홍보방식 개선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전통문화상품의 공공조달시장 판매실적 및 지정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전통문화상품*	13	19	22	2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및 상설전시판매관(대전정부청사 내)을 통한 공급실적임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조달청은 전통문화상품 홍보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상품 개발·보급에 관한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과의 협업 및 업무협의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재건축예정인 경남비축기지의 지역 이용업체 수요에 맞는 비축 추진 필요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공공물자국)

< 현 황 >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비축 역량 확충을 위해 노후화가 심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 및 이용실적이 많은 경남비축기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규 편성되었음.

2025년 예산안은 4억 7,7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 4억 7,3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7162-510)	-	477	-	-
- 실시설계비(420-02)	-	473	-	-
- 시설부대비(420-05)	-	4	-	-

< 검토의견 >

조달청은 경남 비축기지 재건축을 통해 확충될 공간에 신규로 비축할 물자 선정 시, 지역업체의 이용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업체의 수요에 맞는 비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인천, 부산, 군산 3개의 대형 비축기지와 경남, 대전 등 6개의 소형비축기지에 총 18개동의 비축창고(총면적 90,526㎡)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형비축창고 6개소의 총면적은 15,215㎡로 조달청 비축창고 총면적 대비 16.8%에 불과함.

[조달청 소형 비축기지(6개소) 현황]

(단위: ㎡)

구 분	대구	경남	대전	광주	충북	강원	합계
면적	2,670	2,726	3,888	3,374	873	1,684	15,215
신축년도	1999년	1981년	1980년	2009년	1985년	1999년	-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동 사업의 목적을 소형비축기지 중 경남 비축기지를 우선 재건축하여 비축공간 확대 및 시설개선을 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력 확보 및 비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설명함.

조달청은 소형비축기지 중 경남 비축기지를 우선 재건축 추진하는 사유로, 경남 비축기지는 창고 노후화가 심하고, 낮은 층고와 많은 기둥으로 입·출고 작업에 애로가 있으며, 바닥하중도 불명확하여 비축물자 보관·방출용도로 부적합하다는 점[274]과,

2023년 국정감사시 '지리적 위치와 지역별 비축물자 수요를 고려한 비축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국회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소재지별 이용업체수 및 이용실적이 많은 경남비축기지의 재건축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음.

조달청의 2023년 지역별 비축물자 이용업체수 및 이용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경남지역의 비축물자 이용실적 등이 타 지역보다 높고, 신축년도는 대전과 비슷하나 이용실적 등이 보다 많은 경남 비축기지를 우선 재건축하려는 조달청의 계획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74) 조달청에 따르면 경남 비축기지는 비축물자의 방출 없이 일부 비축물자(비철금속 1종, 희소금속 1종)만을 보관 중에 있음.

[소형비축기지 소재지별 이용업체수 및 이용실적 현황('23.12월 기준)]

(단위: 개사, 억원)

구분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광주·전라	충북	강원
이용업체수 (이용실적 업체수)	70 (50)	102 (66)	28 (18)	22 (16)	23 (17)	6 (5)
이용실적	415	620*	136	170	294	242

* 부산·경남지역 이용업체의 실적(620억원)은 전체(3,553억원)의 약 17%를 차지
자료: 조달청

조달청에 따르면 경남비축기지 재건축 시 현면적(2,726㎡)보다 2배 이상으로 연면적 확장이 가능하며, 사용가능면적은 현재(1,381㎡)보다 3.5배 이상인 4,932㎡로 확대(3,551㎡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한편, 조달청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경남비축기지 재건축으로 추가 확보된 공간은 공급망 대응력 제고를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을 우선 비축할 계획으로, 재건축된 비축공간에 알루미늄 보관시 약 1만 4천톤 보관이 가능하여 기존 비축 대비 알루미늄 약 1만톤을 추가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함.

그러나 공급망 대응력 제고 외에 경남비축기지를 재건축하는 주요 목표인 '비축물자의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경남지역의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수요품목을 고려하여 재건축된 경남비축기지의 비축품목 및 물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경남지역 업체의 비축물자 이용 실적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외에도 다양한 비철금속(알루미늄 포함 비철금속 6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3년 경남지역 업체의 비축물자별 이용 실적]

구분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합 계
이용실적	95억원, 2,727톤	72억원, 602톤	16억원, 528톤	67억원, 1,674톤	50억원, 128톤	14억원, 42톤	314억원, 5,701톤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 경남지역 업체의 알루미늄 이용 실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알루미늄 이용량 (톤)	31	718	538	135	499	255	167	71	27	61	65	160	2,727

특히, 경남비축기지는 현재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만을 비축하고 있으며, 월별로 비축과 방출이 반복되는 현재 비축물자 비축시스템을 고려할 때 현재 경남비축기지의 알루미늄 비축량수준[275]으로도 경남 지역 업체의 알루미늄 이용 수요는 충족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이용업체의 비축물자 수요를 함께 고려하여 재건축 후 경남비축기지의 비축물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276][277].

275) 조달청은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비축기지별 비축물자 보유량 등을 비공개정보로 지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알루미늄 비축량을 적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경남기지의 알루미늄 보유량으로도 지역업체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알루미늄을 비축하고 있음.

276) 공급망 위기 및 비축목표량을 고려해 알루미늄 추가 비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면, 조달청 전체 비축기지의 비축공간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비축물자 조정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비축 중인 알루미늄은 4개 비축기지(부산, 인천, 군산, 대구)에서 전량 야적 중으로, 조달청은 경남비축기지 재건축시 야적중인 알루미늄을 이동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비축기지별 수요에 맞게 비축물자 조정(이동 포함)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임.

277) 조달청은 동 지적에 대해 알루미늄 우선 비축만을 추진하지 않고, 경남비축기지 재건축 완료시 공급망 상황·비축목표량과 지역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함.

통계청 소관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5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5억 7,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00만원(△0.9%) 감소하였음.

이는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8,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수입대체경비 수입에서 1억 900만원 감액, 고정자산매각대 수입에서 1,000만원 감액을 반영한 결과임.

[2025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 감(B-A)		비 고
			금 액	%	
합 계	3,610	3,579	△31	△0.9	
○ 재산수입	2	2	-	-	· 기관명의 통장 이자
○ 경상이전수입	162	162	-	-	· 과년도 과지급금 환수, 과태료
○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104	2,192	88	4.2	· 가계금융복지조사 분담금 · 통계간행물 판매수입 ·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등
○ 수입대체경비수입	1,260	1,151	△109	△8.7	· 통계교육 수입대체경비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 고정자산매각대	82	72	△10	△12.2	· 불용 관용차량 매각 등

자료 : 통계청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62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374억 9,800만원(32.3%) 증가하였음.

주요사업비는 전년대비 54.2% 증가한 3,900억 9,200만원이며,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에서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 등으로 전년대비 80.8% 증가한 3,070억 4,000만원이 편성됨. 통계행정지원은 개도국 통계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12.2% 증가한 184억원이 편성됨.

[2025년 통계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B-A)	
			금 액	%
합 계	425,267	562,765	137,498	32.3
○ 인 건 비	154,958	155,020	62	-
○ 기 본 경 비	17,311	17,653	342	2.0
○ 주 요 사 업 비	252,998	390,092	137,094	54.2
-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교육	19,060	16,745	△2,315	△12.1
-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46,207	46,531	324	0.7
- 국가기본통계생산 및 지원	169,837	307,040	137,203	80.8
- 성과중심 책임운영기관운영	1,490	1,376	△114	△7.7
- 통계행정지원	16,404	18,400	1,996	12.2

자료 : 통계청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025년도 통계청 신규사업은 없고, 2025년도 예산안 중 20억원 이상이면서, 2024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개 세부사업임.

인구·주택·농림어업 관련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5년 주기의 인구주택총조사(1,158억 2,600만원)와 농림어업총조사(564억 4,700만원)의 실시, 246개 기관 451종 국가승인통계('24년 기준) 작성을 위한 통계생산시스템의 운영 전환 및 신규 확대와 관련한 나라통계시스템구축 사업(87억 6,800만원),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및 통계데이터센터(SDC) 활성화를 위한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사업(103억 1,600만원),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통계 역량강화 지원 사업(47억 6,600만원)에서 증가하였음.

[2025년 통계청 주요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금 액	%
나라통계시스템구축(정보화)	6,524	8,768	2,244	34.4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정보화)	7,740	10,316	2,576	33.3
인구주택총조사	26,326	115,826	89,500	340.0
농림어업총조사	2,096	56,447	54,351	2,593.1
개도국 양자 통계지원(ODA)	3,804	4,766	962	25.3

자료 : 통계청

나. 검토의견

(1) 개선과제 이행점검 등 품질진단 사후관리 강화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현 황 >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은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제공하고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통계작성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억 2,500만원이 감액된 66억 7,300만원임.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2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	7,498	6,673	△825	△11.0
- 통계기준	3,835	2,986	△849	△22.1
- 품질관리	**2,201**	**2,559**	**358**	**16.3**
- 국가통계 확대	734	0	△734	△100
- 국가통계 발전	729	1,129	400	54.9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신규 반영한 핵심진단을 통해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품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선과제 이행점검 강화 등 품질진단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국가통계 전반의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통계작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과제 이행점검 및 통계품질개선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품질진단은 「통계법」에 따라 ① 통계청이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주요 통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② 통계작성기관이 소관 통계에 대하여 매년 실시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및 ③ 통계청장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낮아졌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구분됨.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구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근 거	통계법 제9조	통계법 제10조	통계법 제11조
대 상	주요 통계[1)]	품질 저하 통계[2)]	모든 승인통계[3)]
주 기	5년[4)]	수시	1년
수행기관	통계청/용역기관	통계청/연구용역	작성기관/통계청

1)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통계법 시행령 제7조)
2) 상시(언론 등 외부지적)·기획(자체진단 저평가 통계 등)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문제가 발견된 통계
3) 지자체 공통통계(시·도 기본통계, 주민등록통계 등) 및 당해연도 정기·수시 품질진단 통계, 당해연도 미공표통계 등은 제외
4) 제4기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20~'24년)에서 5년간 345종 진단 계획 수립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통계청은 5년 주기로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 8월에 수립한 제5기(2025 ~ 2029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에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진단종수 확대[278)]와 함께 핵심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

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예산을 2024년 예산 대비 3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품질관리 내역사업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증감사유
품질관리 내역사업 계	2,201	2,559	358	16.3	
- 정기통계품질진단	**2,026**	**2,344**	**318**	**15.7**	**진단종수 증가 및 핵심진단 신설**
- 자체통계품질진단	40	40	-	-	
- 수시통계품질진단 등	134	174	40	29.8	품질개선과제 컨실팅 확대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핵심진단은 지정통계 및 중요도·활용도가 높은 통계 중 고용, 주택 등 주요 이슈가 되는 통계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심층적인 진단을 통해 통계 품질 저하 요인을 발굴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정기통계품질진단과 병행하여 수행할 예정임.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작성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도출한 개선과제를 적시에 이행하여 통계 품질의 실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재 통계청은 정기·수시통계품질진단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이행계획에 따라 매년 2회(3월, 9월)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이 제출한 이행상황을 매년 1회(12월)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통계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현황을 보면, 2년 이내의 중·단기[279] 이행율이 높지 않은 상황임. 특히,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통계

278) 국가승인통계 증가에 따라 제5기(′25 ~ ′29)에는 제4기(′20 ~ ′24) 338종보다 74종 증가한 412종의 국가승인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할 예정임.
※ 국가승인통계: (2019년) 1,142종 → (2022년) 1,273종 → (2024년) 1,343종

279) 통계청은 실무적으로 개선과제를 이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1년 이내), 중기(1~2년 이내), 장기(2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중 절반 이상이 공표주기 1년 이하인데, 이러한 통계가 품질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재생산·공표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품질진단 대상통계의 개선과제 이행 미완료 현황]

(2024. 3. 31. 기준, 단위: 건, %)

구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진단 대상 통계	개선 미완료 통계		진단 대상 통계	개선 미완료 통계		진단 대상 통계	개선 미완료 통계	
			미완료율			미완료율			미완료율
2019	120	11	9.2	2	2	100	555	203	36.6
2020	73	12	16.4	2	1	50	546	201	36.8
2021	68	22	32.4	2	1	50	669	191	28.6
2022	70	59	84.3	1	1	100	712	196	27.5
2023	67	64	95.5	1	1	100	745	240	32.2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 미완료 통계 현황]

(2024. 3. 31. 기준,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선 미완료 통계		11	12	22	59	64
	공표주기 1년이하	7 (63.6%)	7 (58.3%)	16 (72.7%)	31 (52.5%)	53 (82.8%)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통계청은 신설한 핵심진단에 대한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와 통계품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 품질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 강화 등 품질진단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설 다목적교육관의 교육 기능 강화 필요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통계교육원)

< 현 황 >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사업」은 통계교육원 등 통계청 소속 3개 기관(통계교육원, 통계개발원, 충청지방통계청)이 입주하고 있는 통계센터의 임차료, 청사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운영경비 예산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억 5,600만원 감액된 6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목적교육관 사업」은 2025년도에 7억 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1032-305)	7,718	6,362	△1,356	△17.6
- 통계센터	5,467	5,537	70	1.3
- 다목적교육관	-	**706**	**706**	**순증**
- 제주분원	2,251	119	△2,132	△94.7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2025년 신설되는 다목적교육관의 교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은 통계를 생산·분석·가공할 수 있는 통계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1991년부터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280]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통계교육원[281]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통계교육원은 현재 대전(본원), 서울, 제주 지역에서 교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2025년부터 대전(본원) 바로 옆에 '다목적교육관'을 신축·운용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탁관리비 3억 7,600만원 및 자산취득비 3억 3,000만원 등 7억 600만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음.

동 교육관은 2020년 7월 사업이 승인되어 2023년 10월경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될 예정임.

[다목적교육관 건설 개요]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분기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개월 수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	36	39	42	45	48	51	54			
기획/설계	검토	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공사											발주									입주	
주요사항	▲사업승인('20.07)												착공('23.10)▲					준공('25.05)▲			

자료 : 통계청

280)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등)** ①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의 사람을 교육훈련할 수 있다.
④ (생 략)

281)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직무)** 통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계청 소속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다목적교육관 규모 및 시설현황]

건물 연면적(규모)	1층	2층	3층	B1층
4,397㎡ (지하 1층, 지상 3층)	다목적강당 (체육시설)	강의실 30석(1실) 60석(1실)	강의실 30석(1실) 60석(1실)	기전실/주차장

자료: 통계청

동 교육관의 건설비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되었으며, 2025년 77억 7,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총 133억 5,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임.

[다목적교육관 건설 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旣 투자 ('22년까지)	'23년 (결산)	'24년		'25년
				당초	현액	
합 계	13,355	625	1,189	2,904	3,767	7,774
· 건설보상비	-	-	-	-	-	-
· 기본설계비	293	293	-	-	-	-
· 실시설계비	321	321	-	-	-	-
· 공 사 비	11,012	-	800	2,114	2,893	7,319
· 감 리 비	1,478	-	337	702	786	355
· 시설부대비	251	11	52	88	88	100

자료 : 통계청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교육관 건설을 마치고 나면 「국유재산법」 제8조[282]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 사무가 이관되는데, 통계청은 통계교육원 자체 인력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 5월 건물이 준공되면 대전 본원(통계센터)과 연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 6개월분에 해당하는 관리용역비(210-15) 3억 7,600만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음.

이는 「국유재산법」 제29조[283]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부분이며, 현재 교육센터도 2009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육센터 바로 옆에 신설되는 다목적교육관도 현 위탁업체를 통하여 관리 운영 시 기존 관리인력 및 관리

282)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83)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이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이미 대전(본원), 서울, 제주에 교육시설이 있음에도 대전 본원 바로 옆에 다목적교육관을 추가로 건설한 만큼, 기존 교육시설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통계청의 기존 교육시설별 교육실시현황을 보면 강의실 규모 대비 교육실시인원을 고려할 때 기존 교육시설의 강의실이 협소하거나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통계청 교육시설별 최근 교육실시현황]

구분	강의실 규모	교육실시현황			회당 참석 인원(명)
		연도	교육 횟수 및 내용	인원(명)	
대전(본원)	- 강의실 10개 - 교육가능인원 438석	2022	계절조정실무 등 213회	3,635	17.1
		2023	R초급통계분석 등 185회	3,454	18.7
		2024. 9.	통계품질관리 등 103회	2,792	27.1
서울분원	- 강의실 수 1개 - 교육가능인원 40석	2022	SAS중급 통계분석 등 10회	130	13.0
		2023	엑셀초급데이터분석 등 11회	247	22.5
		2024. 9.	파이썬초급통계분석 등 11회	277	25.2
제주분원	- 강의실 수 1개 - 교육가능인원 36석	2022	6급 승진자 역량향상 등 3회	43	14.3
		2023	지방청관리자 리더십 등 9회	218	24.2
		2024. 9.*	-	-	-

자료 : 통계청
*제주분원의 경우 2024년도는 전체 리모델링 중으로 교육운영 실적 없음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새롭게 다목적교육관을 지어도 기존 교육시설의 교육수요는 충분하며, 신설되는 다목적교육관을 통하여 자기 주도형 체험 및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대면과 실시간 영상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청 현장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통계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통계교육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통계청 소속 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 등의 통계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청은 2024년 12월 다목적교육관 활용 계획 수립 시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신설되는 다목적교육관의 교육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중앙행정기관 등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이용률 제고 필요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통계서비스정책관)

< 현 황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통계기획에서 자료집계·분석 및 보관까지 통계작성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용 통계정보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2억 4,400만원이 증액된 87억 6,800만원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운영」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3억 8,900만원이 증액된 43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2031-305)	6,524	8,768	2,244	34.4
-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1,994**	**4,383**	**2,389**	**119.8**
-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4,376	4,246	△130	△3.0
- AI 통계분류 자동화시스템 운영	154	139	△15	△9.7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저비용·고효율의 통계생산 체계를 위하여 구축된 범용 통계 생산시스템인 나라통계시스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청 외에 각 통계작성기관이 고유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분산형 통계체계 하에서 발생하는 통계생산비용 중복 및 통계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계생산과정을 표준화하여 통계작성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범용 통계생산시스템으로 2011년부터 구축·운영되고 있음.

이후 통계청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의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교체 필요성과 종이조사·대면조사에서 디지털 전자조사로 변화하는 통계조사 환경변화 반영을 위하여 2021년부터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였고, 2023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26년까지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에서 운영중인 개별 통계조사의 신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구축현황 및 전환운영계획]

2020년	2021년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ISP 수립 ▷	차세대시스템 구축 ▷	운영 1차년도 ▷	잔여 조사 전환 ▷	조사 전환 완료
	기존 조사 전환 (112종)	-	기존 조사 전환 (235종)	기존 조사 전환 (91종)

* 2024년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하여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운영 전환이 중단되었음.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안은 43억 8,300만원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위탁운영비, 기존 나라통계시스템 통계조사 235종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으로의 운영전환 비용과 신규 통계조사 시스템 개발비용이며, 2024년 대비 23억 8,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내역사업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증감사유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운영 내역사업 계		1,994	4,383	2,389	119.8	
- 시스템 유지관리	상용SW	82	90	8	9.8	2021~2023년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비 반영
	응용SW	-	1,039	1,039	순증	
- 시스템 위탁운영		1,912	1,992	80	4.2	
- 시스템 운영전환		-	1,070	1,070	순증	통계조사 235종 운영전환
- 시스템 신규확대		-	192	192	순증	통계조사 8종 신규확대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런데 2024년 9월 기준으로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는 통계작성기관은 246개 기관으로, 이는 434개 전체 통계작성기관의 절반 수준이나, 이용기관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고 있어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이용률은 각각 30.6%, 8.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또한, 나라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국가승인통계는 전체 국가승인통계 1,343종의 33.6%인 451종으로, 대부분 조사통계와 보고통계이며 가공통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저조한 상황임.

[통계작성기관의 나라통계시스템 이용률]

(2024. 9. 30. 기준)

구분		통계작성기관 수			국가승인통계 수		
		전체기관	이용기관	이용률	전체통계	이용통계	이용률
중앙행정기관	통계청	1	1	100%	66	40	60.6%
	그 외	49	15	30.6%	397	39	9.8%
지방자치단체		260	219	84.2%	668	359	53.7%
기타 통계작성지정기관		124	11	8.9%	212	13	6.1%
계		434	246	56.7%	1,343	451	33.6%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

[통계조사방법별 나라통계시스템 이용률]

(2024. 9. 30. 기준)

구분		조사통계	가공통계	보고통계	계
국가승인통계 수		601	262	480	1,343
시스템 이용	통계 수	227	5	219	451
	이용률	37.8%	1.9%	45.6%	33.6%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

통계청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경우 자체 통계생산시스템을 완비했거나 통계조사를 리서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나라통계시스템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기존 나라통계시스템은 가공통계 지원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관련 통계생산기관의 이용률이 낮았으나,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은 가공통계 지원 기능이 추가되어 향후 가공통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통계청은 2025년 외부기관 통계조사 8종에 대하여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으로 1억 9,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신규이용 통계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통계생산시스템 신규확대 계획]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신규확대 계획 종수	9종	-	8종	15종	15종	15종

* 2024년은 차세대 나라통계시스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하여 신규확대 중지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나라통계시스템은 조사기획, 자료처리, 집계 등 통계생산과정을 표준화하여 통계작성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별로 유사한 통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된 양식으로 통계를 생산하여 통계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축된 범용 통계생산시스템임.

따라서, 향후 통계청은 나라통계시스템의 구축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의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통계데이터허브국)

< 현 황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민간데이터의 연계 및 분석을 위한 통계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통계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운영과 행정자료 통합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1,600만원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의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5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2032-308)	7,740	10,316	2,576	33.3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3,750**	**5,779**	**2,029**	**54.1**
- 데이터융복합관리체계 운영	2,797	2,905	108	3.9
- 행정자료통합관리	547	599	52	9.5
-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646	580	△66	△10.2
- 개인정보영향평가	-	453	453	순증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증액 편성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인프라 확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센터 이용 수요 창출을 위하여 지역별·이용자별 특성에 적합한 이용실적 제고방안 및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센터는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일반이용자가 통계청이 제공하는 공공·민간데이터와 이용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료 연계 및 융합 등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임.

통계데이터센터는 2016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11월부터 대전, 서울 중구, 부산 3개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점차 지역센터를 확충하여 현재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경기·전북·제주 9개 지역에 총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통계청은 통계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25년 예산안을 2024년 예산 37억 5,000만원 대비 54.1% 증액한 5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 내역은 ① 이용자 계정 추가 확보 및 대용량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통계패키지 구매(2억 4,500만원 증), ② 데이터전문기관, 결합전문기관 및 개인정보안심구역 운영 등을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12억 8,600만원 증), ③ 표준화 시계열 DB 재구축(3억 5,100만원 증), ④ 지역센터 시설개선 및 인력증원(3억 4,600만원 증)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내역사업 주요 증액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비 고
통계패키지 구매	228	473	245	107.5	
시스템 기능 고도화	-	1,286	1,286	순증	
시계열 DB 재구축	360	711	351	97.5	
센터 운영 개선	1,022	1,368	346	33.9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통계청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센터를 확충하여 왔고, 이에 따라 통계데이터센터의 전체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센터당 평균 이용자 수 증가는 정체되어 있으며 상암·국회·대구·광주 등의 일부 지역센터는 지속적으로 평균 대비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통계데이터센터의 전반적인 이용 실적 개선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실적]

(단위: 명,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9.
전체 이용자 수	1,352	1,456	2,066	2,782	4,528	4,493
센터 수	3	4	6	9	12	13
센터당 평균	**451**	**364**	**344**	**309**	**377**	**346**
중구	955	848	1,200	928	1,514	1,108
상암	-	-	72	80	21	113
강남	-	-	-	204	516	437
국회	-	-	-	53	154	196
서울대	-	-	-	-	-	502
부산	36	135	67	269	376	283
대구	-	-	66	314	138	203
광주	-	94	129	238	245	307
대전	361	379	532	525	672	393
세종	-	-	-	171	584	331
제주	-	-	-	-	134	239
전북	-	-	-	-	148	346
국립암센터	-	-	-	-	26	35

* 통계데이터센터 온라인 이용자 수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예약시스템 및 DOI 데이터 구축[284] 등 이용자 편의 시스템 강화, 대용량 분석시스템 등 고사양 장비 도입, 지역센터의 시설개선 및 인력증원 등 통계데이터센터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를 높여 센터 이용실적을

284)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는 디지털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해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제고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재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 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인프라 확충만으로 실질적인 이용 실적 개선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역별·이용대상별 이용저조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지역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및 잠재 이용자의 센터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센터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동안 국회에서는 정부부처, 연구자 등 이용자 특성 및 연구, 교육, 창업 등 이용 유형별 데이터센터 이용방식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285]가 있는 등 이용자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데이터센터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음.

따라서 통계청은 증액 편성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통계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센터 이용 수요 창출을 위하여 지역별·이용자별 특성에 적합한 이용실적 제고방안 및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5)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5)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철저한 준비 필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국)

< 현 황 >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임.

통계청은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시행한 바 있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895억원 증액된 1,15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2025년도에 1,145억 5,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26,326	115,826	89,500	340.0%
-등록센서스	851	865	14	1.6%
-인구주택총조사	-	**114,559**	**114,559**	**신규**
-국제인구통계협력	402	402	-	0.0%
-시험·시범예행조사	1,385	-	△1,385	순감
-가구주택기초조사	23,688	-	△23,688	순감

< 검토의견 >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도록 전주기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확인되었던 우려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부터 전 국민에 대하여 기본항목을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심층항목을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결합(Combined) 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였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2015년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민등록부·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년 13개 항목에 관한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 인구·주택·가구의 특성 조사를 위한 표본조사의 경우 5년마다 20% 표본(2025년의 경우 약 500만 가구, 1천만명 예상)을 설정하여 행정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심층항목(2020년 기준 55개 항목)을 현장조사하고 있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하여 1,146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전주기인 2020년 949억원 대비 197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주요변경사항]

구분		2020년	2025년
조사 개요	조사예산 (내역사업기준)	949억원	1,146억원
	조사대상	475만 가구	500만 가구
	조사요원	26,539명	30,000명 내외
	조사항목(행정자료 대체)	표본 55개(10개)	표본 55개 내외(13개 내외)
기타	센서스 시스템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 '19~'20년 구축 및 '21년 운영	차세대 Census 통합관리시스템 '22~'24년 구축 및 '25~'26년 운영
	콜센터 운영	콜센터 상담원 직접 응대	AI 기반 콜센터 (말로하는/누르는 ARS) * 24시간 민원 대응 및 콜센터 응대율 제고
	경품대상	인터넷(전화) 사전 조사기간 중 참여자	대면조사기간까지 확대

자료 : 통계청 제출자료 편집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 분야의 총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 핵심적 통계이며 유일한 전수조사로서 그 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되거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학술연구 또는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인구주택총조사 정책수립 활용 예시]

구분	기관	정책	활용된 센서스 자료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출생률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혼인상태, 총 출생아 수 추가 계획 자녀 수, 가구 구분 등
	고용노동부	장애인 노동계획	활동 제약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제 활성화	가구원수, 가구수, 주택수

자료 : 통계청

또한, 인구 및 가구 대상 조사의 기준자료로서, 타 부처 및 기관의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286)]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조사통계 예시]

기관	표본조사 명	제공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명부
	농림어업총조사	농어가 명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 명부
여성가족부	전국보육교육실태조사	연령, 아동의 지역별 분포, 조사구번호
고용노동부	근로환경조사	가구명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조사구번호, 거처종류, 난방시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가구명부

자료 : 통계청

따라서 이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2020년 전주기 인구주택총조사 시 제기되었던 아래와 같은 우려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86) 가구(개인 포함) 대상 국가승인 조사통계 74.1%(328종 중 243종)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 중임(2024. 1. 기준)

첫째로, 조사항목 및 설문문항 결정 시 민감한 내용의 경우 조사의 필요성 및 설문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전주기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의 조사항목은 총 45개로 인구 관련 항목 31개와 가구 관련 항목 14개로 구성되었음. 그런데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 자녀 출산 시기, 추가 계획 자녀 수, 혼인 상태, 혼인 연월,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민감한 사항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과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음[287].

인구주택총조사의 취지 및 조사대상의 특성상 개인적이고 다소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 의식의 강화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러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불편감을 느끼는 사례가 일정 수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조사대상인 일반 국민이 조사항목의 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경우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또는 통계청의 타 조사 시 불응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항목의 필요성 및 설문문항의 적절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및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및 설문 문구 등을 결정할 때, 전주기에 지적받았던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설문문항의 문구나 단어 등을 사려 깊게 선택하여 국민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의 경우에도 행정자료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체하여 직접조사 비중을 줄여나감으로써 조사항목과 관련한 문제 제기 및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로, 조사표 지원 언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287) 동아일보, 「“사망자녀 꼭 물어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 불쾌감 호소」, 2020.10.26.
연합뉴스, 「“월세 얼마? 사망 자녀는? 나라에 신상 털린 느낌”」, 2020.11.16. 등

인구주택총조사는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인구, 가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기준 시점에서 3개월 이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특히, 최근 국내 상주 외국인 및 다문화 혼인이 증가[288][289]하는 만큼,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표 지원 언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중 하나였음.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0개 언어가 지원되었지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20개 언어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등록센서스 외국인의 사용언어를 분석하여 많이 사용하는 상위 외국어 기준으로 선정하여 전체 외국인의 97.6%가 사용하는 언어가 포함된 숫자라는 입장임.

[2020년 대비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외국어 지원(예정) 현황]

구분	2020년	2025년
외국어조사표 인쇄 및 번역 예산액	15,500천원	33,000천원
지원 언어	총 10종: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총 20종: 2020년 10개 언어 +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미얀마어, 싱할라어, 뱅골어, 우르두어, 키르기스어, 말레이어, 우크라이나어, 라오스어

자료 : 통계청

다만,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번역 및 설문문항 작성 시 해당 외국어의 표현 및 해당 국가의 문화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한국어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수용되는지,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질문이지만 해당 문화권에서는 결례가 되는 질문이 아닌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을 거쳐 설문문항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결과값이 실제 인구구조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사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정책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민감한 설문문항 활용 시 자칫 한국 거

288) 20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전년 대비 12만 9천 명(9.9%) 증가)(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89) 2022년 전체 혼인 중 9.1%가 다문화 혼인임(전년대비 1.9%p 증가)(통계청,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주 외국인들이 통계조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작업이 필요할 것임.

셋째로, 실제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함.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종료 후 접수된 민원을 보면, '조사원의 조사방법 및 태도'에 대한 불만이 291건 중 103건(35.4%)으로 제일 많았음.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접수된 민원/불만 등 유형별 건수]

민원 유형	건수*
합계	**291건**
○ 조사원의 조사방법 및 태도	103건
○ 조사항목의 개선 및 항목 설명	66건
○ 조사원이 제기한 조사업무 방식	35건
○ 비대면 조사방식 관련	20건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조사 및 방영수칙	20건
○ 조사안내문 및 조사대상가구 선정	17건
○ 기타(경품 등)	30건

자료 : 통계청
* 민원 건수는 총 169건이나, 민원 1건당 여러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유형으로 집계

이는 대면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의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통계 불응률을 줄이고 보다 진정성 있는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통계청은 조사원 교육 시 가구 방문 시 친절교육, 응답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대인 소통능력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실제 조사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면조사 시 응답자의 저항감을 줄여나가고 응답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대상 교육 시 전주기에 접수된 민원 등에 기반하여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교육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넷째로, 통계조사원 중도포기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통계청의 다른 조사에 비해서 5년 주기 총조사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편임. 그 중 인구주택총조사의 중도포기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전주기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통계조사원은 22,583명이었는데 이 중 중도포기자는 4,109명으로 중도포기 비율이 18.2% 수준이었음. 이는 2021년 경제총조사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중도포기 비율인 7.9%의 2배 이상 수준임.

[2023년도 주요 통계별 도급조사원 중도포기 현황]

(단위: 명, %)

조사명	도급조사원 수	중도포기 인원	중도포기율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22,583	4,109	18.2
농림어업총조사(2020년)	13,664	1,076	7.9
경제총조사(2021년)	10,147	1,780	17.5
가계금융복지조사(본조사)	709	10	1.4
가계금융복지조사(가구관리)	231	3	1.3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2,409	55	2.3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2,511	137	5.5
사회조사	416	18	4.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769	16	2.1
경제통계통합조사	2,260	156	6.9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215	3	1.4
한국수어활용조사	66	4	6.1
농림어업조사	522	9	1.7

자료 : 통계청

* 5년주기인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2021년 기준임

통계조사원이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 통계조사원을 다시 고용하고 재교육을 하는 등 행정비용이 늘어나 비효율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중도포기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통계조사원의 중도포기 최소화를 위해서는 근로여건 개선 등 처우를 개선하고, 조사원에 대한 안전대책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타 통계조사 기관에 대비하여 통계청 도급조사원들의 임금이 다소 낮게 측정되어 통계조사 일정이 겹칠 경우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2025년 인구총조사 예산안에는 현장조사원 대상으로 교통비 지급 예산이 전주기 1인당 5만원 수준에서 1인당 13.2만원 수준으로 어느정도 현실화하여 증액편성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여 우수조사원을 확보하고 중도포기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교통지원비 예산편성내역]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교통비 34억 300만원 편성
 ○ 산출내역 : 3,403백만원 = 25,781천명×6,000원×22일
  - 현장조사원 규모 : 25,781명
  - 1일당 버스교통비 : 6,000원(※ 방문지역: 평균 4개, 버스교통비 : 1,500원)
  - 현장조사기간: 22일 (1인당 총 13만 2,000원)

 ※ 참고: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교통비 12억 9,300만원 편성했었음
  - 1인당 5만원 정액지급

자료 : 통계청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아래와 같이 통계조사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전체 조사원의 10%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여 교육을 미리 실시한 후 중도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체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도급조사원의 안전대책 유형별 계획(안)]

안전대책 유형	상세 계획
안전 교육	- 개선된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 및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 강화 * 안전사고(교통사고, 개물림, 넘어짐 등), 대면·전화응대 대처방안 보완 등
안전용품 지급	- 통계청에서 전자호루라기, 후레쉬 외 휴대용 SOS 발신기 지급 -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안전용품 자체 추가 구입 - 조사원 상해(산재)보험 필수 가입
조사지역 안전 사전 파악	- 태블릿PC에 설치된 생활안전지도(행안부) 및 순찰신문고(경찰청) 앱을 활용하여 위험지역 사전 파악 및 안전 확보 - 성범죄자 알림e(여가부) 앱 사용법 교육 - 조사원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관리자가 동행 조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발 및 예산 지원
긴급상황 발생	- 태블릿PC내 긴급호출* 기능 활용 * 시군구 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에게 조사원의 이름 및 위치정보 전송
사후 조치	- 손실보상금 지급

자료 : 통계청

마지막으로, 인터넷조사 및 전화조사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어 보임.

통계청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앞서 시험조사(3회) 및 시범예행조사(1회)를 실시하고 있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대비 시험조사 및 예행조사(안)]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구분	1차 시험조사	2차 시험조사	3차 시험조사	시범예행조사
시기	'22.10.17.~11.17.	'23.10.20.~11.16.	'24.4.18.~5.16.	'24.10.~11.
조사지역	-경기도 성남시 · 분당동, 수내3동 -전남 무안군 · 무안읍, 현경면 - 경북 구미시 · 송정동, 형곡2동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충남 아산시 ·온양1동, 탕정면 -전북 완주군 ·삼례읍	-세종시 ·대평동, 도담동 -충북 옥천군 ·이원면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동상동	(시군구 전체) - 인천 부평구 - 경기 여주시 - 충남 예산군
사업규모	-표본: 169개 조사구 (9,335가구)	-표본: 173개 조사구 (9,647 가구)	-표본: 92개 조사구 (5,476 가구)	-표본: 56천 가구 예정
예산	475백만원	403백만원	306백만원	1,079백만원

자료 : 통계청

2024년에 실시한 3차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4월 18일~5월 16일 동안 실시한 3차 조사 중 4월 18일~4월 30일 간 실시한 인터넷조사(PC 및 모바일)의 답변 비율은 38.4%임(모바일 24.9%, PC 13.5%). 이는 전주기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인터넷 조사 답변율인 38.2%과 비슷한 수준이며, 여전히 방문조사(3차 시험조사 46.1%)보다 낮은 수치임. 전화조사 역시 5.7%로 방문조사 및 인터넷조사보다 저조하게 나타났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별 실시기간]

조사방법	2020 인총 조사기간*	비고
인터넷(PC, 모바일)	'20.10.15. ~ 10.31.	응답자가 PC 또는 모바일로 인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 작성
전화조사		응답자가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원이 조사표를 작성
방문면접 조사	'20.11.1. ~ 11.18.	기간 중 인터넷·전화조사 가능

자료 : 통계청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기간 미정으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작성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 인터넷조사(PC 및 모바일) 및 전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미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태블릿PC 및 종이조사표[290] 활용)를 실시함.[291]

따라서 인터넷 및 전화조사의 비중을 늘리면 그만큼 방문면접조사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사원 채용 인력을 최소화 함으로서 조사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임. 또한, 직접 방문하는 조사 건수를 줄임으로써 상술한 조사원의 조사 방법 및 태도로 인한 민원 제기, 가구 방문에 따른 조사원의 안전 문제 등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시 인터넷조사 및 전화조사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290) 2020년부터 전자조사가 원칙이며, 종이조사표는 응답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사용함
291) 단, 방문면접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전화조사는 참여 가능함